

국역  
朝鮮事務書  
조선사무서  
(1)

국역  
김종학  
김흥수  
감수  
김동철  
현명철  
해제  
전성현

## 번역

김종학(국립외교원 교수)

김흥수(홍익대학교 교수)

## 감수

김동철(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현명철(전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 해제

전성현(동아대학교 교수)

## 국역 조선사무서(1)

발행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051-888-5058)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편집·인쇄 한스디자인(051-809-9001)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76-10

ISBN 979-11-85308-37-1  
979-11-85308-36-4(세트)

원문공개 부산광역시([www.busan.go.kr](http://www.busan.go.kr)) >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www.bssisa.com](http://www.bssisa.com))

표지에 사용된 지도

조선 해도 부산항 일부(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국역  
朝鮮事務書  
조선사무서  
(1)

국역  
김종학  
김홍수  
감수  
김동철  
현명철  
해제  
진성현

## · 발간사

부산시(시사편찬실)는 시사편찬 사업 일환으로 부산의 역사 관련 다양한 책자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1989년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면서 지금까지, 총 20여종, 120여 권이 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부산은 구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부산의 역사를 한 권의 책자에 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리즈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근대 부산 관련 사료를 국역하는 부산사료총서입니다.

부산사료총서는 1963년 제1권 『동래부사례』를 시작으로 관서지와 공문서 등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역완료한 것은 『내부일기』, 『다대진공문일록』, 『영남진지』, 『내영정적』, 『내영지』, 『추호유고』, 『왜인구청등록』, 『전객사별등록』, 『통신사등록』 등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조선시대 왜관·통신사 관련 사료를 국역하여 조선시대 대일교섭의 창구 부산의 위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번역할 사료는 『조선사무서』입니다. 『조선사무서』는 개항기 전후 부산의 왜관 관원 등이 작성한 한일간의 외교 문서를 ‘재부산일본영사관’이 정리한 문서입니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에 부산에 일본 총영사관이 설립되자, 한일외교 문헌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867년부터 1874년까지 외교 문서를 수집하여 연월별로 정리한 뒤 29권 문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사무서』의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개항전 부산항에서 이루어진 한일 외교 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번역자와 감수자, 그리고 해제 집필자 선생님과 시사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간행으로 근대 개항 이전 부산항의 역사를 깊게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 · 목 차

- 발간사 · 04
- 해 제 · 14
- 범 례 · 42

### 제 1 권

게이오(慶應) 3년(1867)

- 01 야도 마사요시(八戶順叔) 등이 상하이(上海)에서 정한(征韓)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일에 관해 조선에서 보내온 질문 서한 ..... 44
- 02 옛 막부에서 미(米)·한(韓)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미국 공사에게 보낸 서한 ..... 46
- 03 옛 막부에서 히라야마(平山) 즈쇼노카미(圖書頭) 등을 타이슈에 파견한 후 시의에 따라 도한(渡韓)시킬 것임을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알리는 글 ..... 47
- 04 조선에서 미국 선박을 포격(砲擊)한 일을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상신하는 글 ..... 48
- 05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옛 막부의 사신을 조선 왕성에 파견할 것을 그 나라에 통고하는 서한 ..... 49
- 06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야도 마사요시(八戶順叔)의 유언비어 사건에 관해 답하는 서한 ..... 50
- 07 조선에서 사용하는 인장(印章) 의본(儀本) ..... 51
- 08 국서식(國書式) ..... 52
- 09 조선국왕의 휘자(諱字) 및 소(宗)씨 도서(圖書) 의본(儀本) ..... 55

- 10 조선에서 프랑스 선박을 포격한 일 및 옛 막부에서 그 사이를 중재한 사정을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아뢰는 글 ..... 56
- 11 조선국에서 이양선을 공격해서 물리친 일을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통고해온 서한 ..... 58
- 12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옛 막부에 지령한 것을 다시 명하는 글 ..... 62
- 13 조선에 표류한 우리 인민의 송환과 관련하여 온 서한을 예전에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제출했는데, 이를 돌려줄 것을 청하는 글 · 62
- 14 표류한 우리 인민의 송환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보내온 서한(2통) · 63

제 2 권

메이지(明治) 원년(1868)

- 01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조선과 교제하는 일은 조정에서 처분하고, 조선을 대할 때는 외국사무보外國事務補 대리로 접할 것 등을 명령하는 글 ..... 68
- 02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막부를 폐지하고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기로 했음을 조선에 알릴 것을 명령하는 글 ..... 69
- 03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로부터 조선교제 사례의 개정을 청하는 글 ..... 69
  - | 첨부문서 | ① 양국 교제 절목節目의 대략
  - ② 세견선歲遣船, 도서圖書 사례
  - ③ 공무역公貿易, 개시開市 사례
- 04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로 하여금 조선 통신사 내조來朝 및 쓰시마[對州]가 조선의 양식을 바라지 않고 국맥國脉을 보존할 수 있도록 청하게 한 글 ..... 82
- 05 쓰시마[對州]의 국맥 보존을 위해 동 11만 천근을 정부에서 팔 것을 청하도록 한 글 ..... 84

06	쓰시마[對州]의 국맥 보존을 위해 저폐權幣 5만금을 정부에서 빌려줄 것을 청하도록 한 글 .....	87
07	쓰시마노카미對馬守 번계藩計 출납표 .....	88
08	번계藩計 중 조선에서 얻는 곡물의 계산서 .....	92
09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로 하여금 조선인 표류민의 처분 건을 상신토록 한 글 .....	93
10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쓰시마의 국력이 미약하니 여러 강한 번藩 중에서 쓰시마노카미對馬守와 마찬가지로 조선교제의 직을 명해줄 것을 청하도록 한 글 .....	95
11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조선 사건과 관련하여 조목조목 진술한 글(2통) .....	99
12	조선 사건과 관련하여 어휘御諱 등을 평의한 글(2통) .....	100
13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로 하여금 이전에 품의한 절목에 대해 속히 재가할 것을 청하도록 한 글 .....	103
14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로 하여금 만기친재를 조선에 알린 후 사절 내조의 건은 쓰시마노카미對馬守 혼자 조선에 조회하겠다고 상신토록 한 글 .....	104
15	조선에 일신一新을 알리는 건 등 3건에 대해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지령하는 의안議案 .....	105
16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내려줄 인장에 대한 의안 .....	105
17	쓰시마 시종侍從, 히젠肥前 시종이 소장少將으로 승진하는 것을 평의한 글 .....	106
18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사절 내조의 건을 상신했던 것에 대한 평의서 .....	107
19	쓰시마노카미對馬守로부터 조선에 만기친재를 알리는 서한의 안案 .....	108

- 01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조선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2명을 도쿄에 재근시킬 것 등을 명하는 글 ..... 110
- 02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조선에서 돌아와 견문한 대로 별지를 첨부하여 상신한 글 ..... 111
  - | 부속서 | ①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대정일신大政一新을 조선에 통보하기 위해 선문사先問使를 보내면서 그 뜻을 통고한 글
  - ②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대정일신을 조선에 고지하는 글
  - ③ 우리 대정복고大政復古를 통고하는 글이 구격舊格에 어긋남을 훈도 안준경安俊卿이 힐난한 글
  - ④ 안준경이 보내온 힐난문에 답변하는 글
  - ⑤ 일신통보一新通報의 서한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진술한 안준경 서한의 번역문
- 03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が 역대 존칭 및 어휘御諱 등을 조선에 통고하기 위한 상신서 ..... 129
- 04 외무성 사절을 조선에 파견하여 교린의 대의를 진술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1, 2명의 관원을 파견해서 그 실황을 시찰해야 한다는 품의稟議 ..... 132
- 05 외무성 관원의 조선 파견 명령에 따른 인원 평의評議 ..... 135
- 06 외무성에 조선 사건을 이즈하라번嚴原藩에 질문할 것을 명하는 글 · 136
- 07 시즈오카번靜岡藩에 조선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글 ..... 137
- 08 미토번水戸藩에 조선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글 ..... 138
- 09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역대 존호 및 국휘國諱 등에 관해 재차 상신하는 글 ..... 139
- 10 외무성에서 이즈하라번嚴原藩에 내린 지령안을 첨부한 상신서 · 145
- 11 조선 파견원에게 내리는 지령안 ..... 149
- 12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역대 존호 등에 관해 세 번째 올린 상신서 · 152
- 13 어휘御諱 등에 관해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에게 명령하는 글 · 153

14	어휘 등에 관해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에게 내린 지령안을 첨부한 상신서 .....	154
15	조선 파견 인원의 관록官祿과 기타 지급에 관해 대장성에 보낸 조회서 .....	156
16	앞의 건에 관한 관록조서官祿調書 .....	159
17	앞의 건의 비용 등에 관해 대장성에 보낸 조회서 .....	161
18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惠, 統, 睦 글자의 흠획欠劃 및 지사知事の 관할 官衙, 명칭 등에 관해 상신한 글 .....	162
19	조선 파견원의 비용에 관한 평의서評議書 .....	165
20	대장성에 앞의 건에 관해 다시 보낸 조회서 .....	166
21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외 2인의 도한渡韓과 관련 하여 공신公信的 절차를 명하는 글 .....	168
22	나가사키현長崎縣에, 상동. ....	168
23	오사카부大阪府에, 상동. ....	169
24	효고현兵庫縣에, 상동. ....	169
25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나가사키長崎 두 현에 앞의 건과 관련하여 도항 중 석탄 결핍, 또는 기타 파견 인원이 신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고, 그 값은 외무성에 신청할 것을 지령하는 글 .....	170
26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외 2인에게 나가사키長崎에서 이교도 조처 상황을 탐색할 것을 명하는 글 .....	171
27	대장성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재한在韓 중 탐색을 위해 사용할 증답품 휴대에 관해 보낸 평의서 .....	171
28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의 도한渡韓에 따른 선임비船賃費 등에 관한 조 회서 .....	172
29	시치조七條 시조史生가 외무성에서 조선 사무를 담당하는 것에 관한 평의서 .....	174
30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의 여비 등과 관련하여 대장성에 보낸 조회서 ..	175

31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의 승선 및 여관에 지장이 없도록 지령하는 글 .....	177
32	조선 왕복서한 중 지사의 명칭에 관해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올린 상신서 .....	177
33	이즈하라번嚴原藩에 외무성 관원이 탐색을 위해 도한渡韓하므로 협력할 것을 지령하는 글을 첨부한 평의서 .....	179
34	가나가와神奈川·나가사키長崎 두 현에 모리야마 소록에 보내는 공신公信의 송달을 의뢰하는 글 .....	180
35	시즈오카번靜岡藩에서 조선관계 서적 7부를 제출하는 글 .....	180
36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외 2인이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이교도 조처 상황을 상신하는 글 .....	181
37	미야모토 권소승의 조선심교朝鮮尋交에 관한 논서論書 .....	184

제4권

메이지(明治) 3년(1870) 1월~7월

01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 쓰시마[對州] 도착 보고 .....	194
02	본성(외무성)으로부터 사이토 사카에齋藤榮가 빌린 땅의 반납연기를 도쿄부東京府에 조회하는 글 .....	195
03	02에 대한 도쿄부東京府의 회답서 .....	195
04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의 초량관草梁館 도착 보고 .....	196
05	사다 하쿠보佐田白茅가 황사를 파견해서 한국을 정복하자는 의견을 건의하는 글 .....	196
06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대사를 조선에 파견하자는 의견을 건의하는 글 .....	200
07	사이토 사카에齋藤榮가 황사皇使를 조선에 파견하자는 의견을 건의하는 글 .....	204

- 08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사이토 사카에齋藤榮가 조선과 심교尋交를 협의하는 중에는 본관本官의 명칭을 폐하고 출사出仕로 보임해줄 것을 청하는 글 ..... 206
- 09 조선 국왕 이씨가 창업한 후 처음으로 서한을 보내온 것 등을 고증하는 글 ..... 219
- 10 소씨宗氏가 아마구치山口 번사藩士와 논의하여 조선과 무역을 도모하는 등의 내밀한 풍문서風聞書 ..... 220
- 11 소씨宗氏가 한국과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규칙서 ..... 221
- 12 쓰시마 번계藩計 조사서 ..... 223
- 13 쓰시마 번계藩計의 처분에 대해 개관하는 글 ..... 226
- 14 제주도 물산 등의 조사서 ..... 229
- 15 다케시마竹島(울릉도) 조사서 ..... 231
- 16 시즈오카번靜岡藩에 조선 국왕으로부터 이전에 받은 서한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글 ..... 233
- 17 이즈하라번嚴原藩이 동래부사가 제출한 단간短簡을 첨부하여 처분을 구하는 글 ..... 233  
| 첨부문서 | 동래부사로부터 구규舊規에 반할 때는 접대할 수 없다는 뜻을 표한 글
- 18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에게 동래부사의 서한 등을 속히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글 ..... 236
- 19 국사國使의 조선과견 여부에 관한 의안議案 ..... 236
- 20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으로부터 이즈하라번嚴原藩에 동래부사의 서한을 신속히 제출할 것을 엄하게 독촉하는 건의서 ..... 237
- 21 이즈하라번嚴原藩 공용인公用人으로부터 지사에의 지령서를 급편急便으로 보낼 것을 상신하는 글 ..... 238
- 22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が 동래부사 서한 제출 지연에 대해 상신하는 글 ..... 239
- 23 이즈하라번嚴原藩 공용인이 동래부사 서한 제출 지연에 대해 상신하는

글(2통) .....	239
<b>24</b>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황사를 조선에 파견할 호기라고 진술한 건의서 .....	241
<b>25</b> 외무성으로부터 이즈하라번(嚴原藩)이 동래부사 서한의 상송(上送)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엄책(嚴責)할 것을 변관(辨官)에 품의하는 글 .....	242
<b>26</b> 기도(木戸) 참의(參議)가 병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저히 조선과 담판을 완료할 수 없다고 건의하는 글 .....	243
<b>27</b> 황사 파견 전에 탐색을 위해 외무성 관원을 도한(渡韓)시킬 것을 상신하는 글 .....	246
<b>28</b> 집의원(集議院)으로부터 「조선국 답서」라는 것을 첨부하여 진위를 묻는 내한(來翰) .....	247
<b>29</b> 「조선국 답서」를 집의원에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첨부해서 제출한 집의원의 내한 .....	250
<b>30</b> 야나기와라(柳原) 권대승(權大乘)의 조선론 .....	251
<b>31</b> 황사 파견의 순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외무성 관원의 도한을 품의하는 글 .....	253
▪ 찾아보기	256

원문

조선사무서(1)

- 조선사무서 제1권 • 04
- 조선사무서 제2권 • 36
- 조선사무서 제3권 • 102
- 조선사무서 제4권 • 222

## 『조선사무서』 제1~4권 소개

조선사무서는 1867년 메이지유신 직전·후부터 개항을 앞둔 1874년까지 조선과 관계된 외교 문서를 ‘재부산일본총영사관’이 정리한 문서이다. 시기적으로는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 조선과의 새로운 관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 외교 관계가 진행되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1874년까지이다. 문서의 구성은 조선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초량왜관을 둘러싸고 그때까지 조일 관계의 일본 측 파트너였던 대마도, 메이지유신 이후 조일 관계를 직접 전개하고자 한 일본 외무성 및 정부, 그리고 조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조선 측 관료들이 작성하거나 상호 간에 주고받은 외교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사무서는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에 의해 부산구조계가 설정되고 1880년 설치된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이 일본의 대조선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연월별 29권으로 간행했다. 그 가운데 조선사무서(1)은 1867년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유신 초기인 1870년까지 이른바 ‘왕정복고’를 알리는 서계를 둘러싼 대마도, 일본 정부(외무성), 그리고 조선 측의 외교 문서로 구성되었다.

## 1. 시대적 배경

19세기 중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 따라 서구 중심의 근대적 세계질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842년 아편전쟁에 따른 南京조약으로 중국은 영국에 홍콩을 할양하는 한편, 廣州, 廈門, 福州, 寧波, 上海 등 5개 항구를 개항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영국은 1856년 애로호 사건으로 중국을 공격했고, 프랑스와 공동 출병하여 1857년 廣東을 점령하고 天津으로 진격해 청국을 굴복시켰다. 그 결과 天津조약을 체결했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은 외국 사절의 北京 상주권 및 수시 왕래권을 인정하고 牛莊, 登州, 漢口, 南京 등 10개 항을 더 개항했다.<sup>1</sup>

일본 幕府도 1853년 미국의 페리함대에 의한 문호개방에 직면하여, 1854년 미국,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와 화친조약을 맺었다. 이어 1858년 프랑스를 더해 5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1859년부터 神內川, 長崎, 箱館 등 3개의 항구를 개항했다. 그런데 그해 영국 군함 악티온호의 대마도 정박과 1861년 러시아 군함 포사드니크호의 대마도 점거는 대마도로 하여금 기존의 조선과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활로의 개척에 나서게 했다. 그 시작이 이른바 대마도의 영지를 九州로 이전하고자 하는 移封운동의 전개였다.<sup>2</sup>

대마도의 이봉운동은 당시 막부의 개항 정책에 따라 영국 및 러시아 군함이 대마도에 정박하거나 점거함으로써 대마도의 개항이 눈앞에 가까워졌다는 위기의식 속에 나온 자구책이었다. 즉, 대마도는 개항에 직면하여 일부만 개항된다면 대마도에 이득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壱島의 개항과 그에 따른 막부 직할령으로 전환,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九州 막부 직할령으로 이봉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 운동은 또한 이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부 개항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 속에서 막부의 개항 정책에 반대하는 尊王攘夷派와도 연결될 수 있었다.<sup>3</sup>

<sup>1</sup>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206~209쪽

<sup>2</sup> 현명철,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3, 26~32쪽

한편, 막부는 兵庫 개항 대신 대마도 개항을 고려하면서 차츰 조선과 직접 교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국 등의 정책 변화로 그 가능성이 사라지자, 단순히 대마도 일부를 군함 ‘정박지’ 정도로 개방하기로 정리했다.<sup>4</sup> 이는 대마도의 이봉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했다. 대마도는 다시 長州藩 등 양이파와 함께 조선과의 단교를 전제로 한 원조 요구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제 대마도는 조슈번과 함께 鎖港攘夷에 앞장서며 막부의 양이 단행을 압박했다.<sup>5</sup> 1862년 11월 막부는 어쩔 수 없이 양이 단행을 공표하고 다음해 5월 10일을 그 기일로 서약했다. 1863년 벽두부터 대마도는 조슈번을 통해 ‘藩政說明書’를 제출하여 대마번의 재정난과 대마도 문제가 일본 전체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즉, 막부가 양이를 약속한 이상 전쟁이 일어나면 대마도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방비를 위해 원조해달라는 것이었다. 더불어 쇄항으로 지금처럼 조선에 식량을 구걸하여 연명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원조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sup>6</sup>

대마도의 ‘변정설명서’에 더해 조슈번의 주선과 압박 등에 의해 막부는 대마도에 ‘조선 정세 정탐朝鮮國體情探索’의 내명을 내리며 사실상 원조를 허락했다. 대마도는 영주의 이름으로 10만석 영지의 年租인 3만석과 군함·기계 지급의 원조 원서를 제출했다. 그 이유는 이봉운동과 잇닿아 있었다. 막부의 양이 단행으로 서구 열강이 “겁 많고 게으르고 유약한怯懦柔弱” 조선을 우선 침략해 그 관할 하에 근거지로 삼아 일본을 침략한다면 대마도의 “患害가 아니라 천하의 대사”라고 전제했다. 그러니 서구 열강이 “조선국에 침입하지 않는 사이에” “신의로써 원조하면 복종”할 것이고 “복종하지 않아 굳이 兵威를 보이더라도 壬辰 一擧(임진왜란)와 같이 명분 없는 침략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선과 “舊交 단

3 현명철, 앞의 책, 61~85쪽

4 김흥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71~72쪽

5 현명철, 앞의 책, 제2장 對馬州 「양이정권」의 성립배경과 과정 참조

6 『江戸毎日』, 1863년 1월 23일조(현명철, 위의 책, 93~95쪽 재인용)

절을 內決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세이고” “금일부터 통상 단절을 상정하여 일국의 제도와 규칙을 완전히 개혁”해야 함으로 원조를 요청했다.<sup>7</sup>

대마도는 원조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 조선을 “怯懦柔弱”으로 표현하는 한편, “舊交”를 정리하고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무력시위까지 주장했다. 이는 과장된 것이기는 해도 이후 일본 사회의 ‘조선멸시론’과 이른바 ‘정한론’과 연결될 수 있는 ‘빌미’ 또는 ‘효과’를 조장했다고 할 수 있다. 막부는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마도의 원조 요구에 대해 연조가 아닌 手當米 3만석과 기계 및 군함 대여를 허락했다. 더불어 막부 인사를 대마도에 파견하여 그 처리를 통한 조선과의 직접 교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세가 다시 변해 존왕양이 세력이 물러나는 1864년 후반부터 원조가 재검토되고 1865년 중단되었다. 이 와중에 대마도는 다시 이봉 및 원조운동을 주도하던 藩士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를 통해 막부가 요청한 조선 관계 일체 사료와 함께 ‘조선국에 관한 건백서朝鮮國御用件建白書’를 제출했다.

건백서에는 조선을 침략하려는 서구 열강의 음모는 무르익어 이를 방비하려면 “唇亡齒寒”의 일본과 친목을 두텁게 하고 함께 군사력을 갖춰 그 업신여김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시기와 의심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지금까지의 성신교린의 관계도 사실상 친목의 교제가 아니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그 극복으로 “恩威利”를 활용한 7가지 정책을 주장했다. ① 양국 교제의 규칙을 개정할 것, ② 힘써 조선 민심을 복종시킬 것, ③ 양국의 금지(무기교역)를 파할 것, ④ 피아 물산을 열 것, ⑤ 일본의 무위와 용기를 보일 것, ⑥ 북경의 상로를 열 것, ⑦ 크게 해군을 흥기할 것이었다.<sup>8</sup>

이는 막부의 개항론에 대마도의 입장이 가미된 조일 외교무역체제의 개편론

7 「甲子十月 宗對馬守家來大島友之允ヨリノ目付向山榮五郎へ差出シタル書面二冊ノ内 御手續書」 중 ‘癸 五月十二日’, 『朝鮮通信事務一件』 4(B13090754000).

8 「元治元甲子年 十月 向山榮五郎へ大島友之允よりの書面」 중 ‘甲子十月’, 『朝鮮通信事務一件』 4(B13090754000).

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막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막부 외교 관계자는 ‘조선 처리에 관한 건의서朝鮮御處理振見込書’를 통해 쇄항양이 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대마도의 원조는 중단해야 하며, 오히려 모반한 조슈번과 함께 처벌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할 정도였다. 더불어 ‘조선 정체 탐색朝鮮體情探索’은 對馬守에 일임하고 원조 운동을 전개하던 대마번사 오시마의 귀번을 요청했다.<sup>10</sup> 대마도 파견을 명령 받았던 막부 측의 무키야마[向山榮五郎]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으로 오시마의 귀번과 함께 조슈 평정 이후 조선 처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sup>11</sup> 원조 중단을 둘러싸고 대마도는 혼란에 빠졌다. 조슈번과 함께 막부에 대항하는 양이파와 조슈번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막부파가 나뉘어 분쟁한 것이다. 대마도는 차츰 양이파를 제거하고 친막부적인 태도로 다시 원조를 요구하는 한편,<sup>12</sup> 스스로 조선 국정 탐색을 통해 조일 관계의 개편 단서를 열고자 했다.<sup>13</sup>

때마침 막부 정권의 교체(徳川家茂→徳川慶喜)가 1866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선에는 병인양요가 8월에서 10월까지 일어났다. 조선은 10월 10일 병인양요의 사실을 중국에, 그리고 15일에는 대마도를 통해 일본 막부에 알렸다.<sup>14</sup> 대마도에 조선 측의 서계가 도착한 것은 11월이고 ‘회자’ 개찬 문제로<sup>15</sup> 늦어져 다음해 3월말에야 막부에 비로소 전달되었다.<sup>16</sup> 대마도는 ‘회자’ 개찬을 핑계로 서계 전달을 늦추고 병인양요의 사실을 이용하여 다시 원조의 재개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대마번사 오시마는 병인양요의 소식을 상하이 영자지를 통해 이미 전해진 나가사키에서 듣고 바로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 등과 협의하여 조선과

<sup>9</sup> 현명철, 앞의 책, 131쪽; 김흥수, 앞의 책, 88쪽

<sup>10</sup> 「朝鮮御處理振見込書」, 『朝鮮通信事務一件』 4(B13090754000)

<sup>11</sup> 「甲子十一月對州御所置之儀二付申上候書付」, 『朝鮮通信事務一件』 4(B13090754000)

<sup>12</sup> 현명철, 앞의 책, 109~113쪽

<sup>13</sup> 김흥수, 앞의 책, 90쪽

<sup>14</sup> 『승정원일기』 1866년 10월 15일

<sup>15</sup> 조선 측 서계에 9대 소군인 徳川家重의 諱인 ‘重’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조선 측에 개찬을 요청해야 했으나 급박한 사안으로 이를 둘러싸고 시일을 지체했다.

<sup>16</sup> 「丙寅秋佛國軍艦朝鮮國へ來舶及戰鬪候付禮曹參議ヨリ書翰寫」, 『朝鮮事務書』 1, 1866.10(음)

프랑스의 중재사설 파견을 제안했다.<sup>17</sup> 그 사이 막부는 조선과 교제는 외국과 교제에 준할 것이며 以配庵 輪番制의 폐지와<sup>18</sup> 별단의 관리 파견을 지시했다.<sup>19</sup> 이른바 조선과 교제는 막부가 직접 관여할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대마도는 조선과 새로운 외교관계의 수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외교관계 수립에 다시 존재감을 부각하여 ‘자립’을 위한 원조 재개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존재감의 표출은 오시마의 조선과 프랑스 간 화의 제의였고, 대마도는 조선 정체의 탐색을 통해 화의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막부는 오시마와 협의한 나가사키부교의 건의를 수용하고 1867년 2월 프랑스에 화의를 표명하는 한편, 外國奉行 히라야마 요시타다[平山敬忠]를 대마도에 파견했다. 시의에 따라 화의 사절로 조선에도 갈 예정이었다.<sup>20</sup> 그 사이 중국은 총리각국사무아문의 자문에 근거하여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야토 마사요시[八戸順叔]의 ‘정한론’을 조선에 알렸다. 조선은 중국에 야토가 제기한 조공의 사례가 “동국의 역사”에 없는 허망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라는 격렬한 비난의 회답 자문을 보냈다. 반면 일본에는 야토가 ‘일본 에도 정부가 조선을 토벌한다’는 유연비어를 유포하고 있으니 그 사실여부를 회답해달라는 서계를 보냈다.<sup>21</sup>

조선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의 원조를 기반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대마도와 대마도의 중계 외교로부터 벗어나 직접 교제하고자 하는 막부 사이에서 병인양요, 야토의 정한론, 그리고 신미양요 등에 따른 조선의 “舊交”를 토대로 한 서계를 접하게 되면서 일본의 외교관계는 새로운 질서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교섭시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메이지유신을 통한 왕정복고와 이를

17 김흥수, 앞의 책, ‘4. 병인양요와 막부사절 파견계획’ 참조

18 以配庵 輪番制는 대마도의 국서개작사건(1635년)를 기회로 외교 문서의 개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막부에서 교토의 승려를 2년 임기로 보내 쓰시마의 이정암에 머물면서 양국 외교 문서를 관리하게 한 제도이다.

19 『宗重正家記』朝鮮事件 2, 慶應三丁卯年 正月二十六日

20 『旧幕府ヨリ平山圖書頭等ヲ對州ニ派シ時宜ニ依リ渡韓致ス可ク旨ヲ宗對馬守ニ令スル書』, 『朝鮮事務書』 1, 1867.4.7(음)

21 『同年禮部知會鈔錄新聞紙咨』, 『同文彙考』原編 洋船情形; 『일성록』고종 4년 3월 7일; 『丁卯三月禮曹參判報異聞書』, 『朝鮮事務書』 1, 1867.3(음)

알리는 일본의 서계는 이와 같은 시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었다. 1867년 이를 둘러싼 조선-대마도-일본(막부→메이지정부) 사이의 외교 문서가 조선사무서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 2. 각 권의 주요 문서 내용과 조선 교제를 둘러싼 일본의 대응책

조선사무서(1)은 1867년(별지 첨부로 병인양요의 사실을 알리는 조선 측의 1866년 10월 서계 사본 포함<sup>22</sup>)부터 1870년 7월까지 조선 관련 외교 문서를 1~4 권으로 묶어 놓았다. 1867년부터 1869년까지 3년간은 연도별 각 권으로 묶어 제 1~3권으로 구성했다. 1870년부터는 몇 개월 단위로 묶어 각 권으로 엮었는데, 제 4권은 1870년 1월부터 7월까지 조선 관련 외교 문서로 정리되어 있다.

조선사무서(1)의 제1~4권을 구성하는 외교 문서들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에 의한 왕정복고를 조선에 알리는 과정에 관한 문서, 조선의 서계 접수 거부를 둘러싼 조일 간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그리고 이에 대한 외무성 사절의 파견과 일본 정부의 대응책을 담고 있는 문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문서에는 서구 열강에 의한 동아시아의 개항과 새로운 외교통상조약의 체결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조일 간의 외교무역체제를 둘러싸고 “舊交”와 ‘新交’가 부딪히는 경계 시점의 세 가지 흐름이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막말 이후 서구 열강과의 외교통상조약에 따라 조선과의 교제도 대마도를 매개로 한 “舊交”를 혁파하고 외국과의 조약 체결처럼 직접 전개하고자 하는 막부 및 메이지정부(외무성)의 뚜렷한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의 내부적 요인이기도 한 서구 열강에 의한 개항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고 조선과 교제 단절의 위기를 역으로 기회로 삼아 새로운 교제를 앞장서 전개함으로써 일본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대마도의 원조 요구 운동이라는 지속적인

<sup>22</sup> 「丙寅秋佛國軍艦朝鮮國へ來舶及戰鬪候付禮曹參議ヨリ書翰寫」, 『朝鮮事務書』 1, 1866.10(음)

흐름이 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일본 측의 흐름 속에서 “舊交”를 토대로 한 주체적 관점에서 대마도와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조선의 모습이 서로 엮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흐름을 주목하며 각 권별 일본 측 조선 관련 주요 문서의 내용과 조선의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자.

### 1) 조선사무서 제1권(1867년)

문서제목	발신	수신	일자(음)
丁卯三月禮曹參判報異聞書	李沆應	平(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	1867.3.
旧幕府ヨリ米韓ノ間ヲ調和スル爲メ米公使ニ贈ル書翰	板倉伊賀외	R.B.발켄버그 (미합중국변리공사)	1867.4.7.
旧幕府ヨリ平山圖書頭等ヲ對州ニ派シ時宜ニ依リ渡韓致ス可ク旨ヲ宗對馬守ニ令スル書	稻葉美濃	宗(對馬守)	1867.4.7.
宗對馬守ヨリ朝鮮ニ於テ米國船ヲ砲擊セシ事ヲ上申スルノ書	扇源左衛門	辨事傳達御役所	1867.6.18.
丁卯六月答異様船情形書	平義達	朝鮮國禮曹參議	1867.6.
宗對馬守ヨリ八戶順叔流言ノ事ヲ答ルノ往翰	平義達	朝鮮國禮曹參判	1867.8.
朝鮮ニテ用エル所ノ印章儀本			
國書式			
朝鮮國王諱及宗氏圖書儀本			
宗對馬守ヨリ朝鮮ニ於テ佛船ヲ砲擊セシ事及旧幕府ニテ其間ヲ調和スルノ事情ヲ稟啓スルノ書	大島友之允		1867.10.25.
丙寅秋佛國軍艦朝鮮國へ來舶及戰鬪候付禮曹參議ヨリ書翰寫	任冕鎬	平(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	1866.10.
宗對馬守ニ朝鮮ノ儀旧幕府へ指令セシ者ヲ令スル書	旧幕府	對馬守	1867.11.
宗對馬守ヨリ嚮キニ差出シ置キタル我人民ノ朝鮮ニ漂到セシヲ送還スルニ依ラノ來翰下付アラン事ヲ請フノ書	大島友之助	外國官御役所	1867.6.
朝鮮ヨリ日本人民ノ漂到セシ者ヲ送還スルノ來翰[一]	閔義軾	平(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	1867.12.
朝鮮ヨリ日本人民ノ漂到セシ者ヲ送還スルノ來翰[二]	閔義軾	平(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	1867.12.

1811년 대마도 통신사행 이후 연기의 연기를 거듭하며 별다른 교제가 없던 조일 간에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과 그에 따른 중국 및 일본의 개항, 그리고 조선으로의 진출시도로 인해 본격적인 변화의 조짐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시대적 배경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 내부에서는 이 시기 개항과 외국과의 조약체결로 인해 조일 간의 교제를 새롭게 재편해야한다는 논의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대마도의 이봉 및 원조 요구가 진행되면서 일본 정부는 직접 교제에 나서려는 시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때마침 조선에는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났고, 이듬해는 일본의 ‘정한’ 계획이라는 유언비어가 중국을 통해 조선으로 전해졌으며, 또 다시 미국 선박이 조선에 침입하는 등 중요한 외교적 사건이 잦아졌다. 조선은 이와 관련된 사실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일본 측은 이에 대한 대응과 답변을 진행했다. 더불어 조선과 새로운 외교관계의 수립을 위한 내부적인 절차도 진행되었다. 조선사무서(1)의 1권은 [표 1]과 같이 조선에서 벌어진 외교적 사건에 대한 통보와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및 답변, 그리고 조선과 직접 교제를 시도하고자 하는 정부와 대마도 간의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866년 10월 조선은 병인양요의 사실과 이 같은 양이 출몰이 일본에도 잦기 때문에 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대마도를 통해 일본 측에 알렸다.<sup>23</sup> 대마도는 즉각 정부에 화의 제안을 요청했다. 막부는 이를 받아들여 프랑스, 미국, 영국 등과 화의를 논의하는 한편,<sup>24</sup> 조선 화의 사절을 대마도로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sup>25</sup> 이를 조선 측에도 대마도를 통해 알렸다.<sup>26</sup>

화의 사절의 조선 파견과 관련된 일본 측의 대응은 병인양요에만 해당되는

23 「丙寅秋佛國軍艦朝鮮國へ來舶及戰鬪候付禮曹參議ヨリ書翰寫」

24 「宗對馬守ヨリ朝鮮ニ於テ佛船ヲ砲撃セシ事及舊幕府ニテ其間ヲ調和スルノ事情ヲ稟啓スルノ書」；「旧幕府ヨリ米韓ノ間ヲ調和スル爲メ米公使ニ贈ル書翰」

25 「旧幕府ヨリ平山圖書頭等ヲ對州ニ派シ時宜ニ依リ渡韓致ス可ク旨ヲ宗對馬守ニ令スル書」

26 「丁卯六月答異樣船情形書」

것은 아니었다. 1867년 3월과 6월 대마도를 통한 조선 측 서계도 모두 고려된 일본 측 대응이었다. 조선은 3월에 일본인 야도 마사요시[八戸順叔]가 북경에서 유포한 일본의 ‘정한’ 유언비어를 중국 측 자문을 통해 보고 받아 이에 대해 질문했다.<sup>27</sup> 6월에는 미국 선박의 조선 진출을 무력으로 저지시킨 사실에 대해서도 통보했다.<sup>28</sup>

이에 대해 일본은 대마도를 통해 “무법자의 와언 같은 것은 믿을 것이 없”다고 하며 병인양요 등의 일과 함께 “우려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 “특별히 사절”을 보내겠다고 응답했다.<sup>29</sup> 이는 대마도의 적극적인 제의에 의해 조선과 교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막부의 의도였다. 막부는 이를 위해 다시 대마도에 관련된 조선과 교제사무 일체의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sup>30</sup> 대마도는 즉시 조선에서 사용하는 인장 의본, 국서식, 서계식, 회답국서, 회답서계, 조선국왕의 휘자 및 소씨 도서 의본 등 교제 관련 자료를 들어 보고했다.<sup>31</sup>

## 2) 조선사무서 제2권(1868)

문서제목	발신	수신	일자(음)
宗對馬守ニ朝鮮交際ノ事ハ朝廷ニ於テ處分シ及彼ニ對スル時ハ外國事務補ノ心得ヲ以テ接スル旨等ヲ令スル書		宗(對馬守)	1868.3.23.
宗對馬守ニ幕府ヲ廢セラレ萬機親裁ニ出ルヲ朝鮮ニ報知スヘキ旨ヲ令スル書		宗(對馬守)	1868.3.23.
宗義達의 奉答書-宗對馬守ヨリ朝鮮交際ノ事例ヲ改正スルヲ請フノ書	義達(對馬侍從)		1868.4(윤).
宗氏の政府へ致せる建白の二大事項-宗對馬守ヨリ大島友之允ヲシテ朝鮮通信使來朝及對州ニ於テ朝鮮ノ糧食ヲ仰カスシテ國脉保存ノ儀ヲ請ハシムルノ書	大島友之允		1868.5.

<sup>27</sup> 「丁卯三月禮曹參判報異聞書」

<sup>28</sup> 「宗對馬守ヨリ朝鮮ニ於テ米國船ヲ砲擊セシ事ヲ上申スルノ書」

<sup>29</sup> 「宗對馬守ヨリ八戸順叔流言ノ事ヲ答ルノ往翰」

<sup>30</sup> 「旧幕府ヨリ平山圖書頭等ヲ對州ニ派シ時宜ニ依リ渡韓致ス可ク旨ヲ宗對馬守ニ令スル書」; 「宗對馬守ニ朝鮮ノ儀旧幕府へ指令セシ者ヲ令スル書」

<sup>31</sup> 「朝鮮ニテ用エル所ノ印章儀本」; 「國書式」; 「朝鮮國王諱及宗氏圖書儀本」

문서제목	발신	수신	일자(음)
日韓條約成立前宗氏對朝鮮公貿易-宗對馬守銅拾壹萬千斤官賣アラン事ヲ請ハシムルノ書	大島友之允	外國事務御役所	1868.5.
宗對馬守楮幣五萬金ヲ官借アラン事ヲ請ハシムルノ書	大島友之允	外國事務御役所	1868.5.
國中糧米入目高ノ覺-對馬守藩計出納表			
朝鮮國公私貿易取入金穀ノ覺-對馬守朝鮮ヨリ得ル所ノ穀貨算面			
兩國漂流民ノ取扱に付き建白-對馬守ヨリ大島友之允ヲシテ朝鮮人ノ漂到スル者處分ノ儀ヲ上申セシムルノ書	大島友之允	外國事務御役所	1868.5.
宗氏對州國力ノ微弱ナルニ依り列藩ノ内對馬守ト同シク朝鮮交際ノ職ヲ命セラレシ事ヲ請ハシムルノ書	大島友之允	外國事務御役所	1868.6.
韓國事件廉書朝鮮江ノ勅書-對馬守ヨリ差出シタル朝鮮事件條陳 二通			
朝鮮國へ書談事及御諱字ノ事-朝鮮事件御諱等評議書 二通			
漂人取扱と交渉文書ノ取扱方迷惑上申-對馬守ヨリ大島友之允ヲシテ嚮キニ稟議スル所ノ節目速ニ裁許アラレ事ヲ請ハシムルノ書	大島友之允	外國官御役所	1868.6.
大島友之允ヨリ萬機親裁ヲ朝鮮ニ報知ノ後ハ使節來朝ノ儀對馬守一己ニテ彼國へ照會ス可キ旨ヲ上申セシムル書	大島友之允	外國官御役所	1868.6.
朝鮮へ一新報知ノ儀等三件對馬守ニ指令議案			1868.6.17.
對州へ可渡印ノ事-對馬守ニ下付スヘキ印章ノ議案			
對馬侍從肥前侍從少將ニ昇進ノ義評議書			
對馬守ヨリ使節來朝ノ儀上申セシヲ以テ評議書			
御一新ノ儀朝鮮國へ宗家ヨリ告文案-對馬守ヨリ朝鮮へ萬機親裁ヲ報知スルノ書翰案	大島友之允		

주지하다시피 1867년 후반부터 일본의 정체에 대변혁이 진행되었다. 10월 14일(음),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에 의해 정권을 조정에 반납한다는 ‘대정봉환’이 이루어졌다.<sup>32</sup> 12월 9일(음), 이른바 ‘왕정복고 대호령’에 따라 막부가 폐지되고

<sup>32</sup>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사무서(1)의 1권 오시마 도모노조의 1867년 10월 25일자 글(宗對馬守ヨリ朝鮮ニ於テ佛船ヲ砲撃セン事及旧幕府ニテ其間ヲ調和スルノ事情ヲ稟啓スルノ書)에서도 “이번에 大政과 관련하여 간단치 않은 變革을 분부”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다. 이는 특히 “구교”를 토대로 한 조선과 교제 관계의 새로운 재편을 의미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명령과 함께 왕정복고를 조선에 알리라고 대마도에 명령했다. 대마도는 조선 교제의 구폐를 개혁하며 자립의 길을 가고자 했기 때문에 정부의 명령을 수용하는 한편, 조선과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마도의 자립을 재차 요구했다. [표 2]와 같이 조선사무서 2권은 이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명령과 부속 문서, 그에 대한 대마도의 의견과 번의 명맥을 보전하기 위한 원조를 요청하는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정부는 대마도에 “왕정을 일신하여 모든 외국교제를 조정에서 취급하는 것과 관련해 조선은” 대마도가 “지금까지처럼 두 나라의 교통을 맡도록 家役으로 명”했다.<sup>33</sup> 다만 조선에 대해 공무를 취급할 때는 “외국사무보 직무대리”로 근무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대마도에게 계속해서 가역으로 맡긴 것은 표면적으로 “조선은 예로부터 내왕한 나라로 더욱 위신을 세우려는 취지”였기 때문이었다.<sup>34</sup>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외교 직책으로 조선과 교제하도록 하여 정부 스스로 교제하는 형태를 띠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왕정복고와 함께 “앞으로 조선관련 사건 등은 모두 조정에서 명령하니 이 뜻을 조선에 알릴 것”을 지시했다.<sup>35</sup>

일본 정부의 명령을 받은 대마도는 이를 받드는 한편, “조선교제 사례의 개정”을 청했다.<sup>36</sup> 즉, 지금까지 조선 교제가 “對州一國(藩)의 私交”이며, 흡사 “藩臣의 禮를 취한 것”과 가까워 수백 년간 굴욕적이었다고 전제했다. 때문에 왕정복고한 지금 “사교의 잘못된 예”를 조속히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sup>33</sup> 왕정복고 이후에도 조일 간 교통을 가역으로 맡게 것은 대마도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김홍수, 앞의 책, 126쪽).

<sup>34</sup> 「宗對馬守二朝鮮交際ノ事ハ朝廷ニ於テ處分シ及彼二對馬時ハ外國事務補ノ心得ヲ以テ接スル旨等ヲ令スル書」

<sup>35</sup> 「宗對馬守二幕府ヲ廢セラレ萬機親裁ニ出ルル朝鮮二報知スヘキ旨ヲ令スル書」

<sup>36</sup> 이 건백서는 對馬守의 명이지만 실제로 대마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던 대마번 국사과 오시마 도모노조 [大島友之允]가 태정관 총재국 고문이며 외국사무과를 겸하고 있던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와 협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石川寛,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日本史研究』 480, 2002, 41쪽).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첫째, 조선의 일을 국력이 미약한 대마도에만 맡기지 말고 “대마도와 가까운 강한 번近國列藩”에도 맡길 것. 둘째, 교제를 새롭게 할 때 통상 교역도 조정에서 처리할 것. 셋째, 이번에는 우선 왕정복고만 알리고 조선의 사절 내조를 요청할 것. 나아가 “편벽되고 고루한” 조선이 만약 이를 듣지 않는다면 “만국공법에 있어 토벌할 죄가 분명함으로, 단연코 무력시위兵威를 보이시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제시했다.<sup>37</sup>

더불어 굴욕적인 대마도의 사교 폐단을 개혁하고 정부가 직접 교제함에 따라 조선과 羈縻무역은 사라짐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마도의 명맥을 보존할 수 있는 조치(예산)를 요구했다.<sup>38</sup> 대마도는 일본의 개항 이후 불어 닳친 위기를 극복하고자 줄곧 주장해온 영지 이전移封과 원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왕정복고를 다시 호기회로 삼았다. 따라서 개항 이후 이전부터 줄곧 주장해 온 것처럼 지금까지의 조선 교제를 치욕적인 대마도의 사사로운 교제私交로 규정하고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조선과 직접 교제를 더욱 빨리 앞당기는 한편, 지금까지 조선과의 굴욕적인 교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대마도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마도의 주장에 대해 일단 “조정의 관원이 도해할 때까지” 조선과 교제는 이전처럼 혼자 맡도록 조치했다.<sup>39</sup> 더불어 대마도에 “조선에 만기친재를 알리는 서한”의 초안을 전달하며<sup>40</sup> 왕정복고 서계의 통달‘만’을 명령했다.<sup>41</sup>

37 「宗義達の奉答書-宗對馬守ヨリ朝鮮交際ノ事例ヲ改正スルヲ請フノ書」; 「宗氏の政府へ致せる建白の二大事項-宗對馬守ヨリ大島友之允ヲシテ朝鮮通信使來朝及對州ニ於テ朝鮮ノ糧食ヲ仰カスシテ國脉保存ノ儀ヲ請ハシムルノ書」

38 「日韓條約成立前宗氏對朝鮮公貿易-宗對馬守銅拾壹萬千斤官賣アラン事ヲ請ハシムルノ書」; 「宗對馬守楮幣五萬金ヲ官借アラン事ヲ請ハシムルノ書」; 「國中糧米入目高ノ覺-對馬守藩計出納表」; 「朝鮮國公私貿易取入金穀ノ覺-對馬守朝鮮ヨリ得ル所ノ穀貨算面」

39 「宗氏對州國力ノ微弱ナルニ依リ列藩ノ內對馬守ト同シク朝鮮交際ノ職ヲ命セラレシ事ヲ請ハシムルノ書」

40 「御一新ノ儀朝鮮國へ宗家ヨリ告文案-對馬守ヨリ朝鮮へ萬機親裁ヲ報知スルノ書翰案」

41 이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가 왕정복고의 통고만을 담당하고 그 이후의 일은 조정의 관원이 조선으로 파견해서 처리할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마도는 이미 왕정복고의 서계 통지를 위해 천황 직접교제의 결재와 국서 문안, 왕정복고의 서계 문안, 어휘, 인장, 양국 교례 관원의 위계 등의 지시를 요구했다(「韓國事件廉書朝鮮江ノ勅書-對馬守ヨリ差出シタル朝鮮事件條陳 二通」). 이에 대해 메이지 정부는

다음으로 대마도가 “중래 金穀 등 옛 막부의 도움을 받아 국민을 撫育하고 또 武備 등도 갖춰 온 것에 대해서는 詮議한 다음 상당한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조선국과 응수하는 예식과 그 밖에 국체에 관계되는 것들은 천하가 평정된 뒤에 분부할 것”이라고 뒤로 미뤘다.<sup>42</sup> 즉, 일본 정부는 왕정복고 직후 아직 국정이 수습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정에 집중했다. 따라서 구교의 예에 따라 일단 왕정복고의 사실만을 대마도를 통해 통지하고 이후의 일은 조정의 관리를 직접 조선에 파견해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착착 직접 교제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그런데 대마도를 통한 왕정복고 서계가 조선 측에 접수 거부되면서 이를 문제 삼아 조선과 관계 혁신을 위한 대마도와 메이지 정부의 대응이 전개되었다.

### 3) 조선사무서 제3권(1869)

문서제목	발신	수신	일자(음)
朝廷ヨリ宗氏ヘノ達シ-對馬守ニ朝鮮ノ事情熟知ノ者兩人東京ヘ駐勤致ス可キ旨等ヲ令スル書	外國官判事	宗(對馬守)	1869. 5.13.
大島ノ朝鮮ヨリ歸國朝鮮事情上申書-大島友之允朝鮮ヨリ歸リ見聞ノ次第別紙ヲ副ヘ上申書	大島友之允	外國官御役所	1869.6.
對韓處置ニ對スル上申書-嚴原藩知事ヨリ歷代尊称及御諱等ヲ朝鮮ニ告ルク為メ上申書	嚴原藩知事	外務省御役所	1869. 9.23.
宗氏ノ對韓政策意見ヲ外務省取次ギ太政官ニ稟申-外務省使節ヲ朝鮮ニ派シ交隣ノ大義ヲ述ルヲ要スルカ為ノ先ツ一ノ官員ヲ遣ハシ其実況ヲ觀察スルノ稟議	外務省	太政官辨官	1869.9.

서계의 초안과 함께 왕정복고의 통고만을 명령하는 한편, 조선국 공무를 취급함으로 소장으로 승진시킨 것(「對馬待從肥前待從少將二昇進ノ義評議書」) 이외 인장의 경우 의견이 분분하지만 조선으로부터 받은 감함인으로 해도 지장 없다는 중론을 제시했다(「朝鮮國へ書談事及御諱字ノ事-朝鮮事件御諱等評議書 二通」; 「對州へ可渡印ノ事-對馬守ニ下付スヘキ印章ノ議案」). 물론 정부에서 새로운 인장을 조제하여 대마도에 내렸지만 신인 사용 방침은 대마도 내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마수가 직접 지시한 것이었다(『重正公御履歷集』 3番, 1868년 10월 8일). 그리고 대마도는 왕정복고의 통보를 구교의 철폐와 새로운 교제의 개혁으로 인식하며 선문서계와 서계를 통해 제시했다. 이 때문에 조선은 서계의 ‘항칙’의 사용은 물론 선문서계의 형식과 인장이 구교의 예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계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조일 관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sup>42</sup> 「朝鮮へ一新報知ノ儀等三件對馬守ニ指令議案」

문서제목	발신	수신	일자(음)
省中伺(使者朝鮮へ派遣二就テ)-外務省官員ヲ朝鮮ニ派遣ニ依リ人員評議			1869.10.
太政官ノ嚴原藩達-外務省ニ朝鮮事件ヲ嚴原藩ニ質問スヘキ旨ヲ令スル書	太政官	嚴原藩	1869.10.
對韓關係ノ文書取調達-静岡藩ニ朝鮮關係ノ書類ヲ差出ス可キ旨ヲ令スル書	外務省	静岡藩 公用人	1869.10.
水戸藩ニ朝鮮關係ノ書類ヲ差出ス可キ旨ヲ令スル書	外務省	水戸藩 公用人	1869.10.
對韓交渉ヲ外務省交渉ニ取扱スルニ對シ嚴原藩ノ不贊成意見書	齊藤佳兵衛	辨官御役所	1869.10.
嚴原藩齋藤ノ伺書ニ對スル外務省ノ太政官上申書-外務省ヨリ嚴原藩ヘノ指令案ヲ副へ上申書	外務省	辨官	1869.10.
朝鮮へ被差遣侯者心得方(外務省ノ特派官ノ任務事項命令)-朝鮮ニ派遣ノ者へ指令案	外務省		1869.11.
嚴原藩ヨリ歴代尊号等ノ儀 上申書[一]	小田忠三郎 (嚴原藩公用人)	外務省 御役所	1869.11.
嚴原藩ヨリ歴代尊号等ノ儀 上申書[二]	小田忠三郎 (嚴原藩公用人)	外務省 御役所	1869.11.
宗家江御達寫-御諱等ノ儀嚴原藩知事ニ令スル書	外務省	嚴原藩知事	1869.11.
御諱等ニ關シテ-御諱等ノ儀嚴原藩知事へ指令案ヲ副へ上申書	外務省	辨官	1869.11.
外務官佐田ノ渡韓通知-大藏省ニ遣韓ノ者官祿其他支給ノ儀照會書	外務省	大藏省	1869.11.
朝鮮御用出張ノ者官祿調書-大藏省ニ遣韓ノ者官祿調書			
覺-大藏省ニ遣韓ノ者用金等ノ儀照會書	外務省	大藏省	1869.11.
嚴原藩ヨリ惠統睦ノ字欠畫及知事官銜名稱等ノ儀上申書	小田忠三郎 (嚴原藩公用人)	外務省 御役所	1869.11.
省中伺-朝鮮ニ派遣ノ者用金ノ儀評議書	佐田素一郎외		1869.11.
金札ニ就イテ-大藏省ニ朝鮮ニ派遣ノ者用金ノ儀更ニ照會書	外務省	大藏省	1869. 11.30.
外務官ノ派遣ト船便-神奈川縣ニ佐田白茅外二人渡韓ニ依リ公信往來ノ順序ヲ令スル書	外務省	神奈川縣	1869.11.
長崎縣ニ佐田白茅外二人渡韓ニ依リ公信往來ノ順序ヲ令スル書	外務省	長崎縣	1869.11.
大阪府ニ佐田白茅外二人渡韓ニ依리公信往來ノ順序ヲ令スル書	外務省	大阪府	1869.11.
兵庫縣ニ佐田白茅外二人渡韓ニ依리公信往來ノ順序ヲ令スル書	外務省	兵庫縣	1869.11.

문서제목	발신	수신	일자(음)
大阪府兵庫長崎兩縣ニ佐田白茅外二人渡韓件渡航中石炭欠乏其他派遣ノ者ヨリ申出ル時ハ之レヲ用弁シ代價ハ外務省ニ申出ヘキ旨ヲ令スル書	外務省	大阪府, 兵庫縣, 長崎縣	1869.11.
佐田白茅外貳人へ長崎ニ於テ異宗徒處置ノ狀態探索スヘキ旨ヲ令スル書		佐田白茅외	1869.12.
省中伺(派遣ノ贈答品)-大藏省ニ佐田白茅等在韓中探索ノ爲メ用ユル贈答品携帯ノ儀評議書			
金札ノ件-佐田白茅等渡韓ニ依リ船賃及旅費等ノ義照會書	外務省	大藏省	1869.12.
省中伺-七條史生外務省ニ在テ朝鮮事務調弁スヘキ條評議書	朝鮮行掛		1869.12.
出張觸使給與-大藏省ニ佐田白茅等旅費ノ義照會書	外務省	大藏省	1869.12.
佐田等ノ出發-神奈川縣ニ佐田白茅等乗船ノ次及旅亭ノ儀妨ケナキヲ令スル書	外務省	神奈川縣	1869.12.5.
嚴原藩ヨリ朝鮮往復書翰中知事称名ノ儀上申書	小田忠三郎 (嚴原藩公用人)	外務省 御役所	1869.12.7.
嚴原藩へ通知-嚴原藩ニ外務省官員探索ノ爲メ渡韓ニ依リ協力スヘキ旨令スル書ヲ副へ評議書	外務省	嚴原藩	1869.12.7.
神奈川長崎兩縣ニ森山少錄へノ公信送達ヲ依頼スル書	外務省	金川縣, 長崎縣	
静岡藩ノ朝鮮關係文書差出-静岡藩ヨリ朝鮮關係ノ書籍七部ヲ差出シタル書	松山秀太郎외	外務省	1869.12.
佐田等長崎耶穌調查ノ事件-佐田白茅外貳人ヨリ長崎縣ニ於テ異宗徒處置ノ情態ヲ上申スル書	佐田白茅외		1869.12.20.
方今朝鮮ノ事御取調ニ付愚見陳述御趣意焔着ノ處奉何候-宮本權少丞朝鮮尋交ノ儀論書			

1868년 4월 26일, 일본 정부는 ‘王政御一新告知參判使’를 임명하고 이미 왕정 복고의 서계를 조선에 통고하도록 명령한 대마도에 1868년 8월 27일 천황 즉위식이 거행된 직후 掌信館<sup>43</sup> 議事 가와모토 규자에몬(川本九左衛門)를 참관사 幹事官으로 삼아 조선 파견을 다시 명령했다. 그리고 참관사와 대마도의 오시마가 서

<sup>43</sup> 대마도의 조선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이다.

계를 논의하는 한편, 9월 26일 ‘王政御一新告知參判使’의 사명을 ‘大修使’로 변경했다.<sup>44</sup> 이는 단순한 왕정복고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과 새로운 교제체제까지 설정하고자 하는 대마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sup>45</sup>

이어 각종 서계의 완성과 대수사와 간사관의 상선 명령이 내려졌다. 신인 사용이 고지되어 간사관서계는<sup>46</sup> 구인, 대수사서계는<sup>47</sup> 신인으로 압인하여 12월 4일 간사관이 먼저 출발하고 11일 대수참판사가 이어 출발했다. 16일과 19일에 왜관에 간사관과 대수참판사 일행이 각각 도착했다.<sup>48</sup> 16일 왜관에 먼저 도착한 간사관 가와모토는 서계 접수를 위해 조선의 훈도와 별차를 왜관으로 불러 접수를 요청했다. 훈도 안동준과 별차 이주현은 서계 사본을 접수하고 즉시 동래부사에게 전달했으며, 부사는 이를 조정에 보고했다.<sup>49</sup> 조선사무서 3권은 [표 3]과 같이 이른바 일본의 ‘왕정복고통고서계’를 둘러싼 조일 간 갈등과 이에 대한 대마도 및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문서로 정리되어 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의 반응은 훈도부터 “서계의 異例를 구실로 이리저리 異難을 제기”하며 서계 정납을 거부하고 사본만을 가지고 동래부사에 전달했고, 동래부사는 이 일을 조정에 보고했다. 조정으로부터의 답변이 내려오기 전에 조선 측은 일본 측의 대응에 응하지 않고 다음 해에 다시 논의하자고 회피했다. 1869년 1월 대마도가 급히 오시마를 判掌官으로 삼아 도한해 조선과 협의하고자 했다. 2월 훈도 안동준은 “조정의 의논이 매우 어려워 그 대의를” 기록한 진문을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서계를 조정에 올리기 전에 먼저 보니 구격에 어긋나 도저히 봉출할 수

44 「大島ノ朝鮮ヨリ歸國朝鮮事情上申書-大島友之允朝鮮ヨリ歸リ見聞ノ次第別紙ヲ副へ上申書」 중 ‘書契二對スル彼我交渉内容, 무진 11월’

45 대마도가 이른바 ‘왕정복고통고서계’와 관련된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46 ‘遣禮曹告新印事書’로 조선사무서에는 선문서계로 정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사무서를 따라 선문서계로 통일한다.

47 ‘遣禮曹參判大修使書’로 조선사무서에는 서계로 정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사무서를 따라 서계로 통일한다.

48 김흥수, 앞의 책, 150~151쪽 표 2. 대수사 파견 과정 참조

49 「大島ノ朝鮮ヨリ歸國朝鮮事情上申書-大島友之允朝鮮ヨリ歸リ見聞ノ次第別紙ヲ副へ上申書」 중 ‘書契二對スル彼我交渉内容, 무진 10월’

없다는 것이었다. 이유로는 첫째 걸면의 직함이 전과 다른 것, 둘째 姓字 아래 ‘朝臣’이라는 두 글자가 격례에 맞지 않은 것, 셋째 서계의 문자 또한 격외의 말이 많은 것, 넷째 사료써 공을 해친다以私害公는 구절과 조선이 주소해 보낸 圖書를 반납한다는 것 때문이었다.<sup>50</sup>

거듭되는 일본 측의 서계 봉출 요구에 대해 조선 측은 “양국의 交隣之道는 舊章을 따르고 조약을 준수하여 오직 誠信을 위주로 할 뿐이다. 서계의 서식이 만약 예전 규칙과 다르다면 捧上하지 말라”는 처분으로 일관했다.<sup>51</sup> 다만 거듭되는 서계 봉출의 강압과 왜관 억류 등에 의해 혼도는 일본 측에 기밀이라며 조선 조정이 일본에 품고 있는 의혹을 설명했다. 조선 측의 서계 문제에 대한 반응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조일 간의 통교는 대마도에 인교를 허락하며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왕정복고가 있었다고 조선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를 거절하여 세월을 끌면 대마도가 교역을 얻지 못하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둘째, 새로 관백을 폐지하고 일신했다고 해도 그에 상당하는 대신을 인명해서 교린의 직분을 두면 될 것이다. 셋째, ‘황’을 칭하는 술책은 점차 조선을 신하로 예속시키려는 간사한 모략이니 처음부터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52</sup>

조선 측의 서계 봉출 거부에 대해 대마도는 조선 측이 제시한 문제에 대한 해명과 함께 서계의 개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sup>53</sup> 우선, 직함이 다른 것은 “주군이 이미 버린 구관을 칭하여 안으로 朝命을 속이고 밖으로 隣邦을 기만하여 양쪽 사이에서 신의를 잃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둘째, ‘朝臣’ 두 글자는 ‘조정의 신하’가 아니라 “姓字와 連用해서 葛八涅이라고” 부르는 씨를 높이거나 씨 자체를

50 「大島ノ朝鮮ヨリ歸國朝鮮事情上申書-大島友之允朝鮮ヨリ歸リ見聞ノ次第別紙ヲ副へ上申書」 중 「(眞文寫)安俊卿ノ書式違例ノ論難書-訓導安俊卿ヨリ我大政復古ヲ告ル其文旧格二戻ルヲ論詰書ニスル書」

51 「大島ノ朝鮮ヨリ歸國朝鮮事情上申書-大島友之允朝鮮ヨリ歸リ見聞ノ次第別紙ヲ副へ上申書」 중 「安俊卿ヨリ一新報知ノ書翰ヲ受ケサル意ヲ陳ル書ノ譯」

52 「大島ノ朝鮮ヨリ歸國朝鮮事情上申書-大島友之允朝鮮ヨリ歸リ見聞ノ次第別紙ヲ副へ上申書」 중 「訓導滯館中困迫ノ余幹傳官へ機密及內話彼廷議日本ヲ疑訝イタクシ居ル三件」

53 「大島ノ朝鮮ヨリ歸國朝鮮事情上申書-大島友之允朝鮮ヨリ歸リ見聞ノ次第別紙ヲ副へ上申書」 중 「書契二對スル彼我交渉內容, 기사년 3월」

가리키거나 씨 아래 붙여 사용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셋째, 서체가 격식에 어긋나고 격외의 말이 많은 것은 “서계의 체재와 자구의 위치는 물론 정규가 있지만 문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교린의 우의는 그 실제에 따라 고해서 국휘를 피하는 것을 제외하면 써선 안 되는 글자도, 말해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강변했다. 넷째, ‘황’자를 칭하는 것은 천황이 일본을 총람한 것은 2천여 년이 되었고 지금 정체가 혁신되어 천황이 만기를 친재하게 되었으니 이를 상세히 조선에 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以私害公’과 도서의 반납은 정체가 변하여 일본 “조정에서 다시 인호를 닦고자 인신을 하사”하니 “이는 양국의 공의이자 공교”이며 “예로부터 받아온 도서를 오늘날 변혁하길 원치 않는 것은 본주의 사교이자 사정”인 것이라고 해명했다.<sup>54</sup>

이와 같은 적극적인 해명과 훈도의 억류와 회유, 그리고 서계의 일부 개찬 의지도 조선 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마도는 조선 측에는 실리를 위해 구교에 따른 구인과 직함의 개찬 사용을 통해 교역은 유지하는 한편,<sup>55</sup>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의 “수도로 가 국왕과 면담하여 조정친교의 수락 여부 및 공간의 성패를 결판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상신했다. 더불어 조선이 일본의 입경을 거부하고 병력으로 대항하면 “한국을 제어하는 방법은 恩威를 병행하여 寬猛을 임기응변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대마도가 더욱 분발하여 성패를 확실히 정한 다음 조정의 관료를 조선에 보내 모두 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sup>56</sup> 즉, 대마도의 조선 교제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69년 7월, 외무성 창설 이후 대마도의 조선 사절 중지 명령과 함께 조선과 직접 교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서도 나타난다. 즉, 대마도가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이 관철되어 조선의 통신사행을 요청하고 다시 일본의

54 「大島ノ朝鮮ヨリ歸國朝鮮事情上申書-大島友之允朝鮮ヨリ歸リ見聞ノ次第別紙ヲ副へ上申書」 중 「安俊卿贈ル所ノ論詰書ニ答辯スル書」

55 대마도가 교역 유지를 위해 구인 사용과 직함 개찬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김흥수, 앞의 책, 169~177쪽 참조

56 「大島ノ朝鮮ヨリ歸國朝鮮事情上申書-大島友之允朝鮮ヨリ歸リ見聞ノ次第別紙ヲ副へ上申書」

국사를 파견한 이후에야 외무성이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대한교제를 외무성 교섭으로 취급하려는 것에 대한” 불찬성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서도 확인된다.<sup>57</sup>

한편, 일본 정부는 대마도에 ‘왕정복고통고서계’만을 담당하게 하고 더불어 조선의 실정을 조사 보고하라고 하는 한편, 조선 사정을 잘 아는 2인을 도쿄에 재근케 하는 등 조선과 직접 교제를 위한 조약 체결 준비에 들어갔다.<sup>58</sup> 1869년 7월, 외무성이 창설되자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9월, 대마도의 대한정책 의견을 토대로 외무성은 대마도의 조선 교제를 사교로 규정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관원 1~2명을 대마도에 파견하고자 했다. 이들 관원은 시의에 따라 조선에도 건너가도록 하여 대마도와 조선의 교의왕복을 직접 관찰하여 사교의 체제를 자세히 보고하게 하고 군함을 비롯한 각종 채비를 준비하여 조선 도항 때를 기다려 그 용무를 달성토록 했다.<sup>59</sup> 그리고 조선 교제와 관련이 있는 제번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했다.<sup>60</sup> 대마도의 불찬성 의견도 있고 곧바로 직접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외무성은 조선 관련은 대마도와 상의하고 사절 파견 전까지는 대마도의 사교 체제를 그대로 두되, 파견한 관원을 통해 입회 및 감찰의 자격으로 근무하게 하고 대마도의 조선 교제 부분에 대한 더욱 특별한 조사를 계획했다.<sup>61</sup>

11월, 외무성은 대마도 및 조선 파견 특파관에 外務准權大録 사다 하쿠보[佐田白朶], 外務小録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外務准小録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3명을 임

57 「對韓交涉ヲ外務省交渉ニ取扱スルニ對シ嚴原藩ノ不贊成意見書」; 대마도의 주장은 일단 받아들여져 현재 교섭 사무는 계속 대마도가 맡게 되었다(「嚴原藩齋藤ノ伺書ニ對スル外務省ノ太政官上申書-外務省ヨリ嚴原藩ヘノ指令案ヲ副ヘ上申書」).

58 「朝廷ヨリ宗氏ヘノ達シ-對馬守ニ朝鮮ノ事情熟知ノ者兩人東京ヘ駐勤致ス可キ旨等ヲ令スル書」

59 「宗氏ノ對韓政策意見ヲ外務省取次ギ太政官ニ稟申-外務省使節ヲ朝鮮ニ派シ交隣ノ大義ヲ述ルヲ要スルカ爲ノ先ツ-二ノ官員ヲ遣ハシ其実況ヲ觀察スルノ稟議」; 「省中伺(使者朝鮮ヘ派遣ニ就テ)-外務省官員ヲ朝鮮ニ派遣ニ依リ人員評議」

60 「對韓關係ノ文書取調達-靜岡藩ニ朝鮮關係ノ書類ヲ差出ス可キ旨ヲ令スル書」; 「水戶藩ニ朝鮮關係ノ書類ヲ差出스可키旨ヲ令스ル書」; 시즈오카번은 조선관계 지서 7부를 제출했다(「靜岡藩ノ朝鮮關係文書差出-靜岡藩ヨリ朝鮮關係ノ書籍七部ヲ差出シタル書」).

61 「省中伺(使者朝鮮ヘ派遣ニ就テ)-外務省官員ヲ朝鮮ニ派遣ニ依リ人員評議」; 「太政官ノ嚴原藩達-外務省ニ朝鮮事件ヲ嚴原藩ニ質問スヘキ旨ヲ令스ル書」

명하고 다음과 같은 조사 임무를 명령했다. ① 慶長·元和 이래 조선의 사절이 “조선은 나라가 작고 일본은 컸으므로 조선이 선수를 뺏겨서 사절을 보내오고 우리는 앉아서 그 예를 받은 것이지 그 기원의 근본 취지”. ② 대마도에서 조선에 보내는 사절의 예식과 조선에서 대마도로 보내온 사자의 예전. ③ 황사를 파견할 때 그 잘못된 관례를 바로 잡을 것인데, 대마도가 조선으로부터 받은 勘合印의 연원. ④ 조선의 국체가 청에 항복한 이래 藩屬 관계인지 국정을 自裁獨斷할 수 있는지 항배. ⑤ 황사 파견시 首府 가까운 항구에 군함을 보내는 것이 타당한데 그 부근의 양향 유무. ⑥ 조선의 러시아 보호 요청과 국경 논의 등에 대한 여부. ⑦ 조선의 육해군 군사력의 허실과 기계의 우수성. ⑧ 조선 내정의 順治 여부와 국왕 및 대신에 관한 풍문이 「초량기문」<sup>62</sup>과 같은지 여부. ⑨ 조선과 무역을 개시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수출입 품목, 조선의 물가 수준과 화폐의 선악, 지금까지 무역절차의 전망, 그리고 대마도가 시행하는 교역의 준치 여부. ⑩ 대마도의 조선 교제를 폐지할 경우 그 처분의 전망과 회계. ⑪ 대마도의 주선으로 수부까지 가게 된다면 조선의 풍속과 제도 등을 특히 자세하게 관찰할 것 등 조선과 직접 교섭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조사를 지시했다.<sup>63</sup>

곧이어 외무성은 파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대마도 및 조선 파견에 필요한 경비, 급여, 증답품 등에 대해 대장성 등에 요청하는<sup>64</sup> 한편, 선편으로 통과하는 가나가와, 오사카, 효고, 나가사키 등 여러 현에 선편과 편의를 당부하는 지령을 내렸다.<sup>65</sup> 더불어 외무성 파견 관원에게는 추가적으로 나가사키 우라카

62 '왕정복고통고서계'가 조선 측에 접수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마도에서 파견된 오시마가 조선의 국정을 탐색해 작성한 자료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인 최초의 조선견문록으로 알려져 있다.

63 「朝鮮へ被差遣使者心得方(外務省ノ特派官ノ任務事項命令)-朝鮮ニ派遣ノ者へ指令案」

64 「外務官佐田ノ渡韓通知-大藏省ニ遣韓ノ者官祿其他支給ノ儀照會書」; 「朝鮮御用出張ノ者官祿調書-大藏省ニ遣韓ノ者官祿調書」; 「覺-大藏省ニ遣韓ノ者用金等ノ儀照會書」; 「省中問-朝鮮ニ派遣ノ者用金ノ儀評議書」; 「金札ノ件-佐田白茅等渡韓ニ依リ船賃及旅費等ノ義照會書」; 「省中問(派遣ノ贈答品)-大藏省ニ佐田白茅等在韓中探索ノ爲メ用ユル贈答品携帶ノ儀評議書」; 「金札ノ件-佐田白茅等渡韓ニ依リ船賃及旅費等ノ義照會書」; 「省中問-七條史生外務省ニ在テ朝鮮事務調弁スヘキ條評議書」; 「出張觸使給與-大藏省ニ佐田白茅等旅費ノ儀照會書」

65 「外務官ノ派遣ト船便-神奈川縣ニ佐田白茅外二人渡韓ニ依リ公信往來ノ順序ヲ令スル書」; 「長崎縣ニ佐田白茅外二人渡韓ニ依リ公信往來ノ順序ヲ令スル書」; 「大阪府ニ佐田白茅外二人渡韓ニ依リ公信往來ノ順序ヲ令スル書」;

미촌의 기독교도 조치 양상에 대해 탐색할 것을 지시했다.<sup>66</sup> 이제 그간의 논의나 계획에만 그친 일본 정부의 조선 직접 교제를 위한 첫 발이 내딛어졌다. 외무성 파견 사다 일행은 12월 6일 도쿄를 출발했다. 외무성은 곧바로 대마도에 외무성 관원의 도한에 협력하라는 지령을 내렸다.<sup>67</sup> 사다 일행은 12일 나가사키에 도착해 우라카미촌 기독교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그에 대한 조사내용을 상신했다.<sup>68</sup> 그리고 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도향할 준비에 들어갔다.

#### 4) 조선사무서 제4권(1870.1~7.)

##### 朝鮮事務書 제4권(係于明治三年自正月至七月, 1870.1~7.)

제목	발신	수신	일자(음)
佐田白茅等對州二到着ノ上報	佐田白茅외	外務省	1870.1.28.
外務省ヨリ齋藤榮拜借地返納延期ノ義東京府ヘ照會書	外務省	東京府	1870.2.19.
齋藤榮拜借地返納延期件東京府ヨリ返書	東京府	外務省	1870.2.20.
佐田白茅等草梁館二到着ノ上報	齋藤榮외	外務省	1870.2.25.
上書[一]-佐田白茅使ヲ派シ韓ヲ征スルノ議ヲ獻スル書	佐田白茅		1870.3.
上書[二]-森山茂大使ヲ朝鮮ニ派スルノ議ヲ獻スル書	森山茂		1870.4.
上書[三]-齋藤榮使ヲ朝鮮ニ派スルノ議ヲ獻스ル書	齋藤榮		1870.4.
森山茂齋藤榮ヨリ朝鮮尋交商量中本官ノ名稱ヲ廢レ仕出ニ補ヤラシムフヲ請フノ書	森山외		1870.4.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朝鮮國王李氏創業後始メテ書翰ヲ贈リ來ル等考證ヲ存スルノ書	佐田白茅외		1870.4.
內密風聞-宗氏山口藩士ト議シ朝鮮ノ貿易ヲ謀ル等內密風聞書			
和館及對州鰐浦番所運上則-宗氏韓國輸出品運上規則書			
對州國計-對州藩計調書			
御處分見込-對州藩計調書件處分ノ概見書			

「兵庫縣ニ佐田白茅外二人渡韓ニ依リ公信往來ノ順序ヲ令スル書」;「大阪府兵庫縣長崎兩縣ニ佐田白茅外二人渡韓件渡航中石炭欠乏其他派遣ノ者ヨリ申出ル時ハ之ヲ用弁シ代價ハ外務省ニ申出ヘキ旨ヲ令スル書」

<sup>66</sup> 「佐田白茅外二人ヘ長崎ニ於テ異宗徒處置ノ狀態探索スヘキ旨ヲ令スル書」

<sup>67</sup> 「嚴原藩ヘ通知-嚴原藩ニ外務省官員探索ノ為メ渡韓ニ依リ協カスヘキ旨令スル書ヲ副ヘ評議書」

<sup>68</sup> 「佐田等長崎耶蘇調查ノ事件-佐田白茅外二人ヨリ長崎縣ニ於テ異宗徒處置ノ情態ヲ上申スル書」

제목	발신	수신	일자(음)
濟州物産等調書			
朝鮮物語ノ内竹島一則-竹島調書			
静岡藩ノ朝鮮國王ヨリ従前贈ル所ノ書翰差出ス可キ旨ヲ令スル書	外務省	静岡藩 公用人	1870.4.
東萊府使外兩名ヨリノ單簡ニ相添エ候嚴原藩知事届書-嚴原藩ヨリ東萊府使差出ヤシ單翰ヲ副ノ處分ヲ仰クノ書	嚴原藩知事	外務省	1870. 4.4.
嚴原藩知事ヘ東萊府使ノ書翰等速ニ差出ス可キ旨ヲ令スル書	外務省	嚴原藩知事	1870.5.
國使ヲ朝鮮ニ派スルヤ否ニ依リ議案			
省中伺-佐田白茅等ヨリ嚴原藩ヘ東萊府使ノ書翰迅速差出ス可キ旨ヲ嚴督スルノ建議	佐田白茅외		1870.5.
嚴原藩公用人ヨリ知事ヘノ指令書急便ヲ以テ差送ル可キ旨上申書	小田忠三郎 (嚴原藩公用人)	外務省 御役所	1870. 5.12.
嚴原藩知事ヨリ東萊府使書翰延引ノ儀上申書	嚴原藩知事	外務省	1870. 5.30.
單簡延着之届書-嚴原藩公用人ヨリ東萊府使書翰延引ノ儀上申書 [一]	小田忠三郎 (嚴原藩公用人)	外務省 御役所	1870. 6.2.
公用人演舌振不束ニ付斷書-嚴原藩公用人ヨリ東萊府使書翰延引ノ儀上申書[二]	小田忠三郎 (嚴原藩公用人)	外務省 御役所	1870. 6.3.
佐田白茅等ヨリ皇使ヲ朝鮮ニ派スルノ好機會ナル旨ヲ陳ル建議	齋藤知一외		1870.6.
嚴原藩ニテ東萊府使書翰上送ノ義怠慢ニ依リ嚴責センフヲ辨官ニ稟議スル書	外務省	辨官	1870.6.
庚五六月二十四日木戶參議宅ヘ參リ朝鮮一件示談仕候處兩三日中政府ヘ可差出木戶建白寫-木戶參議兵力ヲ備フルニ非レハ朝鮮ト到底ノ談判ヲ了レ難キ建議書	木戶		1870. 6.24.
皇使發遣前探索ノ爲メ外務省官員ヲ渡韓ヤシムル義ヲ上申スル書	外務省	辨官	1870. 7.25.
集議院ヨリ朝鮮國答書ナルモノヲ副ノ眞偽ヲ問フノ來翰	集議院	外務省	1870.7.
答書ノ偽書由來-集議院ヨリ朝鮮國答書ヲ集議院ヘ差出レタル人名書ヲ副ノ來翰	集議院	外務省	1870.7.
柳原權大丞朝鮮論稿	柳原		
外務省官員渡韓稟議-皇使發遣順便ノ地ヲ謀ルカ爲メ外務省官員ヲシテ渡韓ヤシムルヲ稟議スルノ書[一]	外務省	辨官	1870.7.
外務省官員再渡韓探催稟議-皇使發遣順便ノ地ヲ謀ルカ爲メ外務省官員ヲシテ渡韓ヤシムルヲ稟議スルノ書[二]	外務省	辨官	1870.7.

1870년, 본격적인 외무성 관원의 첫 조선(초량 왜관) 도착과 조사, 그리고 조선 측과 협의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곧바로 구체적인 보고로 일본 정부에 전달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의 보고에 따른 일본 정부의 논의, 특히 외무성과 집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조선사무서 4권은 외무성 관원의 조선 파견에 따른 조사 업무와 보고, 그리고 이들 파견 관원으로부터 시작해 외무성이 주도하는 이른바 조선에 황사를 직접 파견해야 한다는 ‘황사파견론’을 다룬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외무성 파견 관원에 의한 대마도 주도의 조선 교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해 조일 간의 교제를 둘러싼 대마도와 외무성 간의 경합도 본격화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무성 파견의 사다 일행은 1870년 1월 26일 나가사키를 출항해 28일 대마도에 도착했다. 조선 파견을 위한 준비를 마친 일행은 2월 9일 대마도를 출발 22일 조선의 초량 왜관에 도착했다.<sup>69</sup> 사다 일행은 조사활동과 더불어 조선 측 훈도 등과 비공식 면담을 통해 ‘왕정복고통고서계’에 대한 회답을 독촉했다. 그런데 조선 측은 이미 훈도와 별차 명의로 서계를 봉출할 수 없다는 각서 형태의 문서를 대마도 측에 제출했다. 사다 일행은 그 각서에 證印이 없다고 하여 날인을 요구했다. 조선 측은 다시 훈도 및 별차의 날인 각서와 함께 동래부사가 “구규에 반할 때는 접대할 수 없다는 뜻”의 단간을 제출했다.<sup>70</sup> 사다 일행은 조선에서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왕정복고통고서계’를 둘러싼 조선 측의 공식적인 문건을 입수하여 3월 20일 대마도로 돌아왔다. 3월 하순 동래부사의 단간과 날인된 훈도 및 별차의 각서를 외무성에 제출하도록 대마도에 지시했다.<sup>71</sup> 4월 9일 귀경한 사다 일행

69 「佐田白茅等對州二到着ノ上報」; 「佐田白茅等草梁館二到着ノ上報」

70 「東萊府使外兩名ヨリノ單簡二相添工候嚴原藩知事届書-嚴原藩ヨリ東萊府使差出ヤシ單翰ヲ副ノ處分ヲ仰クノ書」

71 하지만 대마도는 이즈하라지사 명의로 동래부사 단간 제출을 4월 4일자로 작성해 놓았지만(「東萊府使外兩名ヨリノ單簡二相添工候嚴原藩知事届書-嚴原藩ヨリ東萊府使差出ヤシ單翰ヲ副ノ處分ヲ仰クノ書」). 실제 외무성 제출은 6월 2일로 2달 가량 지체했다. 때문에 외무성은 이를 재촉하는 한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고자 했다(「嚴原藩知事へ東萊府使ノ書翰等速ニ差出ス可キ旨ヲ令スル書」; 「省中伺-佐田白茅等ヨリ嚴原藩へ東萊府使ノ書翰迅速差出ス可キ旨ヲ嚴督スルノ建議」; 「嚴原藩公用人ヨリ知事へノ指令書急便ヲ以テ差送ル可キ旨上申書」). 이와 같이 대마도 측의 지연 이유는 조선 측의 공식적인 문건이 향후 조선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미리 논의

은 조선 파견의 결과 보고서인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sup>72</sup> 사다 일행의 조선 내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가 직접 파견한 외무성 관원에 의한 조선 관련 첫 보고서로 이후 조선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慶長·元和 이래 조선에서 신사를 파견하여 번속의 예를 취해 온 元由

일본에 번속의 예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며, 답례는 피하고 신사를 보낸 것은 敬遠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왕정복고통고서계’도 글의 내용이 불손하고 옛 규칙을 따르지 않아 단연코 받을 수 없다고 확답함에 따라 대마도가 제시한 통신사행 초빙이나 지사가 도한해도 불가능하다. 차라리 조선의 확답 서면을 후일의 증거로 삼고 정부에 품의해 조치할 필요가 있다.

② 대마도와 조선의 교제시 사신 禮典

막부의 교제와 대마도 및 조선의 길흥시 대마도에서 예조참판 전서와 토산물을 가지고 가면 조선의 사신은 집정 및 중신 중에 파견한다. 조선은 막부의 교제에 신사를 파견하고 그 밖의 길흥사나 대마도의 대체 등에 임관을 대마도에 보낸다. 임관 도래의 경비는 막부 하사금으로 충당한다.

③ 조선에서 받은 감함인이 조선 제도상 조공을 받는 것으로 취급하는가

감함인은 조선의 국왕이 부군현에 주는 도서와 같은 것으로 宗氏의 실명을 새긴 동인이다. 이 도장을 받는 것은 조선의 제도상 신하와 같은 것이다. 지금부터 정부에서 교제를 인수한 뒤 대마도의 부채를 비롯해 수백 년 사교의 그릇된 사례를 바로잡아 교제의 조리를 세워야 한다.

④ 조선의 국체는 청의 臣禮를 받아 正朔을 받든다는데, 국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하며 대마도 입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公用人演舌振不束二付斷書-嚴原藩公用人ヨリ東萊府使書翰延引ノ儀上申書[二]」).

<sup>72</sup>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朝鮮國王李氏創業後始メテ書翰ヲ贈リ來ル等考證ヲ存スルノ書」

### 독단하는 권력인가

옛 명에 한 것과는 달라 심복이 아니다. 때문에 내정의 온갖 일을 독단하는 권리가 있다. 외국에 관계하는 사건도 스스로 결정한다. 단, 조선 역관이 북경에 가서 받는 禮典을 본보기로 대마도의 사신을 다룬다고 한다.

#### ⑤ 황사를 과견할 때 군함이 수부 근해를 순회함으로 양항 유무

병인양요 때 수도 근해인 강화부에 정박했다. 그곳 이외 적당한 항구는 없다. 더불어 서양 측량도 1엽을 제출한다.

#### ⑥ 조선이 러시아의 보호를 의뢰한다는 소문과 경계론

러시아에 의뢰하는 사정은 전혀 듣지 못했다. 아직 경계에 접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접경지역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풍문은 있다.

#### ⑦ 조선 해륙군 무비의 허실과 무기의 精粗

병인양요 이후 수영과 병영에 병사를 조련하고 부군현에 농병을 모으며 수도에 승병까지 편입시켜 수도의 해륙 방어는 이미 갖추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 부산은 때때로 화기 사용과 조련이 있는데, 그 체제는 일본의 옛 방식과 비슷하다. 병인양요 이후 소총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즐렬하며, 전선도 일본선에 비하면 매우 즐렬하다. 부산의 큰 만에는 하나의 포대도 없고 성루도 견고하지 않다.

#### ⑧ 내정의 治否는 「초량기문」과 같은가

초량기문과 같이 대원군의 폭정으로 문무백관이 분규하고 국민이 원한을 품는 모습이다. 경상도 칠원의 민란은 진무되었지만 강원도의 민란은 아직이다. 병인양요의 원인인 기독교도의 금지도 그 잔당이 남아 있는 등 국정의 분란은 여전하다.

#### ⑨ 무역개시에 관련된 물품의 교환, 물가의 고저 및 화폐의 선악

조선과 무역을 위해 각국이 일본에서 무역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우선 처음부터 約條를 체결해 강화, 부산, 제주,<sup>73</sup> 의주 등 4곳을 개항시키고 재류의 법을 만

든다. 추후 서울과 개성 등 2곳을 개시하고 일본 화폐를 유통시켜 조선은 물론 북경·천진과도 무역을 열면 일본에 대단한 이익일 것이다.

#### ⑩ 세견선의 향후 존폐

번신의 예를 취한 것임으로 지금부터 정부에서 교제와 무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때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 ⑪ 대마도의 조선 교제에 들어가는 비용 및 표류민 처리 경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

별지 조사서대로 지배지를 증가해 주는 것이 공평하다. 표류민 처리 비용은 이제부터 서한을 보낼 때 첨부하여 바치는 물품을 폐지하고 서로의 부조는 옛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별첨과 같다.<sup>74</sup>

#### ⑫ 초량 왜관 이외 일본인 여행 여부

별지 회도면처럼 초량 해안에 세워진 7만여 평의 왜관은 대마도의 소관으로 지조를 내지 않고 관수역이 관할한다. 문의 개폐는 동래부의 번병이 담당하며 밤중의 출입은 금한다. 왜관 밖 출입은 300보의 들이 있어 일본통사의 호송에 의해 가능하다. 부산과 가까운 쪽에 설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허락하지 않고 옛 고관인 두모포에 매년 두 번 묘지 참배는 허락된다. 왜관 주위에 다섯 곳의 초소에 일본 통사 2, 3명을 배치하고 출입을 감시하는데 이는 모두 명문으로 되어 있다.

#### ⑬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

독도는 울릉도와 이웃하는 섬이며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 기재한 서류는 없다. 울릉도는 조선에서 거류를 위해 사람을 파견해 두었는데 지금은 무인이다. 별지 한 것처럼 울릉도는 막부가 “조선에 넘겨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73 「濟州物産等調書」

74 「和館及對州鯉浦番所運上則-宗氏韓國輸出入品運上規則書」; 「對州國計-對州藩計調書」; 「御處分見込-對州藩計調書件處分ノ概見書」

이상과 같이 외무성 파견 사다 일행의 조선 내담서는 대체로 구례의 조선 교제를 대마도의 사교이기에 폐지하고 정부의 직접 교제와 무역을 위한 약조의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외무성 파견의 사다, 모리야마, 사이토는 군대와 함께 황사를 파견하여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이른바 황사파견론을 제기했다.<sup>75</sup> 따라서 외무성은 황사 파견을 요청하고 이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 탐색을 위한 외무성 관원의 도한을 다시 제기했다.<sup>76</sup> 이처럼 일본 정부는 점차 군대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통해 조선과 직접적인 조약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sup>75</sup> 「上書[一]-佐田白茅皇使ヲ派シ韓ヲ征スルノ議ヲ獻スル書」; 「上書[二]-森山茂大使ヲ朝鮮ニ派スルノ議ヲ獻スル書」; 「上書[三]-齋藤榮皇使ヲ朝鮮ニ派スルノ議ヲ獻スル書」; 「佐田白茅等ヨリ皇使ヲ朝鮮ニ派スルノ好機會ナル旨ヲ陳ル建議」

<sup>76</sup> 「國使ヲ朝鮮ニ派スルヤ否ニ依リ議案」; 「皇使發遣前探索ノ爲メ外務省官員ヲ渡韓ヤシムル義ヲ上申スル書」; 「外務省官員渡韓稟議-皇使發遣順便ノ地ヲ謀ルカ爲メ外務省官員ヲシテ渡韓ヤシムル稟議スルノ書[一]」; 「外務省官員再渡韓探催促稟議-皇使發遣順便ノ地ヲ謀ルカ爲メ外務省官員ヲシテ渡韓ヤシムル稟議スルノ書[二]」

##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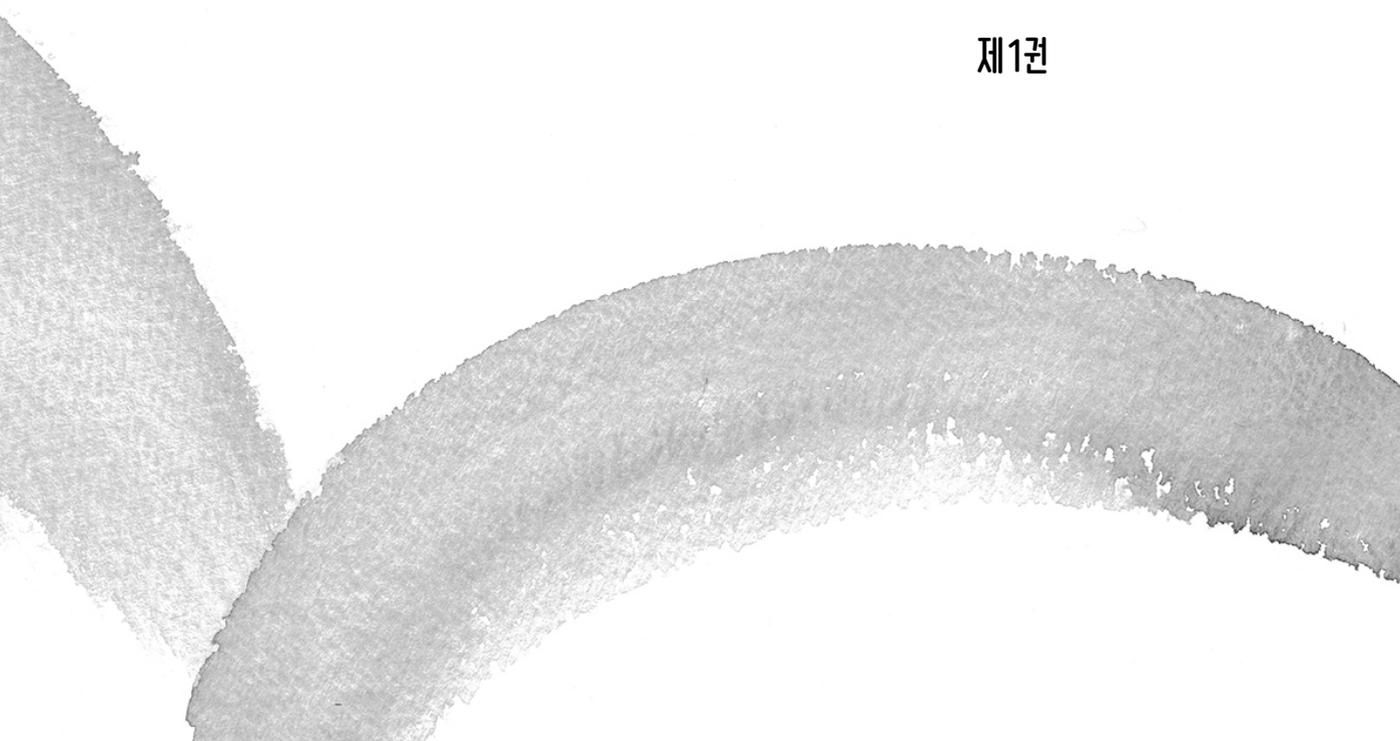
1. 일본의 관직명,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는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外國官, 外務省, 太政官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과 관직명은 각각 외국관, 외무성, 태정관 등 한자 발음으로 옮겼다.
2. 조선에서 일본에 보내는 문서에 나오는 일본 고유명사는 한자 발음으로 옮기고, 각주에 일본어 발음을 표기했다.
3. 원문에 사후적으로 문서의 제목이나 요지를 덧붙인 구절은 번역에서 제외했다.
4. 원문에는 문서 번호가 없으나, 편의상 목차와 수록문서의 순서에 맞게 번호를 부여했다.
5. 원문의 할주(割註: 문장 속에 작은 글씨로 두 줄로 넣은 주석)는 작은 글씨로 표기했다.
6. 문맥상 한자어 병기가 필요한 경우 작은 글씨로 표기했다. 단, 의역일 경우 원문을 [ ] 내에 표시했다.
7. 번역문 중에 한자어와 할주가 섞여서 혼동되는 경우 할주는 [ ]로 구분하여 표기했다.
8. 원서의 제1권과 제3권은 김종학, 제2권과 제4권은 김흥수가 번역했다.



국역

조선사무서  
(1)

제1권



# 1

## 『조선사무서』 제1권

게이오(慶應) 3년(1867)

### 01 야도 마사요시(八戶順叔) 등이 상하이(上海)에서 정한(征韓)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일에 관해 조선에서 보내온 질문 서한

정묘(1867) 3월 예조참판보이문서(禮曹參判報異聞書)

조선국 예조참판 이연응(李沆應)이 일본국 쓰시마주 태수습유(對馬州太守拾遺) 평공(平公) 합하게 글을 보냅니다.

눈에 비치는 꽃 빛이 느리고 긴 이때, 멀리서 계처(啓處) 충유(沖裕)하실<sup>1</sup> 것을 생각 하니 아무리 그리며 송축해도 싫어지지 않습니다. 폐방(弊邦)과 귀국은 이웃한 항구가 의대(衣帶)만큼밖에<sup>2</sup> 떨어져 있지 않고 신역(訊譯)의 관개(冠蓋)가<sup>3</sup> 계속 이어져서, 근래 200여 년 동안 강신수목(講信修睦)하며 시종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이제

1 계처(啓處)는 편안히 거처한다는 뜻으로 상대의 안부를 물을 때 쓰는 말이다. 충유(沖裕)는 덕이 깊고 온화한 모양이다.

2 의대(衣帶):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준말로, 바다나 강이 옷의 띠만큼 좁다는 뜻이다.

3 관개(冠蓋): 관원이 입는 의복과 탈 것. 특별히 사신(使臣)을 가리키기도 한다.

춘절사春節使가 베이징北京에서 돌아와서 말하길, “소문을 들으니 일본국 객인客人 야도 마사요시八戶順叔라는 자의 말에, 일본 에도 정부의 독리선무장군督理船務將軍 나카하마 만지로中濱萬次郎가 한 달 전에 특별히 상하이로 와서 화륜선 80여 척을 제조하고 최근에 귀국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 그 나라에 모두 260명의 제후가 있어서 에도에서 회동하고 의정議政했는데, 현재 군대를 일으켜서 조선을 토벌할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야도 마사요시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속적屬籍이<sup>4</sup> 바로 귀국에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로 그곳에 흘러 들어가 있는지 아직 상세하지 않으니 반드시 힐문할 것도 없지만, 위무(靈誣)를<sup>5</sup> 날조하고 제멋대로 주환(講幻)하여<sup>6</sup>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지 괴이할 뿐입니다. 사리로 헤아려보건대 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아! 양국의 성신誠信이 일월日月에 비취볼만 하고 선세先世의 조약이 금석金石도 뚫을 만합니다. 변치 않는 맹약을 백신百神이 함께 증험하니, 만성萬姓이 이제 무한한 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때 갑자기 들리는 황설(謊說)을 대변에 사실로 인정해선 안 되지만, 의義는 영원한 우호에 있고 정情은 숨김이 없는 데서 나오는 법이니, 이에 사실대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상의 사실을 도부(東武)<sup>7</sup> 전달 해서 밝게 회신을 보내게 하시길 깊이 바랍니다. 갖추지 못하고 보냅니다.

정묘년(1867) 3월 일

예조참판 이연응

4 속적(屬籍): 국적(國籍)

5 위무(靈誣): 거짓된 무함

6 주환(講幻): 사람을 속여서 미혹함

7 도부(東武): 에도막부

## 02 옛 막부에서 미·한韓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미국 공사에게 보낸 서한

정묘 4월 7일 오사카 즈쇼노카미圖書頭를 보내겠다고 이키노도노壱岐殿께서 전달함.

미국 합중국 변리공사Minister Resident Excellency R. B. 발켄버그에게

서한으로 아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선국이 최근 프랑스와 전쟁을 한 후 귀국의 무고한 상선商船을 잔해殘害했다고<sup>8</sup> 들었습니다. 저 나라는 본디 우리와 영토를 접하고 오랜 교분이 있는 나라로서, 이와 같이 불의한 행동을 해서 우리 동맹친교同盟親交의 국민을 참해慘害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다이쿤大君께서 깊이 통탄해 마지않으셨습니다. 또 인의隣誼에 있어서 충고하여 잘 인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 국왕에게 국서를 보내고, 히라야마平山 즈쇼노카미圖書頭, 고가 긴이치로古賀謹一郎에게 명하여 자세히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허물을 뉘우쳐 우리에게 화친을 상의하는 데 이른다면, 귀국은 군대를 돌려 구원舊怨을 버리고 서로 우선友善하는<sup>9</sup> 길을 열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같은 정상情狀이니, 귀국 정부에 대해 깊이 주선해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다만 저들의 구습舊習이 완고해서 설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인의隣義에 있어 우리가 할 바를 다하여 사해의 평화를 기약하는 것이 우리 다이쿤의 평소 뜻입니다. 부디 이를 양찰하시어 진력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글월을 갖추어 말씀드립니다.

게이오慶應 3년 묘년卯年(1867) 4월 7일

이타쿠라板倉 이가노카미伊賀守 [화압花押]

이나바稻葉 미노노카미美濃守 [화압花押]

오가사와라小笠原 이키노카미壱岐守 [화압花押]

<sup>8</sup> 잔인해물(殘人害物)의 준말로, 잔인하게 죽이고 물건에 손상을 입힌다는 뜻이다.

<sup>9</sup> 우선(友善): 사이가 좋음. 의가 좋음

**03** 옛 막부에서 히라야마<sup>平山</sup> 즈쇼노카미<sup>圖書頭</sup><sup>10</sup> 등을 타이슈에 파견한 후 시의에 따라  
도한<sup>渡韓</sup>시킬 것임을 소宗 쓰시마노카미<sup>對馬守</sup><sup>11</sup>에게 알리는 글

정묘년 4월 7일 경사<sup>京師</sup>에서<sup>12</sup> 가쿠로<sup>關老</sup><sup>13</sup> 이나바 미노노카미 님이 전하신  
명령문<sup>[書達]</sup><sup>14</sup>

소宗 쓰시마노카미<sup>對馬守</sup>

다이슈<sup>對州</sup>에 어용<sup>御用</sup>으로<sup>15</sup> 가이고쿠부교<sup>外國奉行</sup> 히라야마 즈쇼노카미, 오메  
쓰케<sup>御目付</sup> 고가 긴이치로를 파견하며, 시의<sup>時宜</sup>에 따라서는 사절로 조선국에도  
보낼 것이다. 이는 필경 저 나라와의 오랜 교의<sup>交誼</sup>를 깊이 유념하시어 그 나라의  
임박한 화란<sup>禍亂</sup>을 안녕<sup>安寧</sup>으로 바꾸고 인민이 생업을 편안히 영위하여 순치상보  
脣齒相保케 하기 위함이니, 저 국왕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술한 두 사람에게 주어  
파견하시는 것이다. 구체적 담판 내용은 위임하셨으니, 예전에 저 나라에 통고한  
대로 사태에 응하도록 잘 참작하되, 어떻게든 신의<sup>信義</sup>를 관철해서 조선 측이 사  
절을 관대<sup>款待</sup>하게<sup>16</sup> 하도록 조치하라. 또한 저 나라의 응접 모양 및 자세한 정상  
情狀을 보고하라.

10 즈쇼노카미(圖書頭): 도서의 보관·출납을 주관하는 관리

11 대마수(對馬守): 쓰시마노카미

12 경사(京師): 교토

13 가쿠로(關老): 로주(老中)의 별칭

14 ‘닷시(達)’는 에도시대 상급 관공서나 관인이 하급 관공서, 관인에게 내는 지시, 명령을 의미한다. 오닷시(御達), 닷시  
모노(達物), 오사타(御沙汰)라고도 한다. 이 책에서는 명령문으로 통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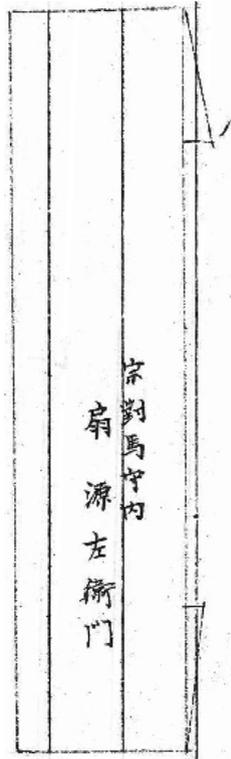
15 어용(御用): 궁중, 정부로부터의 하명(下命) 또는 이를 받고 공무에 종사하는 자

16 관대(款待): 환대. 정성껏 대접함

04 조선에서 미국 선박을 포격한 일을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상신하는 글

소宗 쓰시마노카미 번사藩士 오기 겐자에몬扇源左衛門

이번 4월 18일 조선국 경기도의 속도屬島인 영종永宗이라는 곳에 대미국大美國의 선박 1척이 정박한 후 100여 명이 상륙해서 주관하는 자가 나와 응접할 것을 청하니, 영종첨사 신표철申孝哲이라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무례한 모습이었으므로, 첨사는 곧장 돌아와서 몰래 군령을 전하여 복병을 설치한 후 적賊을 요지要地로 끌어 들여 과감하게 접전했습니다. 적군賊軍은 크게 패주했습니다. 마침내 우두머리 2명을 베고, 종졸從卒 약 80명 정도를 사살射殺하니 잔당은 각선脚船보트<sup>17</sup>로 뛰어가 올라타고, 혹은 바다에 빠지고 혹은 헤엄쳐서 겨우 본선에 숨어서 곧장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국 인민 가운데 사상자는 없다고 저 나라 역인役人이<sup>18</sup> 쓰시마노카미對馬守의 게라이家來에게<sup>19</sup> 은밀하게 알려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6월 18일

소 쓰시마노카미 가신 오기 겐자에몬

번사전달辨事傳達 어역소御役所

정묘 6월 답이양선정형서答異樣船情形書

<sup>17</sup> 각선(脚船): 보트

<sup>18</sup> 역인(役人): 관리

<sup>19</sup> 게라이(家來): 가신, 종자

05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옛 막부의 사신을 조선 왕성에 파견할 것임을 통고하는 서한

일본국 쓰시마주 태수습유太守拾遺 다이라노 요시아키라平義達가 조선국 예조참의 대인 합하께 회신합니다.

지난번에 황송하게도 화한華翰을<sup>20</sup> 받아서 계거啓居 진비珍毖하심을<sup>21</sup> 살폈으니 기쁘고 위안됨이 참으로 큼니다. 전투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해서 보내주신 글은 소견을 덧붙여서 이미 막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논의는, ‘작년 가을 프랑스가 혼단鬪端을 연 것은 실로 예기치 않은 데서 나왔으니, 이는 비단 입술과 이가 서로 근심으로 여겨야 할 뿐만이 아니다. 인목隣睦이 대대로 돈독한 우의友誼로 볼 때 우홀優恤을<sup>22</sup>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귀국이 영원히 평안함을 계획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막부의 성의盛意의 소재이니, 저처럼 불녕不佞한 이가 직책을 맡아 어찌 감집感戢하지<sup>23</sup> 않겠습니까?

이번에 귀국에 사절을 파견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막부의 관원이 직접 시무時務를 개진할 것이니, 귀 조정에서 어찌 마땅한 조치가 없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사절이 진술할 것이니 많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살펴보시고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갖추지 못하고 올립니다.

게이오 3년 정묘 6월 일

쓰시마주 태수습유 다이라노 요시아키라

20 화한(華翰): 상대방의 편지를 높이는 말

21 계거진비(啓居珍毖): 계거(啓居)는 무릎 꿇고 편히 앉는다는 뜻으로 상대의 안부를 물을 때 쓰는 말이고, 진비(珍毖)는 보중(保重)과 같은 말이다.

22 우홀(優恤): 근심하여 구제함

23 감집(感戢): 감격(感激)

06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야도 마사요시八戶順叔의 유언비어 사건에 관해 답하는 서한

일본국 쓰시마(對馬州) 태수습유 다이라노 요시아키라가 조선국 예조참판 대인 합하게 회신을 드립니다.

멀리서 방함(芳緘)<sup>24</sup> 받고서 그에 기대어 흥거(興居)<sup>25</sup> 청적(淸迪)하심을 살필 수 있었으니 기쁘고 위로됨이 참으로 큼니다. 보내주신 글의 뜻을 신속하게 막부에 아뢰니, 그 기록은 과연 황탄하고 허망해서 추호도 형적(形迹)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시끄럽게 들려서 자못 귀 조정에 번거로움을 끼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괘연(愾然)하겠습니까?<sup>26</sup>

우리 다이쿤(大君) 전하께서 크게 구역(區域)을 어루만지시어 구폐(舊弊)를 제거하고 온갖 법도를 일신했습니다. 모든 문무 관원은 이를 찬성(贊成)하고<sup>27</sup> 모의해서, 밤낮으로 오직 국위를 떨치는 것만을 당장의 급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포함과 기계를 구매해서 우리 부국강병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은 모두 사실이니, 어찌 유언비어가 여기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본방(本邦)은 귀국에 대해 대대로 인호(隣好)를 돈독히 했으니, 함께 수녕(綏寧)을<sup>28</sup> 도모하는 것이 합하게서 금일 노심초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무법자의<sup>29</sup> 와언(訛言) 같은 것은 믿을 것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전투한 일을 들음에 이르러서는, 인의(隣誼)가 상부(相孚)하고 순혈(唇血)이<sup>30</sup> 상의(相依)하니 어찌 그 중간에서 범연히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귀국에 사신을 보내어 장래의 근심을 영원히

24 방함(芳緘): 향기로운 서한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서신을 높여서 부르는 말

25 흥거(興居): 일상생활을 가리키는 말로 기거(起居)와 같다.

26 괘연(愾然): 관심 없이 냉담한 모양

27 찬성(贊成): 사업을 도와서 이룸

28 수녕(綏寧): 안녕(安寧), 안정(安定)

29 원문은 포호불법(暴虎不法)이다. 포호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다는 뜻이다.

30 순혈(唇血): 문맥상 다소 어색하다. 순치(唇齒)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특별히 사절이 멀리 경기로 가서 우내<sup>31</sup>의 형세를 개진<sup>32</sup>할 것이니, 귀국 또한 마땅히 시무<sup>33</sup>를 짐작해서 적당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막부의 성의<sup>34</sup>의 소재입니다. 사절이 이미 행리<sup>32</sup>를 꾸렸으니 머지않아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막부의 돈독한 뜻을 모두 진술할 것이니, 저 그릇되고 근거 없는 설 같은 것은 얼음이 녹듯 깨끗이 풀려서 양국의 교제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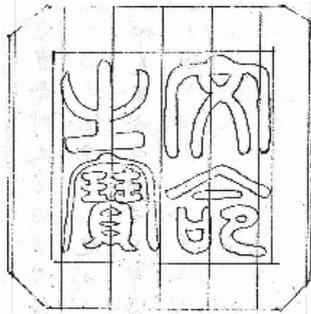
엄명<sup>34</sup>이 이같이 내렸습니다. 저처럼 불녕<sup>34</sup>한 이가 재직 중이니 실로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나머지는 부디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갖추지 못하고 보냅니다.

게이오 3년 정묘 8월 일

쓰시마주 태수습유 다이라노 요시아키라

#### 07 조선에서 사용하는 인장<sup>33</sup> 의본<sup>34</sup>

文命之寶



예조참판, 참의 쪽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체로 예전 도서<sup>33</sup>와 비슷한 것으로서, ‘예조참판’ 또는 ‘예조참의’의 4자를 채운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기억일 뿐 확실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옛 막부 국사의 인장을 우선 조사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쇼토쿠<sup>34</sup> 신묘년의<sup>34</sup> 반환<sup>34</sup>은 도안처럼

31 우내(宇內): 세계

32 행리(行李): 행장(行裝)

33 도서(圖書): 인장(印章)

34 쇼토쿠(正德)는 1711년부터 1716년까지 일본의 연호로, 그중 정묘년은 1711년이다.

보입니다. 나머지는 통신사 기록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 이것으로 상고하건대 모두 대략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모든 통신사 기록을 조사하지 않으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선국왕의 인장은, 앞의 도안에 준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문자는 ‘위정이덕 爲政以德’의 4글자로 기억됩니다.

이상.

## 08 국서식國書式

### 국서식國書式

겉면 우측에는 ‘봉서奉書’라고 쓰고, 좌측에는 ‘일본국대군전하日本國大君殿下’라고 쓴다. 처음에는 ‘일본국왕’이라고 칭했으나, 승정(崇禎) 병자년(1636)에 왜사(倭使) 평지우(平智友)가 와서 ‘대군’이라고 개칭할 것을 청했다. 그런데 강희(康熙) 기축년(1709)에 관백(關白) 원가선(源家宣, 도쿠가와 이에노부)가 왜왕(倭王)에게 땅을 헌상하며 탕목읍(湯沐邑)으로<sup>35</sup> 삼게 하니, 왜왕이 기뻐하여 그 왕호(王號)를 복구할 것을 명했다. 신묘년(1711)에 통신사가 사폐(辭陛, 서울을 떠나는 하직 인사)한 후 왜사 우삼동(雨森東, 아메노모리 호슈)이 와서 옛 관례를 따라 ‘왕’을 칭할 것을 청하니, 조정에서 이를 허락했다. 기해년(1719)에 또 도주(島主)의 말에 따라 다시 ‘대군’으로 칭했다. ○ ‘봉(奉)’자와 ‘일(日)’자를 나란히 쓰고, ‘서(書)’자와 ‘하(下)’자를 나란히 쓴다. 다른 서계(書契)도 모두 이와 같다. 봉투의 입구가 접히는 곳에는 ‘조선국왕 성 모 朝鮮國王 姓 某’라고<sup>36</sup> 쓰고, ‘위정이덕(爲政以德)’으로(이라고) 새긴 옥새를 찍는다. 모든 성과 이름을 쓰는 곳에는 모두 이어보를 찍는다. ‘근봉謹封’이라고 적는다.

내식內式은 ‘조선국왕 성 모 봉서 일본 朝鮮國王 姓 某 封書 日本 평항(平行)국 대군 전하 國大

<sup>35</sup> 탕목읍(湯沐邑): 원래는 제후에게 군주가 목욕할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사한 땅을 말하나, 후대에는 군주 및 그 비, 왕자, 공주 등이 세금을 거두는 직할령을 의미했다.

<sup>36</sup> 모(某)는 국왕의 어휘(御諱), 즉 이름이다. 『증정교린지』 「국서식」에는 ‘성 모(姓某)’ 대신에 ‘성 휘(姓諱)’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조선국왕’과 ‘성’은 붙여 쓰고 한 칸 뒀 다음에 어휘(御諱)를 적은 후 다시 한 칸을 띄우고 했다.

君殿下 ‘조(朝)자와 일(日)자’를 나란히 쓴다. 다른 서계도 모두 이와 같다. 운운 불비云云不備’라고 쓴다. 옛날에는 ‘선(宣)자’를 썼는데, 관백의 이름을 피휘(避諱)해서 ‘비(備)자’로 고쳐 쓴다. 가강(家康,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로 관백의 이름인 강(康)·충(忠)·광(光)·강(綱)·길(吉)·선(宣)·수(秀)·중(重) 등의 글자는 모두 서계에 쓰지 않는다. 그리고 연호평항(平行) 몇 년·간지·월일·‘조선朝鮮 평항(平行)국왕 성 모國王姓某 평항(平行)으로 연월과 나란히 쓴다. 다른 서계도 이와 같다. 를 적는다.

### 서계식書契式

겉면 우측에는 ‘봉서奉書’라고 쓰고, 좌측에는 ‘일본국 집정 구함 모공 각하日本國執政具銜某公閣下’라고 쓴다.<sup>37</sup> 집사(執事) 이하는 그 관호(官號)에 따르는데, 대마도주는 ‘일본국 대마주 태수 모공(日本國對馬州太守某公)’이라고 칭한다. 이상을 ‘각하(閣下)’로 칭한다. 반쇼인(萬松院)은 ‘일본국 대마주 종벽산 만송(日本國對馬州鍾碧山萬松)’이라고 하고, 이테안(以酏菴)은 ‘일본국 대마주 사문 이정암(日本國對馬州沙門以酏菴)’이라고 한다. 에도(江戸) 호행장로(護行長老)는 ‘일본국 모장로(日本國某長老)’라고 한다. 이상을 ‘족하(足下)’로 칭한다. 내식(內式)도 이와 같다.

봉투의 입구가 접히는 곳에는 ‘조선국 예조참판朝鮮國禮曹參判 도주(島主)에게는 참의(參議)가 보내고, 반쇼인·이테안·호행장로에게는 좌랑(佐郎)이 보낸다. 내식(內式)도 이와 같다. 성명姓名’을 쓰고, 도서(圖書)를 찍는다. 성명을 적는 곳에는 모두 이를 찍는다. 아래도 같다. ‘근봉謹封’이라고 적는다.

내식(內式)은 ‘조선국 예조참판 성명 봉서 일본국 집정 구함 모 공 각하朝鮮國禮曹參判姓名奉書日本國執政具銜某公閣下’라고 하고 내용을 쓴 후 연월일과 예조참판 성명을 적는다.

### 회답국서回答國書

겉면 우측에는 ‘경복敬復’이라고 쓰고 좌측에는 ‘조선국왕 전하朝鮮國王殿下’라고 쓴다. 봉투의 입구가 접히는 곳에는 ‘일본국왕 성명日本國王姓名’을 쓰고, 기해년(1719)에

<sup>37</sup> 『증정교린지』 「서계식」에는 ‘합하(閣下)’로 쓴다고 되어있다.

다시 '대군(大君)'을 칭하고 도서(圖書)를 찍었다. 성명이 적히는 곳은 모두 같다. '근봉(謹封)'이라고 적는다. 강희신묘년(1711) 통신사 때 왜인이 갑자기 서식을 고쳐 나와서 제시했다. 처음에는 봉투 앞면에 단지 '봉복 조선 국왕 전하(奉復 朝鮮國王殿下)'라고만 써서 마음에 걸릴 것이 없었고, '일본국왕 성명 근봉(日本國王姓名謹封)' 등의 글자 및 도서(圖書)도 없었다.<sup>38</sup> 그리고는 이러한 격식에 따라 국서를 써줄 것을 청했다. 조정에서는 그 격식대로 국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냈다. 기해년(1719) 통신사행에서는 구례(舊例)에 따랐다.

내식(內式)은 '일본국왕 성명 경복 조선(日本國王姓名敬復朝鮮) 평항(平行) 국왕 전하(國王殿下)'라고 쓰고 내용을 적은 뒤에 그 연호 평항(平行) ○구례에 왕복 서게는 모두 대명(大明) 연호를 썼으나, 승정(崇禎) 을해년(乙亥年, 1635)에 처음 그 '간에이(寬永) 몇 년'이라는 참호(僭號)를 썼다. 몇 년·간지·월일·'일본(日本[평항(平行)] 국왕 성명(國王姓名))'을 적는다.

### 회답서계(回答書契)

겉면 우측에는 '경답(敬答) 또는 '봉답(奉答), '봉복(奉復)'이라고 한다. 이라고 쓰고, 좌측에는 '조선국 예조참판 모공 각하(朝鮮國禮曹參判某公閣下)'라고<sup>39</sup> 적는다. 대마도주 이하는 모두 '예조대인 각하(禮曹大人閣下)'라고 칭한다. 내식(內式)도 같다.

봉투의 입구가 접히는 곳에는 '일본 평항(平行) 국집정 관함(日本國執政官銜)'이라고 쓰고, 집사(執事) 이하로 호행사문(護行沙門)에 이르기까지 각 그 칭호를 따른다. 내식도 같다. 성명을 적고, 도서(圖書)를 찍는다. '근봉(謹封)'이라고 적는다.

내식(內式)은 '일본(日本[평항(平行)] 국 집정 관함 성명(日本國執政官銜姓名敬答)', '조선(朝鮮) 평항(平行) 국 예조참판 모공 각하(朝鮮國禮曹參判某公閣下)'라고 쓰고, 내용을 적는다. 연월일 이하는 앞의 예와 같다.

<sup>38</sup> 『조선사무서』 원문에는 “只書奉復 朝鮮國王殿下書而已 無懸心 亦(無)日本國王姓名謹封等字及圖書而請依此爲國書”라고 하여 괄호 속의 ‘無’자가 누락돼 있다. (『증정교린지』 「회답국서」)

<sup>39</sup> 『증정교린지』 「회답서계」에는 ‘합하(閣下)’로 쓴다고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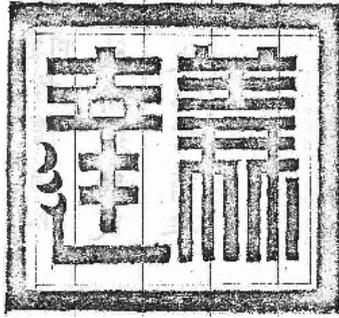
09 조선국왕의 휘자諱字<sup>40</sup> 및 소宗씨 도서圖書 의본儀本

조선국왕의 휘자는 다음과 같음.

춘椿<sup>41</sup>·단근·경瞰·도禱·향珥·유琮·황眺‘황(晃)’과 같음·철哲<sup>42</sup>·역惸·환峴·연訟 [여기에 혼(璉)·전(倝)의<sup>43</sup> 두 글자가 있을 수 있음] 추후 조사할 것·부琿<sup>44</sup>·중儆·호溟·연櫪·순焯·윤昞·금吟·행緯<sup>45</sup>·산禰<sup>46</sup>·공琮·환奘

단, 이밖에 현재 왕의 이름자(名字)가 있음.

조선국에서 보내온 도서圖書는 대략 다음과 같음.<sup>47</sup>



40 왕의 이름자

41 태조 이성계의 조부(추존 度祖)의 이름

42 성종(成宗)의 휘자 혈(契)의 오기

43 ‘倝’은 인조의 아우로서 모반혐의로 사형을 당한 능창대군(綾昌大君), ‘璉’은 광해군(光海君)의 이름이다.

44 인조의 부친인 정원군(定遠君)의 이름

45 영조의 장자이자 사도세자의 형인 효장세자(孝章世子, 추존 眞宗)의 이름

46 ‘禰’은 ‘성’으로도 읽는다.

47 이 문장 다음에 ‘소 요시아키라(宗義達)의 공인(公印)’이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실제 인장은 ‘義達’이라는 글자이다. 추측건대 원문에 ‘조선국에서 보내온 도서’라고 잘못 기록된 것을, 나중에 누군가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10** 조선에서 프랑스 선박을 포격한 일 및 옛 막부에서 그 사이를 중재한 사정을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아뢰는 글

정묘년(1867) 10월 25일 기소議奏 오기마치 산조正親町三條 다이나곤大納言 님께 오시마 도  
모노조大島友之允가 지참하여 제출한 서면書面의 부분

구두 기록[口上書取]

작년 조선국이 프랑스와 전투한 경위는, 일찍이 프랑스의 선교사가 한국에 잠  
입해서 그 사교邪教를 퍼뜨려 당류黨類가 날로 늘어나 온갖 간사한 무리가 나라에  
해를 끼쳤으므로, 조선국 정부가 상의하여 그 우두머리와 선교사를 살육한 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사제독水師提督이 복수를 위해 군함 몇 척으로 한국  
과 전쟁을 벌였는데 마침 추운 시기여서 일단 군대를 해산하였고, 올해 봄 따뜻할  
때를 기다려 대병大兵을 다시 일으킬 계획이라는 내용이 외국 신문지에 자세히  
보입니다. 또 이 전쟁 후에 미국의 상선이 조선해안에 표착漂着했는데, 프랑스 선  
박으로 오인했는지 한인韓人이 함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였고, 그 가  
운데 영국인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폭거로  
인해 세 나라가 분노해서 그 죄를 묻는 군대가 향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조선국 예조로부터 프랑스 전쟁의 경위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또한 그 상세한 전말을 막부에 전달할 것을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조선국의 일은,  
종래의 구호舊好, 특히 순치唇齒의 나라이므로 오늘날의 위급을 황국皇國이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3국이 합종合從해서 군대를 파견한다면, 저 나라는 머지않  
아 멸망할 것입니다. 온 나라가 갑자기 외이外夷의 소유가 된다면 신주神州의<sup>48</sup> 대  
환大患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 나라의 일에 관해선 계해  
년癸亥에<sup>49</sup> 쓰시마노카미로부터 막부에 건언建言한 주의主意를 조정에서도 이미

<sup>48</sup> 신주(神州): 일본

<sup>49</sup> 계해년(癸亥): 1863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화의和議를 조치하셔서 저 나라가 위기와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면, 황국의 인은仁恩에 깊이 감대感戴해서 크게 덕화德化에 복종할 것이니, 원도遠圖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부에 명하여 화의를 조치하는 방법이 결정되어 그 내용을 프랑스, 미국 두 나라에 설명하시고, 또한 조선국에는 사절로 히라야마 즈쇼노카미와 고가 치쿠고노카미가 국서國書를 갖고 바다를 건너가는 계획을 미리 저 나라와 담판하라는 지난 4월의 막부의 명에 따라, 우선 조선에 담판해 두었습니다.

근래 상하이에서 우리나라 표류민 야도 마사요시가 계고稽古할 바 없는 망설妄說을 주창해서 청국이 이를 조선국에 전달하자 한인韓人이 황국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금년 6월 예조에서 서한으로 이 사건에 관해 의심스러운 내용을 알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을 해명하는 답변과 관련하여 막부에서 내명內命한 글 가운데 국사國使가 이미 여장을 꾸렸으니 곧 바다를 건너갈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국사의 도해渡海는 다달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물론 국내가 다사한 때이므로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되오나, 지금까지 절박하게 담판해오던 끝에 그 기한을 어긴다면 담판에 불리함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 대해서도 신의信義가 안 설 것으로 생각해서 크게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순에 즈쇼노카미의 도해渡海 기한을, 오는 11월 중에 출범할 것이라는 뜻을 조선 측과 담판해 두라는 막부의 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된 가신[家來] 가운데 일부를 급히 귀국시킬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지금쯤은 신속히 저 나라에 통고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정大政과 관련하여 간단치 않은 변혁變革을 분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조선 사건의 자세한 사항은 막부에서 지시를 청한 뒤에 조치할 일이라고 생각되오나, 지금까지의 절차를 대략 가신[御內]에게 전달해서 들으셨을 것이니 부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선국에서 온 서한의 사본과 그 밖의 서류를 감고勘考를<sup>50</sup> 위해 별지와 같이 올립니다. 이상.

10월 25일

쓰시마노카미 가신 오시마 도모노조

**11** 조선국에서 이양선을 공격해서 물리친 일을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통고해온 서한

병인년(1866) 가을 프랑스 군함이 조선국에 내박來泊하여 전투에 이른 것에 관해 예조참의가 보내온 서한 등본

조선국 예조참의 임면호任冕鎬가 일본국 대마주 태수습유 평공平公 합하께 글을 드립니다.

현영玄英이<sup>51</sup> 미절弭節하는<sup>52</sup> 이때, 멀리서 계거啓居 진비珍慈하실 것을 생각하니 위로되고 그리운 마음이 모두 도탑습니다. 폐방弊邦이 귀국과 신의를 강구하고 우호를 닦은 지 300년 동안 모든 변어邊圉의<sup>53</sup> 정책 및 강장疆場의<sup>54</sup> 사건과 관계되는 것에 관해, 그 원인을 진술하고 방략을 개시開示하지<sup>55</sup>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경신년 귀국의 서계書契는 구약舊約을 펴고 인의隣誼를 돈독히 한 것이었습니다. 서양의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멀리 깊은 바다를 건너와 폐방에 교역을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마침내 서로 칼날을 가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독이 더욱 잔혹합니다.

그해 봄에 남종삼南鍾三과 홍봉주洪鳳周가 혹은 잠신이열簪紳邇列로서,<sup>56</sup> 혹은

50 감고(勘考): 숙고

51 현영(玄英): 겨울철

52 미절(弭節): 수레를 멈춤

53 변어(邊圉): 변경(邊境)

54 강장(疆場): 전장(戰場)

55 개시(開示): 가르쳐 타이름

56 잠신이열(簪紳邇列): 잠신은 비녀와 갓끈으로 양반이나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이열은 임금에게 가까운

의관유예(衣冠遺裔)로서,<sup>57</sup> 사교(邪敎)를 전습(傳習)해서 비류(匪流)를 규합하고는 양인(洋人)을 몰래 끌어들이어 교주로 받들었습니다. 그 훈염(薰染)이<sup>58</sup> 이미 오래되었으니, 선혹(煽惑)된 자들이<sup>59</sup> 매우 광범위합니다. 집포(緝捕)로<sup>60</sup> 간악한 자들의 흔적을 흔발(掀發)함에<sup>61</sup> 패당(悖黨)이 머리를 나란히 하고 형벽(刑辟)에<sup>62</sup> 처해졌습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양박(洋舶) 1척이 처음엔 호서 해미현 앞바다에 정박했다가 그 다음엔 기내(畿內)의 강화부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오가면서 통상(通商)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폐방이 엄한 말로 굳게 거절하여 끝내 허락하지 않자, 저들은 비로소 결망(缺望)하고<sup>63</sup> 물러갔습니다. 또 그 사이에 양박(洋舶) 1척이 서해에서 평양부 양각도(羊角島)로 방향을 바꿔서 들어와서는 상인들의 재화를 약탈하고 사람과 가축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도신(道臣)이<sup>64</sup> 화공 계책을 써서 모두 초멸(剿滅)했습니다. 8월 16일에는 양박(洋舶) 2척이 남양(南洋)에서 곧장 경강(京江)으로<sup>65</sup> 들어와 사흘 후 돌아갔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정관(情款)이<sup>66</sup> 서로 막혀서 행동 거지를 타이를 수 없어 제멋대로 왕래했습니다. 이어서 9월 초6일에 크고 작은 양박(洋舶) 30여 척이 또 경기에 왔습니다. 어떤 것은 부평부 앞바다에 정박하고, 어떤 것은 곧장 강화부 갑곶진으로 향해서 누로(樓櫓)를<sup>67</sup> 파괴하고 해우(廢宇)를<sup>68</sup> 불태웠으며 인민을 살해하고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또 장서실의 서적을 배에 실어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 올렸습니다.

---

반열에 있는 신하로서 흔히 집현전, 규장각, 승정원 등의 관리를 가리킨다.  
 57 의관유예(衣冠遺裔): 성인(聖人) 또는 명나라의 의관제도를 계승한 후손  
 58 훈염(薰染): 전염, 감염  
 59 선혹(煽惑): 선동하고 유혹함  
 60 집포(緝捕): 죄인을 체포함  
 61 흔발(掀發): 높이 치켜들  
 62 형벽(刑辟): 사형  
 63 결망(缺望): 실망  
 64 도신(道臣): 관찰사의 준말. 평안도 감사 박규수(朴珪壽)를 가리킨다.  
 65 경강(京江): 한강  
 66 정관(情款): 돈독한 정의(情誼)  
 67 누로(樓櫓): 성의 망루  
 68 해우(廢宇): 관아 건물

이에 순무사 이경하李景夏에게 군영軍營을 열게 하고 연하輦下에<sup>69</sup> 계엄을 내렸습니다. 선봉중군 이용희李容熙가 통진부에 진을 치고, 좌선봉장 정지현鄭志鉉이 제물진에 진을 치고, 우선봉장 김선필金善弼이 부평부에 진을 치고, 유격장 한성근韓聖根이 문수산성에 진을 치고, 유격장 양헌수梁憲洙가 정족산성에 진을 치고, 유격장 이기조李基祖가 광성진에 진을 치고, 총융사 신관호申觀浩와 초모사招募使 이원희李元熙가 양화진에 진을 치고, 초모사 정규응鄭圭應이 서강西江의 애구隘口<sup>70</sup>에 진을 치고, 어영중군 권용權諡과 경기중군 백낙현白樂賢이 행주幸州 애구에 진을 치고, 양주목사 임한수林翰洙가<sup>71</sup> 여현礪峴 애구에 진을 치고, 초토사招討使 한응필韓應弼이 연안부延安府에 진을 치고, 방어사防禦使 류완柳琬이 파주목에 진을 치고, 도호사都護使 신숙申櫛이 장단부長湍府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격문을 보내서 전쟁을 청하고, 날짜를 정해서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적賊은 그 군대를 모두 항차港汊에<sup>72</sup> 집결시킬 뿐 전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연해의 선박을 전부 불태우고 간혹 문수산성과 정족산성 등을 습격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곳을 지키는 장수들이 격퇴했습니다. 폐방은 기장器仗을<sup>73</sup> 동여매고 전함을 수선한 후, 다시 삼로三路의 수군에 명해서 합세해서 진공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10월 12일에 크고 작은 양박洋舶이<sup>74</sup> 군대를 거두어 다시 외해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폐방이 병란을 입은 대략입니다.

폐방은 승평昇平한 날이 오래되어 용정戎政이 해이하고 무비武備가 소홀합니다. 멀리 제승制勝할<sup>75</sup> 계획을 세워서 배들을 다시 오지 않게 할 수 없으니, 설령 두세 번 싸워 이겨서 다소 적을 죽이더라도 무위를 떨쳐 원인遠人을 두렵게 하기엔 참

69 연하(輦下): 연(輦)은 임금이 타는 수레를 말하며, 연하(輦下)는 곧 임금이 있는 서울을 가리킨다.

70 애구(隘口): 험하고 협소한 목

71 원문은 '林翰洙'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72 항차(港汊): 분지가 되는 작은 물길

73 기장(器仗): 전쟁에 쓰는 병기와 의장

74 양박(洋舶): 이양선

75 제승(制勝): 상대를 제압해서 승리를 취함

으로 부족합니다. 또 양이洋夷의 정상情狀은 헤아리기 어려워서 진퇴가 무상하니, 목하目下の 서급舒急으로 조만간 닥칠 우려를 영원히 제거할 순 없습니다.

또 사실대로 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폐방의 동남 해안은 귀국의 여러 주州의 해변과 가까워서 소와 말을 판별할 수 있고, 경계에서는 거의 닭과 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름과 가을부터 근일까지 서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무수한 배들이 연운煙雲과<sup>76</sup> 도서島嶼 사이에 출몰하니, 봉강封疆의 신하들이 보내는 비보飛報가 날마다 도착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까. 저 오랑캐 장수가 장차 혼단亂端을 일으키려고 해서, 귀국이 준비를 갖추고 변란에 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국이 이미 저들과 전쟁을 해서, 저 오랑캐들이 좌차左次해서<sup>77</sup> 패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저들이 바야흐로 눈을 부릅뜨고 몰래 노려보면서 어금니를 갈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귀국이 혹시 아직 그 기만스러운 정상을 깨닫지 못해서 미리 그 표발森發하는<sup>78</sup> 기세를 꺾지 않는 것입니까?

폐방은 이 때문에 우려해서 자신만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그 전말을 들어 편지를 써서 전하니, 부디 이상의 사항을 막부에<sup>79</sup> 전달하기를 깊이 바랍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갖추지 못하고 줄입니다.

병인년 10월 일  
예조참의 임면호

76 연운(煙雲): 연기와 구름 같은 아지랑이와 안개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먼리 있어서 아스라이 보인다라는 뜻이다.

77 좌차(左次): 군대의 후퇴

78 표발(森發): 질풍 같은 모양, 맹렬한 기세

79 막부: 도교에 있던 에도막부를 지칭한다.

**12**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옛 막부에 지령한 것을 다시 명하는 글

정묘년(1867) 11월 4일 조선국 어용御用과 관련하여 막부의 질의에 따라 지금까지의 절차대로 화의和議를 조처하도록 덴소傳奏<sup>80</sup> 아쓰카이飛鳥井 곤다이나곤權大納言 님이 호출하시어 다음 문서書取를<sup>81</sup> 주시다.

조선국 문제와 관련하여 막부에서 지시를 청했다. 이는 일찍이 허락하신 일이니, 지금까지의 절차에 따라 사절을 파견하여 화의和議를 조처하라는 답변을 내려 주셨다. 이를 쓰시마노카미에게도 주지시키도록 분부하셨다.

11월

**13** 조선에 표류한 우리 인민의 송환과 관련하여 온 서한을 예전에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제출했는데, 이를 돌려줄 것을 청하는 글

에치젠노쿠니越前國, 아키노쿠니安藝國의 배가 조선국에 표착漂着했으므로 서한과 함께 인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 서한을 얼마 전에 살펴보시도록 제출했는데, 이는 추후 답신을 보내는 것이 선격先格이므로<sup>82</sup> 살펴보신 뒤에는 쓰시마노카미에게 다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6월<sup>83</sup>

쓰시마노카미 가신 오시마 도모노조

외국관外國官 어역소御役所

<sup>80</sup> 덴소(傳奏): 부케덴소(武家伝奏)의 준말로, 武家の奏請을 조정에 전달하는 관리이다.

<sup>81</sup> 가키토리(書取): 말을 받아적은 문서

<sup>82</sup> 선격(先格): 전례

<sup>83</sup> 이 6월은 진년(辰年, 1868)으로 보이지만, 조선에서 온 서한 사본과 함께 묘년(卯年, 1867)의 부(部)에 삽입함 [원주]

#### 14 표류한 우리 인민의 송환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보내온 서한(2통)

조선국 예조참의 민의식閔義軾이 일본국 대마주 태수습유 평공平公 합하게 글을 보냅니다.

멀리서 이즈음 계거啓居가 맑고 여유로우실 것을 생각하니 그리움이 한량없습니다. 방금 동래부사의 치보馳報를 받으니, 귀국 선박 1척이 우리 경상도<sup>84</sup> 흥해군興海郡 곡강진曲江津에 표류해 와서 9월 18일 우리 배를 타고 우암포牛巖浦로 이동하여 정박했다고 했습니다.

역관을 보내서 문정問情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귀국 안예주安藝州<sup>85</sup> 대기도大崎島<sup>86</sup> 동아촌東野村<sup>87</sup>에 거주하는 선주 풍장豐藏이 7명과 함께 소금 장사를 명목으로 1척의 배를 타고 올해 5월 21일 출발해서 7월 2일 월후주越後州<sup>88</sup> 신사新瀨<sup>89</sup>에 도착, 소금을 팔아 쌀을 산 후 8월 24일 다시 고향으로 향했는데, 풍세風勢가 불리해서 며칠간 머물다가 29일 비바람이 크게 몰아쳐 선구船具가 손상되고 같은 날 한밤중에 우리<sup>90</sup> 영해로 다시 표류해왔다. 배는 파손되고 짐들은 떠내려가 겨우 해안에 상륙하니, 지방민이 나와서 구조해주었다. 파손된 선재船材와 망가진 짐들은 스스로 불태우기를 원했고, 나머지 물건들은 우리 선박으로 옮겨 실었다. 이제 비로소 우암포에 다시 정박했다.」

그러므로 모두 옷과 식량을 공급한 후 귀 선박에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자세히 통고하니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갖추지 못하고 보냅니다.

84 원문은 慶尙道를 景尙道로 잘못 기록했다.

85 안예주(安藝州): 아키노슈

86 대기도(大崎島): 오사키시마

87 동아촌(東野村): 히가시노무라

88 월후주(越後州): 에치고노슈

89 신사(新瀨): 니가타

90 원문은 ‘貴國境海’이다. 앞에서 ‘貴國 安藝州’라고 했을 때의 ‘귀국’은 일본을 지칭하지만, ‘貴國境海’ 및 다음의 ‘貴國船’에서의 ‘귀국’은 문맥상 조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로 옮겼다. 역관의 문정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역관의 보고를 간접 인용한 것과 표류 일본인들의 진술을 직접 인용한 것이 혼동된 것으로 보인다.

정묘년 12월 일  
예조참의 민의식

조선국 예조참의 민의식<sup>閔義軾</sup>이 일본국 대마주 태수습유 평공<sup>平公</sup> 합하께 글을 보냅니다.

멀리서 이즈음 계거<sup>啓居</sup>가 맑고 여유로우실 것을 생각하니 그리움이 한량없습니다. 방금 동래부사의 치보<sup>馳報</sup>를 받으니, 귀국 선박 1척이 우리 경상도<sup>91</sup> 청하현<sup>淸河縣</sup> 송라포<sup>松羅浦</sup>에 표류해 와서 9월 18일 우리 배를 타고 우암포<sup>牛巖浦</sup>로 이동하여 정박했다고 했습니다.

역관을 보내서 문정<sup>問情</sup>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귀국 월전주<sup>越前州</sup><sup>92</sup> 삼국주<sup>三國湊</sup><sup>93</sup> 거주하는 선주 초삼랑<sup>初三郎</sup>이 10명과 함께 상판<sup>商販</sup>을 명목으로 올해 2월 2일 대판<sup>大阪</sup>에서 발선하여 비전주<sup>備前州</sup><sup>94</sup> 하진정<sup>下津井</sup><sup>95</sup>에 도착, 소금을 사서 실었다. 같은 달 20일 출발하여 4월 10일 월후주 신사에 도착, 소금을 팔아 쌀을 산 후 같은 달 25일에 발선하여 5월 4일 송전주<sup>松前湊</sup><sup>96</sup> 이르러 쌀을 팔아 물고기를 샀다. 배를 돌려 귀향하려고 할 때, 그 주<sup>湊</sup><sup>97</sup>에 거주하는 두 사람이 마침 장사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소지한 배가 먼저 돌아갔으니 함께 태워줄 것을 청했다. 그 요청에 따라 함께 탑승하니 모두 14명이었다. 8월 23일 다시 대판으로 향했는데 풍세가 불리해서 며칠간 머물다가, 29일에 비바람이 크게 몰아쳐 선구가 손상되고 같은 날 한밤중에 우리 영해로

91 원문에는 慶尙道가 景尙道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막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의 이름을 피휘한 것으로 보인다.

92 월전주(越前州): 에치젠노슈

93 삼국주(三國湊): 미쿠니 항구

94 비전주(備前州): 히젠노슈

95 하진정(下津井): 시모츠이

96 송전주(松前湊): 마쓰마에 항구

97 주(湊): 항구

다시 표류해왔다. 배는 파손되고 짐들은 떠내려가 겨우 해안에 상륙하니, 지방민이 나와서 구조해주었다. 파손된 선재船材와 망가진 짐들은 스스로 불태우기를 원했고, 나머지 물건들은 우리 선박으로 옮겨 실었다. 이제 비로소 우암포에 다시 정박했다.」

그러므로 모두 옷과 식량을 공급한 후 귀 선박에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자세히 통고하니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갖추지 못하고 보냅니다.

정묘년 12월 일  
예조참의 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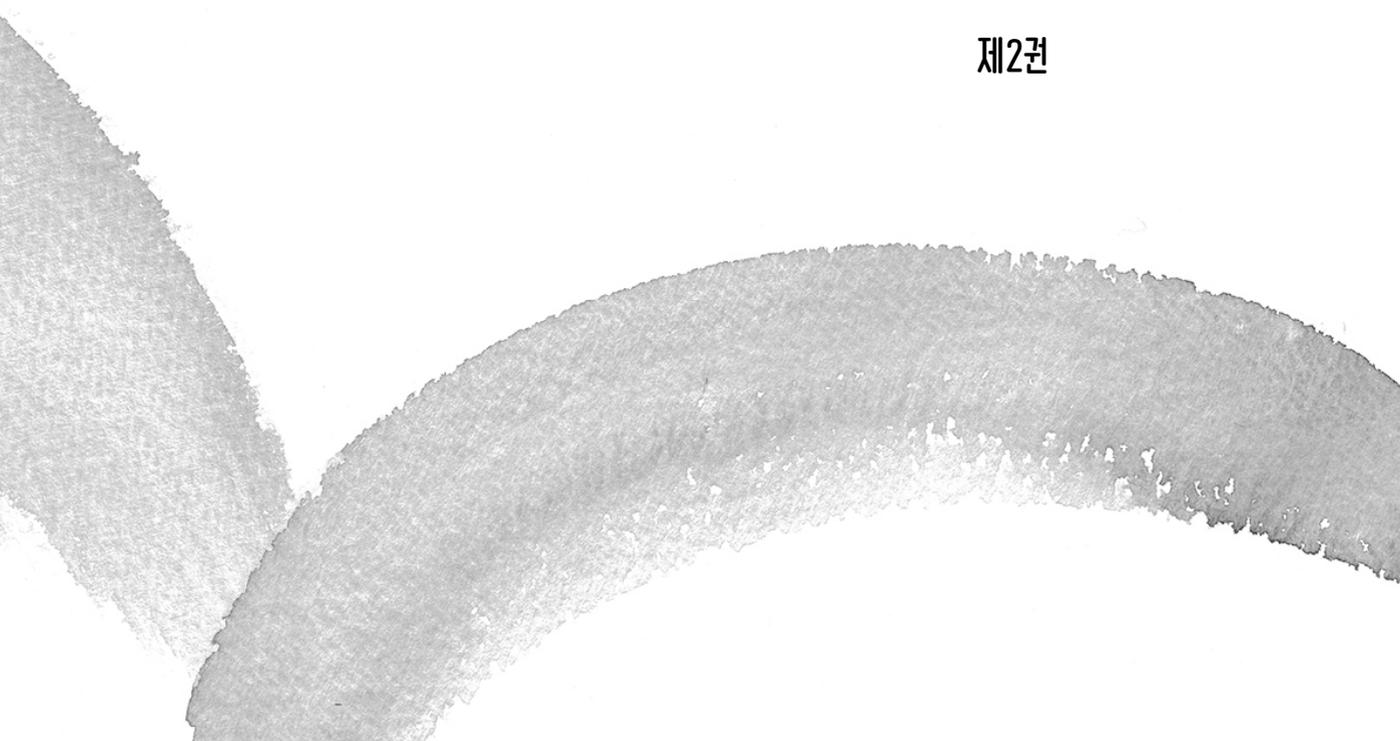




국역

조선사무서  
(1)

제2권



# 2

## 『조선사무서』 제2권

메이지(明治) 원년(1868)

**01**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조선과 교제하는 일은 조정에서 처분하고, 조선을 대할 때는 외국사무보外國事務補 대리로 접할 것 등을 명령하는 글

메이지明治 원년(1868) 무진戊辰 3월 23일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이번에 왕정을 일신一新하여 모든 외국교제外國交際를 조정에서 취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국은 예로부터 내왕來往한 나라로 더욱 위신을 세우려는 취지이니 지금까지처럼 두 나라의 교통을 말도록 가역家役으로<sup>1</sup> 명함. 조선국에 대하여 공무를 취급할 때는 외국사무보外國事務補 대리[心得]로<sup>2</sup> 근무하도록 분부함. 더욱 국위를 세우도록 진력할 것을 지시함.

<sup>1</sup> 쓰시마번의 번주인 소가(宗家)에 부과된 의무라는 뜻

<sup>2</sup> 일본 외무성의 전신으로, 당시에 외교를 담당한 부서인 외국사무국의 차관급인 외국사무보에 준하는 직위를 말함. 이 책 18번 문서의 부지(영인본 186쪽)에 “소 쓰시마노카미의 직명을 운운할 때 대리[心得]는 부적절하다”는 표현에 보이는 것처럼 心得(코코로에)는 ‘마음가짐’이나 ‘자세’의 의미가 아니라 ‘대리’, 혹은 ‘보좌’의 의미이다.

단, 왕정을 일신한 때이니 해외의 일은 특별히 깊이 명심하여 구폐舊弊 등을 일소하여 반드시 봉공奉公할<sup>3</sup> 것.

3월

**02**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막부를 폐지하고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기로 했음을 조선에 알릴 것을 명령하는 글

메이지明治 원년(1868) 무진戊辰 3월 23일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이번에 막부를 폐하고 왕정을 일신하여 만기萬機를 신단宸斷으로<sup>4</sup> 분부함에 따라 앞으로 조선관련 사건 등은 모두 조정에서 명령하니 이 뜻을 조선에 알릴 것을 지시함.

**03**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로부터 조선교제 사례의 개정을 청하는 글

신토 요시아키라義達가 삼가 건의합니다. “이번에 왕정을 일신一新하여 모든 외국교제外國交際를 조정에서 취급하시므로, 조선국은 예로부터 내왕來往한 나라로 더욱 위신을 세우려는 취지이니 지금까지처럼 두 나라의 교통을 맡도록 가역家役으로 명함. 조선에 대하여 공무로 근무할 때는 외국사무보 대리도 근무하도록 분부하였으니 더욱 국위를 세우도록 진력할 것. 또한 이 시기 해외의 일은 특별히 깊이 명심하여 구폐舊弊 등을 일소하여 반드시 봉공奉公하라”는 지시를 삼가 받들

<sup>3</sup> 봉공(奉公): 국가나 조정을 위해 힘써 일함

<sup>4</sup> 신단(宸斷): 왕이나 황제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

니다. 신 요시아키라는 서쪽 모퉁이에 치우쳐 있고 특히 작은 번으로 미력합니다. 지금 내무內務가 다난多難하신 시기時機를 당하여 구구區區하게 저의 진심을 표하고, 견마지로犬馬之勞로 복종하지 못하여 신하의 신분으로 매우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대한 조정의 명령을 받아 천자의 은혜가 황공하며 실로 감대感戴하지<sup>5</sup>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상 신 요시아키라는 불초不肖<sup>6</sup>·암렬暗劣<sup>7</sup>을 돌아보지 않고, 예려勸慮<sup>8</sup>를 받들고 행하며 황위皇威를 해외에 미치도록 힘껏 노력하여 넓고 큰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코자 맹세하여 기원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조선국은 상대上代에 삼한三韓이 조공하는 옛 의례를 그만둔 이후, 중엽에 두 나라의 세상 형편이 일변하여 무가武家の 인교隣交<sup>9</sup>로 되고 그 교례交禮는 모두 막부를 적례敵禮<sup>10</sup>로 하였습니다. 그때는 전쟁 시기로 문물이 미개하여 교제하는 사례와 체재體裁가 서지 않아 간간히 국위를 훼손한 과실이 없지도 않았습다. 그 후에 도요토미가豐臣家の 임진전쟁으로 통교가 단절되고 도쿠가와씨德川氏에 이르러 다시 인목隣睦<sup>11</sup>을<sup>11</sup> 닦았습니다. 그 이후 두 나라는 겉으로는 성신을 표하고 사귀어도 단지 경조사에 빙문聘問하여<sup>12</sup> 겨우 그 예절을 간직할 뿐으로 그 실체는 쓰시마對州 한 나라(번을 의미)의 사교私交와 같습니다. 교제의 사례는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어 불후의 법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막부를 폐지하고 만기를 신단宸斷으로 분부하신다는 사정을 조선에 통지하라고 전하시어 황송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두 나라가 통교를 다시 시작하는 일신一新의 때에 부응하여 종전의 묵은 폐단을 두루 개혁하고 모든 중론衆論과 공의公議를 다하여 교제의 강요綱要는 물론 예절의 말단에 까지 깊이 예려勸慮를 머무르게 하신다면,

<sup>5</sup> 감대(感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여 높이 받들다.

<sup>6</sup> 불초(不肖): 못나고 어리석음

<sup>7</sup> 암렬(暗劣): 어둡고 뒤떨어짐

<sup>8</sup> 예려(勸慮): 임금의 뜻

<sup>9</sup> 인교(隣交): 이웃나라와의 교제

<sup>10</sup> 적례(敵禮): 대등한 예

<sup>11</sup> 인목(隣睦): 이웃과 화목하게 지냄

<sup>12</sup> 빙문(聘問): 예를 갖추어 방문함

예부터 저 나라는 문약文弱하여 무용武勇이 우리에게 맞설 수 없음을 깨닫고 걸핏 하면 문사文事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기려는 의향이었으니, 얼마다 실체失體의<sup>13</sup> 거동이 없어질 것입니다. 황공하오나 앞으로 뜻밖의 일로 외국으로부터 모욕을 초래하지 않으시기를 지극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에 신 요시아키라는 불손不遜을 꺼리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의 조목들을 별지로 진술합니다. 바라건대 영명英明한 성단聖斷으로<sup>14</sup> 다소간의 예지勸諭를<sup>15</sup> 내려주십시오. 앞드려 간절히 바랍니다. 신 요시아키라는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말씀드립니다.

윤4월

쓰시마 시종對馬侍從

#### 별록別錄

一. 한국에 대한 모든 조치는 외국사무국外國事務局에서<sup>16</sup> 상의를 다하여 시행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서양 각국의 교제와 그 취지를 달리하고, 게다가 저 나라의 관리가 황국皇國으로 건너오는 것은 드물고 두 나라의 응접은 모두 쓰시마對州 혼자 처리하여 한 번藩의 미력으로는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본주本州는 조선과 수백 년 동안 인목隣睦하고 교제의 사정에 정통하여, 두 나라 사이에 일이 있을 때 쓰시마對州가 응접하고 주선하는 것이 일을 처리함에 편리한 것처럼 보여도, 이 때문에 이리와 해害가 반반입니다. 오히려 종래의 교정交情이 그 사이에서 고식姑息의 폐단이 생기지 않았는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일을 본주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가까운

<sup>13</sup> 실체(失體): 체면이나 면목을 잃음

<sup>14</sup> 성단(聖斷): 임금의 판단

<sup>15</sup> 예지(勸諭): 천자의 말이나 생각

<sup>16</sup> 외교를 담당한 관청으로 1868년 2월 3일에 설치되었다. 이것이 윤4월 21일에 외국관으로 바뀌고, 외무성은 1869년 7월 8일에 설치되었다.

곳의 강한 번 중에서 인물을 선발하여 임무를 명해주시면, 그들과 모든 것을 협의하여 용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 예로부터 쓰시마(對州)는 교역(交易)·호시(互市)의 조약을 정하여 유무상통(有無相通)하고<sup>17</sup> 남은 이익으로 국제(國計)를<sup>18</sup> 세웠습니다. 이전에는 무역의 소득이 거만 鉅萬을 헤아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점점 쇠미(衰微)해졌습니다. 그 까닭은 원래 시대(時態)의 변천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그 근본 이유는 나라의 크기와 빈부의 힘이 대적할 수 없어 저절로 본주의 손모(損耗)와 피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물화(物貨)의 소출이 감소함에 따라 무역이 더욱 쇠퇴해서 끝내 국력을 지탱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곧 자연의 이세(理勢)로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신정(新政)의 때에 조선국에 대해 더욱 위신을 세우시려는 취지를 곰곰이 생각하니, 앞으로 두 나라의 통신은 단지 길흥사(吉凶事)에 빙문(聘問)하는 예식만으로는 진정한 화친(和親)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무릇 유무상통하고 환난(患難)을 서로 돕는 것은 교린(交隣)의 통의(通義)이고<sup>19</sup> 만국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번에 교제를 일신할 때 통상(通商)교역도 조정에서 처리하심이 황공(惶恐)하나 지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황국이 전력(全力)으로 무역을 행하여 재원(財源)이 풍부해지고 국력이 그들의 위에 있게 될 때, 쓰시마(對州)와 같이 손모(損耗)·피폐(疲弊)해지는 근심이 없습니다. 물화(物貨)가 유통되고 상로(商路)가 번성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나라의 이익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예조지(蝦夷地)<sup>20</sup> 개척에 예려(叡慮)를 다 쏟으시고 묘당(廟堂)에서 오로지 중의(衆議)를 모으는 것은 실로 지금의 적절한 급무(急務)라고 깊이 감명(感銘)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한국의 일을 동시에 논할 수 없지만, 옛날에 일본부(日本府)를 세운 성대한 공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국은 우리의 판도(版圖)와 같은 순치(唇齒)

17 유무상통(有無相通):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

18 국제(國計): 번의 재정

19 통의(通義): 세상에서 널리 통하는 정의와 도리

20 아이누인이 살던 지역으로 홋카이도, 가라후토(樺太, 사할린), 쿠릴열도, 캄차카반도 남부 등의 지역

의 나라이니 못 본 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근년에 외국과 불화하여 전쟁에 이른 사정도 있습니다. 장래의 거동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보다 앞서야 남을 제압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은원과 위력을 병행하여 오늘부터 그 규모를 정하십시오. 통어(統御)의<sup>21</sup> 방법을 제대로 얻으면 몇 년 뒤에 외부(外府)처럼 될 것입니다. 황공(黃公)이나 지금 에조지 개척을 광원(宏遠)한<sup>22</sup> 성사(盛事)로 하신 것을 본받아 조선국의 일도 널리 공의(公議)를 다하시어, 동서(東西)에서 원대한 계책을 수립하는 홍업(洪業)의 기초를 속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 一. 본주와 조선국의 사교(私交)로 송사(送使)·세견(歲遣)이란 명칭의 조약을 체결한 시초는 가키츠(嘉吉)<sup>23</sup> 연간 무렵입니다. 서국(西國)<sup>24</sup> 전쟁 때에 선조들이 규슈(九州)의 본령(本領)을 잃어 어쩔 수 없이 쓰시마(對州)라는 하나의 섬으로 들어와 칩거하면서 곤액(困厄)과 간난(艱難)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 조선국은 왜구(和寇)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쓰시마에 부탁하여 사빙(使聘)을 정부에 보내고 해구(海寇)의 금지를 청했습니다. 중서(中西) 여러 주의 사목(司牧)과<sup>25</sup> 군주(郡主)와도<sup>26</sup> 각각 인호(隣好)를 통하고 세선(歲船)을 약속했습니다. 쓰시마는 그 요충(要衝)에 있다는 이유로 특히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다만 세건의 약조는 실로 차래(嗟來)의 음식을<sup>27</sup>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때의 위급을 모면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이 다년간 영지의 회복을 도모하여 일단 그 뜻을 달성했지만, 그 후에 불행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조선에 의지하지 않고는 국력을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예는 외국에 대하여 번신(藩臣)의 예(禮)를 취하는 것에 가깝고, 수백 년간 저들에게 굴욕을 받은 시말은 몹시 분개하여 이를

21 통어(統御): 거느려서 제어함

22 광원(宏遠): 굉장히 넓고 원대

23 가키츠(嘉吉): 1441-1443

24 서국(西國): 서일본의 고창

25 사목(司牧): 지방장관

26 군주(郡主): 지방의 호족

27 차래(嗟來)의 음식: 업신여기면서 불러서 주는 음식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래 본주는 토지가 척박하여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한 주에서 나는 곡식으로 주 안의 3할의 인구도 먹이기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토韓土 무역의 부리淨利로<sup>28</sup> 식량을 그들에게 구하고, 한 주의 명맥과 병비兵備의 이장弛張이 오로지 교역의 성쇠에 달려있습니다. 이름은 번국藩國의 반열에 있지만 사실은 상업의 성쇠가 조불모석朝不謀夕과 같습니다. 변요邊要<sup>29</sup>·적충敵衝의<sup>30</sup> 땅에 있으면서도 늘 식량과 군사가 결핍되어 울타리가 되어 변방을 지키는 임무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 천세千歲의 유감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술년(1862년) 겨울에 본주의 위급한 실정을 선제先帝, 고메이(孝明) 천황께서 들으시고 식량을 다른 나라에서 구한 사정을 더욱 불안하게 생각하셔서, 조슈長州는 친척이고<sup>31</sup> 또 인국隣國이니 사쓰마薩摩·도사土佐 두 번과 협의하여 안도의 방법을 주선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계해년(1863년)에 이르러 또한 국정國情의 크고 작은 일 모두를 막부에 건의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어렵게 연조年租 3만석의 가급加給을 받아 실로 생사육골生死肉骨의<sup>32</sup> 해악海岳과 같은 천은天恩에 감읍感泣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종래 한토韓土에 의지하면서 비례와 외모外侮를 받은 목은 폐단을 모두 일소하여 황위경장皇威更張과 척지원략拓地遠略의 개업開業의 규모를 정하시길 바라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연조의 지급이 을축년(1865년) 이래로 지체되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지급하던 세봉歲奉 12,000금은 계해년 가급의 명을 받은 이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밀천을 잃어 지금 국맥國脈에도 관계되는 곤란에 직면했습니다. 우선 조선국과의 옛 폐단을 바로잡는 것은 제쳐두고, 지금의 모습은 번국藩國의 직분인 봉공奉公도 다할 수 없는 진퇴양난이라

28 부리(淨利): 건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이익

29 변요(邊要): 변방의 요지

30 적충(敵衝): 적과 맞서 싸우기에 유리한 곳

31 대마도의 제31대 번주 소 요시나가(宗義章, 1817-42)가 제11대 조슈번주(長州藩主) 모리 나리히로(毛利齊熙, 1783-1836)의 딸인 마스코(萬壽子, 慈芳院)와 혼인하여 인척이 된 것을 말한다.

32 생사육골(生死肉骨): 죽은 사람을 살려 내어 뼈에 살을 붙인다는 뜻으로, 큰 은혜를 베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송구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선제先帝께서 칙명하신 취지조차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하릴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매우 송구스러운 국정國情의 곡절을 친히 한탄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황궁하오나 가부의 예재叡裁를<sup>33</sup> 받을 각오였는데, 이번에 조선국과의 옛 폐단을 일소하라는 엄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명령을 받들고 사력을 다해 속히 실효를 거두어, 오랜 소망을 이루고자 분격奮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시마와 조선국의 교제에서, 일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고, 저 나라가 공급하는 물품을 지체하여 본주本州의 곳간이 비게 되고, 계략이 소진되고 술책이 궁해지면 굶히고 들어와 그들의 뜻에 따른다는 것을 통찰하고는 걸핏하면 그 간책奸策을 우리에게 쓰고 그 교활함을 제멋대로 부립니다. 그러므로 한인韓人이, 만약 쓰시마가 저들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국력을 지탱하기 어렵고 둘 사이에 곤란한 일이 있어도 쓰시마가 그 사이에서 주선하고 다방면으로 회호回護해서<sup>34</sup> 결국 국 일이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이번에 교제를 일신하는 취지를 따르지 않고 만약 고집스럽게 공손하지 않은 태도를 취해 두 나라 사이에 이의異議와 장애가 발생하면, 교린의 대체大體에도 관계가 있고 국위를 세울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쓰시마 사교의 잘못된 예를 속히 개혁하라고 명하는 것이 한국에 착수하시는 순서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황궁하오나 매우 파격적인 성단聖斷으로 선제先帝의 심후深厚한 예려叡慮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는 외방의 경모輕侮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원至願해마지 않습니다. 그런 뒤에는 본주 사교의 잘못된 예를 시작으로 그 외 유폐流弊를 두루 개혁하여 위신威信을 빛내기 바랍니다.

- 一. 이번에 조선과 통호通好하여 그 단초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교제의 사례와 체재體裁를 세울 수 있도록 돈독히 강명講明하시는 데 오로지 힘써야

<sup>33</sup> 예재(叡裁): 임금의 재가

<sup>34</sup> 회호(回護): 허물을 덮어서 숨겨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中古) 이래 두 나라의 교제는 모두 막부와 적례(敵禮)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해서 조정이 직접 교제하라고 명하시어 여러 가지를 처음 만드는 시초이므로 무엇보다 먼저 명분과 조리를 바르게 하여 병사(聘使)의 내왕과 문서의 증수(贈酬), 그리고 기타 수많은 절목이 종전의 잘못된 예(例)를 따르지 않도록 널리 고금의 전고(典故)를 참고하여 일정불역(一定不易)의 조전(朝典)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부터 두 나라 사이에 일이 있으면, 저 나라 조관(朝官)이 국사(國事)로서 내빙하는데 이를 통신사(通信使)라 불렀습니다. 이전 막부의 경사(京師)에 신사(信使)를 보내 축하한 정례(定例)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왕정복고로 만기(萬機)를 신단(宸斷)으로 명령하는 비상한 성시(盛時)에 응하여, 특별히 조정에서 직접 교제한다는 주의(主義)는 쉽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번의 명령을 조선국에 알린 다음 “급히 사절을 파견하여 왕정의 일신을 경하하라”는 뜻을 분명하게 통지하고 저 나라에서 속히 이를 받들도록 하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신사가 올 때 그 교례(交禮)와 접대가 매우 과중(過重)하여 경비가 거만(鉅萬)이나 되었습니다. 거의 천하의 온힘을 소비한 것은 태평한 시대의 관습으로 국가의 위광을 과장하여 한인의 이목을 놀라게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니, 나라의 폐단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공(黃公)이나 지금의 세상 형편에서는 저들과 우리가 상의(相宜)해서 무익한 용비(冗費)를<sup>35</sup> 줄이고 두 나라 사절이 경장간(輕裝簡易)를<sup>36</sup> 위주로 왕래해서 더욱 신의를 두터이 하는 것이 친목을 닦는 강요(綱要)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사 내조(來朝)의 건이 마침내 조의(朝議)에서 한번 정해지면 속히 저 나라에 통지하여 그 기한을 정하고, 접대하는 방법 등 이런 저런 일들은 품의(品議)한 뒤에 또한 저 나라와 담판하여 강정(講定)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ㄱ. 조선국은 원래 편벽되고 고루한 풍습으로, 좋건 나쁜건 옛 규정에 구애되어

<sup>35</sup> 용비(冗費): 쓸데없는 비용

<sup>36</sup> 경장은 사행의 여장(旅裝)을 훌가분하게 한다는 것이고, 간이는 장중한 의례를 간편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일시 권의權宜의 조처에 응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번에 조정을 일신하여 두 나라의 교제를 모두 직재直裁하시는 것은 저 나라가 가장 감대感戴해야<sup>37</sup> 할 터이니, 황국 인은仁恩의 주의를 정중히 반복해서 깨우쳐 주어 지극히 중한 예지勸諭를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종전의 옛 폐단을 일소하여 무궁한 기분을 정한 것을, 저 나라가 거스르고 복종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유한 누습陋習에 젖어 황국이 두터이 보살피는 뜻을 분변하지 못하고 만일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일 때에는 혁연赫然히<sup>38</sup> 응징하는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영무英武한 황유皇酋를<sup>39</sup>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황국의 의용義勇과 상무尙武의 기상을 은연중에 관철하려 하지 않는다면, 황공하오나 국위를 세울 수 없을뿐더러 장래의 공업功業을 해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사정을 깊이 들으시고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단宸斷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루시길 오로지 우러러 바랍니다.

위는 조선과의 교제의 대요大要로 어리석은 견해를 황공함을 돌아보지 않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절목節目으로 다단多端한 것은 조사하여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윤4월

쓰시마 시종對馬侍從

## 양국 교제 절목節目의 대략

- 一. 조선국 통신사의 내빙來聘은 옛 막부의 경사慶事 때에 조관朝官이 사절로 도해하여 국서國書와 토산물을 가져와서 축사祝辭를 전하고, 구래舊來로 도부東武<sup>40</sup>

<sup>37</sup> 감대(感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여 높이 받들

<sup>38</sup> 혁연(赫然): 벌컥 성내는 모양

<sup>39</sup> 황유(皇酋): 천자의 계책

<sup>40</sup> 도부(東武): 에도

에서 접대함. 분카文化 신미(1811년)에 빙례聘禮하는 장소를 바꾸어 쓰시마에서 교례交禮함.

- 두 나라의 길흉과 불시의 예절에 대해서는 쓰시마노카미對馬守의 가로家老를 비롯해 그 이하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그에 마땅한 사자를 보내 서계書契와 별폭別幅의 토산물을 왕복하고 증답贈答해 음.
-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사절이 모두 국도國都에 갔는데, 임진란 이후 상경을 막아 대소의 사절을 모두 부산포 초량항草梁項에서 접대함.
- 막부와 소가宗家の 길흉에 대해 조선에서 역관인 사절이 건너와서 쓰시마에서 응접하고 서계와 토산물을 증답해 음.
- 서계 왕복의 방법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예조참판·예조참의·예조좌랑 또 동래부사東萊府使·부산첨사釜山僉使와 왕복해 음.
- 조선국에서 일본에 응접하는 관원은 예조참판·참의·좌랑을 비롯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두 관리가 담당하고, 그 이하 역관 중에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일인씩 화관和館<sup>41</sup> 근처의 임소任所라 부르는 곳에 늘 출근하여 관중의 여러 용무를 처리해 음.
- 세견선으로 매년 송사를 파견하고 서계를 왕복하여 쌍방의 유무有無를 무역해 오고, 쓰시마노카미對馬守로부터 주로 보내는 물품은 동류銅類·후추[胡椒]·명반明礬·단목丹木 등으로 모두 막부에서 정액으로 매도賣渡함. 저 나라로부터 위의 대가에 해당하는 목면을 내주는데, 그 중 일부를 정미精米로 바꾸어 목면과 정미 두 물품을 받아 음.
- 조선국 경상도 안에 있는 초량항草梁項 경계에 화관和館을<sup>42</sup> 설치하여 관수館守라는 이를 파견해 두고 인교隣交 관계 일을 주관하도록 해 음.
- 화관의 경계에 관문關門을 설치하여 관문 밖으로 쓰시마 사람이 나가는 것을

41 화관(和館): 왜관

42 화관(和館): 쓰시마 사람이 살고 있는 관(館)을 이른다. [원주]

(저 나라에서) 엄하게 금지함.

- 쓰시마로부터 재판역裁判役이란 이를 파견해 두어 둘 사이의 여러 용무를 다룸.
- 두 나라의 교제는 모두 쓰시마의 깃테切手를<sup>43</sup> 소지하지 않은 배는 저 나라에서 해적선으로 간주하여 처치한다는 약조를 정해놓고 있음.
- 남녀의 금지는 쌍방의 약조에 엄중하게 정해놓고 있음.
- 무기의 금지도 위와 같음.

다만, “조선국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칙도 있지만, 이후에 각각 변혁해야 하므로 여러 일들을 옛 격식에 구애되지 말고 외국 교제의 상황에 기초하여 더욱 위신을 세우도록 하라”는 막부의 명령이 있었다. 도검刀劍과 총포銃砲 같은 것도 조선국의 희망에 응해도 괜찮다는 것이어서 사자使者를 보내 위의 상황을 통보해 줌.

#### 세견선歲遣船과 도서圖書의 사례事例

세견선은 매년 정액으로 쓰시마[對州]에서 조선에 파견하는 사선使船으로 사자使者의 이름에 구별이 있다. 따라서 저 나라의 접대와 곡물의 지급에 차등이 있다. 이를 연례송사[年條送使]라 부른다. 그 시초가 가키즈嘉吉 계해년(세종 25년, 1443)에 세견선 50척을 약정한 것에서 기원한다. 그 이후 단절되기도 하고 25척이 되기도 하였다가 50척으로 복구되었다. 임진란 이후 또 단절되었다가 게이초慶長 기유년(광해군 원년, 1609)에 새로 세견선 20척을 약정하였다. 그 밖에 세사미두歲賜米豆가 있다. 이는 곧 저 나라에서 수직受職의 관리가 받는 물품으로 본주本州도 똑같이 이를 받았다. 도서圖書는 조선의 국주國主가 관직을 그 신하에게 줄 때 사하는 동인銅印에 각각 그 성명을 새긴 것으로 또한 감합인勘合印이라 칭한다.

<sup>43</sup> 대마도주가 조선에서 받은 인장인 도서(圖書)를 찍은 도항증(渡航證)으로 주로 문인(文引) 혹은 스이코(吹嘘)라 불렀다.

본주는 전례에 따라 이를 받고 세견선과 그 밖의 사절 모두가 한토韓土를 왕래할 때 사용하는 문인文引은 이 도서를 가지고 증명한다. 이른바 “소씨宗氏의 문인이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옛날에 불문不文이<sup>44</sup> 심하여, 단지 감합의 일단一端이라고만 이해하여 경모輕侮를 받는 추옥醜辱을<sup>45</sup> 깨닫지 못한 것이 이와 같다. 저 나라의 신주新主가 대통大統을 이을 때 본주에서 사절을 보내 이를 축하하는 서한이 상표上表의<sup>46</sup> 체재體裁에 가까운 서식書式도 있었다. 앞의 사례는 모두 외국에 대해 변신藩臣의 예禮를 취하는 것에 가까워 실로 무한한 국욕國辱으로 유감천만이다. 곰곰이 생각하니, 가키즈嘉吉 연간 무렵에 여러 주州에서 망명한 무리가 조선의 변읍邊邑을 노략질하여 경상과 전라 2도의 주현州縣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어 국가를 지키기 어렵게 되자 쓰시마對州에 의뢰하여 사절을 무가武家に 보내 해구海寇의 금지를 청하고, 또 중서中西 여러 주의 사목司牧<sup>47</sup>과 군주郡主에<sup>48</sup> 통호通好하여 세견선을 약정하였는데 쓰시마가 그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대하여 세견선의 수가 다른 곳에 비해 가장 많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견선의 시작은 원래 한인이 유타柔惰하여<sup>49</sup> 외구外寇를 막을 수 없는 나머지 외구를 접대하여 그 환난을 면하려는 술책에서 나온 것이고, 이는 저들에게 무한한 치욕임에도 오히려 문서 중에 오만한 글자를 써 유약柔弱한 것이 아님을 꾸짖었다. 여러 주의 사선使船이 오는 것을 모두 내조來朝라 칭하고, 본주에는 더욱이 변신藩臣과 같이 매우 경멸하는 서체書體를 사용했다. 심지어 “대마도는 원래 우리 계림鷄林에 예속되었는데 어느덧 왜인의 근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따위는 매우 불쾌하다. 이는 필경 본주의 운명이 간난艱難하여 옛날부터 먹을 것을 저 나라에서 구한 실착失錯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그 무렵 무가武家が 문사文事に 어두워서

44 불문(不文): 글에 대한 지식이 없음

45 추옥(醜辱): 더럽고 잡스러운 욕

46 상표(上表): 신하가 임금에게 축하하는 뜻으로 올린 글

47 사목(司牧): 지방장관

48 군주(郡主): 지방의 호족

49 유타(柔惰): 유약하고 게으름

외국과 교제하는 문서는 모두 승려가 맡게 되고, 무식한 승려는 명분과 조리를 분변(分辨)하지 않고 중간에서 일을 꾸미고 속이면서 온갖 방법으로 외국에 아첨하여 오직 그들의 곡식을 얻는 것을 주무(主務)로 한 것 따위의 나쁜 선례가 유래(由來)하였는데, 이것이 본주가 그들에게서 비례(非禮)를 받은 사유이다. 그런데도 임진란 이후 강화할 때 그 옛 폐단과 나쁜 선례를 바로잡았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종래의 과실을 고치지 못한 난일(亂日)의 유습(遺習)이 전과 다름이 없이 금일에 이른 것은 국체(國體)에도 관계되니 실로 공구(恐懼)하여<sup>50</sup> 전율(戰慄)하기 그지없다.

### 공무역(公貿易)과 개시(開市)의 사례(事例)

무역에는 공사(公私)의 구별이 있다. 공무역은 송사선(送使船)이 저 나라에 갈 때마다 납(鐵), 동(銅), 단목(丹木), 흑각(黑角) 등의 물품을 싣고 가서 교역한다. 저 나라는 공부(公府)의<sup>51</sup> 목면을 내어 화물(貨物)의 가격을 정하고 그것을 지급한다. 그래서 공무역이라 하고, 공부의 목면이기 때문에 공목(公木)이라 칭한다. 게이안(慶安)과<sup>52</sup> 만지(萬治)<sup>53</sup> 무렵에 피아(彼)가 상의하여 공목의 일부를 저 나라의 정미(精米)로 바꾸고, 이를 공작미(公作米)라고 했다. 공무역은 원래 정해진 수량이 없다. 게이초(慶長) 기유년(1609)에 동래부사 이창정(李昌庭)의 건의에 따라 지금의 수량이 되었다. 개시(開市), 이를 사무역(私貿易)이라 칭한다. 저 나라 상인이 사은(私銀)을 가지고 연경(燕京)에 가서 구매한 사견(紗絹)과 또 국내의 산물이나 약품을 가지고 본방(本邦)의 물품과 바꾼다. 그 이익이 상인의 사가(私家)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사무역이라 한다. 옛날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이 성할 때는 매년 사무역의 이익이 평균 20여 만금이었다. 또 본주에서 저 나라로 보내는 은과 동의 수량에 정액이 없었고 상로(商路)가 번창하자

<sup>50</sup> 공구(恐懼): 몹시 두려움

<sup>51</sup> 공부(公府): 관아

<sup>52</sup> 게이안(慶安): 1648-1652년

<sup>53</sup> 만지(萬治): 1658-1661년

국익이 적지 않았다. 그 후에 정부가 은화를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동의 수량을 정했다. 이 이후로 재원이 더욱 감소하고 사태時態가 변천하여 사무역이 자주 쇠퇴하다가 안에이(安永)<sup>54</sup> 경에 끝내 폐절廢絶에 이르렀다. 그런데 근년 사무역의 상로商路가 점점 열리고 교역 물품이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통상의 방법을 적절히 조치하여 교역·호시互市가 번창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04**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로 하여금 조선통신사 내조來朝 및 쓰시마對州가 조선의 양식을 바라지 않고 국맥國脉<sup>55</sup>을 보존할 수 있도록 청하게 한글

조선국의 일과 관련된 당면한 조목들을 이미 치정治定하였다면 이전에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건백한 건들을 이어서 상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그 중에 아래의 2건은 속히 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 내조來朝의 건은 어떻게 지시하시겠습니까?

단, 원인遠人의 내조來朝가 국위를 빛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후에 왕사王使를 건너보내고 외국관外國官 관원이 도해渡海하여 모든 일을 재단裁斷하는 것은 사리와 형세로 볼 때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거一擧를 점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한인韓人은 종래로 편고偏固한 풍습이라 조정의 관원이 도해하는 것을 쉽게 승복하려 하지 않고 세차게 논쟁할 때는 처음부터 병력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득책得策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먼저 통신사를 불러들여 방금 천하만국의 형세를 들어, 규칙에 얽매어 편견을 고집하는 것이 끝내 나라를 지키는 장책長策이 아님을 깨우쳐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54 안에이(安永): 1772-1781년

55 국맥(國脉): 변의 명맥

크게 활안活眼을 열어 국시國是를 정하고 방향을 세워, 이와 입술이 되어 만세토록 보전保全하는 정책으로 나가지 않으면 거국적인 화난禍難이 순식간에 닥치고 후회막급의 사태事態가 발생한다는 것을 외국관外國官에서 조리條理를 다해 두터이 설유說諭한다면, 저들이 고루하다 해도 과연 그 뛰어난 의론에 복종하여 오래전부터 물든 악습이 바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황조皇朝도 한인韓人의 사정과 상태를 친히 관찰하신 연후에 조정의 관리가 도해하여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 황국의 성의를 거역하는 경우에는, 곧 잘못이 저들에게 있는 이치라서 만국의 공법公法에 있어 특별할 죄가 분명하므로, 단연코 병위兵威를 보이시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一. 쓰시마[對州] 사교私交의 폐단을 개혁하여 한토韓土의 양식을 기다리지 않고 국맥國脈을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합니다.

쓰시마對馬가 조선의 도서圖書를 받고 세견선歲遣船을 보내 종래從來 번국藩國과 다름없는 굴욕을 받은 사유 및 이번에 통신通信을 다시 시작하는 때에 먼저 사교의 폐단을 개혁하도록 명하시는 것이 한국에 착수하는 순서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정은 쓰시마노카미對馬守의 건백서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즉, 이번에 조정을 일신한 취지를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도서를 반환하는 것을 비롯해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조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로 세견선과 송사送使는 본주本州로부터 먼저 폐절廢絶하지 않으면 명분과 조리가 서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제를 일신하여 온갖 절목節目을 강명講明하는 시의時宜에 이르러,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우리 쪽의 약점이 많아 일마다 지장이 생길 것이 분명하므로 송사送使는 남기지 않고 정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서도 신정新政의 때라 특별히 국비國費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교의 폐단을 고칠 때는 매년 조선에서 받는 곡물이 줄어들어, 이전부터의 곤란한 생계에 더하여 갑자기 국정國情이<sup>56</sup> 절박해짐은 눈앞의 일입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뭔가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 국세國勢<sup>57</sup> 세울 수 없어 지금 당장 매우 걱정입니다. 다만, 일시에 충분히 조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명분과 체재體裁에 있어 잠시도 그대로 둘 수 없는 송사送使의 사례事例 등은 폐지해야 합니다. 위의 잘못된 예를 개혁함에 따라 매년 잃게 되는 약간의 곡물은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므로, 이번에 조정에서 생각을 다시 하여 상당한 처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한토韓土의 교제에 관한 온갖 규칙이 세워진 다음에 마땅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는 어리석은 생각을 시험 삼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속한 지시를 바랍니다. 이상.

5월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

#### 05 쓰시마[對州]의 국맥 보존을 위해 동 11만 천근을 정부에서 팔 것을 청하도록 한 글

이번에 조선국과의 교제를 일신한다는 지시에 대해 통상·교역을 조정에서 맡아달라고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건의한 취지도 있었습니다. 조정의 계획이 정해진 뒤에 차차 시행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제의 절목節目을 강명講明하여 온갖 법칙을 정하려면 서너 달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길이 끊겨버리면 조선의 국용國用에 지장이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무엇보다도 교제를 새로 시작하는 때에 만사를 종전의 옛 막부시기에 비해서 더욱 순편順便하게 하고 은덕恩德이 그들의 예상 밖으로 나와 일신一新의 실효를 감사하게 받들도록 하지 않으면, 모처럼의 취지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만사를 후하게 대하시는

56 국정(國情): 번의 사정

57 국세(國勢): 번의 형편

것이 황공하지만 선무先務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조정에서 통상·교역 조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쓰시마가對州家에서 교역을 취급하여 조선국의 국용國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바랍니다. 단, 무역을 위해 이쪽에서 건너가는 물품 중에서 동銅이 그 주된 품목입니다. 이전에는 매년 수량을 정하지 않고 건너보냈는데, 그 후에 황동荒銅 3만근, 정동丁銅 8만 1천근, 합계 11만 1천근을 해마다 정액으로 하여 오사카 도자銅座에서<sup>58</sup> 매도賣渡했습니다. 값은 36개월 뒤에 납부해왔는데 올봄의 변동 이래 동을 건네주는 것이 단절되어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간청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되면 종래의 조약도 있어 외국에 대해 신의를 세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올 진년辰年에<sup>59</sup> 넘겨줄 ‘이전부터 법식으로 정한 동’ 11만 1천근을 그쪽 [외국관(外國官)을 지칭]에서 사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들어주시어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길 오로지 우러러 바랍니다. 아울러 근년 이래 건네준 동 수량의 대략을 별지로 말씀드립니다.

5월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 내內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

외국사무外國事務 어역소御役所<sup>60</sup>

각覺<sup>61</sup>

-. 황동荒銅<sup>62</sup> 26,900근

-. 연동延銅<sup>63</sup> 3,000근

58 에도(江戸)시대에 막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동 거래와 주조를 한 곳으로 오사카와 나가사키에 있었다.

59 진년(辰年): 무진년으로 1868년

60 어역소(御役所): 오야쿠쇼

61 오보에. 기억을 위해 기록한 문서의 총칭

62 은을 함유한 동

63 얇게 늘인 동

- 정동丁銅<sup>64</sup> 7,250근

위는 공무역으로 보내는 분분

- 정동丁銅 132,450근

위는 사무역으로 보내는 분분

단, 매년 도자銅座에서 사들이는 정식동定式銅 11만 1천근으로는 조선의 국용國用을 충족할 수 없어, 해마다 도자銅座로부터 내년도 정식동定式銅 중에서 앞당겨 처리하거나 그 밖에 산지에서 파는 별매동別買銅으로 위의 수량을 보충함.

위의 것 외에

- 정동丁銅 5만근: 취은吹銀<sup>65</sup> 값의 동

- 정동丁銅 5만근: 사금砂金 값의 동

합계 10만근

단, 조선국에서 취은과 사금을 추출해서 옛 막부의 킨자金座·긴자銀座로 납부하고, 이 수량을 매년 도자銅座에서 사들였지만 지금은 폐지되었음.

이 문서의 상포지<sup>66</sup>에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 내內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라고 적혀있고, ‘忠能’(나카야마 다다야스, 中山忠能, 당시 議定), ‘實則’(도쿠다이지 사네쓰네, 徳大寺實則, 당시 의정), ‘實愛’(산조 사네쓰네, 三條實愛, 당시 의정), ‘宗城’(다테 무네타리, 伊達宗城, 당시 의정으로 외국관지사), ‘豊信’(야마우치 도요시게, 山内豊信, 당시 의정), ‘木戸’(기도다 카요시, 木戸孝允, 당시 參興)의 인장이 찍혀 있다(원문 121쪽의 그림을 설명한 것-옮긴이).

64 판형으로 정제한 동

65 은광석에서 회취법(灰吹法)을 통해 납을 제거하여 추출한 순수 은. 회취법은 연은 분리법(鉛銀分離法)이라고도 불렀는데, 무쇠 화로나 냄비 안에 재를 두르고 은광석을 채운 다음, 깨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숯불을 피워 납을 증발시키고 바닥에 남은 은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1503년(연산군 9) 조선에서 개발된 연은 분리법은 1533년 일본 이와미(石見) 은광에 처음으로 전래되었다.

66 상포지(上包紙, 쓰쓰미 가미): 편지나 책 등을 싸는 종이

06 쓰시마[對州]의 국맥 보존을 위해 지폐[楮幣] 5만금을 정부에서 빌려줄 것을 청하도록 한글

조선국과의 교역은 조정에서 규칙을 정하기까지 지금까지의 방식에 의거, 쓰시마에서 무역을 취급하여 저 나라 국용[國用]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물화가 유통되지 못함에 따라 이쪽에서 무역을 위해 건넌 물품을 조약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 나라에서도 정례[定例]의 물산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종래의 곤란한 생계에 더욱 형편이 나빠져 금일에 이르러서는 무역의 자본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나라 관리들이 본주의 피폐한 상황을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마다 답판하는데 이쪽의 약점이 많아, 이번에 일신[고잇신御一新]한 경위를 알릴 때 이런저런 잔회[殘懷]<sup>67</sup>로 당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저번에 지시하신 취지도 있으니, 이번에 통용을 분부하신 지폐 5백만금을 조선국 무역자금으로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체된 물품을 보내 양국의 물화가 유통되고, 무역이 순조롭게 됨은 물론입니다. 무엇보다 조선국과의 교제 만단[萬端]을 개혁하는 때에, 교역 부분도 금일부터 구폐를 고쳐 앞으로 버젓한 상로를 열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하는 대로 빌려주신다면 이번 5월에 3만금, 오는 7월에 2만금으로 두 번에 나누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반납은 조선국 물산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차차 틀림없이 납부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지시하시기를 오로지 간원합니다. 이상.

5월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 내內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

외국사무 어역소御役所

<sup>67</sup> 잔회(殘懷): 마음 속에 남은 회포

## 07 쓰시마노카미對馬守 번계藩計<sup>68</sup> 출납표

번에서 필요로 하는 양미 총액[國中糧米入目高] 각覺

- 쌀 1,000석 쓰시마노카미對馬守 및 가족의 식미食米
- 쌀 7,935석 상사上士 230명  
단, 100석에 대해 23석의 비율
- 쌀 7,740석 중사中士 430명  
단, 계급을 평균하여 1명당 18석
- 쌀 6,600석 가치徒士 550명  
단, 1명당 12석씩
- 쌀 12,000석 아시가리足輕 및 주겐仲間 2,000명  
단, 1명당 6석씩 평균
- 쌀 4,000석 공상工商 중에서 병졸로 가담한 자 1,000명 정도  
단, 1명당 4석씩
- 쌀 8,000석 향사鄉士 800명  
단, 1명당 10석씩

합계 쌀 47,275석

이 중 12,000석 정도를 거둔다.

단, 쓰시마對州 및 규슈九州와 야슈野州<sup>69</sup> 등의 영지에서 거두는 액수 중에서 교토·오사카·나가사키로 운반하는 쌀과 규슈 영지에 근무하는 여러 사족에게 건너가는 분을 빼고 본국本國, 對州에서 수취하여 현재 곳간에 들일 수 있는 액수가 이와 같음.

나머지 쌀 35,275석 남짓이 부족.

<sup>68</sup> 번계(藩計): 번 재정

<sup>69</sup> 야슈(野州): 현재의 도치기현 일대

단, 조선국과의 무역을 제외한 것이 이와 같다. 이 부족분은 계해년(1863)에 더  
해준 연조年租 3만석으로 보충할 예정.

**부전** 연조年租 3만석이 지체되어 위의 부족한 쌀을 보충하기 어려움. 그래  
**附箋** 서 뒤에 기재한 조선과의 무역에서 들어오는 쌀과 영지 안에서 거두는  
사소한 세금 등으로 쌀을 사서 보충하므로, 국내 출장 등 미곡米穀 외의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지급하기 어려워 더욱 궁박窮迫함.

영지의 연조액수[領地年租員數]의 각覽

쓰시마[對州] 연공年貢

- 벼와 보리 합계 7,528석 3두 7홉 2작勺 5재才  
이 중 벼는 413석 6두 6승 6홉 6재  
단, 쌀로 환산하면 206석 8두 3승 3홉 3작 3재  
이 중 보리는 7,114석 6두 4승 6작  
단, 이 중 2,916석 4두 3승 4홉 1작 8재  
가신들에게 준 녹봉과 사사료寺社料를 뺀 것  
남은 보리 4,118석 2두 6홉 4작 2재  
이 부분을 쌀로 환산하면 2,117석 2승 5홉  
합계 쌀 2,324석 3두 5승 8홉 3작 3재  
3두 3승을 한 가마니[俵]로 하면  
6,973가마니 2두 4승 9홉 9작 6재  
위의 것이 곳간에 들어가는 분량임.

히젠노쿠니肥前國에<sup>70</sup> 있는 다시로田代 영지

- 총액 13,400여 석

단, 히젠노쿠니 기이군<sup>基肄郡</sup>과 야부군<sup>養父郡</sup> 안의 10개 촌

연공미<sup>年貢米</sup> 20,985가마니 5승 7홉 5작

이 중 6,959가마니 2두 5승 6홉 3작 3재

단, 교토·오사카·나가사키로 돌리는 쌀과 그 외 하급 관리들에게 주는 부분을  
뺀 것.

남은 쌀 14,025가마니 1두 3승 4홉 4작

위의 것이 쓰시마<sup>對州</sup>로 들어오는 부분임.

히젠<sup>肥前</sup>·히고<sup>肥後</sup>·치쿠젠<sup>筑前</sup>·치쿠고<sup>筑後</sup>에 있는 영지

-. 총액 15,877석 7두 9승 8홉 3작 8재

단, 히젠노쿠니<sup>肥前國</sup> 마쓰우라군<sup>松浦郡</sup>과<sup>71</sup> 치쿠젠<sup>筑前國</sup><sup>72</sup> 이토군<sup>怡土郡</sup> 내

연공미<sup>年貢米</sup> 16,719가마니 2두 3승 4홉 6작 6재

위의 것이 쓰시마<sup>對州</sup>로 들어오는 부분임.

시모츠케노쿠니<sup>下野國</sup><sup>73</sup>

-. 총액 4,202석 3두 6승 4홉 4작 6재

단, 아소군<sup>安蘇郡</sup>과 쓰가군<sup>都賀郡</sup> 내

연공미<sup>年貢米</sup> 4,296가마니 1두 5승

위는 지금까지 에도<sup>江戸</sup>로 가져간 부분

각각의 합계 쌀 42,013가마니 남짓

이 중 37,717가마니 6두 1승 9홉 2재

단, 쓰시마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 중 4,296가마니 1두 5승

70 히젠노쿠니(肥前國): 현재의 사가나가사키현

71 고칭은 '마쓰라'이지만 현칭인 '마쓰우라'로 통일했다.

72 치쿠젠(筑前國): 현재의 후쿠오카현 서부

73 시모츠케국(下野國): 현재의 도치기현

단, 지금까지 에도로 돌린 부분

**부전** 위의 쓰시마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37,717가마니를 석으로 환산한  
**附箋** 12,572석은 쓰시마[對州]로 돌리는 것으로 치정治定했는데, 이전부터 번  
藩의 살림이 쪼들려 지금은 그 절반을 빚 갚는데 사용하여 쓰시마의 세  
입이 해마다 줄어 들고 있음.

조선과의 공·사무역公私貿易으로 거둬들이는 금곡金穀의 각覺

- 쌀 9,492석 7두 1홉 2작 3재  
정미精米 16,119가마니 3두 6승 1홉 2재  
1가마니는 5두 3승  
단, 공무역으로 거둬들이는 액수가 이와 같음.
- 60문전六拾文錢 2,192관貫 565돈 4푼 2리厘 7모毛  
단, 공무역과 그 밖에 물물교환 등으로 들여보내는 물품의 대가 2,832관 890  
돈 3푼 3리 9모 중에서 동銅이나 그 밖의 물품 원가 640관 324돈 9푼 1리 2모  
를 빼고 남은 것이 이와 같음.
- 쌀 1,498석 9두 4승 8홉 9작 6재  
정미精米로 2,545가마니 2두 4홉 7재  
1가마니는 5두 3승  
단, 송사送使·재판裁判·표차사漂差使를 접대하는 쌀이 이와 같음.
- 60문전 227관 107돈 3리 3모  
단, 앞과 같이 저 나라에서 주는 별도의 선물을 값으로 추정하면 이와 같음.
- 60문전 4,751관 954돈 5푼  
단, 사무역으로 거둬들이는 물품 값 7,267관 220돈 중에서 원가 2,515관 225돈  
5푼을 빼고 남은 값이 이와 같음. 위의 것을 가지고 매년 부족한 쌀을 사고,

그밖에 번내藩內나 교토·오사카에서 쓰이는 비용으로 마련해 옴.

합계 쌀 10,991석 6두 5승 9재

합계 60문전 7,171관 626돈 9푼 6리

단, 위의 쌀로 조선에 재류하는 관리들의 봉급을 지급하고, 또 역직役職의 일상적인 경비도 위의 것을 가지고 지급함. 다만, 통신사通信使나 역관譯官이 건너올 때의 경비는 별도로 막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례定例임.

위의 2개 항목을 쌀로 환산하면

40,873석 4두 2승 9홉 9재

단, 1석을 60문전 240돈으로 환산

## 08 번계藩計 중 조선에서 얻는 곡물의 계산서

송사가 공무역으로 들어오는 곡물

각覺

- 쌀 9,492석 7두 1홉 1작 3재

정미精米 16,119가마니 3두 6승 1홉 2재

1가마니는 5두 3승

단, 송사의 공무역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이와 같음.

- 60문전 2,192관 565돈 4푼 2리 7모

단, 송사의 공무역으로 들여보내는 물품 대가 2,832관 890돈 3푼 3리 9모 중에서 동이나 그 밖의 물품 원가 640관 324돈 9푼 1리 2모를 뺀 잔액이 이와 같음.

- 쌀 1,498석 9두 4승 8홉 9작 6재

정미 2,545가마니 2두 4홉 7재

1가마니는 5두 3승

단, 송사·재판·표차사를 접대하는 쌀이 이와 같음.

- 60문전 227관 107돈 3리 3모

단, 송사·재판·표차사와 저 나라가 별도로 거래하는 물품의 대가를 견적하면 이와 같음.

합계 쌀 10,991석 6두 5승 9재

합계 60문전 2,419관 672돈 4푼 6리

위의 두 항목을 쌀로 견적하면

21,073석 6두 1승 8홉 6작 7재

단, 1석을 60문전 240돈으로 환산

**09**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로 하여금 조선인 표류민의 처분 건을 상신토록 한글

조선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명령한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표류민의 건은 종래의 조약이 있으니 이후에도 조선인이 나라 안의 곳곳에 표류해올 때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표류한 곳의 영주가 표류민을 나가사키에 보내고, 나가사키 재판소裁判所에서<sup>74</sup> 이전의 규정대로 의복과 식량을 주거나 배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쓰시마노카미對馬守 역인役人에게 넘겨줄 것을 명하시면 사자使者를 붙여 조선에 보내도록 합니다. 단, 지금까지의 예격例格은 대략 별지와 같사오니 더욱 숙고하셔 앞에서 언급한 절차가 마땅하다고 여기시면

<sup>74</sup> 행정기관으로 현재의 재판소와는 다르다.

그 취지를 모든 번藩에 충분히 고지해주시오. 이것을 품의하라고 쓰시마노카미 對馬守가 말씀을 전하여 위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

5월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 안의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

외국사무外國事務 어역소御役所

### 두 나라 표인漂人の 예격例格

- 일본인이 조선국에 표류하여 도달하면 저 나라에서 후하게 다루어 부산포 초량항草梁項이란 곳의 화관和館이라<sup>75</sup> 부르는, 쓰시마노카미對馬守 가신(家來)이 있는, 장소로 보내고 표착漂着한 경위를 적은 서한을 제출하는 등 약간의 수고를 한 뒤에 쓰시마[對州]로 보내 맞이하도록 한다. 쓰시마에서는 표류민이 속한 번藩과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 나가사키 혹은 오사카로 보내고, 그곳의 부교쇼奉行所에서 그 영주領主에게 인도하는 것이 정례定例임.
- 조선인이 본방本邦 안의 곳곳에 표착하면 그곳의 영주가 나가사키에 보내고 그곳 부교쇼에서 표류한 전말을 문정問情한다. 의복과 양식을 주고 선박을 수리한 뒤에 나가사키에 근무하고 있는 쓰시마노카미對馬守 관리에게 인도한다. 호송護送하는 사자使者를 붙이고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의 우라부레浦觸로써<sup>76</sup> 쓰시마[對州]로 보내 맞이하도록 함.  
단, 우라부레浦觸의 주된 내용은, 조선인이 땀나무와 마실 물이 모자라거나 풍파風波가 험할 때는 접대하여 보내라는 취지임.
- 표인을 나가사키에서 보낸 뒤에 쓰시마[對州]에서 다시 사자使者를 붙여 저 나

<sup>75</sup> 화관(和館): 왜관

<sup>76</sup> 우라부레(浦觸): 각 포구에 지시하는 문서

라에 호송한다. 위의 사절을 표차漂差라 부르고 저 나라에서 접대하는 정례定例가 있음.

- 표인 중에 죽은 자가 있으면 관棺 속에 넣어 보내고 일본 땅에 묻을 수 없음. 위의 대략이 이와 같습니다. 단, 조선국의 표인 중에 배가 부서지고 죽은 자가 있거나 그 밖에 표착한 시의時宜에 따라 쓰시마에서 호송하는 방법에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번잡하고 복잡하므로 조사하여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5월

**10**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쓰시마의 국력이 미약하니 여러 강한 변藩 중에서 쓰시마노카미對馬守와 마찬가지로 조선교제의 직을 명해줄 것을 청하도록 한 글

조선국은 상고上古 삼한三韓 때 조공하는 옛 의례를 그만둔 이후, 중엽中葉에 두 나라의 시대時態가 일전一轉하여 무가武家の 인교隣交로 되었습니다. 그 교례交禮는 모두 막부와 적례敵禮로<sup>77</sup> 하였습니다. 그 무렵이 전쟁 시기라서 문물이 미개하고 교제의 사례事例와 체재體裁가 서지 않았으며, 간간 국위를 손상한 실착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연유緣由는, 가키치嘉吉<sup>78</sup> 연간 서국西國의 전란 때에 여러 주州의 망명의 무리가 조선의 변읍邊邑을 약탈하여 경상·전라 2도의 주현州縣이 무인無人 불모지가 되고, 국가를 보존하기 어려워 쓰시마에 의지하여 사빙使聘을 정부에 보내 해구海寇의 금지를 청하고, 4직四職과<sup>79</sup> 관령管領과<sup>80</sup> 그 밖에 중서中西 여러 주의

77 적례(敵禮): 대등한 예

78 가키치(嘉吉): 1441-1443

79 4직(四職, 시시키): 무로마치(室町)막부의 군사 지휘와 교토 시내의 경찰, 징세 등을 맡은 사무라이 도코로(侍所)의 장관에 교대로 임명되는 아카마쓰씨(赤松氏), 잇시키씨(一色氏), 교고쿠씨(京極氏), 아미나씨(山名氏) 등 4개 씨족의 슈고 다이묘(守護大名)를 이룸

사목司牧과<sup>81</sup> 군주郡主와<sup>82</sup> 통호하여 세선歲船을 약속한 데 있습니다.

세선歲船은 매년 정해진 수만큼 조선국에 파견하는 사선使船의 이름으로 세견선 혹은 송사送使라 칭하고 저 나라에서 이를 접대합니다. 또 토산물을 싣고 가서 교역을 하는데 이를 공무역이라 칭합니다. 세선歲船이 시작된 것은 사실 한인이 유약하고 게을러 해구海寇를 막을 수 없는 나머지 해구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 환해患害를 면하려는 술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술책은 그들에게 수치스럽기 한이 없고 우리나라도 또한 차래嗟來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 실로 대단한 국욕國辱입니다.

쓰시마[對州]가 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대하여 세선의 수가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많았다 합니다. 한토韓土에 오가는 여러 주의 모든 사선使船은 소宗씨의 문인文畝를 받아 증명하고, 문인이 없으면 저 나라에서 접대하지 않는다 합니다.

문인은 저 나라에서 보내는 도서圖書를 말합니다. 이는 곧 조선의 국주國主가 그 신하에게 관직을 하사할 때 주는 동인銅印으로 각각 그 이름을 새긴 것이며 또한 감합인勘合印이라 부릅니다. 쓰시마는 전례에 따라 이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글을 모르는 것이 심하여 외국과 교제하는 문서는 무릇 승려가 맡았습니다. 무식한 승려는 명분과 조리를 분별하지 않고 대부분 중간에서 일을 꾸미고 속여, 온갖 아첨을 외국에서 구함에 따라 많은 폐단이 떠들썩하게 일어났습니다. 도서圖書와 같은 것도 단지 감합勘合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 그들이 우리를 번신藩臣으로 대하는 비례非禮를 깨닫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워 이를 갈아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 후 아시카가足利씨의 말기에 이르러 정부와 여러 주의 사선使船은 모두 폐지되고 쓰시마[對州]만 전철前轍에 따라 통호通好했습니다. 그 사이 도요토미가豊臣家の 임진 전쟁으로 통교가 단절되었고, 도쿠가와가德川家에 이르러 다시 친목을 닦았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겉으로 성신誠信을 표하고 사귀다 해도, 당초에 강화가

80 관령(管領, 간레이): 무로마치 막부에서 쇼군(將軍)을 보좌하여 막부의 정치를 총괄한 직책

81 사목(司牧): 지방장관

82 군주(郡主): 지방의 호족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구한 측면이 있어 종전의 목은 폐단을 없애고 국체國體를 세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겨우 경조사(聘問)에 그 교례(交禮)를 남기고 사실은 쓰시마 한 주의 사교(私交)와 같습니다. 교접(交接)한 사례(事例)는 옳은 것도 있고 잘못 된 것도 있어 불후(不朽)의 법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의 기강을 일신하여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시고, 조선국은 예부터 왕래한 나라이니 더욱 위신을 보여 옛 폐단을 일소하고, 국위를 해외에 빛내라는 조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얼마 되지 않아 외국관(外國官)을 설립하고 각국의 교제를 관할하도록 분부하였으므로 조선국에도 조정의 관리가 도해하여 모든 일을 결재하는 것은 지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인(韓人)은 편벽되고 고루한 풍습이라 좋든 싫든 옛 규정을 굳게 지켜 일시(一時) 권의(權宜)의 조치에 응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의 관리가 도해하는 것을 비롯해 그 나머지 절목(節目)을 새로 만드는 일에 이르러서는 그 담판을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매듭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어디까지나 애써 노력할 각오이지만, 한 번(藩)의 미력(微力)으로 그 실효(實效)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후일(後日)에 조정의 관리가 도해하여, 황국이 온 힘을 써 홍업(洪業)을 일으키기까지는 열 번(列藩)<sup>83</sup> 중에서 쓰시마노카미와 같은 역직(役職)을 명하여 그 단서를 여십시오. 통상과 교역은 지금까지 쓰시마(對州)가 독점하여 처리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조정에서 규칙을 세워, 끝내는 예조(禮部)와 같이 크게 개척하는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또한 쓰시마(對州)는 불모지와 같은 국토이고, 종래 양식을 한토(韓土)에서 구하여 두 나라 사이의 잘못된 사례가 매우 많아 일일이 열거할 겨를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개 외국에 대하여 번신(藩臣)의 예(禮)를 취한 것에 가깝고 조종(操縱)의 권한이 늘 그들에게 있어 그 교활함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단, 지난날 쓰시마(對州)와 조선국이 교제할 적에 일이 그들의 사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여, 저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곡물의 지급을

<sup>83</sup> 열 번(列藩): 강한 번

지체하여 본주本州의 곳간이 비고 계책이 다하고 술책이 궁하면 굶히고 들어와 그 뜻에 따른다는 것을 훤히 알고, 걸핏하면 그 간책奸策을 우리에게 사용하여 그 교활함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일신一新의 취지를 통보하고 교제의 대강大綱과 명분과 국체를 바로잡는 데 이르러, 겉으로는 정론正論과 조리條理를 내세우고 속으로는 무릎 아래에 엎드려 먹을 것을 청한다고 하면 국위國威를 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쓰시마[對州] 사교私交의 그릇된 예례의 개혁을 사심 없이 건의하는 사실을 밝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사 내조來朝의 건은 국위를 원인遠人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저 나라 관원이 내조來朝한 뒤에 세계 만국의 형세를 비롯해 지금의 세상 형편을 친히 깨우쳐주고, 조정의 관리가 조선으로 도해하는 것도 직접 대면하여 이해득실을 논의하면, 그들이 그 누습陋習을 버리고 황국이 두텁게 보살피는 뜻을 감사하게 받들 것입니다. 이들 조건들을 모쪼록 속히 결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6월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 내內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

외국관外國官 어역소御役所

위 본문의 부전附箋을 베껴서 아래에 기록한다.

부전  
附箋

조정의 관원이 도해할 때까지 소가宗家에서 지금처럼 처리하도록. 만약 오우奧羽 지방이 평정되지 않고 천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부적절한 일을 하면 국제國體가 서지 않을 것임. 별지의 포고도 당분간 보류하고 후일에 위풍당당하게 답판을 시작하는 방법이 마땅할 것임. [이 부전에 ‘忠能’(나카야마 타다야스, 中山忠能, 당시 議定), ‘副島’(소에지마 타네오미, 副島種臣, 당시 參與), ‘岩下’(이와시타 미치히라, 岩下方平, 당시 참여), ‘福岡’(후쿠오카 타카치카, 福岡孝弟, 당시 참여)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11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조선 사건과 관련하여 조목조목 진술한 글(2통)

염서(廉書)<sup>84</sup>

- 근국 열번(近國列藩) 중에서 조선에 관한 역직(役職)을 맡도록 명하는 일
- 통상·교역을 조정에서 취급하는 일
- 쓰시마(對州) 사교(私交)의 잘못된 예(例)의 개혁을 지시하시는 일
- 조정이 교제하는 체재(體裁)와 통신사(通信使)의 일
- 응접의 시기(時機)에 따라 용단(勇斷)을 내리는 일

위의 조목을 속히 평결(評決)하여 모쪼록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재작년 가을 조선국이 프랑스(佛國)와 전단(戰端)을 열고 또 미국(亞國)에 원한을 품고 있어 옛 막부에서 화의(和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중도에 그쳐 프랑스와 영국(미국?-울긴이)은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형편입니다. 이 일을 한국과 어떻게 응접해야 하는지 내의(內意)를 여쭙니다.
- 이번에 조정에서 하사할 ‘외국사무국(外國事務局)’ 인장은 성명 아래에 사용하기 어려우니 별도로 관명(官名)과 실명(實名)을 새긴 사인(私印)을 만들어 서계(書契)나 그 밖에 성명을 기입한 아래에 사용하고, 조정의 인장은 서한을 봉(封)한 곳이나 그 밖의 중요한 곳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의정(議定)한 조목들은 모두 문서로 통지(通知)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황(天皇)이 직접 교례(交禮)하는 일
- 국휘(國諱)는 5대(代)조까지 피휘(避諱)하는 일
- 인장을 건네주는 일
- 고잇신(御一新)<sup>85</sup> 알리는 문안(文案)

<sup>84</sup> 가도가키. 열거할 조목이나 이유 등을 적은 글

<sup>85</sup> 고잇신(御一新): 왕정복고를 의미

- 앞으로의 교제 절목節目을 다시 강명講明하고 구례舊例의 잘못된 예例 등을 차차 고치겠다는 것을, 이번에 일신一新을 알리는 사절이 저 나라와 교섭하도록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습니다.

## 12 조선 사건과 관련하여 어휘御諱 등을 평의한 글(2통)

한국사건 염서廉書

조선에의 칙서

한국사건 염서

- 쓰시마[對州]의 근국 열번近國列藩 중에서 쓰시마노카미對馬守와 같은 직무를 명하는 일
  - 천황 직접교제의 결재를 얻는 것과 국서 문안을 정하는 일
  - 조정의 강령[朝綱]을 일신하여 한국과의 교제는 모두 친재한다는 취지를 한국에 전달하는 서계書契 문안을 황공하오나 내지內旨를 받고자 하는 일
  - 쓰시마[對州] 사교私交의 유례謬例를 개혁하여 한토韓土의 양식을 기다리지 않고 백성이 생활할 수 있는 조치를 바라는 일
- 위의 조목을 결의하여 기본을 세우신 다음 통신사 내조 건을 비롯해 교제의 절목節目 만단萬端을 강명講明하고, 또한 교역·호시互市 건도 조정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개척하는 정책 등은 차차 재가를 받고자 합니다.
- 천황의 이름 및 조종祖宗 이래 피휘한 글자
  -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조선에 보내는 증명 인장은 지금까지 저 나라로부터 받은 국서에 사용해왔지만, 이번에 고친 이후엔 조정으로부터 인장을 받아 왕복하고자 하는 일

-. 양국 교례交禮 관원의 위계에 관한 일

단, 옛날 옛 막부의 집정執政과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문서를 주고받을 때 모두 저 나라 예조와 등대等對함. 예조참관의 위계는 종2품, 예조참의는 정3품임.

조선에의 칙서

중세 이후 본방의 정권을 동무東武에<sup>86</sup> 위임해두셨는데 빈년頻年<sup>87</sup> 행정刑政이 마땅함을 잃어 만민이 그 생업에 편치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천황폐하께서 총명·예절總名徽哲한 신려宸慮로써 조강朝綱을 일신하고 만기를 특별히 재결하시어 보천솔빈普天率濱이<sup>88</sup> 모두 성덕盛德을 우러르지 않음이 없습니다. 아! 황실의 흥룡이 이와 같습니다. 종래 인의隣誼가 있는 귀국이 어찌 혼연欣然히 감위感慰하지<sup>89</sup> 않겠습니까. 이제 대정大政을<sup>90</sup> 다시 시작하는 때에 응하여, 양국의 교제는 더욱 성신을 두터이 하여 영원토록 변치 않게 귀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 황상皇上의 성의盛意가 계시는 바입니다. 이에 사개使价를 급히 보내 통보합니다. 운운.

-. 조선국에 서한을 보낼 때 휘자諱字

단, 저 나라는 역대를 피휘避諱한다고 하는데 황국은 5대까지로 해야 합니까?

**부지** 휘자 권획關劃 등은 조선국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갑자기 제도를 만드는데도 본래의 뜻과 매우 반한다. 권자闕字 등을 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정한 명령으로써 포고하기를 바람.

**甲** 단, 위의 근거를 취할 때는 그 방면에 학문이 있는 자에게 전의詮議하기 바람(이 부지에 ‘福岡’, ‘峇下’의 인장이 찍혀 있다-울긴이).

86 동무(東武): 막부  
87 빈년(頻年): 해마다  
88 보천솔빈(普天率濱): 온 세상  
89 감위(感慰): 감격하고 혼쾌하다  
90 대정(大政): 천황이 행하는 정치

부지  
附紙

乙  
?

5대까지의 휘자는 한 글자를 꺾획하는 것으로 결의한다면, 이 사정을 다시 포고하기 바랍니다. 단, 이것들은 조선국과 응대할 때만 생기는 것이어서 논할 필요가 없지만, 이 역시 황국 종래의 근거를 취하여 결정하기를 바람[이 부지에 ‘慶永’(마쓰다이라 요시나가, 松平慶永, 당시 의정), ‘福岡’, ‘副島’, ‘岩下’의 인장이 찍혀 있음-옮긴이].

부전  
附箋

이 부지附紙 대로 결정하고자 한다.  
[이 부전에 ‘宗城’(다테 무네타리, 伊達宗城, 당시 의정으로 외국관지사)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 조선국과 쓰시마의 왕복은 지금까지 저 나라로부터 받은 감합인을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고잇신(御一新)을 포고했으니 황국 관부(官府)의 인장을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요전에 평결한 외국관인(外國官人)을 쓰시마(對州)에 건네라고 변사(辨事)<sup>91</sup>로부터 인장을 전했는데, ‘외국’을 운운한 문자는 서양 외국과 혼동되어 이런저런 이의가 생겼기 때문에, ‘태정관인’으로 해주시라고 쓰시마 가로(家老)가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이번부터 감합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선국에서 이의를 주장할 것이다.  
(이곳에 ‘副島’, ‘福岡’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부지  
附紙

丙

관인 사용은 역시 외국관인으로 전하기 바람(이곳에 ‘福岡’, ‘岩下’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sup>91</sup> 변사(辨事, 벤지): 메이지 원년(1868) 태정관(太政官) 총재국(總裁局)에 설치한, 서무에 종사한 직원의 이름

부전  
附箋

오늘 소씨의 가로 오시마 도모노조에게 외국관인으로 할 것을 말했는데 승복함.

부지  
附紙

정부로부터 조선국에 전달을 명령하는 것이므로 대정부大政府(태정관을 의미) 인장을 사용하는 것이 지당한 것 같음.

㉠

태정관 통달서를 저 나라에 전달하는 것이므로 쓰시마[對州國]의 조선에 대한 감합인으로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함(이곳에 ‘忠能’, ‘實則’, ‘實愛’, ‘副島’, ‘宗城’, ‘岩下’, ‘木戶’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13**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로 하여금 이전에 품의한 절목에 대해 속히 재가할 것을 청하도록 한 글

상포지<sup>上包紙</sup>에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 내內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라고 적혀 있음. (이곳에 ‘忠能’, ‘豊信’, ‘宗城’, ‘實愛’, ‘岩下’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조정의 일신<sup>御一新</sup><sup>92</sup> 이미 외국에 포고<sup>布告</sup>하였으므로, 한국도 확실히 전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금일에 이르러 그 경위를 정식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이전에 약속한 뜻에 반하고, 저 나라에서도 매우 시기하고 의심할 것입니다. 더구나 작년 이래 본방<sup>本邦</sup>의 곳곳에 표류해 온 한인<sup>韓人</sup>을 나가사키에서 쓰시마로 맞이 해주었으니 속히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표인<sup>漂人</sup>을 호송<sup>護送</sup>하는 사절에 부처 보내는 서한 중에, 정부를 도부<sup>東武</sup><sup>93</sup> 칭해왔는데 앞으로 조정이라고 칭하지 않

92 일신(御一新): 왕정복고

93 도부(東武): 에도막부

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신의 경위를 알리지 않으면 위의 서한을 건네줄 수 없고, 많은 수의 표인이 헛되이 쓰시마(對州)에 머물러야 합니다. 체류에 따른 수고만 요구되니, 부디 일신을 통보하는 것을 비롯해 그 밖에 품의해둔 조목에 대해, 이번에 긴급히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이를 오로지 바랍니다. 이상.

6월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 내(內)의

오시마 도모조조(大島友之允)

외국관(外國官) 어역소(御役所)

**14**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로 하여금 만기친재를 조선에 알린 후 사절 내조의 건은 쓰시마노카미(對馬守) 혼자 조선에 조회하겠다고 상신토록 한글

무진(戊辰)<sup>94</sup>

한사(韓使)가 내조하여 일신의 위업을 축하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취지는 쓰시마노카미(對馬守) 건백서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정(新政)의 경위를 동국(同國)에 통달한 다음에는 사절 내조의 건은 쓰시마노카미 혼자 교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조선국은 종래로 완만(緩慢)한 국풍(國風)이라 사절이 바다를 건너는 준비를 신속히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 나라 사정에 따라 기한은 추후에 말씀드릴 터이니 이것들을 마땅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월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 내(內)의

오시마 도모조조(大島友之允)

외국관(外國官) 어역소(御役所)

---

<sup>94</sup> 무진(戊辰): 1868년

**15** 조선에 일신一新을 알리는 건 등 3건에 대해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지령하는 의안議案

- 조선국에 새로이 대정일신의 통달만 명령할 것.
  - 쓰시마는 종래 금곡金穀 등을 옛 막부의 도움을 받아 국민(번의 백성)을 무육撫育하고 또 무비武備 등도 갖추어온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의諡議한 다음 상당한 지시가 있을 것임.
  - 조선국과 응수應酬하는 예식禮式과 그 밖에 국체에 관계되는 것들은 천하가 평정된 뒤에 분부할 것임.
- 위의 3건으로 먼저 쓰시마對州에 통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6월 17일

**16**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내려줄 인장에 대한 의안

쓰시마對州에 건넬 인장

외국관外國官 (이곳에 '宗城'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위의 인장이라 해도 2개가 있을 이유는 없다. 따라서 소가宗家에 내려줄 인장은 '쓰시마부對馬府' 든가 '쓰시마번對馬藩' 으로 하면 어떠한가라고 보상輔相이<sup>95</sup> 구두로 좋다고 하였다. 그것으로 해결하면 지장이 없겠지만 조선에서 승낙하지 않으면 별도의 마땅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자 한다.

<sup>95</sup> 『조선사무서』에 '補相口口'으로 되어 있지만, 원본에 해당하는 『對韓政策關係雜纂』의 「朝鮮國關係文書」(이 문서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으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레퍼런스 넘버는 JACAR Ref.B03030195800 7/27이다)를 보면, 조심스럽지만 '補相口諠'로 탈초할 수 있다. '補相'은 당시 '輔相'을 이렇게도 쓴 것으로 보이며, '輔相'은 1868년 윤4월 21일자 정체서(正體書)에 의해 설치된 7관(官) 중 행정관의 장관직이다.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관의 '보상' 정원은 2명으로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와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가 이 직임을 맡았다.

## 17 쓰시마 시종侍從, 히젠肥前 시종이 소장少將으로 승진하는 것을 평의한 글

덴쇼天正 18년(1590) 경인庚寅에 쓰시마노카미對馬守 15대조 요시토시義智가 한사韓使를 동반하여 경사京師에 이른다. 조정에서 요시토시의 공을 기려 참의參議에 임명하다. 이를 사양하다. 그래서 시종에<sup>96</sup> 임명하다. 이후 습봉襲封 초의 예에 따라 시종에 임명하고 적자嫡子は 4품에 임명하다. 덴포天保 8년(1837) 정유丁酉에 쓰시마노카미 증조 요시카타義實를 소장에 임명하다. 그 후 지금의 쓰시마노카미에 이르러 전과 같이 시종이 되었다.

쓰시마노카미는 조선국 공무를 취급하므로 소장으로 명하고, 히젠肥前 시종<sup>97</sup>도 외국사무를 취급하므로 똑같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중평衆評을 구한다. (이곳에 '宗城'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sup>98</sup>

부지  
附紙

조선국의 일을 취급하므로 소장으로 임명했는데 내의內意에 따라 히젠 시종도 외국부지관사外國副知官事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똑같이 하고자 한다. 단 보상輔相은 알고 있음(이곳에 '宗城', '忠能', '福岡', '實則', '岩下', '實愛'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부전  
附箋

종4위상從四位上 소장 쓰시마 시종對馬侍從  
정4위상正四位上 소장 히젠 시종肥前侍從

<sup>96</sup> 원문에는 '대종(待從)'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sup>97</sup> 히젠 시종은 히젠노쿠니 사가번(佐賀藩)의 마지막 번주인 나베시마 나오히로(鍋島直大)로, 당시 의장이면서 외국관 부지사=외국부지관사였다.

<sup>98</sup> 『조선사무서』에는 이 문단 전체가 누락되어 있다. 『對韓政策關係雜纂』의 「朝鮮國關係文書」에 의거하여 보충했다 (JACAR Ref.B03030195800 8/27).

## 18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사절 내조의 건을 상신한 것에 대한 평의서

소宗, 宗義達에게 휴가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소宗의 주장.

일신(왕정복고)을 조선에 통달할 때 조선에서 축하사절을 파견하도록 하고자 하는 쓰시마노카미의 의견을 (조선에)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명령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단, 사절파견을 요청해도 신속한 결착(決着)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 ‘宗城’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부전**      사절(왕정복고를 축하하는 조선의 사절) 건은 쓰시마노카미의 의견을 말하  
**附箋**      는 것이라면 별도로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의(衆議)를 구합니다(이 부전에 ‘宗城’, ‘慶永’, ‘忠能’, ‘實則’, ‘實愛’, ‘福岡’, ‘副島’, ‘岩下’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부지**<sup>99</sup>      소 쓰시마노카미의 직명을 운운할 때 대리[心得]는 부적절하다. 마땅  
**附箋**      한 글자를 고안하기 바람.

제도상으로 말하면 외국관지사가 1명, 부지사가 1명이므로, 조선만 취급하는 전무(專務)라면 판관사(判官事)<sup>100</sup>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쓰시마노카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지사직에 임명해야 하는가. 역시 당분간은 구래와 같이 취급한다는 명령이니 우선은 직명을 내세우지 않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직명을 내세울 때는 아마 본말을 잃게 될 것이다(이곳에 ‘福岡’, ‘副島’, ‘岩下’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sup>99</sup> 이 부지는 본문의 어디에 붙은 것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對韓政策關係雜纂』의 「朝鮮國關係文書」(JACAR Ref.B03030195800 10/27)에서 “살피니 부지인 것 같지만 어디에 속하는지 자세히 않다”고 주해해두었다.

<sup>100</sup> 외국관 부지사 밑의 3등관으로 정원은 6명이다.

## 19 쓰시마노카미對馬守로부터 조선에 만기친재를 알리는 서한의 안案

일신을 소가宗家로부터 조선국에 알리는 문안(이곳에 '宗城'의 인장이 찍혀 있다-윤킨이)

조정에서 쓰시마[對州]에 내린 초안이지만, 다시 개정을 가한 본서本書는<sup>101</sup> 오시마 도모노조가 제출한 문서의 메이지 2년(1869) 분에 철해져 있다.

아방我邦의 황통皇統이 한 계통으로 이어져 대정大政을 총림總攬한 것이 지금까지 이미 2천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로 병마兵馬의 권한을 모두 무장武將에 위임하고 외국과의 교제도 아울러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승평昇平한 세월이 오래되니 예전부터 유행하던 폐단이 없을 수 없어서 일과 때가 서로 어긋났습니다. 이에 우리 황상皇上이 강기綱紀를 경장更張하고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했습니다. 그리고 귀국과의 교의交誼는 이미 오래되었으니 더욱 정성으로 결교結交하여 만세토록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황상의 성의誠意입니다. 이에 사절을 보내 구호舊好를 닦고자 합니다. 이 뜻을 양지諒知하기 바랍니다.

지당하여 흠잡을 데가 없다. [이곳에 '忠能', '實愛', '慶永', '實則', '經之'(나카노미카도 쓰네유키, 中御門經之, 당시 議定)의 인장이 찍혀 있다-윤킨이]

---

<sup>101</sup> 본서(本書): 정식 문서

국역

조선사무서  
(1)

제3권

# 3

## 『조선사무서』 제3권

메이지(明治) 2년(1869)

### 01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조선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2명을 도쿄에 재근시킬 것 등을 명하는 글

5월 13일 발송함

소宗 쓰시마노카미 도노殿 고요닌추公用人中

외국관外國官 판사判事

조선국의 건은, 옛 막부 시절에는 접대 방법 등을 그쪽 번藩<sup>1</sup>에 위임했는데, 이번에 점차 제반 제전制典<sup>2</sup>을 거행하시게 되었으므로 다시 조약을 체결하실 예정입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명령이 있을 것이니 이를 명심할 것.

-. 이 어용御用에 관해 대소사를 막론하고 불시에 묻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가신

1 번(藩): 쓰시마번

2 제전(制典): 제도와 전례

[家來] 가운데 조선국 사정을 분명하고 상세히 알아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자 2인을 도쿄에 재근시킬 것.

- 조선국의 현재 동정動靜, 국왕보다 낮은 자, 서민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할 것.
  - 그 나라의 관직 및 기타 제도의 서류가 있을 것이니 조사해서 제출할 것.
  - 그 나라 지도와 물산의 대략, 그리고 일본과 무역을 널리 개시한 후 흥정할 수 있는 품목의 전망에 관해서 그쪽 번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각자 기탄 없이 헌언獻言할 것.
  - 조선국의 통사通詞<sup>3</sup> 가운데 지금 그 학과學科에 숙달한 자들이 있다면, 어용御用과 관계된 일도 있을 것이다. 우선 그 이름과 얼굴을 조사해서 보고할 것.
- 이상의 사항들을 명함.

5월

## 02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조선에서 돌아와 견문한 대로 별지를 첨부하여 상신 한글

조선국과의 공무와 관련하여 응접한 개략은 별지에 진술한 대로입니다. 저 나라는 예로부터 완만緩慢한 풍습이니, 특히 이번의 비상한 대사건에 관해 분부하시더라도 저들이 일시一時의 결의를 할 수 없음은 원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번 담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매몽롱曖昧朦朧하게 갖가지 술계術計로 말을 좌우로 돌리면서 한갓 시일의 천연遷延만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태情態의 탐색을 마쳤는데, 저 조정의 의론도 실은 황조皇朝에 대해 실화失和하는 것이 좋은

<sup>3</sup> 통사(通詞): 역관

계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친교親交는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옛 막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韓國과의 교통交通을<sup>4</sup> 명족대신名族大臣에게 맡긴다면 지금까지처럼 적례敵禮로<sup>5</sup> 교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 친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 조정에 ‘황皇’을 칭할 경우 무엇보다 만청滿淸의 기휘忌諱일 뿐만 아니라, 이상履霜의<sup>6</sup> 우려로 훗날 결국 신하의 예를 취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황상皇上帝께서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시어 더욱 인교隣交를 돈독히 하려는 성의誠意에 대해 저들이 속으로는 실제로 친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리상條理上 이를 거절할 말이 없으니, 시대時態의 변천과 사리의 당부當否는 불문하고, 단지 구장舊章을 따르고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구실로 같은 질문과 답변만 반복하면서 부질없이 일력日力을<sup>7</sup> 허비하고, 신정新政을 통보하는 사절로 하여금 공간公幹의 요령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은 교역에서 곡화穀貨의 수입을 금지해서 주州(쓰시마주)의 생계를 방해하여 오직 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만을 주무主務로 했습니다. 쓰시마[對州]의 모책謀策이 다하면 직접 우리 조정에 주선해서 결국 그들의 뜻에 따를 것임을 통찰하고 이러한 간책奸策으로 나온 것이니 실로 몹시 가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을 신속하고 급하게 도모한다면, 저들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해서 오히려 그 술책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라도 온당무사穩當無事를 위주로 하여 계속 그 경내에 머물면서 의론議論만 갖고 다룬다면 결과 없는 장론長論이 될 것이니, 끝내 수고롭기만 할 뿐 공功이 없을 뿐만이 아니요, 현재 내외의 시기時機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들의 정태情態로써 앞으로의 형세를 생각해보건대, 이번 담판의 결과는

4 교통(交通): 외교

5 적례(敵禮): 상호 대등한 예. 항례(抗禮)

6 이상(履霜): 서리를 밟는다는 뜻으로, 『周易』坤卦 象傳에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履霜 堅冰至)”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이다. 미세한 조짐을 보고 앞으로 닥칠 좋지 않은 일을 미리 깨닫는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7 일력(日力): 세월

결국 저들의 수도로 가 국왕과 면담하여 조정친교<sup>朝廷親交</sup>의 수락 여부 및 공간<sup>公幹</sup>의 성패를 결판내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진난<sup>壬辰亂</sup> 이후로 입경<sup>入京</sup>을 굳게 불허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억지로 입경해서 침정<sup>沈靜</sup>을<sup>8</sup> 위주로 한다고 해도 만일 저들이 병력으로 대항하면 부득이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제어하는 방법은 은휼·위위를 병행하여 관寬·맹猛을 임기응변하는 데 있습니다. 결의의 경우, 가령 하루아침에 파국이 생기더라도 명의<sup>名義</sup>와<sup>9</sup> 조리<sup>條理</sup>에 따라 과감히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위<sup>國威</sup>를 세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완급이 충분히 그 요령을 얻지 못할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을 처리하는 대요<sup>大要</sup> 및 관寬·맹猛 두 길의 근저<sup>根底</sup>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저 나라에 착수하는 순서와 목적도 세우기 어려우니 이러한 전말을 상의하신 후에 모쪼록 지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예전부터 진행되어온 상황도 있으니 쓰시마노카미로서도 한층 더 분발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패를 확실히 한 다음에 조관<sup>朝官</sup>을 도한<sup>渡韓</sup>시킨다면 모두 친재<sup>親裁</sup>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국사<sup>國使</sup> 등을 보내신다면 편벽하고 고루한 조선의 국습<sup>國習</sup>으로 인해 오히려 위광<sup>威光</sup>을 더럽히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상은 소신<sup>小臣</sup>이 도한<sup>渡韓</sup>해서 저곳의 체세<sup>體勢</sup>를 직접 견문한 현실에 따라 어리석은 생각을 아뢰는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말씀드립니다.

6월

오시마 도모노조

외국관<sup>外國官</sup> 어역소<sup>御役所</sup>

<sup>8</sup> 침정(沈靜): 평온함, 침착함

<sup>9</sup> 원문은 '名儀'로 되어 있다.

무진戊辰 10월

조강朝綱<sup>10</sup> 한번 떨친 전말을 조선국에 통보하는 사절을 파견하는 일과 관련하여, 전에 선문先問의 서계를 전달하고 새 입장을 찍는다는 것 등을 고지했으며, 신정新政<sup>11</sup> 통보의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의 임역任譯, 훈도訓導라는 자들이 조선국에 일본판사(日本判事)라고 부르는 전어관(傳語官)이 30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훈도와 별차(別差)라고 부르는 자가 2명씩 서울에서 출장 나와서 양국 통교에 관한 용무를 하달하면, 대체로 임역과 임관(任官) 등이 모습을 갖춥니다. 서계의 사본을 접수해서 대체로 양국 간 규외(規外)의 서계와 수작의 의례(儀禮)는 먼저 서계의 사본을 열어본 후 수령함. 즉시 동래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상도 동래군의 부사. 본조(本朝)와의 통교에 관련된 자. 우선 부사가 수도에 내보(內報)하는 장계를 보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부속서 1**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대정일신大政一新을 조선에 통보하기 위해 선문사先問使를 보내면서 그 뜻을 통고한 글

다름이 아니라, 본방本邦은 최근 시세時勢가 일변하여 정권이 황실로 모두 돌아갔습니다. 귀국의 입장에선 인의隣誼가 본디 두터우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별사別使를 파견해서 전말을 자세히 진술할 것이니 여기서 장황히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불녕不佞한 저는 지난 번에 직명을 받고 경사京師에 조현朝見했는데, 조정에서 특별히 옛 훈공을 기려서 좌근위소장左近衛少將으로 가작진관加爵進官하시고, 다시 교린직交隣職을 명하여 영원히 전하며 번치 않게 하시고 또 증명인기證明印記를<sup>12</sup> 하사하셨습니다. 요컨대 양국의 교제를 더욱 두텁게 해서 성신誠信을

<sup>10</sup> 조정의 기강(紀綱). 여기서는 대정일신을 가리킨다.

<sup>11</sup> 원문은 '御政通報'로 '新'자가 누락되어 있다.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는 것이 예려<sup>13</sup> 소재니, 어찌 감패<sup>14</sup> 다하겠습니까?

이번 별사<sup>15</sup> 서한은 신인<sup>16</sup>을 찍어서 조정의 성의<sup>17</sup>를 표할 것이니, 귀국도 마땅히 영가<sup>18</sup>(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도서<sup>19</sup>를 받은 것은, 그 원유<sup>20</sup>(유래)가 모두 후의<sup>21</sup>에서 나왔으니 쉽게 변경해선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조정의 특명이니 어찌 사<sup>22</sup>로써 공<sup>23</sup>을 해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불녕한 정실<sup>24</sup>을 이와 같이 알리오니, 귀국에서 부디 체량<sup>25</sup>하시길 깊이 바랍니다.

11월

신정<sup>26</sup>의 통보를 위해 조의<sup>27</sup>에서 서계 초안을 만들고 쓰시마의 집정<sup>28</sup>직<sup>29</sup>에 있는 자에게 대수사<sup>30</sup>의 사절 명칭으로 도한<sup>31</sup>할 것을 정하다.

## 부속서 2 쓰시마노카미<sup>32</sup>가 대정일신을 조선에 고지하는 글

아방<sup>33</sup>의 황조<sup>34</sup>가 연면<sup>35</sup>히 일계<sup>36</sup>로 이어져서 대정<sup>37</sup>을 총람<sup>38</sup>한 지 2천여 년인데, 중세 이래로 병마지권<sup>39</sup>을 모두 장군가에 위임하고 외국교제도 모두 관장하게 하셨습니다. 쇼군 미나모토노이에야스<sup>40</sup>가 에도에 막부를 연 뒤로 또한 10여 세대가 지났는데, 승평<sup>41</sup>한 세월이 오래됨에 유폐<sup>42</sup>가 없을 수 없어서 일<sup>43</sup>과 시세<sup>44</sup>가 어긋났습니다. 이에 우리 황상께서 등극하시어 강기<sup>45</sup>를 경장<sup>46</sup>하여 만기<sup>47</sup>를 친재<sup>48</sup>하고 인호<sup>49</sup>

12 인기(印記): 관아에서 사용하는 도장

13 예려(叡慮): 군주의 심려(心慮), 성려(聖慮)

14 감패(感佩): 마음속으로 감동해서 영원히 잊지 않음

를 크게 닦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국은 우리에게 대해 교의交誼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응당 신의와 정성을 돈독히 하여 만세불변으로<sup>15</sup> 돌아가는 것이 우리 황상의 참된 뜻입니다. 이에 사개使介(사절)을 보내서 옛 정성을 찾고자 하니 부디 양찰하기 바랍니다.

## 12월

며칠 전 전달한 선문서계를 봉출奉出해야 한다는 뜻으로 점차 사람을 보내 훈도에게 대응하게 했다. 그런데 한 해가 이미 다 지났다는 이유를 내세워 내년 정월에 다시 논의하자고 역지로 말했으므로, 제안한 대로 승낙하다.

## 기사년(1869) 정월

금년 봄에 이르도록 가부의 대답이 없었으므로 전어관傳語官을 시켜 여러 차례 답관하게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상의를 다하고 있으니 경보京報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고 청하다. 이후 훈도는 병을 핑계로 내려오지 않다.

## 2월

이번 달 초순에 답변을 여러 차례 재촉하던 중 오시마 도모노조가 도한渡韓하고, 본국의 지휘도 있었다. 훈도를 내려오게 하라는 엄한 훈령이 16일에 하달됐으므로, 계속 일이 지체될 경우 양국의 대사大事와 조의朝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전관幹傳官을 통해 전어관(傳語官) 중의 우두머리인 자<sup>16</sup> 긴박하게 대응하

<sup>15</sup> 원문은 '以歸(萬)世不渝'로 '萬'자가 누락되었다.

<sup>16</sup> 원문은 '兵長タルモ'로 되어 있는데, '兵'은 '其'의 오기이다.

게 하고, 또한 관수館守, 간사관幹事官 쓰시마의 원역(員役)으로 오직 인교(隣交)에만 관계하는 자 이 엄중하게 교섭하다. 그런데 서계의 이례異例를 구실로 이리저리 이난異難을 제기 했으므로, 그 경위를 자세히 변백辨白<sup>17</sup>하다. 그러자 훈도도 반발명半發明<sup>18</sup>하기를, “곧 며칠 내로 경보京報가 도착할 것이니 답변은 이번달까지 기다려달라. 만일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면 다음달 3일을 기한으로 서계를 봉출하겠다.”라고 하다.

같은 달 29일 훈도가 입관入館하여 간전관의 저택에 와서 말하길, “어제 경보京報가 도착했는데 조정의 의논이 매우 어려워, 그 대의大意를 글로 적었다.”라고 하면서 진문眞文<sup>19</sup> 문서 1통을 제출하다. 간전관이 한번 보았는데, 글의 내용이 조리에 맞지 않고, 게다가 거칠고 불손한 문체였으므로 ‘이러한 글은 관리役筋에게<sup>20</sup> 전달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그 자리에서 물리치다. 그러자 훈도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서울 조정의 논의에 따라 명령을 받은 것이어서 서면에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불손한 문체 등은 차치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상관에게 아뢰어 달라.’라고 하면서 간청했으므로 우선 간전관이 이를 말아서 관리에게 보이다.

**부속서 3** 우리 대정복고大政復古를 통고하는 글이 구격舊格에 어긋남을 훈도 안 준경安俊卿이 힐난한 글

◎ 진문眞文 사본

귀국과 폐국弊國 두 나라가 교호交好한 이래로 의義가 형제의 공회孔懷와<sup>21</sup> 같고 신信이 하산河山的 대려帶礪와<sup>22</sup> 같았다. 화관和館을<sup>23</sup> 설치해서 오직 상련相憐에 힘쓰는 것이 본디 대경大經이요 대법大法이니, 이후 300년 동안 언제

17 변백(辨白): 사리를 밝혀 설명함

18 여기서 ‘發明’은 해명, 변명의 의미이다.

19 진문(眞文): 한문

20 관리(役筋): 오시마를 가리킴

21 공회(孔懷): 형제간에 서로 몹시 걱정함을 비유하는 말

경법經法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적이 있었는가? 이는 비단 윗사람의 행실을 아래서 본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양국의 알선하는 자들이 경법經法을 복응服膺해서<sup>24</sup> 예전의 수목修睦을 변치 않게 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직책을 맡아 일을 관장하는 자들이 이것을 버리고 어디서 구하겠는가? 그런데 이제 순부順付한<sup>25</sup> 서계가 왜관에 도착한 뒤로 몇 달간 공간公幹을<sup>26</sup> 다룬 것이 비단 몇 차례가 아니다. 하지만 폐일언蔽一言해서 서계의 왕복은 그 중함이 자별自別하니, 오직 격식을 크게 위배하지 않았다면 어찌 지체하며 봉납하지 않았겠는가?

귀국 선박이 오면 관례상 조정에 보고하니, 가져온 서계 또한 마땅히 남궁南宮에 올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았는데, 봉투의 직함에 전과 다른 것이 있었다. 설령 그것이 가급加綴한 호칭임을 인정하더라도, 성자姓字 아래 ‘조신朝臣’이라는 두 글자에 이르러선 이것이 무슨 격례格例인가?<sup>27</sup> 이에 따라 회답할 때 이 예를 따른다면, 비록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아마도 이를 들은 각국으로부터 비웃음을 살 것이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부차적인 일이다. 서계의 문자 또한 격외格外的 말들이 많고, 심지어는 ‘사私로써 공公을 해친다.’라는 구절까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조해서 보낸 도서圖書를 반납한다는 설에 이르러선, 나도 모르게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올라간 혀가 내려가질 않는다. 애초에 주조를 청한 것은 비단 귀국의 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의 총사寵賜와<sup>28</sup> 관계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를 변개變改해서 새로 주조한 인장을 쓰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구장舊章을 따르고 인호隣好를 더욱 돈독히 하는 뜻인가?

이것이 모두 봉출捧出할 수 없는 대요다. 그러므로 즉시 동래부와 부산 두 사또께 아뢰어 선박이 왔음을 보고하면서 함께 거론한 것이다. 그런데 회하

回下를<sup>29</sup> 받아보니, 비단 물리치라는 교시뿐 아니라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는 질책까지 있었다. 황송해하며 대죄待罪하는 우리의 딱한 처지는 가련히 여길 것이 없지만, 화관和館의 여러 공들로 말하더라도 마땅히 사정에 근거해서 귀주貴州(대마주)에 통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갑자기 신인新印을 사용해서 도리어 무한한 공무를 만들면서 한갓 사면事面을<sup>30</sup> 손상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기를 깊이 바랄 뿐이다.

기사(己巳) 2월 일

훈도訓導

같은 달 그믐날 관수館守와 간사관幹事官이<sup>31</sup> 훈도와 면담하다. 훈도는 “별한別翰을 접수하는 일에 관해, 이례異例의 서식은 봉출捧出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정에서 엄명이 있었다. 부사가 처음에 임역任譯에게<sup>32</sup> (교섭을) 끊지 말라고 지시해서 오는 3일에 봉출捧出하기로 굳게 약속했지만, 이는 만에 하나 경보京報가 없을 때의 조치였다. 이제 확실한 통지가 하달됐으니 조정의 명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으므로, 서식은 며칠 전부터 개유開諭한 대로 조금도 이례異例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반복해서 변론하다. 하지만 끝내 의론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첫답이 올 때가 되다. 하여튼 3일이 미리 약속한 기한이므로, 그 때 나머지 논의를 마저 하겠다고 하다. 훈도에게 출판出館을 허락해서 임소任所로<sup>33</sup> 물러가다.

22 대려(帶礪): 황하가 옷 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이 솟들처럼 작아진다는 뜻으로 오랫동안 변치 않음을 의미한다.

23 화관(和館): 왜관(倭館)

24 복응(服膺): 마음 속에 새겨서 잊지 않음

25 순부(順付): 인편에 서한 등을 부침

26 공간(公幹): 공무(公務)

27 격례(格例): 규칙과 관례

28 총사(寵賜): 임금이 총애해서 물건을 하사하는 일

29 회하(回下): 상주에 대해 답변을 내림

30 사면(事面): 사체(事體)

31 원문은 ‘韓事官’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32 임역(任譯): 역관

3월

이 달 3일, 훈도가 간전관에게 말하길, “얼마전에 제출한 진문眞文의<sup>34</sup> 뜻은 서울에서 조정의 논의에 따라 우리에게 엄명한 대요大要이다. 이를 물리치더라도 부득이한 일이지만, 문적文籍이<sup>35</sup> 없으면 부사가 알아들을지도 불확실하고, 서울에 아뢰는 데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진문眞文의 대의에 대해 답서를 언문諺文으로 건네달라.”라고 간청하다.

같은 날 관수와 간사관幹事官 두 관원이 훈도와 면담한 후 지시를 내리다. 그 대의는 다음과 같다.

‘별한別翰의 접수에 관해 (훈도가 옮긴이) 며칠 전 경보京報의 취지에 따라 주장했지만, 서식 등의 변론이라면 훗날 몇 번이라도 응답하겠다. 또한 귀국 조정의 논의에 조리가 있다면, 서계의 개찬改撰에도 힘을 쓸 것이다. 대체로 통신通信하는 나라로서 일이 있어서 고지하는 서계를, 귀국은 한번 펴보지도 않고 단지 서식과 자구 등 지엽말단적인 것을 따지느라 부질없이 일력日力を 허비할 뿐만 아니라 사명使命을 국경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니, 이를 인의상부隣誼相孚의 도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미 확고한 약속도 있으니, 금일에 이르러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반드시 서계를 접수하라.’라고 절박하게 따졌는데, 저들도 갖가지 말로 방어했으므로 결국 논쟁이 밤을 새워 다음날인 4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훈도가 차츰 말하길, ‘개유開諭한 조리를 나는 충분히 깨달았지만, 어쨌든 조정의 명이 지엄하여 주선할 방도가 거의 막혔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미력이 닿는 한 움직여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어제 요청한 의문변백疑問辨白의<sup>36</sup> 글을 준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주선해보겠다.’라고 간청하다. 그 뜻에 따라 두 관원이 은밀히 상의한 내용을 간전관의 필기로 언문諺文으로 기록

33 임소는 임역(任譯)이 주거하는 곳이다.

34 진문(眞文): 한문

35 문적(文籍): 문서

36 의문변백(疑問辨白): 의문에 대해 해명함

하고, 간전관이 훈도에게 건네준다. 출관出館을 허락하다. 또한 그에 대한 회답은 오는 6일이나 7일까지 알려주기로 하다.

#### 부속서 4 안준경이 보내온 힐난문에 답변하는 글

언문諺文 구술서 사본

관수와<sup>37</sup> 간사관이 저에게 신칙하신<sup>38</sup> 변론을 이에 언문諺文으로 기록하여 영감令監에게 보냄.

교린의 도는 성신誠信을 주장함에 달려있거늘, 언言이 진실과 어긋나고 명名이 실제와 상반된다면 어떻게 성신誠信을 입에 올리겠는가? 조정에서 예전에 우리 군상君上的 관계官階를 올렸으니, 즉시 그 사실을 조선에 알리는 것은 인의隣誼의 당연한 바다. 그런데 이제 훈도의 요청에 따라 주군이 이미 버린 구관舊官을 칭해서, 구차하게 한때의 온당함을 달갑게 여겨 안으로 조명朝命을 속이고, 밖으로 인방隣邦을 기만하여 양쪽 사이에서 신의를 잃을 수 있겠는가? 훈도가 권의權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로 볼 때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미 무진년(1868)의<sup>39</sup> 전례가 환히 있다. 만약 그 진술이 부족하다면 공公이 승관昇官한 사정을 필기해서 덧붙이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다른 것을 논하겠는가?

또 ‘조신朝臣’ 두 글자와 같은 것은, 우리 조정의 오랜 제도로서 씨족의 준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성姓 안에 ‘조신朝臣’이 있고, ‘진인真人’이 있고, 기타 몇 가지 이름에 각각 차등이 있어서 성자姓字와 연용連用해서 갈팔닐葛八混이라고 불렀으니, 선성先聖이 씨족을 중시하신 뜻이 두텁다고 할 만하다. 이번에 조정이 복고復古해서 고제古制를 연구해서 사용했는데, 훈도는 ‘조신朝臣’이라는 문자를 오해해서 ‘조정의 신하’라고 생각했다. 비록

그러한 의심에 다소 근거가 있는 듯하지만, 보천솔토<sup>普天率土</sup>에<sup>40</sup> 누군들 왕의 신하가 아니겠는가? 이미 앞에서 국호와 관함<sup>官銜</sup>을 적었는데 어찌 다시 조정의 신하라는 문자를 언급할 리가 있겠는가? 그뿐 아니라 과거 신빙<sup>信聘</sup>의 서식에서 막부 집행<sup>執政</sup>이 ‘조신<sup>朝臣</sup>’으로 칭한 전례가 있고, 우리 선군<sup>先君</sup>도 이를 사용했으니, 훈도가 고사에 밝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의심되는 바가 있다면 그 구적<sup>舊籍</sup>을 검사해서 이 일이 허황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일은 원래 우리 국제<sup>國制</sup>에 관계되는데, 조선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훈도가 말하길, “서체<sup>書體</sup>가 크게 격식에서 어긋난다.”고 하고, 또 “격외<sup>格外</sup>의 말이 많다.”라고 하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서계 중에 ‘황<sup>皇</sup>’자는 쓰면 안 되고, 자행<sup>字行</sup>의 위치가 원래 있어야 할 행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이것이 무슨 특론<sup>特論</sup>인가? 사리를 이해하지 못함이 이처럼 심하니, 실로 경악과 탄식을 금치 못하겠다. 대체로 서계의 체재와 자구의 위치는 물론 정규<sup>定規</sup>가 있지만, 문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교린의 우의<sup>友誼</sup>는 그 실제에 따라 실제를 고해서, 국휘<sup>國諱</sup>를 피하는 것을 제외하면 써선 안 되는 글자도, 말해선 안 되는 일도 없는 것이다.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천황의 한 가지 성씨가 예로부터 변치 않고 억조창생에 군림하시어 대정<sup>大政</sup>을 총람<sup>總攬</sup>하신 지 이제 2천여 년이 된다. 이 일은 실로 조선국에서 본디 알고 있는 바이니, 서적<sup>書籍</sup>에 그 개략을 기재한다면 몹시 장황할 것이다. 방금 본방<sup>本邦</sup>의 정체<sup>政體</sup>를 다시 혁신해서 천황께서 만기<sup>萬機</sup>를 친재<sup>親裁</sup>하시게 되었으니, 그 사실을 상세히 조선에 고하는 것은 도리상 마땅하다. 그 ‘황<sup>皇</sup>’자를 칭하는데 무슨 거리낄 바가 있겠는가? 더구나 옛날에 조선에서 우리 주<sup>州</sup>에 보낸 글에서 서토<sup>西土</sup>를<sup>41</sup> ‘천조<sup>天朝</sup>’, ‘황조<sup>皇朝</sup>’라고 칭했다. 만약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행<sup>字行</sup>의 위치 같은 것은, 예전에 막

부에서조차 정규定規가 있었으니 그 체재體裁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또 “사사로써 공공을 해친다.”는 구절에 이르러선 훈도의 말이 더욱 부당하다. 이제 대략 진술해서 의혹을 풀어보건대, 중고中古에 아방我邦이 병란의 때를 당하여 정부의 명령이 사방에 행해지지 않았다. 우리 주州(쓰시마)같은 경우는 또 공식적인 명을 기다리지 않고 사사롭게 조선과 통신通信했다. 도서圖書의 지급鑄給 같은 것은 원래 교제의 정성이 미친 바이므로 오늘날 갑자기 변혁해선 안 될 듯하나, 이번에 황조皇朝에서 강기綱紀를 일신해서 더욱 인교隣交를 돈독히 하고자 인기印記의 하사를 특명하여 그 성의盛意를 드러냈다. 요컨대 조정에서 다시 인호隣好를 닦고자 인신印信을 하사할 것을 특별히 명하셨으니, 이는 양국의 공의公義이자 공교公交요,<sup>42</sup> 예로부터 받아온 도서圖書를 오늘날 변혁하길 원치 않는 것은 본주本州의 사교私交이자 사정私情이다. 공의公義에 근거해서 사정私情을 결단하는 것이 실로 군신대의君臣大義이니, 이는 사사로써 공공을 해칠 수 없는 이치이다. 하지만 본주本州는 예로부터 인의隣誼를 중시했으므로 사리상 부득이하다는 뜻을 표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 사유를 살피지 않고 다시 한갓 입만 아프게 해서 인의상부隣誼相孚의 도에 반하는 것은, 저쪽에서 사체事體를 잃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년 3월

37 원문에는 ‘館司’로 기록되어 있다.

38 원문에는 ‘申飭’이 ‘申飾’으로 기록되어 있다.

39 원문에는 ‘戊戌年’으로 기록되어 있다.

40 보천솔토(普天率土): 천하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詩經』「小雅」“北山”장에서 “하늘 아래에 왕의 땅 아닌 곳이 없으며, 물가에 이르기까지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다.”(普天之下莫非王土 率土之濱莫非王臣)고 한 데서 연유했다.

41 서토(西土): 중국을 가리킨다.

42 원문에는 ‘公行’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7일, 훈도가 병을 핑계로 내려오지 않다. 8일 밤, 오라는 말을 전하다.

9일, 훈도가 들어오다. 관수와 간사관 두 관원이 며칠 전 전달한 변백辨白의 구술서의 당부當否에 관해 부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신문訊問했다. 그러자 훈도가 말하길, “그 뒤에 또 경보京報가 내려왔는데, 조정의 의론이 더욱 복잡해져서 좀처럼 관소館所에서 보낸 구술서를 등문登聞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어쨌든 이례異例의 서계는 출송出送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서, 내 마음가짐이 등한하다는 이유로 호되게 견책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것이다. 나라의 사정國情을 토로하는 것은 크게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도 프랑스와의 전쟁 이후 무신이 권력을 전횡하여 미증유의 겸관兼官 등도 시작됐으니, 문관의 인물들이 실망하여 머뭇거릴 뿐이다. 원래 무관은 한때의 혈기로 과단果斷의<sup>43</sup> 옹론雄論을 많이 떠들지만, 국가의 장계長計에 있어선 어떡하겠는가? 지금까지 일본과의 교통交通(외교)은 모두 문관들이 다루었지만, 얼마전부터는 무관의 건의建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지금 나의 무리한 궁리로 서계를 봉출할 경우 즉시 엄벌에 처해지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뒤에는 공무 또한 더욱 막힐 것은 물론이니, 우선 일을 급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점차 공을 이루는 수밖에 없다. 이를 부디 승낙해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열심히 간원하고, 며칠 전 전달한 서면의 가부 여부에 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다. 전후 면담에 응하지 않은 내막을 숙고하니, 변백弁白의<sup>44</sup> 글과 관련하여 저들이 더 이상 이난異難을 내세우기 어려우므로 나라의 사정으로 핑계를 돌려서 둔사遁辭로<sup>45</sup> 한때를 모면하려는 술책으로 생각되었으므로, 저들의 전일의 응답이 두서가 없는 이유를 따지고, 당장 서계를 봉출捧出하기 전까진 출관出館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관소館所에 잡아두다. 또한 서한에 관한 경위와 책론責論한 바를 정리해서 훈도가 언문諺文의 구술서를 제출하다.

43 원문에는 ‘果斷’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44 원문에는 ‘弁白’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45 둔사(遁辭): 모면하려는 말

부속서 5 일신통보一新通報의 서한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진술한 안준경  
서한의 번역문

언문諺文 번역<sup>46</sup>

며칠 전 써주신 언문 각서는<sup>47</sup> 자세히 배견拜見하고 그 연유를 부사께 아뢰었다. 부사께서는 “그렇다면 너는 장차 어떻게 하고 싶기에 이렇게 와서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공무는 실로 내외양난內外兩難의 일이니, 아래서 좌우할 수 없습니다. 관중館中에서 이렇게 말한 사정 등을 서울에 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다. 사또의 말씀에, “조정에서 온 분부는 ‘양국의 교린지도交隣之道는 구장舊章을 따르고 조약을 준수하여 오직 성신誠信을 위주로 할 뿐이다. 서계의 서식이 만약 예전 규칙과 다르다면 봉상捧上하지 말라.’는 처분이니, 서계의 봉납 여부를 나와 훈도가 여기서 임의로 정할 수 있겠는가?<sup>48</sup> 훈도가 관중館中の 이야기와 사정은 내게 자세히 말했지만, 우리의 이야기와 조정의 처분은 관중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이는 무슨 영문인가?”라고 하시면서 엄책嚴責을 받았다. 그래서 송연悚然하여 내려오게 된 것이다.

기사년 3월 일

훈도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훈도를 관館에 잡아두라는 분부가 있었다. 그 사이에 간전관 이하 통사通詞들로 하여금 정태情態를 탐지하게 했는데, 단지 답답하고 낙

46 원문은 ‘諺文和解’이다. 와케(和解)는 외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47 원문은 ‘가키츠케(書付)’로 기억이나 기록을 위해 적어둔 글을 뜻한다.

48 원문은 ‘書契ノ書契之捧不捧ヲ吾與訓導能自此任意乎’라고 되어 있으나, 원래는 ‘書契ノ書式方若有異於前規ノ勿爲捧上與申處分ナラバ書契之捧不捧ヲ吾與訓導能自此任意乎’이다.

담한 모양일 뿐 조금도 중간에서 농간의 술책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임소任所까지 출관出館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청하면서 앞으로도 신명身命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애절하게 계속 탄식했으므로, 앞으로 며칠을 더 관館에 머물게 한다면 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보냈다. 당시의 평결評決, 그리고 관館에 머물렀을 때 관수 및 간전관과 논담論談한 경위, 전어관 사이에서 내화內話한 내용은 번잡다단煩雜多端하므로 생략한다.

14일 관수가 훈도에게, “이번의<sup>49</sup> 공무는 여하간 부사를 대면하지 않으면 양쪽의 정실情實이 관철되지 않으니, 오는 24, 25일 중에 제가 다례茶禮를 준비하여 연청宴廳에서 향후 방침에 관해 직접 논의할 것이다. 기한을 정해서 답변하라.”라고 통지하다.

대수사大修使, 도선주都船主의 사택으로 훈도를 불러들여 다음과 같이 말하다.

‘이번에 우리나라 조정朝政이 일신一新한 경위를 통지하는 사절이 건너왔으므로, 규외規外의 사절이 귀방貴邦의 이목을 놀라게 할까 우려하여 그 전말을 사전에 별한別翰을 통해 고지했다. 그런데 그 서한의 서체書體 등 지엽적인 논란만 벌어져 한갓 세월을 허비하고, 전혀 신정新政 통보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면목이 없는 일이니, 별한의 가부可否와 관련한 논쟁은 일단 놓아두고 대수사의 서한을 봉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사절은 전부 규외規外이다. 그러므로 옛 막부 교제의 규칙 등에 구애대선 안 되며, 특별히 부사가 연청宴廳에 나와서 서계를 접수하는 등 급편권의急便權宜의 방도를 조처하기 바란다. 그런 뒤에 양국의 교제에 관한 모든 체통을 어찌면 강정講定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내宇內의 형세는 매사 실용을 위주로 하니 간이簡易하고 질략賈略함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시기이므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그러자 훈도는, “담관의 주의主意는 각별하게 받들겠지만, 선문先問의 별한이

---

<sup>49</sup> 원문은 ‘此度’를 ‘政度’로 잘못 기록했다.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대차大差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격例格이 있으니 내가 즉답하긴 어렵다. 부사께 아뢴 뒤에 답변하겠다.”라고 하다.

같은 날 훈도의 출관出館을 허락하다.

18일, 훈도가 입관入館하다. 관수와의 다례茶禮에 관해 동래와 부산의 두 사또가<sup>50</sup> 병 때문에 출청出廳할 수 없으므로 기일을 당분간 연기해달라고 청했으므로, 그렇다면 조약 외이긴 하나 시의時宜가 부득이하니 동래, 부산 두 곳에 직접 가서 면담 하겠다고 하다. 그러자 훈도는 ‘두 사또께서 출청도 어려울 정도의 병을 앓고 계시니, 설령 출장을 하더라도 면담은 주선할 수 없다. 그러니 조금 쾌차할 때까지 부디 유예해 줄 것’을 청하고, 또 대수사 서계의 접수는 예격例格이 있으니 당분간 기다려달라고 하다.

같은 날 훈도가 전어관을 통해 ‘대구 지품(地品)에서 명이 내려와 오는 21일에 출발할 예정’이라는 말을 전해 오다. 이 대구행의 시말을 숙고하니, 지금까지 간혹 대구에 간다고 하고 서울에 올라가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 대구 감사監司는 한 도道의 수령이니 그 직책이 무겁지만, 양국 교제의 대사를 재결하지 않음은 물론, 혹시 서울로 불러 올라갔다는 것도 모두 없었던 일은 아닌지. 그 이유는, 훈도의 역류를 시작으로 다례茶禮의 협상, 대수사 서한 등 여러 가지 경과로 볼 때 저 나라에도 대단히 절박한 상황일 것이니, 결국 훈도가 대구의 복귀 명령에 따라 이곳을 방치했을 것이다.

이상은 조선국과의 교섭과 관련하여, 3월 중순까지의 경위의 개요를 통보한 내용이다.

---

<sup>50</sup>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훈도가 관館에 체류할 때 곤박困迫한 나머지 간전관에게 기밀을 몰래 알려준다.  
저 조정의 의론이 일본을 의심하는 것에 관한 세 가지 건.

-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교通交는, 예로부터 마도馬島는<sup>51</sup> 연고가 있는 곳으로 소와 말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에 대해 인교隣交를 허락한 것이니, 어찌 천황과 관백關白에게<sup>52</sup>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특별히 마도馬島에 매년 허다한 은혜를 베풀 것이니, 가령 그 나라 수도에서 신기한 난사難事를<sup>53</sup> 만들어냈다고 해도 마도의 입장에서 마땅히 이를 막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 우리의 이목을 놀라게 하고 우리나라를 번거롭게 할 이치가 있는가? 더구나 이 일이 원래 마도馬島에서 양성한 데 있어서겠는가? 그러므로 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지난持難하며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거절하면서 세월을 천연遷延하여 마도馬島로 하여금 공무의 요령을 얻지 못하게 하고, 또 저들에게 주는 곡식과 재화를 삼체濫滯해서 그 나라를 곤경에 빠뜨린다면, 끝내 마도馬島가 그 안에서 그 수도에 자신들을 위해 주선을 할 것은 분명하다.
- 일본이 병마지권兵馬之權을 모두 장군가에 위임하고 외국교제外國交際도 모두 관장하게 했는데, 이제 이를 폐지하고 천황이 교린을 친재親裁한다는 것은 건강부회牽強附會일 것이다. 동무東武에<sup>54</sup> 위임했을 때라고 해도 원래 국가 내에선 천황이 관여했을 것이니, 외국과의 교제만 어찌 천황의 지휘를 받지 않았을 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천황의 지휘에서 나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 관백을 폐지하고 일신했다고 해도,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신을 임명해서 교린의 직분을 두는 데 어찌 안될 이유가 있는가?
- 이제 일본과 실화失和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지만, 지금 이 ‘황皇’을 칭하는

51 마도(馬島): 대마도

52 관백(關白): 막부의 쇼군

53 난사(難事): 처리하기 어려운 일

54 동무(東武): 막부

술책은 반드시 점차 우리나라를 신하로 예속시키려는 간사한 모략이니, 처음에 신중히 허락해선 안 된다. 저들은 원래 만족을 모르는 국속國俗이다. 이제 저들이 통고한 친교의 서계를 우리가 접수하고, 그 다음에 그 승낙 여부는 뜻에 따라 회답 서한을 보내면 된다고 한다. 이 말은 매우 이치에 맞는 듯하나, 일단 접수하면 친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유를 내세우면서, 이와 같은 이난異難으로 우리를 추궁하고 혼단舞端을 열려는 술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친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오직 말을 이리저리 돌리며 인순因循하고 지연하면서, 원래 친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대의 법을 준수할 뿐이라고 하면서 ‘솔유구장率由舊章’을 구실로 삼아야 한다. 나머지는 애매몽롱曖昧朦朧한 술책으로 대해야 한다. 일단 일본이 짧은 생각으로 일을 파탄낸다면, 그 죄는 일본에 있다.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면 국력을 다해 싸울 뿐이다.

### 03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が 역대 존칭 및 어휘御諱 등을 조선에 통고하기 위한 상신서

조선국과 교통交通을 다시 맺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 저 나라에 통보할 건 및 기타 사항을 별지와 같이 전에 오시마 도모노조가 지시를 청한바 있는데 아직 분명한 분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번藩의 정실情實과 원의願意에 따라 후한 은혜로 분부를 받았으니, 급히 번藩으로 돌아가 번정藩政에 진력하며 지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전 사항들에 관해 속히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한국에서 응접하고 상대하는 공무가 정체될 것이니 출발 전에 무언가 분부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9월 23일

이즈하라번지사

외무성 어역소御役所

조선국과의 교통交通을 다시 맺으시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 저 나라에 포령布令 할 안건 및 나머지를 다음 몇 개 조목과 같이 질의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국초國初 이래로 역대 제왕의 존칭 가운데 원호院號를<sup>55</sup> 쓰게 된 것은 천황의 개칭에 따라 포고에<sup>56</sup> 이른 것인지. 또 황거皇居의 지명 등을 스스로 존칭으로 삼는 것은 체재體裁상 편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한국에 대한 포령뿐만 아니라, 역대의 시호諡號가 전후로 그 칭호가 같지 않으니, 외람되오나 예로부터의 흠전欠典이라고도<sup>57</sup>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정大政을 갱신하여 모든 성전盛典을 봉행奉行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헤이제이 텐노平城帝(재위: 806~809) 이래 추시追諡는,<sup>58</sup> 물론 묘의廟議의 절목節目으로 생각되오나, 조선국 교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경위를 이상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 一. 어휘御諱의 건

고모모조노 텐노後桃園帝(재위: 1771~1779) 이래 4세 황상皇上의 어명御名을, 모두 5세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포고한다고 작년 여름 교토에서 분부하셨습니다.<sup>59</sup> 그런데 국기일國忌日과<sup>60</sup> 관련해서 아직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진무神武, 닌코仁孝, 고메이孝明의 3세의 국기일에 형벌과 고문 등을 금한다는 분부가 있었지만, 이것이 국기일로 포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우 어휘御諱와 세수世數가 상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국기일에만 진무 텐노를 포함시키는 것이니 사리상 온당치 않다고 생각됐으므로 휘자諱字는 황상皇上의 어명御名 모두 5세로 결정했습니다. 황상의 어명은 이것이 전부 아니니, 이를 피휘하는 것은 당연함

<sup>55</sup> 귀인이 건립한 사원의 칭호로, 처음에는 생존 중에 양위한 천황(상황)의 존칭으로 쓰였으나 점차 재위 중에 사망한 천황에 대해서도 추호(追號)로 사용되었다.

<sup>56</sup> 원문의 후례(布令)은 관청에서 일반 국민에게 명령을 포고하는 것을 뜻한다. 본문에서는 '포고'로 옮긴다.

<sup>57</sup> 흠전(欠典): 규정이 불완전함

<sup>58</sup> 추시(追諡): 죽은 뒤에 시호를 추증함, 또는 그 시호.

<sup>59</sup> 메이지 천황[어명(御名) 무츠히토(睦仁)] 위로 4세, 즉 고메이(孝明)[오사히토(統仁)], 닌코(仁孝)[아야히토(惠仁)], 고카쿠(光格)[모로히토(師仁)], 고모모조노(後桃園)[히데히토(英仁)]의 어명을 기휘(忌諱)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sup>60</sup> 국기일(國忌日): 옛 왕이나 황후가 서거한 날로, 죄수의 처형이나 가축의 도살 등을 금했다. 일본에서는 천황 및 그 황후의 서거일을 의미한다.

니다. 그렇다면 최근 4세에 진무 덴노를 추가해서 진무 덴노의 어명 가운데 안목(眼目)의 한글 자를<sup>61</sup> 피휘할 것인지? 다시 5세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태조太祖 진무 덴노와 중종中宗<sup>62</sup> 덴치 덴노天智帝를 백세불천百世不遷의 지위에 세워 최근 5세에 합쳐서 7세로 하되, 국기일 또한 어휘御諱와 같이 세수世數를 정하는 것의 두 가지 설 가운데 하나를 택해 분부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외방外邦과 비교할 일을 아니지만, 조선에서는 국휘國諱와 국기일 모두 개조開祖 이래를 모두 기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옛 전적에 어두워서 사리의 타당함은 아뢰기 어려우나, 한국에 대해선 세수世數가 많은 것이 사체事體로 볼 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국기일은 옛 막부에서는 월기月忌로도<sup>63</sup> 포고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불설佛說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에서도 월기의 전례는 없고, 상기祥期만<sup>64</sup> 있습니다. 이번에 저 나라에 포고할 때 기일만 고하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 예전에 쓰시마에서 조선에 보낸 서식에서는 ‘일본국대마주태수습유성명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姓名’을 칭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정朝政이 일신하고, 또 쓰시마노카미에게 승관昇官의<sup>65</sup> 명이 내렸습니다. 작년 여름 경사京師에<sup>66</sup> 문후問候한 사정에 따라 신정新政을 통보하는 서계부터 체식體式을 고쳐서, ‘일본국좌근위소장대마수성조신명日本國左近衛少將對馬守姓朝臣名’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시마노카미가 다시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に 임명되었고, 또 방금 정체政體 개혁更革의 하향下向이<sup>67</sup> 있었으니, 더욱 직제가 개혁되면 지금까지의 관직官稱을 쓸 수 없은 물론입니다. 또 작년 봄 대정일신 당시 지금까지처럼 양국의 교통을 관장하도록 가역家役に 명하면서, 조선국에 대해 어용御用으로 근무할 때는 ‘외국사무보

61 가장 중요한 한 글자를 뜻한다. 진무 덴노의 이름은 히코호호데미(彦火火出見), 또는 사누(狹野)였다.

62 중흥(中興)을 이룬 영명한 군주라는 뜻으로 덴치 덴노(재위 668~672)의 별칭이다.

63 월기(月忌): 매달 기일에 올리는 불공

64 상기(祥期): 기일

65 승관(昇官): 관리의 승진

66 경사(京師): 교토

67 하향(下向):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서울에서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

外國事務補'의 자격으로 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이르러선 역명(役名)은<sup>68</sup> 물론, 서계에 쓸 관함(官銜)의 명칭에 관해 무언가 지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당장 한토(韓土)에 왕복하기 어려워져서 갑자기 공무가 정체될 수 있으니 이상의 사항에 대해 속히 재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조선에 막부의 명을 전하는 사절을 '대차(大差)'라고 하고, 쓰시마 집정 직(執政職)에 있는 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교례(交禮)하는 날에 막부의 명에 따라 정사(正使)는 육위(六位)의 관복을<sup>69</sup>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에서 친교(親交)하려는 뜻을 받들어 교제할 때의 체식(體式)은 옛 막부 시절보다 한층 올려서 대응 하라는 분부가 있었으므로, 그 뒤로 대차(大差)를 보내 조정의 명을 전할 때는 정사가 오위(五位)의 관복을 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제를 다시 시작하는 초기에 조정과 막부의 구분을 명료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쓰시마노카미가 문후할 때, 최근 조선국의 실정을 미신(微臣)<sup>70</sup>에게 하문하시도록 분부하셨습니다. 이러한 때 전건(前件)의 내용으로 지시를 청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 분부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6월

오시마 도모노조

외무성 어역소(御役所)

**04** 외무성 사절을 조선에 파견하여 교린의 대의를 진술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1, 2명의 관원을 파견해서 그 실정을 시찰해야 한다는 품의(稟議)

조선국과의 교제는, 옛 막부 시절에는 소가(宗家)에 위임했는데 임염(任堧)<sup>71</sup> 200

68 역명(役名): 역직의 이름

69 원문은 포(袍)이다. 공가(公家)의 관복 상의로서, 허리띠나 의관 등의 색으로 관위(位階)를 구분했다.

70 미신(微臣): 미천한 신하. 오시마 자신을 가리킴

년을 지나면서 끝내 소가宗家 사교私交의 체제로 변하여 교제의 도道가 분명치 않게 되었고, 상호 존대지중尊大持重을<sup>72</sup> 취하여 양국의 정태情態가 교통交通되지 않았습니다. 무역의 경우, 저 나라가 원래 물산이 부족한데도 소가宗家が 농단독점壟斷獨占하는<sup>73</sup> 모양으로 사리私利를 취해서 체재體裁에 맞지 않은 것이 적지 않았 습니다.

일신一新한 오늘날에 이르러, 인국隣國의 일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의名義를 바르게 하고 실제에 따라 교의交誼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의 정론定論은 결국 옛 관례에 따라 소가宗家和 사교私交를 맺고 천조天朝<sup>74</sup>의 정체政體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宗家로 말하더라도, 일가一家의 경제經濟가<sup>75</sup> 조선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구격舊格을 지켜서 그 번신藩臣에게 명하여 인교隣交를 위임해 주시길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는 황정皇政을 일신하고 백도百度를 경장更張하신 후 특별히 외국 교제는 지극히 중대하다고 생각하신 예려叡慮를 깨닫지 못하고, 고례古例를 묵수墨守하는 인순因循의 사론私論을 주창하는 것이니 쌍방 모두 채용할 수 있는 이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문명개화文明開化의 시세에 이르러 조약을 맺지 않고 애매한 사교私交로 일개 번藩의 소리小吏가 다루게 두신다면, 황국의 성문聲聞에<sup>76</sup> 관계됨은 물론, 만국공법萬國公法에 따라 서양 각국으로부터 힐문을 받을 때 변해辨解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국은 과거에 친정親征도 있었고 열성列聖이 생각을 드리우신 나라

71 임엄(莅蒞): 하는 일 없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양

72 존대지중(尊大持重): 일본어로 손다이(尊大)는 거만하다는 뜻이다. 지중(持重)은 정중한 태도를 말한다.

73 농단(壟斷): 『孟子』 「公孫丑下」에 나오는 말로, 옛날에 한 천장부(賤丈夫)가 높은 언덕에 올라서 좌우를 둘러보고는 물건을 싸게 산 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독점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74 천조(天朝): 일본

75 경제(經濟): 생계

76 성문(聲聞): 명성(名聲)

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황조皇朝의 번속藩屬이 되지 않더라도 영원히 그 국맥國脈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를 비롯하여 다른 강국들이 빈번하게 침을 흘리며 도마 위에 올린 고깃덩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 공법公法으로 유지하여 광구무수匡救撫綏<sup>77</sup> 책임을 맡을 것은 황조皇朝 이외엔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를 도외시해서 점차 승냥이같은 러시아 등의 강국이 선편先鞭<sup>78</sup>을 가한다면, 실로 황국 영세永世의 대해大害가 초미의 급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속히 이상의 대의大義를 설명하는 황사皇使를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나라의 인정人情이 마치 우물 안 개구리의 관견管見<sup>79</sup> 같아서 암체용삽暗滯壅澁합니다. 게다가 하찮은 속임수詐術小數<sup>80</sup> 기대어 거만하게 자존自尊하는 모양이니, 갑자기 한 봉의 서한을 보내더라도 우리 정실情實에 조응하지 않고 쉽게 그 후의厚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깊은 정과 반대로 도리어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는 것은 당치도 않으니, 처음부터 병위兵威를 과시해서 그 모만侮慢한 마음을 깨뜨려 약력藥力<sup>81</sup>으로 명현瞑眩<sup>82</sup>하지 않으면, 구습에 오염된 것을 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속히 군함 한두 척에 사절과 기타 역원役員들을 태워서 저 나라에 도항渡航시키고, 일신一新의 정체政體와 교린의 대의를 설명해서 돈독하게 맹약을 거듭 맺으라는 내용으로 급히 분부하시길 바랍니다. 단, 논의를 결정하신 후 문서의 왕복과 다른 체재體裁들은 조목을 세워서 차차 여쭙겠습니다.

단, 본문과 같이 아뢰었지만, 소가宗家の 경우 사교私交라고는 해도 오랜 세월 교통交通했기 때문에 자연히 친압親狎<sup>83</sup> 정실情實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일괄적

77 광구무수(匡救撫綏): 광구(匡救)는 바로잡아 구제한다는 뜻이고, 무수(撫綏)는 안무(按撫), 안정(安定)과 같은 말이다.

78 선편(先鞭): 선수

79 관견(管見): 대롱 끝으로 물건을 본다는 뜻으로 매우 좁은 견식을 비유한다.

80 사술소수(詐術小數): 사술(詐術)은 속임수이고, 소수(小數)는 하찮은 수단이라는 뜻이다.

81 약력(藥力): 약효(藥效)

82 명현(瞑眩): 약물을 복용한 뒤에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

83 친압(親狎): 친하여 허물이 없는 모양

으로 그 조규를 폐지한다면 물정이 시끄러워져 오히려 저항력(抵抗力)을 일으켜서 실효를 빨리 거두지 못하고 불리한 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일 내로 지번사(知藩事)에게 휴가를 주시고, 이즈하라에 귀번(歸藩)할 때 외무성에서 선발한 관원 한두 명을 쓰시마노쿠니(對馬國)에 파견하여 시의(時宜)에 따라 조선에도 건너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종전대로 쓰시마와 조선이 교의왕복(交誼往復)하는 사이에 현지에서 직접 관찰하여 사교(私交)의 체재(體裁)를 자세히 보고하게 하고, 군함을 비롯한 각종 채비를 준비해서 저 나라에 도항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용무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1, 2일 사이에 분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소가(宗家)에서 제출한 근래 조선 교통의 개략 등본을 올립니다.

이상의 각 조목을 급히 여쭙니다. 이상.

사년(巳年(1869) 9월

외무성

태정관(太政官) 변관(辨官) 귀중

## 05 외무성 관원의 조선 파견 명령에 따른 인원 평의(評議)

### 외무성 질의서

조선국 교제에 관해 최근 건백(建白)을<sup>84</sup> 하게 되었는데, 우선 1, 2명을 파견하여 실정을 자세히 조사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즉시 다음과 같이 관원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sup>84</sup> 건백(建白): 정부나 상급 관청에 의견을 상신하는 일

대록大錄

권대록權大錄      중 1인

사생史生            3인

부속附屬            3인

이상 파견하는 관원은 쓰시마에서 조선국 왜관까지만 가서 재류在留하며, 소가宗家 교제의 시말은 차츰 규명하여 옛 관례에 따라 채용할만한 조목은 존치하고, 개혁해야 할 사항들은 제거할 작정으로 각각 조사해 두었으며, 또 조선국의 물산과 무역 등도 조사하고자 함.

- 사절 파견 전까지는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소가宗家 사교私交의 체재로 놓아두고, 이상의 자들은 입회 및 감찰의 자격으로 근무하도록 하고자 함.

- 소가宗家에 대한 분부는, 더욱 특별히 조사하고자 함.

이상의 내용이 타당하다면, 조정에 대한 건언안建言案 등은 별도로 조사하여 여쭙고자 함.

사년巳年(1869) 10월

## 06 외무성에 조선 사건을 이즈하라번嚴原藩에 질문할 것을 명하는 글

이즈하라번

이번에 외무성에서 다루게 된 조선국 문제는, 예전부터의 절차도 있으니 외무성에서 해당 번藩에 상의할 것을 다시 분부하셨으므로 이를 하달함.

10월 태정관

## 07 시즈오카번靜岡藩에 조선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글

10월 15일 지시함

시즈오카번靜岡藩 공용인公用人 귀중

외무성

조선국 교제와 관련하여, 도요토미豊臣 관백關白 부자父子가 저 나라에 진격할 끝에 게이초慶長·겐나元和 경에 이르러 화의和議가 정해졌습니다. 그 후 연면連綿하게 인국隣國의 교의交誼를 닦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번藩<sup>85</sup> 선조의 접대 모양 및 이 화의和議가 정해졌을 때 조관條款 등 증거로 만든 전장典章과 옛 기록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인계引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석中昔의<sup>86</sup> 대란大亂 이후 여러 일들을 무단으로 거행하였고, 그 후 시세時勢의 인순因循에 따라 명료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까지의 대강大綱과 자세한 사항들을 서면에 적어서 제출하십시오. 대조할 수 있는 본서本書도 첨부해서 제출할 것을 명심하십시오.

- 조선의 사절이 그 선조<sup>87</sup>에 알현한 것은 개부開府<sup>88</sup> 이래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 연월일과 사절의 성명, 관작官爵, 상호간의 예전禮典에 관한 것.
- 근래 에도에 오지 않고 쓰시마노쿠니對馬國까지만 저 나라에서 사절이 왔습니다. 이쪽에서 그 사절을 받기로 결정한 기원과 그 예전에 관한 것.
- 도요토미 관백이 저 나라에 진격해서 한군韓軍이 패배한 끝에 강화講和의 논의에 이르렀는데, 그 체제는 일본에 항복하고 의뢰하는 절차로서 사절이 건너온 일이 있습니까? 그 증적證迹이 있다면 보고하십시오.
- 이쪽에서 저 나라에 사절을 파견하여 조선국주朝鮮國主를 면회한 일이 있습니까?

85 번(藩): 시즈오카번

86 중석(中昔):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과거. 중고(中古)

87 시즈오카번의 역대 번주

88 개부(開府): 에도막부의 창건

조선국에 보낸 진송물進送物 또는 사절이 가져간 물품, 그리고 저 나라에서 온 공헌물貢獻物과 그 물품의 성질, 인원수 등을 보고하십시오.

- 그 선조의 역대 경조사와 저 국주國主의 역대 경조사에 상호 통고한 경위 및 서한 왕복의 문격文格 등을 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 닛코산日光山 도조구東照宮 묘소에 조선국의 납물納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무위武威에 순종하여 공납한 것인지의 여부
- 매년 쓰시마에 들어가는 동銅과 그 밖의 정액품定額品, 그리고 소가宗家에 내려 보내는 곡식과 금의 정도
- 분카文化 연간에 하야시林<sup>89</sup> 다이나키大內記가 쓰시마에 출장해서 응접한 시말,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사하십시오.

이상의 각 조목을 조사하여 가능한 한 급히 제출하십시오. 이에 따라 이상의 사항을 하달합니다.

사년巳年(1869) 10월

## 08 미토번水戶藩에 조선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글

10월 15일 지시함

미토번水戶藩 공용인중公用人 귀중

외무성

조선국 교제와 관련하여, 도요토미 관백이 진격할 결과 도쿠가와가문에 정권을

---

<sup>89</sup> 에도시대 유학자 하야시 슷사이(林述齋, 1768~1841)를 가리킨다. 이름은 다이라(衡)

위임했을 때부터 점차 강화講和 논의가 시작되었고,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sup>90</sup>와 도쿠가와 이에미즈德川家光<sup>91</sup>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으로 봉직할 때 저 나라에서 여러 차례 사절이 건너왔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에 대해 번속藩屬의 체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 번藩의<sup>92</sup> 시조始祖 및 권중납언權中納言 미츠클니光國 등<sup>93</sup> 막부를 보좌하여 조선 접대 및 교제의 예전禮典을 바르게 거행한 것으로 들었는데, 앞에 쓴 것처럼 점점 더 번속藩屬의 체제로 접대했습니까? 그러한 기록류가 있다면 속히 조사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또한 시즈오카 번에도 조사를 지시했는데, 막부가 개창했을 때의 문서가 없습니다. 그 번의 경우에는 수사修史 등의 성거盛擧도<sup>94</sup> 있으므로 증거가 되는 전장典章과 문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면밀하게 조사하여 보고하십시오. 이상의 사항을 지시합니다.

사년巳年(1869) 10월

## 09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역대 존호 및 국휘國諱 등에 관해 재차 상신하는 글

조선국 교제에 관해 예전에 지시를 청했는데, 최근 부전附箋으로<sup>95</sup> 저 나라와의 교제는 외무성에 위임하셨으니 소가宗家에서 보내는 사절은 중단하라는 분부를 삼가 들었습니다. 본래 외방外邦과 관계된 일은 전적으로 외무성의 임무임은 물론

<sup>90</sup> 에도막부 제2대 쇼군(재직: 1605-1623)

<sup>91</sup> 에도막부 제3대 쇼군(재직: 1623-1651)

<sup>92</sup> 번(藩): 미토번

<sup>93</sup> 미토번의 제2대 번주 도쿠가와 미츠클니(德川光圀, 1628-1700)

<sup>94</sup> 도쿠가와 미츠클니는 쇼코칸(彰考館)을 설립하고 진무천황으로부터 고코마쓰(後小松) 천황까지의 일본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한 『大日本史』라는 방대한 역사서의 대대적 편술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그의 사후에도 미토번의 사업으로 200여년 간 계속되었으며, 메이지 시대에 총 397권 226책(목록 5책 포함)의 방대한 분량으로 완성되었다.

<sup>95</sup> 원문의 쓰케후다(附札)은 지령, 의견 등을 적어서 서한에 첨부한 부전(付箋)의 뜻이다. 부전은 고문서학 용어 중 하나로, 의문, 각서 등 필요한 것을 기록해서 함께 문서에 붙여 놓은 작은 쪽지이다. 付け紙, 貼り紙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작은 쪽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별지를 쓰지 않고 본문의 대응 부분에 직접 기입하는 경우는 書込み라고 한다.

이오나, 조선의 일은 전부터 교통한 상황이 서양 각국과 달라서 중엽 고려 말기에 소씨宗氏와 처음 인호隣好를 통하고, 그 후 본방本邦 무로마치가室町家, 조선 이씨의 시대에 이르러 쓰시마에 의뢰하여 정부 및 중서지역의 여러 주州와 통교했습니다. 저 나라에 왕래하는 여러 주의 사선使船은 쓰시마에서 감합인勘合印을 받아서, 소씨의 문인文印이<sup>96</sup> 없는 자는 저 나라에서 접대하지 않는 등 오랜 옛날부터 쓰시마가 동쪽 길[東道]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게이초慶長·겐나元和 이래 옛 막부가 화호한 뒤에도 정부의 교통은 대체로 명목만 있을 뿐, 예·세사선例歲使船의 내왕과 교역호시交易互市는 전적으로 쓰시마의 직무였습니다. 한인韓人の 경우에도 본방本邦과의 교통은 단지 쓰시마가 있음만을 알 뿐이고, 정부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 양국 교제의 체식體式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이후 조강朝綱을 크게 한번 떨쳐서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시고, 조선국은 예로부터 내왕한 나라이니 더욱 위신威信을 세우기 위해 쓰시마가 지금까지처럼 양국의 교통을 관장하도록 가역家役に 명하시고, 신정新政의 전말을 소가宗家에서 조선에 전달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논의를 거쳐 세계 초안을 내려주셨고, 이러한 조명朝命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10월 집정직執政職 이하가 대수사大修使의 사명使命을 받아 건너가서 일찍이 분부하신 취지로 답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실제 조정의 성의誠意에 응하기 어려운 정태情態를 드러냈습니다. 금년 봄부터 저 나라 관인들에게 몇 차례 변론辨論한 과정은 예전에 오시마도 모노조가 서면으로 보고한 대로입니다. 그 후 승낙 여부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 곳에서 당장의 교섭 방향을 밤낮으로 고민하던 중 소가宗家에서 보내는 사절을 중단하라는 분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분부하신 주의主意와도 모순되니, 명령이 앞뒤로 다르다면 황송하오나 순서도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지금까지의 시말을 묘당에서 분명히 알지 못해서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sup>96</sup> 문인(文引): 통행을 허가하는 문서. '문인(文印)'은 '문인(文引)'의 잘못이다.

무엇보다 조명(朝命)을 받아 건너간 사절을 중도에 철수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실로 당혹스럽고 고심스러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외무성을 설치한 뒤에 소가(宗家)가 통교에 협력하는 것은<sup>97</sup> 체재(體裁)를 세우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옛날에 겐바료(玄蕃寮)를<sup>98</sup> 설치했을 때도 반카쿠(蕃客)를<sup>99</sup> 관장하는 일은 쓰시마노카미의 직무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며, 다이토츠지(大唐通事)<sup>100</sup>나 신라야쿠고(新羅譯語) 등을 쓰시마에 둔 것도 있으니 굳이 체재를 잃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갑자기 소가(宗家)에서 보내는 사절을 중지시킨다면, 조선에 교섭하는 길이 끊어져 인의(隣誼)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뜻이 도리어 절교하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저 나라 입장에서도 소씨(宗氏)와의 수백 년 동안의 구교(舊交)를 저버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황국의 깊은 뜻에 시의(疑)를 일으켜서 더욱 국가의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이미 도모노조가 아된 대로 저 나라는 좋거나 나쁘거나 구규(舊規)만을 고수하는 편벽되고 집요한 국풍(國風)이니, 갑자기 국사(國使) 등을 파견한다면 대번에 정성껏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광(威光)을 손상하는 상황이 되어, 처음부터 병력을 쓰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따라서 일단 분부는 내리셨지만 우선 작년부터의 교섭 진행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조정의 성의(誠意)를 관찰하며, 저들이 담판의 취지에 승복한 다음에 저 나라 통신사를 부르시고, 황조(皇朝)에서도 국사(國使) 등을 파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교제와 관련된 만반의 체식(體式)을 강명(講明)하신다면 조정의 후의(厚誼)에 저들도 심복할 것입니다. 그 후 쓰시마를 기다리지 않고 외무성이 한 길로 총괄하도록 차츰 대하는 것이 순서도, 조리도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97 조일 간 국교를 외무성과 쓰시마번이 공동관리함을 뜻한다.

98 겐바료(玄蕃寮): 일본 율령제 하 지부쇼(治部省)에 부속된 기관으로서 '겐(玄)'은 승려, '바(蕃)'는 외국인, 빈객(賓客)을 의미한다. 승려 명부의 관리, 궁중에서의 불사나 법회의 관리, 외국 사절의 영접 등을 담당했다.

99 반카쿠(蕃客): 내조(來朝)하기 위해 온 외국인

100 다이토츠지(大唐通事): 다이토(大唐)는 중국 당나라의 존칭이다. 츠지(通事)는 통역을 뜻한다.

물론 최근 담판에서처럼 저들이 승복하지 않을 때는 관맹寬猛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취하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는 종래의 내력도 있으므로 어리석은 생각을 숨김없이 아뢰입니다. 또한 당장의 안건들을 별지를 통해 여쭙으니, 부디 신속하게 영명英明한 지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뜻으로 지사知事로부터 소원이 전달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10월

이즈하라번 공용인公用人 사이토 가헤에齊藤佳兵衛

변관辨官 어역소御役所

### 지시를 청할 건들

- 근래 소가宗家에서 조선국에 보내는 사절을 중단하라는 분부를 받은 이상, 예전에 조명朝命에 따라 파견한 신정新政 통보 사절의 현재 담판의 마무리, 진퇴進退의 임기응변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조선국의 백성이 본방本邦에 표류해왔을 때는 해당 부번현府藩縣에서 나가사키長崎로 보내면, 그곳에서 본번本藩에<sup>101</sup>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본번에서 사절을 더해서 저 나라에 돌려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사절을 중단할 경우 앞으로 송환방법을 어떻게 할지 분부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일본인이 조선에 표류했을 때는 저 나라에서 본번에 인수하고, 고향(生國)의 거리에 따라 오사카나 나가사키 두 곳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내려보내신 부전附箋의 뜻은, 모두 조정에 관계되는 사절을 중단하라는 의미입니까? 전부터 쓰시마 사교私交로 건너간 세견선 등은 우선 지금까지처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

<sup>101</sup> 본번(本藩): 쓰시마번

- 조선국 부산포 초량항 지역에 화관和館이라고<sup>102</sup> 하면서 평방 300칸間 정도의 땅을 소가宗家가 빌려서 이전부터 건물을 짓고, 관리 이하를 파견했습니다. 이 화관을 지금까지처럼 놔두어도 괜찮겠습니까?
- 화관을 관리하기 위해 관수역館守役을 두어 양국의 교제 및 관내 사무를 모두 관장했으며, 그 이하 부속 관리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단, 예전에 번정藩政에 관해 여러 가지 지시한 분부 가운데 조선에 속한<sup>103</sup> 역원役員도 번치직제藩治職制<sup>104</sup> 내로 해야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소가에서 보내는 사절을 중단하더라도 그 형평성도 있으니 이 또한 지시를 여쭙니다.
- 무역과 관련하여 파견한 관리들도 지금까지처럼 놓아두어도 괜찮겠습니까?
- 교역과 관련하여 조정에서 조약을 체결하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는데, 최근 착수하셨습니다? 또한 교역 중에는 공무역과 사무역의 구분이 있습니다. 사무역은 각국 보통의 교역으로서 물화의 합당한 가격을 정하여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것입니다. 공무역은, 옛날 본방本邦의 망명한 무리가 조선의 변읍邊邑을 노략하자 한인韓人이 그 우환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때 소씨의 주선으로 저 나라가 해구海寇의<sup>105</sup> 화를 면하게 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비록 명칭은 무역이지만, 실제로는 소씨의 구은舊恩에 보답하기 위해 화물에 정액定額을 두어 세견송사歲遣送使를 우대하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금후 조정에서 규칙을 세우실 때 조약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무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단, 세견선 사례와 관련하여 구폐를 일소하시려는 오늘날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교섭 여하에 따라 자연히 공무역을 폐지하는 상황에 이를지도

102 화관(和館): 초량왜관

103 의미상 조선에 파견된 관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104 번치직제(藩治職制): 1868년 10월 28일 선포된 메이지정부의 직제로서, 번(藩)들의 다양한 직제를 번주(藩主), 집행(執政), 참정(參政), 공의인(公議人) 등으로 통일했다. 중앙집권화의 한 과정이었지만, 판적봉환과 폐번치현으로 인해 의미를 상실했다.

105 해구(海寇): 해적, 왜구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아뢰입니다.

- 본번은 생산물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조선의 물산<sup>106</sup> 가운데 번<sup>107</sup>의 용도를 빼고 세금으로 상인에게 위탁해 둔 물품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들에 관해선 어떻게 분부하시겠습니까? 또한 이를 갑자기 변법<sup>108</sup>한다면, 당장 생업을 잃는 자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지휘를 바랍니다.
- 예전부터 조선국에 관계된 공사<sup>109</sup> 비용과 연분<sup>110</sup>이 허다했습니다. 옛 막부 시절에는 역료<sup>108</sup> 대신에 모두 무역의 소득으로 보상해주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분부하시겠습니까?

단, 얼마 전 번정<sup>109</sup>에 관한 지시 가운데 조선에 관계된 비용도 쿠계<sup>109</sup> 내에 포함시키도록 분부하셨는데, 이는 번조<sup>110</sup> 내에서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또한 지시를 여쭙니다.

- 정부 또는 소가<sup>110</sup>의 길흉<sup>110</sup>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역관을 사절로 보내면 쓰시마에서 접대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양국의 교제는, 모두 쓰시마의 증명서<sup>110</sup>를 소지하지 않은 선박은 해적선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랜 약조였는데, 이 교환증에 관해선 앞으로 어떻게 분부하시겠습니까?

이상의 건들에 관해 즉시 지시를 여쭙오니, 속히 분부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분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될 만한 것들도 있으니, 차츰 조사한 후 아뢰겠습니다. 이상.

10월

106 조선에서 지급한 공작미, 공목 등을 가리킴

107 일본어로 년분(年分)은 부채, 세금 등을 매년 분할해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108 역료(役料): 에도막부가 그 자신에게 지급한 역직(役職)의 수당 또는 급여

109 본래는 관청 건물 뜻이지만, 여기서는 관리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의미이다.

110 길흉(吉凶): 경조사

## 10 외무성에서 이즈하라번嚴原藩에 내린 지령안을 첨부한 상신서

10월 23일 별지를 첨부하여 하달함

변관辨官 귀중

외무성

조선국과 쓰시마의 교제와 관련하여 이즈하라번 공용인公用人 사이토 가헤에  
가 상신한 글을 내려주셔서 일람했습니다. 그 골자는, 작년(1868) 일신一新의 초  
기에 소가宗家에 양국의 교통을 관장하도록 명하셨는데, 이제 다시 소가에서 보내  
는 사절을 중단하라는 것은 첫 분부의 주의와 모순되어 명령이 두 길로 나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그리고 옛날 겐바료玄蕃寮를 설치했을 때도 반카쿠蕃倉를 관  
장하는 것은 쓰시마노카미의 직무였던 것으로 보이며 다이토츠지大唐通事와 신라  
야쿠고新羅譯語 등을 두신 일도 있으니, 역시 지금까지처럼 조선 교통은 소가의 세  
직世職으로 놓아두길 바란다는 속뜻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가가 담판 중이니 저쪽  
[조선]에서 승복한 뒤에 저 나라에서 통신사를 부르고 황조皇朝에서도 국사國使 등  
을 파견하고, 그런 뒤에 교제의 만반의 체식體式을 강명講明하신다면 타당할 것이  
라는 건언建言과 별지 12개 조의 우카가이쇼司書 등도 일단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작년 봄 병마兵馬가 공총倥傯<sup>111</sup> 사이에 정체政體가 아직 정리되  
지 않았을 때 외국사무는 잠시도 놓아두기 어려워서 잠정적으로 소가에 조선사  
무를 취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도 외국과 차이가 없는데, 만국  
교제萬國交際의 대법大法에 따르지 않고 일개 번藩의 애매한 사교私交에 맡겨두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곧 옛 막부의 인순因循하는 정치를 답습하는 것  
이니, 반드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sup>111</sup> 공총(倥傯):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분주함

그런데 조선의 국습國習은 삼체지완澁滯遲緩하여 어떤 일도 이뤄지지 않는 양상입니다. 그러므로 소가가 건의한 대로 저 나라에서 통신사를 파견하기까지는 반드시 몇 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요, 그런 뒤에 이쪽에서 사절을 파견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기약해야 할지 다시 전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기타 강국의 지금 형세는 모든 일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마치 뇌우雷雨와 같으니, 앞으로 일본이 인순因循한다면 세월은 우리 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은 이른바 철부轍鮒를 건어물 시장에 묻는 모양이 되고,<sup>112</sup> 황국皇國의 지극한 우환이 초미의 급무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념痛念하여 차라리 저들이 사절을 보내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이쪽에서 가서 그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고 대의大義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니, 최근 여러 가지 상신한 건들에 관해 당성當省에<sup>113</sup> 위임하셨습니다. 현재 그 절차에 관해 전력으로 조사 중이므로 소가에서 건백한 내용은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외국과 접하고 있는 지역, 즉 가라후토樺太, 쓰시마對馬 또는 지시마千島, 오가사와라지마小笠原島 등은 일령일원一令一圓의 땅이 아닙니다. 아침저녁으로 외국인(外民)과 잡거雜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때문에 그 지방의 사무는 외무성이 총괄해서 정령政令이 한 길로 나가도록 규칙을 세워야 하지만, 세세한 사항은 그 지방관이 실지實地를 답사하고 집행하는 형편입니다. 조선의 일 또한 교제의 대요大要, 무역의 규칙 등은 외무성 관원이 처리하되, 이즈하라변신藩臣도 그곳에서 인선하여 등용하고, 가능한 한 작은 일은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피아 인민이 생업을 잃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소가에서 상신한 내용과 처음에 분부하신 내용 등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의미가 서로 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일(事緒)은 하루 아침에 결단하기 어려우니, 갑자기 황사皇使

112 철부(轍鮒)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 빠진 붕어라는 뜻이다.

113 당성(當省): 외무성

를 파견한다면 도리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정실情實을 탐색하기 위해 외무성 관원의 파견을 이미 분부대로 실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선 지금까지처럼 소가의 사교私交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 12개조에 관해서는, 각각 부찰附札에 있는 향후 예정된 각 건들을 기재하여 소가에 지령안[沙汰案]에 첨부하여 전달했습니다. 속히 평의評議하신 후 소가에 하달하시고, 그대로 당성當省에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사년巳年(1869) 10월

◎ 이즈하라번에 내린 지령안[沙汰案]

이즈하라번

조선국 교제와 관련하여 최근 지시를 청한 내용은 곧 분부가 있을 것이나, 저 나라에 파견한 그쪽 번의<sup>114</sup> 사자使者는 당장 철수시킬 필요가 없다. 가능한 면담을 거듭해서 일신一新한 정실情實을 저 나라에 관철하도록 하라. 또한 외국 교제는 한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sup>115</sup> 점차 외무성 관원을 저 지역에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할 예정이다. 물론 조선국 문제는 구교舊交도 있으니 내번內藩과<sup>116</sup> 마찬가지로 다루지 않으면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그쪽 번이 저 나라와 인국隣國이므로, 처분을 결정하신 후 자연스럽게 위임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다. 지금 갑자기 거칠게 개혁한다면 양국의 칼부림[切舍]에<sup>117</sup> 관계될 것이니, 별지의 부찰附札과 같이 명심할 것.

사년巳年(1869) 10월

태정관

114 쓰시마번

115 단일한 명령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

116 내번(內藩): 천자의 도읍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정에서 직접 다스리는 제후국

117 원문의 기리아이(切舍)는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말한다.

## 별지 부찰안別紙附札案

### 1조

신정新政 통보의 사절은, 현재 담판의 결말을 외무성에 보고할 것. 단, 진퇴 문제는 지금까지의 신의를 잃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치할 것.

### 2조 및 3조

지금까지처럼 할 것.

### 4조

세견선 등은 우선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놓아둘 것.

### 5조 및 6조

화관和館 문제는 지금까지처럼 하고, 관리도 마찬가지로 충원할 것. 물론 화관 문제는 추후 교제가 더 확대될 때는 결국 어용御用이 될 것이니, 착수 방법 등 여러 가지 점들을 추가해둘 것.

### 7조 및 8조

무역 문제는 가능한 성대하게 하라는 뜻에 따라 관리를 두고 중개에 진력할 것. 공무역은 그쪽 번이<sup>118</sup> 잘못된 전례를 받아서 시행해 온 것은 부적합하지만, 옛날 불문不文의 시대에 정해진 것이니 이러한 것들은 절차에 따라 조사하되 세견선의 기원과 소가 사은謝恩과 같은 것은 선례를 상실하지 않도록 유지해둘 것.

### 9조

조선 물산의 세금 등은 우선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놓아두고, 상인들이 생업을 잃지 않도록 점차 처분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을 것.

---

<sup>118</sup> 쓰시마번

## 10조

조선 교제의 비용에 관해서는 추후 처분이 있을 것임.

## 11조

소가宗家의 경조사에 조선에서 보내온 역관은 지금까지처럼 접대할 것.

## 12조

증명서切手 문제는, 이전부터의 단속에도 관계되는 것이니 지금까지처럼 규칙을 엄중하게 세워둘 것.

### 11 조선 파견원에게 내리는 지령안

#### 조선에 파견되는 자에게 내리는 지령안

게이초·겐나 이래 조선국에서 몇 차례 옛 막부에 사절을 보내왔다. 이는 도요토미가豊臣家が 진격한 무위武威에 굴복하여 번속藩屬의 예禮를 취해온 것이리라. 그런데 일본이 승평昇平한 날이 오래되어 무위가 점차 쇠퇴하고, 게다가 막부의 정치가 인순因循하여 끝내 능지凌遲하여 금일의 체제가 된 것인지, 또는 맨 처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을 때 병위兵威를 떨치지 않아서 마침내 강화講和의 논의가 일어났고, 당시 조선은 나라가 작고 일본은 컸으므로 조선이 선수를 뺏겨서 사절을 보내오고 우리는 앉아서 그 예禮를 받은 것인지 그 기원의 근본 취지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조사할 것. 쓰시마에서 조선에 보내는 사절의 예식禮式과 조선에서 쓰시마에 보내온 사자의 예전禮典을 조사할 것.

쓰시마에서 조선에 가서 교역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감합인勘合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조선국 제도상 입공入貢을 받는 것으로 취급했다고 들었다. 옛날 문명의 교화가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쓰시마가 기꺼이 그 제도를 받았는데,

지금도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추후 황사皇使를 파견할 때 공식적으로 그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을 것이지만, 결국 전서前書의 뜻과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지, 또는 처음부터 그 잘못된 관례를 알면서도 조선에 인접한 고도孤島이기 때문에 입공의 의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멋대로 그 의례를 쓴 것인지 조사할 것.

조선의 국제國體는, 청주淸主가 북달北韃에서 발흥했을 때 갑자기 항복한 이래로 청나라에 대해 신하의 예를 취했으니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청淸의 정삭正朔을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준행遵行하여 번속藩屬의 예절을 지키고 모든 일을 북경의 특명을 받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삭은 청에 사절 등을 보낼 때나 문서를 왕복하는 사이에만 쓰는 것으로 국내의 일반적인 연호가 아니며, 또 국정國政도 조선국주朝鮮國主가 자재독단自裁獨斷의 권력을 가져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대사大事도 자국 정부의 뜻대로 향배向背 등을 북경에 지시를 청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국제國體인지 내담할 것.

황사를 파견할 때, 군함은 부산포 초량항에 보내는 것이 절차에는 맞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반드시 인순因循해서 수도까지 왕복하는 길을 우회하여 모든 일이 즉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니, 수부首府에<sup>119</sup> 가까운 항구에 군함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수부 부근의 양향良港 유무를 조사할 것.

조선국은 이미 러시아의 표독한 입에 심취해서 은밀히 그 보호에 의뢰한다는 풍문이 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또 러시아와 이미 국토를 접하게 되었으니 반드시 경계에 관한 논의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탐색할 것.

조선국의 육해군 무비武備의 허실과 기계의 우수성.

그 나라 내정內政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의 여부, 국주國主와 대신에 관한 풍문이 과연 『초량기문草梁紀聞』에 기록된 것과 같은지 조사할 것.

조선과 무역을 개시한다면, 일본에서 무슨 물품을 보내야 저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지, 또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이익이 될 만한 품목은 무엇인지 조사할 것.

---

<sup>119</sup> 수부(首府): 수도

또 저 나라의 물가 수준과 화폐의 선악善惡, 지금까지 무역절차의 전망을 조사할 것. 소가宗家에서 시행한 세전선은 종전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공도公道에 맞을지 전망할 것.

쓰시마는 양국 사이에 있는 고도孤島로서, 교제의 비용과 표류민 등 피아彼我에 두루 해당하는 절차 등 일개 번의 통상적인 정치비용[政費] 외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다. 옛 막부 시절에는 그 비용을 금과 미곡으로 전해준 모양이다. 그 밖에 조선 사무역의 이윤으로 일가의 경제經濟를 해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일신一新하기 전에 예려勸慮로 연조年租 3만 석을 하사하셨는데, 이 또한 곧바로 중단되었으므로 소가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선 교제를 조정에서 인수한 뒤에 그 사무역 등의 세금은 자연히 관부官府에<sup>120</sup> 귀속될 것이다. 그런데 표류민 처리를 비롯하여 그밖에 몇해 전부터 소가가 소유한 이원利源을<sup>121</sup>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거둬들인다면 한 번藩의 정실情實이 불쌍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차츰 상당한 처분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니, 그 처분의 전망과 회계에 관해 신중히 조사할 것.

조선은 초량항을 제외하고 일본인의 내지 여행이 어렵지만, 소가의 주선을 통해 수부首府까지 가서 관람할 수 있다면 한번 가볼 것. 그 경우 풍속과 제도 등을 특히 자세하게 관찰할 것.

이상 조목들의 조사가 끝나면 일단 귀부歸府한<sup>122</sup> 후, 나중에 황사皇使가 파견될 때까지 머물면서 깊이 저 나라의 정태情態를 탐색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형편에 따라 상의하도록 편의대로 조치할 것.

사년巳年(1869) 11월

외무성

120 관부(官府): 조정

121 이원(利源): 이익의 원천

122 귀부(歸府): 쓰시마로 복귀함

## 12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역대 존호 등에 관해 세 번째 올린 상신서

지난번 서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 지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변관(辨官)으로부터 부지(附紙)로 조선 교제는 외무성에 위임하셨으니, 소가로부터 보내는 사절은 중단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의 안건들에 관해 적어서 최근 지휘를 청했는데, 어제 10일에 부지(附紙)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에 적은 절목에 관해 속히 결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비단 조선과의 응접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요, 무엇보다 양국 교통의 체제에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지시를 청한 사항들에 관해 속히 분부가 있으시길 희망하여 이번에 변관(辨官)에게 지시를 청했으니, 외무성에서도 부디 상의해서 지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11월

이즈하라번 공용인 오다 주자부로(小田忠三郎)

외무성 어역소(御役所)

- . 역대 제왕의 존호(尊號)
- . 국휘(國諱)와 국기일(國忌日)
- . 지사(知事)의 관함(官銜)과 역명(役名)
- . 공명(公命)을 전하는 사절이 입을 의복

조선국에 신정(新政)을 통보하는 사절과 관련하여, 당시 담판의 결말은 외무성에 보고하고, 또 진퇴 문제는 지금까지의 신의를 잃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치하라는 뜻으로 이번에 분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 나라와의 응접의 경위는 지난번 오시마 도모노조가 아뢰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의 순서대로 온 힘을 다해 담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승낙 여부는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본번(本藩)에서<sup>123</sup> 알려오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저들이 끝내 천조(天朝)의<sup>124</sup>

성의誠意에 응하지 않고 집요하고 불려拂戾한<sup>125</sup> 태도로 나오는 경우에는, 지사知事가 건너가서 친히 답판하여 개유開諭할<sup>126</sup>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부디 양해하시고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예전에 지사가 전해왔기에 삼가 보고합니다. 이상.

11월

이즈하라번 공용인 오다 주자부로小田忠三郎

외무성 어역소御役所

### 13 어휘御諱 등에 관해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에게 명령하는 글

사년巳年(1869) 11월 17일 이즈하라번 가시에 겐조梶江謙三에게 하달함

소가宗家에 내린 지령 등본

이즈하라번지사藩知事

조선국 왕복 서한의 건

어휘御諱 또는 어기御忌 등에 관해 지시를 청한 부분은, 아직 제도가 하나로 정해지기 전이다. 따라서 ‘惠’, ‘統’, ‘睦’의 세 글자는, 문장의 흐름 때문에 서한에 써야 한다면 꺾획闕畫해서 쓰고, 나머지는 당분간 사의事諱에 따라 문장을 지어서 왕복해도 무방하다. 대체로 외국 교제 문제는 조선 일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서양의 여러 대국을 대할 때 각각의 문격文格도 있다. 또 조선국과의 교제는, 조정의 정사政事に 관계되는 왕복에 관해선 제반 사무를 외무성이 취급하니 점차 조

123 쓰시마번

124 일본을 가리킴

125 불려(拂戾): 사리에 어긋남

126 개유(開諭): 이치에 맞게 타이름

치가 있을 것이다.

어휘(御諱)·어시(御諱)·어기(御忌) 등의 문제는, 아직 일체 포령이 없었으니 저쪽에서 이를 범한 서한은 돌려보내지 말고, 원문서 등을 당성(當省)에 제출할 것.

그쪽의<sup>127</sup> 명칭 문제는, 관위(官位)와 성명 등을 지금처럼 기재해서 왕복하라. 단, 경계가 인접하여 부득이한 사무 외에는 서한을 왕복하지 말 것. 그쪽 번의 집행(執政)들 가운데 조선에 사절로 파견하는 자는 세상에서 통용하는 공공(公共)의 관직 명을 칭하고, 별도로 ‘대차(大差)’ 등의 호칭을 만들지 말 것. 예복(禮服) 문제도 정치 법도상 신분에 해당하는 예복을 착용할 것.

사년(巳年) 11월

외무성

#### 14 어휘 등에 관해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에게 내린 지령안을 첨부한 상신서

사년(巳年)(1869) 11월 18일 하달함

변관(辨官) 귀중

외무성

쓰시마와 조선 교제의 서한 왕복 등과 관련하여, 고례(古例)의 문격(文格)을 논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별지와 같이 이즈하라번에서 지령을 청했습니다. 이는 일찍이 태정관에도 지시를 청한 것으로, 이번에 지번사(知藩事)가 귀국해서<sup>128</sup> 번정(藩政)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조선국에 서한을 보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문격(文格)을 하나로 정하지 않으면 지장이 있을 것이요, 어휘(御諱) 등의 사안에도 관계되니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당성(當省)으로선 어떠한 지령도 주지 않았습니다.

127 쓰시마번

128 이즈하라번으로 복귀했다는 의미

대체로 어휘 등의 문제는, ‘惠’, ‘通’, ‘睦’의 세 글자를 흠획欠畫한다는 규칙 외에 아직 일반적인 제도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황국皇國은 상무尙武의 풍속이니, 한토漢土<sup>129</sup> 중엽과 같이 유설儒說에 따라 번문육례繁文縟禮를 세우는 것은 상고上古 시절의 뜻과 반대되어 아전雅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치이므로, 이 문제는 추후 가능한 한 간단하게 제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선 소가宗家에서 지시를 청한 건들은, 모두 아직 분부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지에서 지시를 청한 건들에 대해 그대로 놓아둔다면 소가가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하야시林 추벤中辨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 우선 별지와 같이 소가에 지시를 내리신 후 그 서류 등본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아됩니다.

사년巳年(1869) 11월

사년巳年 11월 17일 이즈하라번 가시에 겐조堀江謙三에게 전함

### 소가宗家に 내린 지령안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

#### 조선국 왕복 서한의 건

어휘御諱 또는 어기御忌 등에 관해 지시를 청한 부분은, 아직 제도가 하나로 정해지기 전이다. 따라서 ‘惠’, ‘統’, ‘睦’의 세 글자는, 문장의 흐름 때문에 서한에 써야 한다면 꺾획闕畫해서 쓰고, 나머지는 당분간 사의事諱에 따라 문장을 지어서 왕복해도 무방하다. 대체로 외국 교제 문제는 조선 일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서양의 여러 대국을 대할 때 각각의 문격文格도 있다. 또 조선국과의 교제는, 조정의 정사政事에 관계되는 왕복에 관해선 제반 사무를 외무성이 취급하니 점차 조

<sup>129</sup> 한토(漢土): 중국

치가 있을 것이다.

어휘<sup>御諱</sup>·어시<sup>御諱</sup>·어기<sup>御忌</sup> 등의 사안은, 아직 일체 포령<sup>布令</sup>이 없었으니 저쪽에서 이를 범한 서한은 돌려보내지 말고, 원문서 등을 당성<sup>當省</sup>에 제출할 것.

그쪽의<sup>130</sup> 명칭 문제는, 관위<sup>官位</sup>와 성명 등을 지금처럼 기재해서 왕복하라. 단, 경계가 인접하여 부득이한 사무 외에는 서한을 왕복하지 말 것. 그쪽 번의 집행<sup>執政</sup>들 가운데 조선에 사절로 파견하는 자는 세상에서 통용하는 공공<sup>公共</sup>의 관직명을 칭하고, 별도로 ‘대차<sup>大差</sup>’ 등의 호칭을 만들지 말 것. 예복<sup>禮服</sup> 문제도 정치법도상 신분<sup>130</sup>에 해당하는 예복을 착용할 것.

사년<sup>巳年(1869)</sup> 11월

외무성

## 15 조선 파견 인원의 관록<sup>官祿</sup>과 기타 지급에 관해 대장성에 보낸 조회서

11월 25일 아침 발송함.

이번에 당성<sup>當省</sup> 사다 모토이치로<sup>佐田素一郎</sup> 외 2인에게 조선교제의 시말 조사를 위해 어용<sup>御用</sup>으로 쓰시마 및 조선국 파견 명령이 내렸으므로 곧 출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분의 녹미<sup>祿米</sup> 및 준비금, 일당과 수당 등을 속히 건네주시길 바라오니, 이에 관한 교섭을 준비하십시오.

사년<sup>巳年(1869)</sup> 11월

외무성

대장성 귀중

합습 금<sup>金</sup> 739냥<sup>兩</sup> 1푼<sup>分</sup>

에이<sup>永</sup><sup>131</sup> 100문<sup>文</sup>

---

<sup>130</sup> 쓰시마번

내역	
금 246냥 1푼	사다 <small>佐田</small> 준권대록 <small>准權大錄</small> 쓰시마·조선 어용 <small>御用</small> 출장과 관련된
에이 <small>永</small> 200문	일당, 준비금, 수당. 단, 200일의 견적.
(상세내역)	
금 90냥	준비금 <small>支度料</small> 단, 2배 증분 <small>増分</small> 등
금 18냥 3푼	쓰시마까지 여행, 순회 중 일수 <small>日數</small> 60일의 견적
금 87냥 2푼	조선 출장, 순회 중 일수 <small>日數</small> 140일의 견적 일당 1배 증분 <small>増分</small>
금 21냥	도쿄에서 나가사키까지 육지 여관비. 약 350리 견적
금 27냥	도쿄에서 나가사키까지 관계인 4인분의 임금. 오사카까지 10리
에이 <small>永</small> 200문	1인당 에이 <small>永</small> 269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까지 10리. 1인당 에이 <small>永</small> 150문의 견적
금 2냥	오사카까지 인원 6인분 <sup>132</sup> 가와고에 <small>川越</small> 임금의 견적 단, 이 밖에 가와고에의 임금은 귀부 <small>歸府</small> 하기 전에는 알기 어려움.

<sup>131</sup> 에이(永): 에도시대 영락전(永樂錢)의 통용을 금지한 후, 이세(伊勢) 동쪽 지방에서 막부의 명에 따라 연공(年貢)이 나 몰가 등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전화(錢貨)의 명목상의 명칭. 금화는 이른바 계수화폐(計數貨幣)로서 1냥(兩, 료)은 4푼(分, 훈), 1훈은 4슈(朱)였다. 전화(錢貨)는 1관(貫, 칸)이 1,000문(文, 몬), 1문이 10푼(分), 1푼이 10리(厘, 린), 1리가 10모(毛)였다. 금화 대 전화의 교환기준은 18세기 초반에는 1냥=4관(4,000문)이었으나 19세기 중엽에는 1냥=6.5관(6,500문)으로 변화했다. 한편, 이세(伊勢) 서쪽 지방에서는 은화가 주로 통용되었다. 이는 무게를 따지는 이른바 칭량화폐(稱量貨幣)로서, 초기 교환비율은 금 1냥=은 50문메(匁)였다가 후에 금 1냥=은 60문메로 변화했다.

<sup>132</sup> 원문에는 인원수가 누락돼 있다. 다음에 나오는 모리야마(森山)의 견적서에서 오사카까지 6명을 고용하는데 금 2냥을

금 246냥 1푼	모리야마 <sup>森山</sup> 소록 <sup>少錄</sup> 쓰시마·조선 어용 <sup>御用</sup> 출장과 관련된
에이쵸 200문	준비금, 일당, 수당. 단, 200일의 견적.
(상세내역)	
금 90냥	준비금 <sup>支度料</sup> 단, 2배 증분 <sup>増分</sup> 등
금 18냥 3푼	쓰시마까지 여행, 체재 중 일수 <sup>日數</sup> 60일의 견적
금 87냥 2푼	조선 출장, 순회 중 일수 <sup>日數</sup> 140일의 견적 일당 1배 증분 <sup>増分</sup>
금 21냥	도쿄에서 나가사키까지 육지 여관비. 약 350리의 견적
금 27냥	도쿄에서 나가사키까지 관계인 4인분의 임금. 오사카까지 10리
에이쵸 200문	1인당 에이쵸 269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까지 10리. 1인당 에이쵸 150문의 견적
금 2냥	오사카까지 인원 6인분 가와고에 <sup>川越</sup> 임금의 견적 단, 이 밖에 가와고에의 임금은 귀부 <sup>歸府</sup> 하기 전에는 알기 어려움.
금 246냥 1푼	사이토 <sup>齋藤</sup> 준소록 <sup>准少錄</sup> 쓰시마·조선 어용 <sup>御用</sup> 출장과 관련된
에이쵸 200문	준비금, 일당, 수당. 단, 200일의 견적

지급한다고 한 것을 참조했다.

(상세내역)	
금 90냥	준비금支度料 위와 같음
금 18냥 3푼	쓰시마까지 여행, 체재 중 일수日數 60일의 견적
금 87냥 2푼	조선 출장, 순회 중 일수日數 140일의 견적 일당 1배 증분增分
금 21냥	도쿄에서 나가사키까지 육지 여관비. 약 390리의 <sup>133</sup> 견적
금 27냥	도쿄에서 나가사키까지 관계인 4인분의 임금. 오사카까지 10리
에이永 200문	1인당 에이永 269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까지 10리. 1인당 에이永 150문의 견적
금 2냥兩	오사카까지 인원 6인분 가와고에川越 임금의 견적 단, 이 밖에 가와고에의 임금은 귀부歸府하기 전에는 알기 어려움.

## 16 앞의 견에 관한 관록조서官祿調書

조선 어용御用 출장자의 관록官祿<sup>134</sup> 조서調書

합 米 16섬石 3되升 1홉습 2작勺 5재才<sup>135</sup>

<sup>133</sup> 350리의 오기로 생각되나 일단 원문대로 옮겼다.

<sup>134</sup> 관에서 받는 봉록(俸祿)

<sup>135</sup> 1섬(石)은 10말(斗), 1말 10되(升), 1되 10홉(合), 1홉은 10작(勺), 1작은 10재(才)다.

내역	
겐마이 <sup>136</sup> 33섬의 비율[割合] 미 1섬 3말 7되 5홉	11월 전반분
겐마이 50섬 2말 3되의 비율 미 2섬 9되 3홉 7작 5재	11월 후반분
겐마이	
12섬 5말 6되 2홉 5재	사년 <sup>巳年(1869)</sup> 12월부터 이듬해 정월, 2월의 3개월분 어용 <sup>御用</sup> 출장 선지급분
합 미 12섬 4말 9되 9홉 9작 8재	모리야마 소록 <sup>少錄</sup>
단, 조선 어용 출장이므로 사년 <sup>巳年</sup>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치 선지급 미(米) 타카 <sup>高</sup> 임	
합 미 12섬 2되 8작 2재	사이토 준소록 <sup>准少錄</sup>

내역	
겐마이 <sup>136</sup> 26석의 비율 미 1섬 8되 3홉 3작 1재	11월 전반분
겐마이 37석 5토의 비율 미 1섬 5말 6되 2홉 7작	11월 후반분
겐마이	
9섬 3말 7되 5홉	사년 <sup>巳年(1869)</sup> 12월부터 이듬해 정월, 2월의 3개월분 어용 <sup>御用</sup> 출장 선지급분
합 미 40섬 5말 5되 2홉 5작	

<sup>136</sup> 겐마이(現米): 녹으로 주는 쌀

## 17 앞의 건의 비용 등에 관해 대장성에 보낸 조회서

각覺

一. 지폐金札(곤사츠)<sup>137</sup> 1,500냥

준비금

一. 금화正金(쇼킨)<sup>138</sup> 1,500냥

조선국 채류 중에 지불 등과 관련하여 완전히 지폐의 통용에 지장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준비금

一. 양은洋銀(요긴)<sup>139</sup> 500불弗

나가사키에서 귀환할 때 외국 히카쿠부네飛脚船<sup>140</sup> 운임의 대략적 견적

이상은 이번에 당성當省의 사다 모토이치로와 그밖에 2인이 쓰시마 및 조선국 어용御用的 명을 받아 곧 떠날 것이므로, 왕복 선임船賃과 채류 중의 여관비입니다. 또 저 나라와의 예로부터의 교제시말交際始末과 무역의 상황 등 기타 조사, 그리고 물가 수준, 화폐의 선악善惡, 향후 무역의 절차와 전망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상황에 따라 저 나라의 화폐나 다른 물건 등을 매입해서 물품의 정밀함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탐색 등과 관련하여 뜻밖의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전서前書의 여관비 등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생략하였으니 서면과 같이 준비금을 조속히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단, 귀부歸府한 후 지출 감정勘定을 할 예정이니 그렇게 양찰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up>137</sup> 에도시대 여러 번(藩)에서 금화의 대응으로 발행한 지폐로서, 주로 간토(關東),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유통되었다. 이밖에 1867년 막부가 발행한 에도긴자곤사츠(江戸銀座金札), 메이지 정부가 메이지 1~2년에 발행한 다이쇼칸사츠(太政官札), 민부쇼사츠(民部省札) 등이 있었다.

<sup>138</sup> 보조화폐인 지폐(紙幣)에 대해 강제통용력을 갖는 금은화폐

<sup>139</sup> 에도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일본에 유입된 외국 은화

<sup>140</sup> 주요 항구에서 관민(官民)을 불문하고 급한 용무에 쓰던 소형 선박

사년巳年(1869) 11월  
대장성 귀중

외무성

대장성에서 보내온 글 사본

서면에서, 사다 모토이치로 외 2인이 쓰시마 및 조선국 어용御用の 준비금과 관련하여 금화[正金]와 양은洋銀은 신청하신 대로 지급하겠지만, 지폐[金札]는 저곳에서 통용되지 않으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대장성

준비금 신청서[引合書]의 부지附紙

서면에서, 사다 모토이치로 외 2인이 쓰시마 및 조선국 어용御用の 준비금과 관련하여 금화[正金]와 양은洋銀은 신청하신 대로 지급하겠지만, 지폐[金札]는 저곳에서 통용되지 않으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일

대장성

**18**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惠, 統, 睦 글자의 흠획欠劃 및 지사知事の 관함官銜, 명칭 등에 관해 상신한 글

조선국 교제의 어휘御諱·어기御忌 등과 관련하여 최근 분부하신 내용을 지사知事가 확인한 후, 거듭 지시를 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 지사에게 분부하신 것도 있고, 또 그 주의主意를 확실하게 유념하여 받들고자 다음의 여러 건에 관해 우선 지시를 청합니다.

一. ‘惠’·‘統’·‘睦’의 세 글자는, 문장의 흐름 때문에 서한에 써야 한다면 흠획欠畫  
 해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황국皇國의 휘자諱字와 관련하여 서로 왕복할 때 흠획  
 해서 정체停滯가 없게 하라는 것은, 지극히 간이簡易하게 하려는 주의主意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국 휘자諱字의 경우, 저들의 서한에서 흠획하게 해도  
 글로 쓰지 않을 것은 물론이요, 또 본방本邦에서 흠획해서 보내더라도 전혀 승  
 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분부하신 내용에 따라 황국의 어휘는 양  
 국이 모두 흠획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저 나라의 어휘는 일체 피해서 사  
 용하지 않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해도 체재體裁에 무방하겠습니까? 이미 작년에  
 신정新政 통보와 관련하여 쓰시마에서 저 나라에 보낸 서한안書翰案을 행정관에  
 게서 받았습니다. 그 글 첫머리에 ‘황통연면皇統聯綿’이라는 자구가 있었습니  
 다. 이 건의 경위는 자세히 아뢰었는데, ‘통統’이라는 글자를 서로 피한다면 ‘황  
 조연면皇朝聯綿’이라고 개찬改撰하게 될 것이니, 만일을 위해 우선 지시를 청합  
 니다. 또 세수歲數와 관련하여 작년엔 5대를 피회避諱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대로 결정하셨으니, 이는 전후 세수歲數의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조선은 지금까지 개조開祖 이래를 모두 기휘忌諱하는 것으  
 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대라고 하셨으니, 그래도 조선국의 어휘御諱는 그  
 나라 국법대로 개조開祖 이래를 모두 피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황조皇朝  
 가 3대로 결정하였으니, 저 나라의 휘자諱字도 3대를 피해주시겠습니까? 그런  
 데 3대로 답판하는 것은 쉽게 승낙하지 않을 것이니, 이에 관해 지시를 청합  
 니다.

어휘御諱·어시御諱·어기御忌 등의 사안은, 아직 일체 포령이 없었으니 저쪽에  
 서 이를 범한 서한은 돌려보내지 말라는 등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이를 굳이  
 본번本藩에서 먼저 나서 포고하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나라에서  
 는 국휘國諱와 국기國忌의 제도를 옛날부터 엄중히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전  
 부터 양국 간 교제에서 특별히 중시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교통交通을 새로 시  
 작하는 초기에 휘자諱字를 일정하게 우선 포령布令해 두지 않으면 당장 양국 간

서면書面 왕래에도 지장이 있고, 저 나라도 거의 폐를 입을 것입니다. 또 어기御忌 문제는, 예년 쓰시마에서 파견하는 세견송사歲遣送使와 표차사漂差使, 기타 격식을 세운 교례交禮에서 양국의 기일을 피하고 또 국기일에 해당하면 안팎으로 재계하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이는 교제상 당연한 절목節目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 가을에 저 나라 관리가 본번本藩의 관리에게 어휘·어기를 질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일신一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마兵馬가 공충倥傯하여 일정한 제도를 세우기 전이었으므로 추후 고지하겠다는 말로 처리해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세월을 천연遷延하였으니, 앞으로 질문했을 때 더 이상 애매한 답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일과 달리 이 문제는 등한시하며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거듭 아뢰는 것이니, 무언가 결정한 지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령서御沙汰書 내에 어시御諡와 어기御忌는 왕복 서한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뜻이 보입니다만, 이 두 가지 사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기國忌에 관해선 앞에서 이미 아뢰었습니다. 어시御諡는, 이번에 조정에서 친교親交를 하시게 되었으니 역대의 존호를 받드시 저 나라에서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원호院號 등에 관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지시를 청하오니, 이 또한 부디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사知事의 관함官銜과 명칭名稱은, 지금까지처럼 처리하여 왕복하라는 명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작년 일신一新을 통보했을 때 지시를 청한 문헌에 의거하여 종래의 명칭을 변혁해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용御用의 담판 중에 다시 개칭한다면 교섭하는 데 매우 불리한 점도 있을 것이니, 우선 당분간은 지금까지처럼 하고 상황에 따라 적의適宜한 조처를 하는 것 등에 대해 부디 양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자세한 사실과 함께 서한 왕복의 사례, 그리고 예년 세견선과 표차사漂差使 외의 임시 사절은 매우 드문 일이긴 하나 지시하신 대로 그 내용 또한 보고하겠습니다.

- 본번本藩의 집정직執政職으로서 정부의 명을 전하는 자를 ‘대차大差’라고 호칭한 것은, 사절의 명칭을 본번 사교私交의 사절에 대응한 것입니다.<sup>141</sup> 따라서 조금도 관명官名 등과 유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복禮服 문제는, 이제 번치藩治의 참관상당표參官相當表의 취지도 있으니 따로 지시를 청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부디 지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11월 이즈하라번 공용인公用人 오다 주자부로小田忠三郎  
외무성 어역소御役所

### 19 조선 파견원의 비용에 관한 평의서評議書

외무성 질의

조선 및 쓰시마 등에 지참해 갈 준비금의 수령을 상신하는 감정서

사다 모토이치로佐田素一郎

모리야마森山 소록少錄

사이토 겐노조齊藤源之丞

- 지폐[金札] 1,500냥

준비금

- 금화[正金] 1,500냥

조선국 체류 중에 지불 등과 관련하여 완전히 지폐의 통용에 지장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준비금

<sup>141</sup> 과거 쓰시마에서 조선에 보낸 사절의 명칭을 답습했다는 의미

-. 양은洋銀 500불

나가사키에서 귀환할 때 외국 쾌속선(飛脚船, 히카쿠부네) 운임의 견적

이상은 조선국 및 쓰시마에 어용御用으로 건너가게 되었으므로, 왕복 선임船賃과 체류 중의 여관비, 그리고 저 나라와의 무역 내력의 조사, 물가 수준, 화폐의 선악善惡, 향후 무역의 절차와 전망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상황에 따라 저 나라의 화폐나 다른 물건 등을 매입해서 물품의 정밀함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저 지역의 내탐 등과 관련하여 불시의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전 문서의 여관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가능한 한 생략하였으니 서면과 같이 준비금을 지참해서 건너간 후, 귀부歸府한 뒤에 정리하는 감정勘定을 할 계획입니다. 단, 출발 기한 등 급히 결정해서 상신한 지침에 관해선 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아뢴다. 이상.

사년巳年(1869) 11월

사다 모토이치로

모리야마 소록

사이토 겐노조

**20** 대장성에 앞의 건에 관해 다시 보낸 조회서

대장성 귀중

외무성

어제 부지附紙로 회답하셨습니다. 이번에 당성當省 관원의 쓰시마 및 조선국 출장 명령과 관련하여, 그 준비금액 금화[正金] 1,500냥, 지폐[金札] 1,500냥, 양은洋銀 500불 가운데 지폐[楮幣] 분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뜻을 알았습니다. 이 지폐는 쓰시마는 물론, 오사카 및 나가사키 등에서도 조사를 위해 각각 체재할 예정이고,

또 지금 정화폐正貨幣<sup>142</sup> 거의 고갈된 상황이므로, 우선 지폐로 어떻게든 임기 조치를 할 생각으로 상의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급을 조치하기 어렵다면, 서면書面의 금액을 모두 정화폐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세한 것은 귀성 貴省<sup>143</sup> 출납과出納掛 다구치田口 씨에게 사전문의해 두었으니, 그에게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일자가 임박했으므로 지급일을 속히 회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거듭 상의드립니다.

11월 30일

그 뒤에 사전문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니부킨貳分金<sup>144</sup> 지장이 있을까 우려되니 이치부긴一分銀 또는 단지 양은洋銀으로 지급해주시길 재차 신청합니다.

대장성에서 보내온 쪽지 등본下々紙寫

서면에서 언급한 준비금과 관련하여, 금화[正金] 1,500냥, 양은洋銀 500불弗을 제외하고는 지급 조치하기 어려우니, 이것으로 조치를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니부킨貳分金은 지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치부긴一分銀과 양은洋銀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를 재차 통보합니다.

12월

대장성

142 정화폐(正貨幣): 본위화폐

143 귀성(貴省): 대장성

144 에도시대 유통된 금화의 일종

**21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외 2인의 도한渡韓과 관련하여 공신公信의 절차를 명하는 글**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귀중

외무성

이번에 외무성 출사出仕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외 2인을 조선국에 어용御用으로 파견할 것이니, 이 어용 가운데 당성當省의 고요조御用狀<sup>145</sup> 그쪽 현에서 증기선편 등으로 나가사키에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고요조 또한 이 절차에 따라 전달할 예정이니, 그때마다 부디 조치하십시오. 이를 미리 통지합니다.

사년巳年(1869) 11월

**22 나가사키현長崎縣에, 상동.**

나가사키현長崎縣 귀중

외무성

이번에 외무성 출사出仕 사다 하쿠보 외 2인이 조선국에 어용으로 파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형편에 따라 그 항구에 정박할 것이니, 제번諸藩의 증기선 또는 인근 제번諸藩이 보유한 선박 중에서 쓰시마에 보내기 바랍니다. 단, 이 도항선의 왕복에 필요한 석탄 등은 그쪽 현의 경비에서 처리하십시오. 이는 모토이치로 외 2인이 신청하는 대로 모쪼록 주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용들에게 왕복하는 당성當省의 고요조御用狀은 그쪽 현에 발송할 것이니 쓰시마에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의 고요조 또한 이 절차에 따라 보낼 예정이므로, 증기선편 등을 당성에 지체 없이

---

<sup>145</sup> 고요조(御用狀): 군주나 정부의 공식 서한

보내는 것도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지합니다.

사년<sup>巳年(1869)</sup> 11월

**23** 오사카부<sup>大阪府</sup>에, 상동.

12월 2일 하달함

오사카부<sup>大阪府</sup> 귀중

외무성

이번에 외무성 출사 사다 하쿠보 외 2인이 쓰시마 및 조선국에 어용으로 파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어용들에게 당성<sup>當省</sup>에서 고요조<sup>御用狀</sup>를 왕복하는 일 등은 나가사키현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자연히 선편<sup>船便</sup>의 상황에 따라 가나가와, 나가사키 두 현 중 하나가 그쪽 부<sup>府</sup>에 전달할 경우 송달이 지체되지 않도록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미리 통지합니다.

사년<sup>巳年(1869)</sup> 11월

**24** 효고현<sup>兵庫縣</sup>에, 상동.

12월 2일 하달함

효고현<sup>兵庫縣</sup> 귀중

외무성

이번에 외무성 출사 사다 하쿠보 외 2인이 쓰시마 및 조선국에 어용으로 파견

되는 것과 관련하여, 파견 중 당성(當省)에서 고요조(御用狀)를 왕복하는 일 등은 나가사키현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자연히 선편(船便)의 상황에 따라 가나가와, 나가사키 두 현 중 하나가 그쪽 현(縣)에 전달할 경우 송달이 지체되지 않도록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미리 통지합니다.

사년(巳年(1869) 11월

**25**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나가사키(長崎) 두 현에 앞의 건과 관련하여 도항 중 석탄 결핍, 또는 기타 파견 인원이 신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고, 그 값은 외무성에 신청할 것을 지령하는 글

11월 23일 하달함

오사카부

효고현 귀중

나가사키현

외무성

이번에 외무성 출사 사다 모토이치로 외 2인이 쓰시마 및 조선국에 어용이 되어 제번(諸藩)의 증기선으로 도항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도항선 가운데 만일 석탄이 떨어져서 모토이치로 외 2인이 그쪽 항구에 통지하면 지급을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값은 당성(當省)에서 상환할 것입니다. 이를 의뢰합니다.

사년(巳年(1869) 11월

나가사키에는 조선 출장과 관련하여 앞으로 고요조御用狀의 왕복 등이 있을 것이니, 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뜻을 전달할 것.

**26**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외 2인에게 나가사키長崎에서 이교도 조처 상황을 탐색할 것을 명하는 글

사다 하쿠보  
모리야마 소록  
사이토 겐노조

조선의 어용으로 나가사키에 출장갈 때, 우라카미浦上 촌민村民 가운데 크리스  
트교耶蘇宗를 신앙하는 무리의 조처에 관해 풍문을 탐색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비밀리에 보고할 것.

사년巳年(1869) 12월

**27** 대장성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재한在韓 중 탐색을 위해 사용할 증답품 휴대에  
관해 보낸 평의서

외무성 질의

조선국 체재 중 만일 내탐內探 등을 위해 감사 물품을 보내든지, 또는 관원 등이

146 두루마리나 편지 등을 싸는 종이

증물贈物 등을 보내왔을 경우 답례품 등에 지장이 있으므로, 준비금 중 일부를 핫켄八犬 시마치리멘縞縮緬 15, 6탄反<sup>147</sup> 정도를 수매할 수 있도록 가져가려고 생각합니다. 이를 미리 아뢰입니다.

12월

## 28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의 도한渡韓에 따른 선임비船賃費 등에 관한 조회서

대장성 귀중

외무성

별지의 두 번째 부찰附札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지폐[金札] 1,500냥 건은, 나가사키에서 쓰시마로의 왕복 선임船賃과 쓰시마 체재 중의 제반 비용, 그리고 쓰시마에서 조선으로의 도항과 기타 비용의 대략적인 견적입니다. 단, 이제 지출비용이 많이 드는 때인 만큼 가능한 한 생략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임船賃과 그 밖의 일들에 지장이 있으니, 끝내 지폐를 지급하시기 어렵다면 사의事誼에 따라 나가사키현, 또는 이즈하라번에 출장 나간 인원들의 교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우선 대리지급[立替] 하도록 해당 지역에 보낼 증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별지 내역서를 첨부합니다. 이를 재차 상의드립니다.

12월

또한 모레 7일에 출발할 예정이므로, 금화[正金]와 양은洋銀,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한 해당 지역에 보낼 증서 등을 금일 중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sup>147</sup> 탄(反): 직물 길이의 단위로써, 1탄은 대략 성인의 기모노(着物) 1매를 만들 정도의 크기이다.



여관비는 여비와 함께 수취하고, 나가사키로부터 귀로歸路 분은 양은洋銀으로 지급받은 후 정산함. 조선 체류 중 기타 여관비는 140일로 견적하되, 1인당 하루 금 2푼으로 견적함. 상하上下 인원수 8인분

---

금화 640냥

쓰시마 및 조선국 체류 중 여러 내탐內探 및 기타 여러 용도 대비분

---

금화 300냥

쓰시마에서 나가사키까지 귀로歸路 선임船賃 등의 예상

---

-. 양은洋銀 500불

나가사키에서 도쿄까지 귀로歸路 선임船賃의 견적.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여비는 인부와 선임船賃, 여관비 등 귀로歸路 분을 제하고 수령함.

**29** 시치조七條 시조史生가 외무성에서 조선 사무를 담당하는 것에 관한 평의서

외무성 질의

시치조七條 시쇼史生<sup>149</sup>에게 조선행 어용御用과 관련하여 도쿄에서 담당할 것을 전달하셨으니, 다음과 같이 결정해서 통보해 둘 생각임.

- . 조선관계의 어용서물御用書物 등은 모두 인수해서 움직일 것.
- . 여러 관성官省 및 제번諸藩에 대한 사전문의 등 조선 관계의 어용御用은 인수해서 처리할 것.

---

<sup>149</sup> 시쇼(史生): 메이지 초기 서기관에 해당하는 종8위의 관직

- 조선국 및 쓰시마 출장 중 왕복 고요조<sup>御用狀</sup>는 앞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  
단, 고요조<sup>御用狀</sup>를 보낼 때마다 어용 행선지에 있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포고<sup>布告</sup>, 태정관<sup>太政官</sup> 일지<sup>日誌</sup>, 외무성 관원의 진퇴 및 규칙변혁 등을 모두 남김없이 전달할 것.  
덧붙임. 출장자들의 집안 서한<sup>宅狀</sup><sup>150</sup> 왕복 또한 취급할 예정이니, 포고 등 유수택<sup>留守宅</sup><sup>151</sup> 있는 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사항은 수시로 전달할 것.
- 조선행 유수<sup>留守</sup><sup>152</sup> 중에 관록<sup>官祿</sup>의 수령 방법은 앞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

사년<sup>巳年</sup>(1869) 12월

조선행 담당자들에게

### 30 사다 하쿠보<sup>佐田白茅</sup> 등의 여비 등과 관련하여 대장성에 보낸 조희서

대장성 귀중

외무성

당성<sup>當省</sup> 출사<sup>出仕</sup> 사다 하쿠보 외 2인의 부속 출장을 명한 당성의 후레츠카이<sup>觸使</sup><sup>153</sup> 1인의 준비금, 일당, 수당에 관해서는 선례가 없습니다. 직제에도 없고 단지 신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리쿠젠<sup>陸前</sup>·무츠<sup>陸奥</sup> 해안의 밀상<sup>密商</sup>을 조사할 때 어용<sup>御用</sup>으로 출역<sup>出役</sup>할 것을 명했습니다. 당성 역원에게 후레츠카이를 붙이는 것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이 준비금, 일당, 수당, 여관비 등을 내려주었으므로 이번에도 그 비율로 별지대로 속히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상의드립니다.

사년<sup>巳年</sup>(1869) 12월

150 가서(家書), 즉 집안 편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151 유수택(留守宅): 주인이 없는 집

152 유수(留守): 외출하여 집에 부재함

153 후레츠카이(觸使):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 수행원

합승 금 233냥 에이췌 200푼	당성當省 후레츠키아 <sup>154</sup> 1인 조선행 여비
내內	
금 42냥	준비금, 1인, 금 7냥씩 2배증 <sup>倍增</sup>
금 30냥	일당, 수당 1일 금 1푼씩 쓰시마까지 왕복 60일의 견적
금 140냥	상동 <sup>上同</sup> . 쓰시마에서 조선까지 1배증 <sup>倍增</sup> , 1일 금 2푼씩 왕복 140일의 견적
금 21료 에이췌 100푼	여관비 1일 에이췌 300푼씩. 나가사키까지 육지 약 350리의 견적. 35박 36일
	오슈 <sup>奥州</sup> 에 <sup>154</sup> 갈 때 후레츠키아 1인
금 7냥	준비금
금 1푼 2슈 <sup>朱</sup> 씩	일당 및 수당 단, 칼을 찬 자의 경우
금 1푼 2슈 <sup>朱</sup> 씩	여관비

이상은 올해 10월 중 교섭을 마친 후 수령하여 전달하도록 조치할 것.

<sup>154</sup> 무츠노쿠니(陸奥國)의 별칭

**31**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의 승선 및 여관에 지장이 없도록 지령 하는 글

이번에 쓰시마 및 조선 어용御用의 명을 받은 사다 하쿠보, 모리야마 소록, 사이토 겐지조 및 부속 2인이 내일 6일 이곳을 출발하여 그쪽<sup>155</sup> 항구에서 역선驛船에 탑승할 예정이니 여관 한 곳을 분부하고, 또 앞에 적은 인원수의 선박 탑승 형편 등을 부디 후나야도船宿에<sup>156</sup> 사전문의해주길 바랍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12월 5일

외무성

가나가와현 귀중

또한 선박의 객실 등에 관해선 당사자 등이 도착한 후 명령하겠지만, 잘 조치해주길 바랍니다.

**32** 조선 왕복서한 중 지사의 명칭에 관해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올린 상신서

지난번 조선국 교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시를 청했는데, 지난달 17일의 문서로 분부하신 것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장이 되는 것이 적지 않았으므로, 황송하오나 같은 날 다시 분부를 여쭙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다 모토이치로를 파견한다는 말씀口達과<sup>157</sup> 외국 교제는 아직 기본基本이<sup>158</sup>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건에 대해 명확하게 자세히 답을 줄 수가 없으니 현재 응접應接에 관해선 우선 그쪽 번이<sup>159</sup> 시의에 맞게 조치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중 지사知事의

<sup>155</sup> 야나가와현

<sup>156</sup> 후나야도(船宿): 선박 중개업소

<sup>157</sup> 고타츠(口達): 구두로 전달하는 지령

<sup>158</sup> 기본(基本): 기본방침

관칭官稱과 관련해서, 현재 보내 놓은 신정新政 통보의 서한은 작년 여름 서경西京<sup>160</sup>에서 결정한 대로 해도 무방하며, 앞으로 지번사知藩事의 칭호로 고칠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는 예로부터 고루한 국풍國風으로, 앞의 글에서 아뢴 것처럼 일신一新을 통보하라는 조명朝命에 따라 파견한 사절이 오로지 응접에 진력하는 중에 정례의 서한 왕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되어 호칭을 개혁하는 포고를 내릴 경우, 응접과 관련하여 당장 이것저것 임기응변하는 데 당혹스러움이 적잖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분부가 내려온 후, 다단多端한 때인 만큼 다시 지시를 청하는 것은 매우 황송하오나, 기본基本을 결정할 때까지는 지번사知藩事の 명칭 등을 시의時宜에 따라 고칠 수 있도록 분부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해 부디 지시를 내려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12월 7일

이즈하라번 공용인公用人 오다 주자부로

외무성 어역소御役所

부지  
附紙

요청한 내용은 승낙하기 어려움.

위와 같은 부지附紙를 덧붙여 이즈하라번 공용인에게 전달함.

12월 12일

<sup>159</sup> 이즈하라번

<sup>160</sup> 서경(西京): 교토

**33** 이즈하라번(嚴原藩)에 외무성 관원이 탐색을 위해 도한(渡韓)하므로 협력할 것을 지령하는 글을 첨부한 평의서

이즈하라번에  
사다 하쿠보  
모리야마 시게루  
사이토 사카에(齊藤榮)

상기인들은 조선국 국정(國情)의 탐색을 위해 어제 6일 출발하여 오늘 7일 편선(便船)으로<sup>161</sup> 출발했습니다. 그쪽 번에<sup>162</sup> 도착하면 모든 일을 상의하여 면밀하게 정탐할 수 있도록 협력하십시오. 이를 명심하도록 통보합니다.

12월 7일

외무성

◎ 외무성 회람(省中廻シ)

오늘 아침 가나가와 편으로 어제 6일 출발한 조선행 역원(役員)들이 어제 7일 4시 출발했다는 소식이 도착했으므로 이를 보고드립니다.

조선어용과(朝鮮御用掛)

-. 긴급한 집안 서한(宅狀)이 있으므로, 별지 이즈하라번에 보내는 지령서에 첨부하여 회람합니다. 이 또한 보고드립니다.

<sup>161</sup> 편선(便船): 때마침 탈 수 있는 배편

<sup>162</sup> 이즈하라번

**34** 가나가와神奈川·나가사키長崎 두 현에 모리야마 소록에 보내는 공신公信의 송달을 의뢰하는 글<sup>163</sup>

가나가와현金川縣

나가사키현長崎縣 귀중

외무성

별지 1통을 나가사키에서 모리야마 소록에게 긴급히 전달하도록 조치하십시오. 만약 나가사키에서 이미 출범했다면, 쓰시마까지 전달해 주십시오. 이를 상의 드립니다.

**35** 시즈오카번靜岡藩에서 조선관계 서적 7부를 제출하는 글

별지의 목록서와 같이 시즈오카靜岡에서 보내왔으므로 올립니다. 이상.

시즈오카번 공용인公用人

12월

스기야마 히데타로 枚山秀太郎

오다 마타조 小田又藏

세키구치 라이모 關口頼藻

외무성 귀중

각覺

-. 가기초록家紀抄錄 3책

-. 양국화평조체兩國和平條體 1책

<sup>163</sup> 내용상 다음 문서에 기입돼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원문대로 옮겼다.

-. 조선국신서식朝鮮國信書式	1책
-. 조선인내조지기朝鮮人來朝之記	2책
-. 잡초雜抄	1책
-. 천호록踐好錄	5책
-. 조선빙례식朝鮮聘禮式	1책

위와 같습니다. 이상.

12월 15일

목록과 같이 외무성에 상납함	외무성
-----------------	-----

**36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외 2인이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이교도 조처 상황을 상신하는 글**

나가사키 출장 중에 우라카미浦上 촌민村民 가운데 크리스트교耶蘇宗 신도에 대한 조처와 풍문을 탐색할 것을 예전에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나가사키에 도착한 당일 해당 현縣 외무국外務局에 다른 용건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전술한 이교도異宗之徒를 지난달 하순 이후 이주引移시키는 일에 착수한 때였으므로, 영국 공사가 건너와서 이러한 조처에 관해 언급하며 격렬하게 따졌지만, 본디 그 말을 채택해야 하는 이치는 없습니다. 예전에 분부하신 대로 제변諸藩의 증기선과 기타 카이센廻船 등에<sup>164</sup> 태워서 출범出凡을 단행한다면 영국 공사가 도쿄에 나가서 반드시 곤란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곳의 사정을 해명하기 위해 현縣의 1, 2명을

<sup>164</sup> 카이센(廻船): 에도시대 정기 항로로 항행한 대형 화물선. 화물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메이지 이후 증기선과 철도가 출현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도쿄에 보냈다는 소식을 노무라野村 지현사知縣事가 아뢰었습니다. 또한 항설巷說도<sup>165</sup> 탐문하고, 우라카미 촌에도 건너가서 민심을 탐색했습니다. 이 촌村은 1,200 내지 1,300섬 정도의 무라다카村高이므로<sup>166</sup> 호수戶數와 인구가 적지 않은데, 7 할 정도는 빈집空室이 되어 각 현縣에서 봉인封印을 붙였습니다. 단, 나가사키 경내에 인접한 지역은 전부터 이교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할은 아직 남아 있지만, 대대로 오래 거주한 토지가 한순간에 끊어진 모양이 되었으니 실로 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자들은 원래 죽음을 결심한 이들이니, 이번의 조치에 대해 황송하오나 다시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은 없을 것이요, 오히려 종문宗門의<sup>167</sup> 면목面目이 왕왕 국내에 만연하는 단서를 열 것이니 모두가 태연하게 선박들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신도 가운데 그전에는<sup>168</sup> 80인 정도는 다시 개심改心하고,<sup>169</sup> 150~160명 정도는 그때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전寬典의<sup>170</sup> 조치를 받은 80인 가운데 40인 정도는 처음에 개심改心이라고 한 것은 거짓으로, 다른 지역 이주의 처분을 받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치해줄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탈주한 150~160명 가운데는 마고메무라馬込村 쇼토쿠지聖德寺에 탄원하여<sup>171</sup> 개심改心を 드러내며 연휼憐恤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청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외국 상관商館에 숨어 있는 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 천주당天主堂에 숨어 있는 사다카타 후쿠지로貞方福次郎라는 자는 나가사키 호적에 있는데, 이교異教의 신앙을 지금까지 어리석은 백성에게 가르쳤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체포방법을 비롯하여, 개심改心한 자 등을 현재 전력으로 조사하고

165 항설(巷說): 항간에 떠도는 말

166 무라다카(村高): 에도시대 연공(年貢) 및 공역(公役)의 부담 기준이 되는 촌의 경작지와 가구 등의 총 소출

167 종문(宗門): 크리스티교

168 강제 이주 이전

169 개심(改心): 개종

170 관전(寬典): 너그러운 처분

171 원문의 카케코미(驅込)는 에도 시대 정해진 재판절차를 밟지 않고, 영주나 막부의 중신 등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선박에 태운 자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서둘러 가재家財 등을 팔아치우고 사소한 물품까지 금전으로 정리하였고, 각자 챙길 수 있는 만큼의 물품은 휴대하여 남녀노소와 노비 등에 이르기까지 약 2,400~2,500명 정도가 계속해서 줄을 지어 각자 크라이스트의 성경을 높은 소리로 송독하며 나가사키를 떠나갔습니다. 게다가 이 인원과 가족 가운데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노인과 아이 등 토지를 버린 것을 슬퍼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만, 제각기 노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아이를 때리면서 배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군신친자君臣親子의 인정人情을 상실하고, 무엇보다 국은國恩을 망각한 마음이 실로 가증스러우니, 이를 보고들은 이웃 마을의 인민은 모두 소매를 걷어붙이며 미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전에 개심했다고 하면서 남아 있는 자들은 이번에 그대로 놓아두었지만, 이는 이 마을에 종지宗旨의<sup>172</sup> 뿌리가 단절되는 것을 싫어해서 짐짓 개심을 드러낸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뒤엔 땅을 정화하고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의 우려가 없지 않다는 등의 말을, 이 마을 내에서도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은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이 마을의 퇴전退轉<sup>173</sup> 흔적이거나 차대借貸 내용, 전답의 저당質入, 연공年貢의 미납, 그밖에 전답의 할당, 소작 요청 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현縣에서 날마다 출장 나와서 이 마을 쇼야庄屋<sup>174</sup> 다카야 간주로高谷官十郎에게 조사시키고 있습니다. 저자의 인민들은 이번의 조치에 대해 이것저것 떠드는 자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탐색한 내용은 대략 지금까지의 서면과 같습니다. 이상.

12월 20일

사다 하쿠보  
모리야마 시게루  
사이토 사카에

172 종지(宗旨): 종교의 뜻

173 파산하여 집이 다른 데로 넘어감

174 쇼야(庄屋): 촌장

현재 조선 사정을 조사했으므로 우견愚見을 진술하라는 뜻에 따라 복귀 후 아  
됩니다.

미야모토宮本 권소승權少丞

조선론朝鮮論 (1)

지금 조선 문제를 논하는 자들은, ‘왕정복고王政復古하여 천황폐하께서 대호령  
大號令을 내리신 이상, 조선은 옛날과 같이 속국屬國이 되어 번신藩臣의 예禮를 행해  
야 한다. 마땅히 속히 황사皇使를 파견해서 그 부정不庭을<sup>175</sup> 꾸짖고 포모包茅의<sup>176</sup>  
조공을 들이게 해야 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저들의 국제國體를 알지 못하는  
논의이다.

과연 고사古史를 살펴보면 조선을 개창하신 일, 조선을 정복하신 일이 보이지  
만, 지금 조선의 일이 아니요, 저 나라가 상고上古부터 중엽中葉의 신라·백제·고려  
[원핀]라는 세 나라로 나눌 때까지의 일이다. 그때는 일본의 용무勇武에 굴복해서  
일본의 영지도 확실히 조선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우리 황강皇綱이  
해이해져서 천하가 전쟁터가 되었고, 저 3국도 차츰 상실했다. 그 결과 지금의 이  
씨李氏가 일어나 조선을 통일하고 국호도 다시 ‘조선’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우리  
남조(南朝) 고카메야마(後龜山, 재위: 1383-1392), 북조(北朝) 고코마츠(後小松, 재위: 1382-1412)<sup>177</sup> 제帝의  
시기에 해당한다.

<sup>175</sup> 부정(不庭): 속국이 종주국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음

<sup>176</sup> 포모(包茅): 고대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다발로 묶은 후 술을 부어서 거르던 향초를 말한다. 『춘추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4년조에 따르면, 초(楚)나라가 정(鄭)나라를 침공하자 제(齊)나라를 중심으로 제후국들이 연합해서 초나라를 공격했다. 그때 제나라 재상 관중(管仲)이 제 환공을 대신해서 말하기를, “네 공물인 포모(包茅)가 들어 오지 않아서 축주(縮酒: 포모에 술을 부어 거르는 것)를 할 수 없어서 왕실의 제사를 지내지 못했으니, 과인이 그 죄를 묻노라.”(爾貢包茅不入 王祭不共 無以縮酒 寡人是徵)라고 하였다. 이는 주나라 왕실이 쇠미해지자 초나라가 이를 업신여겨서 의당 바쳐야 할 공물을 바치지 않은 것을 문책하는 말이었다.

<sup>177</sup> 1336년부터 약 60년간 일본 조정이 양분된 시기로서, 1392년 북조의 고코마츠 천황이 남조의 고카메야마 천황에게서 신기(神器)를 계승함으로써 두 조정은 통일되었다. 현재 일본 천황가는 북조의 계통이다.

조선 사정은 이때 일변했다. 당시 일본은 아시카가足利씨가 정이征夷의 직임을 맡아서 국난國亂이 마치 삼끈[麻]처럼 엮혔다. 이에 우리 서쪽 국경의 간민奸民 등이 무리를 지어 바다를 향해하면서 지나支那와 조선의 변읍邊邑을 약탈하고 인민과 재화를 노략질했으므로 저들의 근심이 매우 심했다. 조선왕 이씨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해 아시카가씨와 다른 목백牧伯에게 사절을 보내서 해구海寇를<sup>178</sup> 그치게 해줄 것을 청했다. 그러자 아시카가씨가 답하길, “국난國亂이 심해서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 이는 참으로 우리의 국욕國辱이라고 할 것이다. 그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임진의 역’壬辰ノ役(임진왜란)이 있었다.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일본이 다시 어지러워질 것을 우려하여 조선에 건너간 군사들을 정돈해서 도요토미 가豊臣家の<sup>179</sup> 여봉餘鋒이 이어지지 않게 하고, 화의和議를 행했다. 그런데 조선은 우리에게 신복臣服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는 강하고 저들은 약했기 때문에, 선수를 뺏겨서 저들이 사절을 보내게 된 정도였다.

대체로 근고近古<sup>180</sup> 이래 일본과 조선 간의 쟁탈[取捨]은 이와 같았다. 이씨는 단지 이유 없이 일본의 강포함에 압제壓制되었을 뿐, 우리의 왕정王政에 다시 관계하지 않은 것이다. 한번 저들 편에서 이야기해보면, 아시카가씨가 일본의 국난이 심해서 제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구海寇를 멈출 수 없다고 답한 것은 나라의 체면을 매우 크게 잃은 말이었고, 히데요시의 ‘임진의 역’도 조리로 따져보면 일본의 군대가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왕정복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선의 부정不庭을 꾸짖고 옛날의 전례를 논하며 추궁하더라도, 이씨는 아마 그 설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비유하면 원나라가 우리를 침략한 원한과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보낸 원한을 이제 와서 청국에 따지더라도 청국이 신경 쓰지 않을 것과 같으니, 더욱 조리가 서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조선을 꾸짖음에 고대 왕정王政의 전례를 들어 논하는 것은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178 해구(海寇): 해적

179 원문은 ‘豊臣家’로 되어 있는데, ‘豊’은 ‘豊’의 오기로 보인다.

180 일본사에선 대체로 가마쿠라(鎌倉), 무로마치(室町) 시대를 가리킨다.

## 조선론 (2)

조선국에 일신一新한 일을 통보했는데, 흔쾌히 접수하지도 않고 또 회신을 보내지도 않아서 인순因循만 일삼는다는 소문이다. 이를 듣고, ‘이전에는 막부와 동등한 교례交禮를 취했다. 이제 천조天朝와<sup>181</sup> 교제할 때는, 막부는 소군將軍으로서 천황폐하의 신하이다. 그렇다면 조정과 교제하는 데는 2, 3등을 낮추지 않을 수 없으니, 가능하다면 소가宗家와 교제하여 일본의 국변國變에 관계하지 않는 것이 저 나라 왕호王號에 대해서도 편리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다고 들었다. 이 설은 조선뿐 아니라 우리 국민國人에게도 아마도 은연중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막부의 교례交禮를 구실로 내세우면 2, 3등 접대를 낮출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조선인과 우리 일본의 사체事體에 어두운 탓에 이처럼 지나친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선 편리하겠지만, 만약 조선인과 입장을 바꿔 본다면 저들은 다음과 같이 논할 것이다. “일본의 고대古代는 알지 못한다. 우리 이씨가 조선을 소유한 이래로 일본은 단지 해적의 나라[海盜國]임을 알뿐이요, 천자와 제후가 있음은 알지 못한다. 그 후 겨우 소씨宗氏의 쓰시마對州가 있음을 알았고, 도요토미씨가 우리를 침략하자 비로소 일본에 도요토미씨가 있음을 알았다. 대명황제大明皇帝가 도요토미씨를 책봉해서 일본국왕日本國王으로 삼았는데, 도요토미씨가 격노해서 말하길, ‘내가 만약 왕이 되면 천자를<sup>182</sup>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이 한마디 말로 미뤄보면 일본에 따로 천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변모시위 弁髦尸位와 마찬가지로, 또 도요토미씨의 시대뿐 아니라 그가 멸망한 후 도쿠가와씨에 이르기까지 일본에는 단지 도부東武의 정부가 있음만을 알고, 천자는 신불神佛과 마찬가지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으로선 도쿠가와씨를 권력을 가진 정부로 간주하여 교제했으며, 천자와 소군 간의 구별은 다시

181 천조(天朝): 천황의 조정

182 천자: 일본 천황

하지 않았다. 도쿠가와가가가 대대로 보낸 회신을 살펴보니, ‘대일본국 미야모토 노 이에야스, 히데타다[大日本國源ノ家康, 秀忠]’라고 하여 ‘왕王’도, ‘제帝’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 유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를 읽고서 일본의 작위가 없는 귀족이 보내온 서한이라고 의심할 정도였다. 이를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접수해 온 것은 그 정부의 주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천황폐하가 친히 정사를 다스리더라도 우리 조선이 격식格式을 낮추는 것은 어려우니, 이는 일본 정부의 주인이 교체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본의 도쿠가와씨와 동등한 예를 취했을 뿐 아니라, 쓰시마의 소씨宗氏도 도쿠가와씨와 동등한 예를 취해서 지금까지의 교제를 행해 왔다면 이제 그에 따라 천황폐하에게 신하의 예를 취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옛날 관례에 참작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조선에서 이렇게 대응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 조선론 (3)

조선의 국체國體는 대단히 애매하다. 청주淸主가 크게 일어나 조선을 공벌하자 조선왕은 면박面縛하여<sup>183</sup> 항복하고 신하를 청했다. 청주淸主는 이 일을 불후不朽에 기려서 비석을 세워 영원히 동번東藩으로 삼았다. 그 체재體裁는 군신君臣의 분수가 명료하지만, 복식과 제도를 비롯하여 모든 일에 청의 체재와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국 모두 통양痛癢에<sup>184</sup> 관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광道光 아편의 난을 시작으로 ‘장모長毛의 잇키一揆’에도,<sup>185</sup> 조선이 프랑스인들과 전쟁해서 패배했을 때도 서로 월인越人이 호인胡人の 비척肥瘠을 보듯이 했다.<sup>186</sup> 외국인도 청국

183 면박(面縛):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묶고서 얼굴이 보이도록 쳐드는 것을 말한다. 1636년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한 일을 가리킨다.

184 통양(痛癢): 아픔과 가려움이라는 뜻으로 중대한 이해관계를 비유한다.

185 장모(長毛)의 잇키(一揆): 태평천국의 난

186 비척(肥瘠)은 살이 찌고 마른 것을 뜻한다. 진월비척(秦越肥瘠)이라는 고사를 인용한 구절로서, 관계가 멀어서 서로 무관심한 모양을 비유한다.

부내部內의 나라로 보았다.

살피보건대 서양의 공법公法에는 독립국과 반독립국半獨立國의 논의가 있다. 조선은 반독립국에 해당하는가? 국제國體의 유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의론이 귀결되기 어렵다. 다시 살피보건대 서양인은 국제와 공법을 논하여 말하길, “본국과 속국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만약 속국과 다른 외국이 병단兵端을 열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본국이 속국의 전쟁에 관계하지 않아서, 원병도 보내지 않고 화목和睦도 다루지 않을 경우<sup>187</sup> 속국의 연고가 끊어져 다른 나라가 독립국으로 간주한다고 들었다. 이 논의에 따라 속고해보면, 지나支那와 조선의 사이가 연속連續되지 않음은 이론상 분명하다.

#### 조선론 (4)

조선은 교제를 맺어도 무익하다. 또 그 교제의 방법도 극히 어렵다. 대체로 옛 막부 시절에 외국교제라고 하는 것은 조선과 류큐였다. 류큐는 사쓰마薩摩의 부용附庸과 마찬가지로 우선 논외로 한다. 조선은 나라가 커서 교제하는 도道가 대단히 공손하고 정중했다. 오늘날 서양 각국과의 교제가 매우 융성하다고 하지만, 이를 막부와 조선국의 교제에 비교해보면 매우 소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교제의 도를 열어서 서로 공사公使를 두고 만사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은 조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바로서, 가령 저들이 사절을 보내더라도 옛날처럼 정중한 예를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괴이하게 여길 것이다. 그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서양의 강대국 공사 등과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각국 공사들로부터 불평하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또 만국公법으로 보더라도 반독립국半獨立國의 사절을 강국과 똑같이 접대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으니, 반드시 각국 공사보다 3, 4등을 낮추어 접대해야 한다. 이 경우

---

<sup>187</sup> 중재에 나선다는 의미

조선인들은 더욱 불평을 쏟아내서 화평이 성숙할 때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조선과의 교제가 극히 어렵다고 하는 이유이다.

무릇 교제란 현명한 벼를 얻어서 자국을 마려(磨礪)하는<sup>188</sup> 것을 그 제일 큰 이익으로 여긴다. 이제 미숙한 벼를 얻어서 시종 불쾌감을 가지면서 교유할 경우, 한갓 원한을 맺는 기쁨이 될 뿐 다시 이익이 없을 것이다. 또 조선과 같이 일개 소국, 게다가 문물제도에 볼 것이 없는 나라는 우리의 좋은 벼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상일편(尋常一偏)의<sup>189</sup> 교제를 맺기까지의 일이라면 우선 놓아두고 소가(宗家)에 맡겨서 표류민의 송환 등을 처리하게 하며, 나중에 황국(皇國)의 위력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손을 대지 않는 편이 비용도 낭비하지 않고 국위(國位)도 더럽히지 않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 조선론 (5)

조선과의 교제는 무익하고 또 극히 어렵다는 것의 의미는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득이할 경우 지금까지처럼 소가(宗家)에 위임해두더라도, 현재 소가와 조선의 교제는 지나치게 옹색하고 또 잘못된 관례도 많으니, 이는 함선을 보내고 사절을 파견해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개혁의 방법은, 조선 수도에 항상 일본의 소관리(小官吏) 3명을 재근시켜서 교제의 예(禮)를 시행하기를 현재 서양 각국 공사와 유사하게 행하게 하고, 통상(通商)은 수도 부근 남해의 항구 1개소, 함경도 북쪽 항구 1개소, 그리고 종래의 부산포 등 3개 항을 열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자유롭게 통항하게 하되, 수도에 재근하는 소관리의 대부분은 소변(宗藩)의<sup>190</sup> 내에서 인선하고 3개 항구의 관리(役人)도 마찬가지로 소가(宗家)에 맡기며, 외무성에서는 단지 이 일을 감독하는 자를 파견하여 여기저기 순시하게 하며, 우리

188 마려(磨礪): 갈고 닦음

189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190 소변(宗藩): 쓰시마번

나라는 당분간 쓰시마, 나가사키 및 산인도山陰道<sup>191</sup> 내의 항구 1개소를 열어서 무역하는 것을 허락한다. 조선의 사절은 분카文化 연간의 전례에 따라 쓰시마까지 출장을 오게 하여, 그곳에서 그 의전을 행하여 각국 공사의 대우와 뒤섞이지 않도록 해준다. 우선 이러한 모양으로 5~7년간 저 나라의 동정을 엿보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 책략은 거의 실행하기 쉬우니 중등中等은 될 것이다.

## 조선론 (6)

조선과 교제하는 것이 무익하다고는 해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러시아에 잠식될 것이다. 이는 일본에 최악의 대해大害이다. 그러므로 조선을 돕는 것은 조선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을 아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병력과 금곡金穀이 부족한 것에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아직 조선을 병탄할 힘이 없다. 한갓 착수하자마자 중도에 포기한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니, 그 결과가 과연 어떠하겠는가?

손을 쓰는 데 전혀 무기를 쓰지 않고 일이 이뤄질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 중책中策으로 나와서,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의 변설을 발휘하여 저들에게 가서 유세하더라도 일개 사절의 힘으로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비용 3, 4만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차라리 서국西國의<sup>192</sup> 강번強藩에 명하여 군함을 출동시키고 관官에서도 1, 2척의 군함을 보내서, 여기에 사절 및 다른 관원들을 탑승시켜 약간의 토산물을<sup>193</sup> 가져가게 하여 다음 3개 조에 따라 설득하게 한다.<sup>194</sup>

-. 황상皇上께서 만기를 친람하심에 조선의 국체國體가 고립되어 위해危害가 눈앞에

191 산인도(山陰道): 현재 교토와 추석(中國) 지역 북부의 동해를 연한 지방

192 일본의 칸사이(關西), 특히 규슈(九州) 지방

193 원문에는 ‘上誼’로 되어있다. 문맥상 ‘土宜’의 오기인 것으로 보고 옮겼다.

194 ‘3개조에 따라 설득하게 한다.’라는 구절 앞에 원문에 ‘聊ノ上誼ヲ屬ラシ’라는 구절이 있는데, 의미를 알 수 없어 일단 번역에서 제외했다.

닥친 것을 깊이 근심하시는 지성至誠의 예려勸慮를 설명할 것.

- 서양 각국이 날마다 문명文明으로 개화開化해서 지금은 우주일체宇宙一體의 교제가 되어 한두 나라의 인호隣好<sup>195</sup>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 전지구상의 형세가 증기선이 나온 뒤로 일대 변혁한 것, 그리고 지나支那의 흐리명덩함은 만국의 경멸을 받고 있어서 의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이대로 안주할 경우 하루아침에 일이 생기면 고립된 나라가 되어 종사宗社도 보존하기 어렵다는 뜻을 설명할 것.
- 조선이 반독립국半獨立國이 되는 이유를 깨우쳐주고, 서양과 조약을 맺으려면 체제가 적합지 않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취지로 논하되, 일본과 새로 맹약을 중수하여 형제의 나라가 되고, 합중연방合衆聯邦으로서 이미 일본이 체결한 조약을 원용하여 따로 조약을 맺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로-웁긴이) 서양과 통신교제通信交際를 개시할 것을 권유하여 그 사업을 달성하게 할 것.

이 3개 조를 설명해서 그 사업을 이룬다면, 비단 조선의 다행일 뿐 아니라 일본의 국력을 더하는 이치이니 (일본에도-웁긴이) 큰 이익[大益]이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될 경우, 조선인은 일본 내부의 인민이 되니 앞에서 서술한 외국공사와의 등급 문제도 논할 필요가 없고, 매사 이러한 절차를 따른다면 이익도 그에 따라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길, “합중연방을 논의해도 조선과 결국 화평이 성숙되겠는가? 서양 여러 나라가 양해하겠는가?”라고 한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참으로 조선이 알아들은 뒤에는 양국 사이에 상세하게 조약을 맺고, 우리 정부도 진력하여 주선한다면 이 일도 이뤄질 것이다. 단, 정사正朔·연호年號 및 형법·화폐·군무軍務의 3가지 일은 개혁해서 양국이 일치하지 않으면 만국과 교제하기 어렵고, 조선왕은 놀고먹는 빈객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돼선 안 되니, 외무는 일본이 그 관리를 파견해서 십수 년 동안 중매[媒酌]를<sup>196</sup> 한다면 순숙馴熟에<sup>197</sup> 이를 것이다.

<sup>195</sup> 인호(隣好): 이웃나라 간의 우호

서양 여러 나라에 대해 조선 연맹朝鮮連盟을 의논하는 문제는, 이를 맡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지 힘에 달려 있지 않다. 게다가 프랑스와 미국은 옛 원한이 있으니 의론議論을 일으킬 것이다. 이는 미리 각오해야 한다. 3개 조의 전망대로 실행할 경우 조선에 손을 쓰는 공험功驗이 성대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갓 사절 왕래에 그친다면, 차라리 방치해서 소가宗家에 위임하는 쪽이 나을 것이다.

감히 현명한 비답을 청합니다.

---

196 외교 고문을 파견하여 사실상 외교권을 장악한 후 서양국가와 조선 간의 외교를 중재, 주선한다는 의미다.

197 순숙(馴熟): 본래는 짐승을 부리기 좋게 길들인다는 뜻

국역

조선사무서  
(1)

제4권

# 4

## 『조선사무서』 제4권

메이지(明治) 3년(1870) 1월~7월

### 01 사다 하쿠보<sup>佐田白茅</sup> 등 쓰시마<sup>[對州]</sup> 도착 보고

엿그제 26일 나가사키<sup>[崎陽]</sup>를 출항했는데 풍파 때문에 히라도<sup>平戶</sup>와 가까운 항구에서 1박하고, 겨우 오늘 28일 4시에 쓰시마<sup>[對島]</sup>에 도착하였으므로, 이를 서둘러 인편을 통해 보고합니다. 또한 후편<sup>後便</sup>으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사다 하쿠보<sup>佐田白茅</sup>  
모리야마 시게루<sup>森山茂</sup>  
사이토 사카에<sup>齋藤榮</sup>

외무성

귀중<sup>貴中</sup>

**02** 본성(외무성)으로부터 사이토 사카에(齋藤榮)가 빌린 땅의 반납연기를 도쿄부(東京府)에 조회하는 글

도쿄부 귀중

외무성

전 변관 지배(辨官支配)<sup>1</sup> 사이토 사카에(齋藤榮)는<sup>2</sup> 고비키초(木挽町) 2초메(丁目)에 있는 땅을 빌린 다음 집을 지었습니다. 동인(同人)은 외무성 출사(出仕)로<sup>3</sup> 임명되어, 지금 조선국 공무로 쓰시마를 향해 도항하여 그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의 빌린 땅이 민부성(民部省) 공용지로 되었으니 반환하라는 통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재중에 처자만 있어 진퇴가 매우 당혹스럽다고 청원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귀경도 대략 예정되어 있어 아마 3,4월 중에는 귀경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유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평의한 다음 마땅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교섭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2월 19일

외무성

도쿄부 귀중

추신. 매우 급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3** 02 에 대한 도쿄부(東京府)의 회답서

서면의 장소는 민부성 공용지가 되었다고 퇴거를 통달했지만, 아직 민부성에 인도한 것은 아니므로 인도할 때 교섭한 취지를 명심하여 얘기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회답합니다.

1 지배(辨官支配): 벤칸 시하이

2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사이토 겐노조(齋藤源之丞)

3 출사(出仕, 솟시): 정원 외로 임시로 채용한 관리

2월 20일

도쿄부

외무성 귀중

**04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의 초량관(草梁館) 도착 보고**

지난달 23일 시마바라번(島原藩) 온센마루(温泉丸)를 타고 나가사키를 출항한 것은 선편(先便)으로 말씀드려두었는데, 해상에서 지체하지 않고 지난달 28일에 쓰시마 이즈하라(巖原)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무를 끝내고 이달 9일 그곳을 출발하여 22일에 조선국 초량왜관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보고합니다.

2월 25일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외무성 귀중

**부전** 변관(辨官(태정관 사무국을 의미))에서도 자못 이 일에 주의하므로 이 서장  
**附箋** 의 사본 한 통을 유념하였으면 해서 제출함.

**05 사다 하쿠보(佐田白茅)가 황사를 파견해서 한국을 정복하자는 의견을 건의하는 글**

「상서(上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재배(再拜)」

소신(小臣) 사다 하쿠보는 진실로 두렵고 황송하오나 죽음을 무릅쓰고 재배하

면서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조명<sup>朝鮮</sup>을 받들고 조선에 들어가 그 정상<sup>情狀</sup>을 조사하여 탐색한 서면 약간을 삼가 바쳤습니다. 지금 또 신의 망론<sup>妄論</sup>을 조목조목 올려 감히 취사선택을 바랍니다.

- 조선은 근년에 무관을 크게 일으켜 병제를 연마하고, 무기를 제작하고, 여러 곳에 병영을 건설하고, 여러 도에서는 금곡<sup>金穀</sup>을 축적하고 있는데 문관은 무관심하여 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번 천조<sup>天朝</sup>가 일신<sup>一新</sup>을 알리는 글을 내렸을 때 문관은 모두 “마땅히 결교<sup>結交</sup>로 화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관은 모두 “결교하면 일본이 끝내 우리를 번속<sup>藩屬</sup>으로 삼으려 하니 모름지기 그 글을 배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왕은 무관의 설을 채택하여 불손한 문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배척했습니다. 오호, 그 배척은 곧 조선이 황국을 육보인 것입니다. 황국이 어찌 황사를 내려 그 죄를 문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조선은 지키는 것만 알고 공격하는 것은 모르며, 자기만 알고 상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침<sup>深沈</sup><sup>4</sup>·교녕<sup>狡獪</sup><sup>5</sup>하고 고루<sup>固陋</sup>·오완<sup>傲頑</sup><sup>6</sup>해서 깨우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고무시켜주어도 고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연코 병력으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쓰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조선은 황국을 멸시했습니다. 문자에 불손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황국에 치욕을 주었습니다. 군주가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법입니다. 실로 불구대천의 원수이니 정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벌하지 않으면 황위<sup>皇威</sup>가 서지 않고 이는 신하가 아닙니다. 속히 황사<sup>皇使</sup> 한 명을 내리고 또 대장 한 명과 소장 세 명을 선발하여 30개 대대<sup>大隊</sup>를 인솔케 해야 합니다. 황사가 대의<sup>大義</sup>를 들어 황국을 육보인 까닭을 문책한다면, 저들은 필시 주저하면서 항복도 사죄도 못하고 오직 명만 따르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황사가 갑자기 떠나고 대병이 급거<sup>急遽</sup>

4 심침(深沈): 사물에 잘 움직이지 않음

5 교녕(狡獪): 교활하고 사나움

6 오완(傲頑): 오만하고 완고함

들어가 그 10개 대대는 강화부로 향하여 바로 왕성王城을 공격하되 대장이 거느리고, 소장 한 명은 6개 대대를 거느리고 경상·전라·충청 3도에서 진격하고, 다른 소장 한 명은 4개 대대를 거느리고 강원·경기도에서 진격하고, 또 다른 소장 1명은 10개 대대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 함경·평안·황해 3도에서 진격하여, 원근상대遠近相待하고 완급상응緩急相應해서 서로 도우면 50일 안에 반드시 그 국왕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헛되이 황사만 내려 비록 백번을 왕복하더라도, 이는 실로 하책이니 쓸 수 없습니다. 정토를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으며 이는 결코 방자한 거동이 아닙니다.

- 조선은 청으로부터 정삭을 받지만 진실로 섬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청의 조상이 이적夷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정삭을 받고 있으니 환난을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의리상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천조天朝가 병력을 동원할 때에는 청에 황사를 파견하여 정벌하는 까닭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이 듣지 않고 원병援兵을 낸다면 청도 아울러 정벌해야 합니다.
- 조선에는 대원군[大殷君]이란 이가 있는데 국왕의 실부實父입니다. 병인년 조선이 프랑스[佛蘭西]와 전쟁한 뒤에 정권을 독점하여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하고, 오직 무武를 좋아하나 심모원려深謀遠慮는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고 금곡金穀을 쌓아두어 하민下民은 원망해마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우리의 30개 대대를 거병하여 저들의 소굴을 유린하면 토붕와해土崩瓦解되어, 일부一夫에 지나지 않은 대원군을 칠종칠금七縱七擒하는 것은 실로 쉽고도 쉽습니다.
- 온 황국을 하나의 큰 성이라 한다면 에조蝦夷, 루손呂宋,<sup>7</sup> 류큐琉球, 만청滿清, 조선은 모두 황국의 울타리입니다. 에조는 이미 개척을 시작했고 만청과는 사귀어야 하고 조선은 정벌해야 되고 루손과 류큐는 순식간에 취할 수 있습니다. 무릇 조선을 정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4년 전에 프랑스

<sup>7</sup> 루손(呂宋):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

[佛國]가 조선을 공격했다가 패하여 원한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필시 조선을 오래 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러시아[魯國]는 몰래 그 동정을 엿보고 있고 미국[墨國] 역시 공벌攻伐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모두 저들의 금곡金穀에 침을 흘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국이 만약 이 좋은 기회를 잃고 사람 같지 않은 이들에게 주면 실로 우리의 입술을 잃어 반드시 우리의 이가 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이 황국을 위해 속히 정벌할 것을 통렬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 지금 출병론을 제기하면 사람들은 필시 재화를 허비해서 나라를 좀먹게 한다는 것으로 그 주장을 논파하려 합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조선을 정벌하면 이익이 있으나 손해는 없습니다. 하루 동안은 비록 약간의 금곡金穀을 투입하지만 50일 안에 그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장성大藏省이 예조지覈奏에 무려 20만 엔을 매년 지출하고 있지만 몇 년이 걸려 개척을 완수할지 모릅니다. 조선은 금구덩이이고 쌀과 보리도 자못 풍부합니다. 일거에 빼앗아 그 인민과 금곡을 징발하여 예조覈奏에 사용하면 대장성은 그 보상을 취할뿐더러 몇 년간 개척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그 이익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선을 정벌하여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정책을, 재화를 허비해서 나라를 좀먹게 한다는 논의라 하여 쉽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지금 황국은 실로 병사가 많은 것이 걱정이지 병사가 적은 것이 걱정은 아닙니다. 여러 곳의 병사는 동북의 군대가 되기에는 부족해도 자못 전투를 좋아해서 난이 일어나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사투私鬪나 내란을 양성하지나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선의 일에 이것을 사용하여 병사들의 울발鬱勃한 기운을 배출하면 일거에 조선을 무찌를 수 있을뿐더러 우리의 병제를 크게 연마할 수 있고 또한 황위皇威를 해외에 빛낼 수 있습니다. 어찌 신속하게 정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오(1870년) 3월

## 06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대사를 조선에 파견하자는 의견을 건의하는 글

상서(上書)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신(臣) 히데아키(秀晃)는 도성을 떠난 이후 묘의(廟議)의 방향을 알지는 못하지만, 감히 비재(非才)를 돌아보지 않고 아래와 같이 건언합니다.

태고에 본조(本朝)와 조선과의 교통에 대하여 예나 지금이나 평설(評說)이 많지만 그 기원과 유래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저 나라는 삼한 무렵에 본조의 무덕(武德)을 두려워해 한번 우리에게 공물을 바쳤지만, 어느 때인지 명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를 계속 되풀이 하다가 마침내 이씨(李氏)가 일어나 국체(國體)를 바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안(應安)<sup>8</sup>, 가키츠(嘉吉)<sup>9</sup> 연간에 이르러 또다시 우리와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임진란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옛일을 논하지 않고 부정(不庭)을 따지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것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씨(宗氏)와 교통의 약조를 고쳐 피아(彼我)가 동례(同禮)이고 번속(藩屬)으로 신에(臣隸)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구나 게이초(慶長)<sup>10</sup>, 겐나(元和)<sup>11</sup> 후에 이씨가 청주(淸主)에게<sup>12</sup> 항복하여 신례를 취하고 정삭(正朔)을 받고 매년 두 차례 사개(使價)를 베이징에 왕래합니다. 그 실제로 행하는 것이 지금도 처음과 같습니다. 무릇 이와 같아 본조에 병사(聘使)를 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씨가 청주(淸主)를 섬기기는 하지만 역시 명의 구은(舊恩)을 생각하여, 연호를 받아도 감히 문서에 기재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명 만력(萬曆) 이후에 청의 연호를 사용한 일이 일찍 없습니다. 명의 복식(服飾)을 사용하고 주(周)의 예악을 따르고 치교(治教)와 형전(刑典)

<sup>8</sup> 오안(應安): 1368-1375

<sup>9</sup> 가키츠(嘉吉): 1441-1444

<sup>10</sup> 게이초(慶長): 1596-1615

<sup>11</sup> 겐나(元和): 1615-1624

<sup>12</sup> 청주(淸主): 청의 군주

등 모든 것이 독특한 국체國體입니다. 이는 곧 청주가 씨를 뿌려서 생긴 것이라 하여 가볍게 배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sup>13</sup> 대개 본조와 조선의 교례交禮야말로 모두 소씨宗氏가 맡았는데 폐단이 다단하여 일일이 열거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를 책망하면, 번민藩民들이 차래嗟來의<sup>14</sup> 음식을 달게 받아 접대하는 예전禮典이 거의 신하의 예에 가까웠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고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 번의 총수입은 대개 7만석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므로 조선에 착수하는 순서는 먼저 온 번에 증지(增地)의 처분을 내려 사기를 진작하고, 임진의 예를 본받아 크게 병역(兵役)을 장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무진년(1868) 겨울에 소씨宗氏가 조정의 명을 받들어 사신을 파견하고, 황정皇政의 유신을 알리는 서계를 내려 답례答禮를 재촉해도 옛 규칙을 묵수하고 황칙皇勅의 글자를 힐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교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막부와 동등한 화족華族으로 적례敵禮할<sup>15</sup> 것을 입으로 외우면서 3년이나 끌다가 지금은 완고하게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그 자과自誇하여 공경하지 않은 것은 실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소씨宗氏 일가 사신의 우원迂遠한 말을 받아들인다면 어찌 성공의 때가 있겠습니까?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 그 시기를 잃게 되면 도리어 서양 각국의 조육組肉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교린이 공명하지 않음을 비방하기에 이르면 조정의 위신이 언제 해외에 펼쳐지겠습니까? 실로 목금의 상황은 조금도 등한히 하여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속히 대사를 내어 이왕의 일을 묻지 않고 순순淳淳히 폐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교린에는 도가 있는데 막부는 즉 폐하의 신하이다. 신하로서 외국과 교의를 꾀하는 것은 옛날 불명不明의 심함에서 나온 것으로 대경대법이 아닌” 이치를 변명辨明하여야 합니다. 또 피아가 서로 돕자는 지극한 정성을 보이고, 지구의 변천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음을 진술하면서 문력文力과 무위武威를 함께하여 끝내 잘 협력[協戮]하여 만국과 대치對峙할 것을

13 「佐田白茅外二人帰朝後見込建白」(『朝鮮講信錄』, JACAR Ref. A01100124300)에는 “그러므로 지금 걸로 청이 번례(藩禮)를 요구한다 해도 속으로는 얼음과 쏙의 관계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14 차래(嗟來): 업신여기면서 불러서 주는

15 적례(敵禮): 대등한 예, 원문의 적례(適禮)를 바로잡았다.

설명하면, 교주교슬膠柱鼓瑟한<sup>16</sup> 국인國人이라 해도 어찌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필요한 병권兵權도 역시 갖추어야 하고 견고한 군함 몇 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부사副使는 소씨宗氏에게 맡기고, 대사보다 앞서 초량관에 가게 해서 역관을 재촉하여 동래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대사께서 절실하고 돈독한 조서詔書를 받들고 10일 뒤에 강화도를 지나 한성에 들어가신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동래에서는 화和를 위주로 하여, 은혜를 베풀어 민망民望을 모으고 병권으로써 국위를 보이면서 옛 사례를 들어 한성에 이를 것을 의논해야 합니다. 대개 부사가 초량관에 간 날부터 10일이 지나 대사는 강화에 들어가고 이어서 한성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우리의 예서禮序를<sup>17</sup> 거절하여 어기고 공명정대한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람되이 대사를 모독하여 무기를 동원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싸워 정벌할 권리는 저절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벌할 권리를 가지고 군대를 진격하여 일거에 석권하면 그들이 어찌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청나라도 이를 비방할 리가 없습니다. 무릇 이와 같으니 옛날 임진의 전쟁과 똑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지금 무권武權을 표식表飾한다 해도, 문약文弱은 예와 같아 무기와 총봉銃鋒은 실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건대 풍태합豐太습이<sup>18</sup> 천하를 일통한 후 나라 안이 다스려지지 않고 군세軍勢가 사나워서 걸핏하면 소요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환해患害를 조선에 옮김으로써 우리의 방가邦家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 이르러 오랫동안 고생한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함을 두루 살펴 알고 감언甘言으로 화和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상하 모두 ‘평천하平天下’를 노래하였습니다. 오호 두 장군의 큰 결단은 진퇴에 절도가 있고 고무鼓舞에 방법이 있었으니 실로 치국의 좋은 계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 안의

<sup>16</sup> 아교풀로 비파나 거문고의 기러기발을 붙여 놓으면 음조를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을 이르는 말. <사기>의 <인상여전(蔣相如傳)>에 나오는 말이다.

<sup>17</sup> 「佐田白茅外二人婦朝後見込建白」(『朝鮮講信錄』, JACAR Ref. A01100124300)에는 ‘순서(順序)’로 되어 있다.

<sup>18</sup> 풍태합(豐太습):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기는 곳곳하여 치열하고 확고하여 날뛰고 있습니다. 어찌 내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대개 자재資財와 양식, 돈과 곡식 같은 나라의 재산이 있는 곳이 상세하지 않지만, 저 홋카이도北海道 개척의 일을 원계遠計하는 데 거만巨萬의 홍비洪費를 다하더라도 훗날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볍게 논할 수 없지만, 지금 동맹 각국에 고지하여 가라후토柯太 전도全島를 양여할 것을 논의하고, 공표公票에 의거하여 값을 정하고 그 얻은 금력으로써 예조蝦夷 전도全島에 투자하면 순식간에 예조지 개척의 위업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론은 필시 3-5개월 안에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인[魯人]의 동정을 파악하고 변론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가라후토樺太 개척에 사용할 금력을 조선으로 바꾸어 여기에 국력을 다하면, 수개월 사이에 불변의 국리國利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섬을 버리고 두 섬을 갖는 이치가 아닙니까? 오호 조선은 완고하고 자존자대自尊自大하여 문국文國이라 칭하고, 헛되이 백세百世의 고적古籍을 뒤적일 뿐 우주의 시체時體를 알지 못합니다. 후생에도 힘쓰지 않고 취렴하여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 때문에 광막한 원야에 호미질 한번 안합니다. 흉년이 된 해를 만나면 아사자가 길에 널립니다. 또 문무의 양관이 거둬 상쟁相爭하여 국론이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무관이 쓰이고 문관은 배척됩니다. 지금 폭정이 날로 성하여 생민(生民)은 괴로워서 등을 돌리고 뜻 있는 관리는 은둔하여 산속에 숨은 이가 많습니다. 봄 이래 강원도에서 봉기한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진무(鎭撫)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타서 교린을 약속하고 국위를 확장하는 사다리를 얻어야 합니다. 교의(交誼)가 완전히 정돈되어 개시(開市)무역론에 이르면 양항(良港)에 대한 의견, 물산의 정조(精粗)와 적부(適否)에 대한 우견(愚見)이 있지만 여기서 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양 각국은 모두 침을 흘리면서 조선으로 달려가 교신交信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응징의 지론을 고집하여 장차 어려운 일이 일어남은 필연입니다. 그때에 본조本朝가 둘 사이를 주선하고 알선하여 통신의 도를 권유하면 끝내 본조의 간독懇篤에 감화되어 본조의 덕화德化에 복종할 것입니다. 오호 이와 같은 대사건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하였으니 어찌 부월斧鉞의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실로 현지 정탐의 명을 받들어서, 다만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마땅히 깊이 살펴주십시오.

엎드려 바라건대, 고명한 여러분께서 적절히 처리하여 신속히 영단해주십시오.  
매우 황공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재배합니다.

경오(1870년) 4월

어리석은 히데아키秀晃 삼가 아뢰.

## 07 사이토 사카에齋藤榮가 황사皇使를 조선에 파견하자는 의견을 건의하는 글

상서上書

외무성 출사出仕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조선국의 정세와 형편을 내탐內探하라는 명을 받들고 그곳에 들어가 정탐한 조  
목조목은 내탐서에 게재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무릇 본조本朝는 종래 조선과의  
응접을 소씨宗氏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소씨는 조선과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수백 년 동안 저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신하의 예를 취하여,  
사교私交의 그릇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겨를이 없습니다. 쓰시마對州는 그 그  
릇된 사례를 알고 있지만, (조선과) 인접한 고도孤島로 형세상 그만둘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리私利를 위해 오랫동안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 구염舊染을 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본조의 결전缺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조의 형세는 상하이의 신  
문을 베이징으로부터 얻어 모두 알고 있으므로 천황폐하가 만기를 친재하시는  
일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진(1868년) 겨울에 황정유신皇政維新의 서계  
를 소가宗家 사신으로 하여금 내리게 했습니다. 이는 아마 소가에서 꾀한 것으로  
여기고 조정의 명령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성격  
상) 필시 국서를 휴대한 황사가 도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를

받아들이면 왕왕 신하로 대우할 것이고, 서양 각국도 역시 이로부터 친교를 구하면 이는 대단한 국해國害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성신의 도를 잃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구규舊規와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서계 중의 조목조목에 대해 불손을 책망하는 글을 사신에게 써주고 봉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황조를 욕보이는 것으로 매우 심합니다. 금일 그 위명違命을 책망하지 않으면 천하의 비방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쓰시마[對州]는 오랫동안 조선의 제도를 감수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교의 그릇된 사례를 바로잡으려면 상당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적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온 번이 분요紛擾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앞의 3건은 지금의 급무로, 만약 이를 도외시하여 기한을 놓치면 서양 각국이 반드시 침입할 것입니다. 속히 황사를 과견하여 소가宗家가 사사로이 교제한 그릇된 사례를 바로잡고, 상당한 처분을 하시고, 소가를 황사의 부사로 삼아 초량과 강화 두 길로 들어가 화和를 주로하고 병권兵權으로써 국위를 보이고, 순서를 밟아 잠시 황조의 위덕威德을 선포하면 그들이 진실로 본조의 강함을 알고 필시 목을 빼서 화를 구할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우리에게 저항하면 우리가 저들을 모조리 죽여도, 만국公법에 있어 무슨 꼬투리를 잡히겠습니까? 지금 나라 안의 병력은 충분하고 금곡金穀은 비상히 절감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실로 국가의 대사건을 가벼이 논할 수 없으며 도끼로 베이는 죄를 면하기 어렵지만, 진실로 조정의 명령을 받들고 현지를 정탐했기에 조금도 도외시할 시기가 아닙니다. 속히 앞의 위명違命을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속하게 묘당에서 의논하여 지당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립니다. 백배百拜

경오(1870년) 4월

외무성 출사出仕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08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사이토 사카에齋藤榮가 조선과 심교尋交를<sup>19</sup> 협의하는 중에는  
본관本官의 명칭을 폐하고 출사出仕로 보임해줄 것을 청하는 글

이번에 한지韓地에서 쓰시마로 돌아와 내밀히 탐문한 것에는 많은 것이 누락되어 변명할 말도 없습니다. 엄한 질책이라도 받겠다고 미리 각오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바로 그날에 관위를 올려주어 정말로 공축恐縮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서의 이런저런 협상 등은 끝내 출사出仕의 신분으로 준비尊卑에 구애되지 않고 이치를 논하여 해왔습니다. 이번에 명을 받은 직명으로 (조선과) 교섭·응접하면, 종래부터 저들은 존대하는 토풍土風과 준비의 구별을 따지는 기풍도 있으므로, 앞으로의 응접이 충분히 진척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맡은 일을 욱보여 도저히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12월 명을 받을 때 간원懇願한 대로 조선과의 공무가 정리되기까지는 관명을 삭제하시고 다시 외무성 출사로 명하시면 공무도 더한층 진척될 것으로 생각하오니, 모쪼록 진솔한 사정을 이해하시고 간절히 원하는 뜻을 채용해주시길 바라며 기탄없이 청원합니다. 이상.

오(1870년) 4월

모리야마森山 외무권대록外務權大錄

사이토齋藤 외무소록外務少錄

부전  
附箋

4월 17일 사이토齋藤 소록少錄이 제출하다.

서면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당분간 지금처럼 출사로 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응접할 때만 출사의 명목을 사용하면 그렇게 지장도 없을 것이다.

[이곳에 ‘町’의 인장이 찍혀 있다. ‘町’은 당시 외무대승 마치다 히사나리(町田久成)이다-옮긴이]

<sup>19</sup> 심교(尋交): 교제를 구하는 것

부전  
附箋

이 청원서는 일견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국 조리 있는 말로 응접하는 것은 관직의 고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에 달려 있다. 또 3명의 무리가 조선에 갈 때 이미 쓰시마 번저藩邸의 간부라고 칭했다 한다. 번저의 간부와 권대록·소록 중에서 어느 것이 높은가. 오히려 다시 갔을 때 실지의 형세 상 지극한 지장이 있다면 그때 경·대보·대승의 견해대로 출사의 명목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위의 3명이) 이미 귀입한 후 본성本省의 사무에 분주하여 조선 관련 공무 외에서 무를 취급하고 있으니 출사의 명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이곳에 ‘前光’의 인장이 찍혀 있다. ‘前光’은 당시 외무권대승(權大丞) 야나가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이다-옮긴이]

###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외무성 출사出仕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 게이초慶長<sup>20</sup>, 겐와元和<sup>21</sup> 이래 조선에서 신사를 파견하여 번속藩屬의 예禮를 취해 온 원유元由

이 일과 관련하여, 두 나라가 동등한 예를 취하지 않고 저들만 신사를 보내온 기원은 애매하여 확증할 수 없다. 히데요시 공秀吉公이 흥거薨去한 후에 이에야스 공家康公이 강화講和를 소 요시토시宗義智에게<sup>22</sup> 명했다. 요시토시는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와 이테이안以酏庵 장로長老 등과 의논해서 강화 문제를 다룬 지 거의

<sup>20</sup> 게이초(慶長): 1596-1615

<sup>21</sup> 겐와(元和): 1615-1624

<sup>22</sup> 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

6,7년만인 게이초慶長 정미(1607년)에 화호가 성립되어 문신文信을 주고받았다. 그 후에 요시토시 등은 신사의 내조來朝를 재촉했다. 저들은 용무勇武가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한 수 아래인 상태에서 끝내 간에이寬永 갑자(1624)년에 신사를 보내게 되었다. 소가宗家の 옛 기록에 화순和順의 답장이 있지만 이에야스 공이 증정한 답장은 없다. 그 답장을 보니 본조本朝에 번속藩屬의 예를 취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조의 사절을 요청할 터이지만 임진란 이후에 국내의 형세와 지리를 크게 숨기는 모습이어서 오히려 답례答禮를 받지 않음을 은연중에 편안하게 여기고, 막부의 교체 때마다 신사를 보내오는 것은 필경 경원敬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재작년 무진년 이즈하라번嚴原藩의 건백 중에 “지금 통신사를 불러들여 외무성에서 조리를 다해 두터이 설유하면 예부터 물든 악습을 바꾸는 기회도 될 것”이라는 취지가 보이는데 이즈하라번의 견해가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저들은 내외의 정무를 지금까지 문관이 맡았는데 근년 프랑스인이 전쟁한 이래 무관이 전권을 행사하여 국정의 대부분은 무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미 재작년 무진년 겨울에 일신一新을 알리는 서한을 종전의 예에 따라 사본을 건네고 본서를 수취할 것을 재촉해도, 서계 중에 황이라 칭하고 칙이라 칭하고 예조참의에 대해 대인大人을 공公이라 고치고, 조선朝臣·좌근위左近衛 및 조선 국왕이 일찍이 건네준 도서圖書<sup>23</sup> 고쳐 신인을 찍은 건건件件을 들어 글의 내용이 모두 불손하다고 꾸짖고, 옛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거론하면서 끝내 단연코 받을 수 없다고 확답해도, 일찍이 조금도 절교의 뜻이 없고 음으로는 도쿠가와 씨德川氏와 동등한 대신과 적례敵禮<sup>24</sup> 할 것을 진술했습니다. 전말이 이와 같은 경우이니 신사를 재촉해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위의 서한을 지참한 사신 히쿠치 데쓰시로樋口鐵四郎는 지금도 한국에 있으면서 전서前書<sup>25</sup> 확답한 경위를 토대로 이후의 조치에 대해 품의하고, 또한 지시에 따라 답판할 생각이라고 얘기하여 지금

<sup>23</sup> 도서(圖書): 인장

<sup>24</sup> 적례(敵禮): 대등한 예

<sup>25</sup> 전서(前書): 동래부사 단간을 말함

까지의 과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 이래 여러 차례 담론談論을 거듭하여 끝내 위의 결과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지시가 있어도 저들의 완고한 국풍은 도저히 대차사 혼자 힘으로 부수기 어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소씨宗氏 스스로 도한해도 승낙하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연하여 기회를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화답을, 후일에 반드시 증거로 삼을 서면을 받고 이를 묘의廟議에 품의함이 마땅하다고 대차사와 그 밖의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수館守가 응접하여 별지 사본과 같이 동래부백東萊府伯의 서한 및 훈도와 별차가 지난겨울에 제출해둔 난문서難問書에 인장을 찍게 했습니다. 위의 원본은 곧 이후의 조치 방법을 품의할 때 모두 소씨宗氏가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본을 올리니 속히 묘당에서 논의하여 조치해주실 것.

-. 쓰시마[對州]에서 조선에 파견한 사자使者의 예전禮典과 조선에서 쓰시마에 파견한 사자의 예전

이 일과 관련하여, 막부의 교체와 소가宗家 및 조선의 길흥에 소가에서 예조참판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지참하고, 토산물을 가지고 갑니다. 사자는 집정執政 및 중신 중에서 파견합니다. 저 나라에서는 막부의 교체에는 신사를 파견하고, 그 밖의 길흥사나 소가宗家の 대체 등에는 임관任官이라 부르는 자를 쓰시마에 보냅니다. 쌍방의 예전은 별책과 같습니다. 단, 임관 도래에 들어가는 여러 경비는 막부에서 하사한 것으로 충당한다고 함.

-. 조선으로부터 감합인勘合印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의 제도에서 조공을 받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인가?

이 일과 관련하여, 저 나라의 국왕이 부府·군郡·현縣에 주는 도서圖書와 같은 것으로 소씨宗氏의 실명을 새긴 동인銅印입니다. 세건선에 첨부하는 서한을 비롯하여 어떤 것이든지 소씨가 저 나라에 증정하는 문서에는 모두 이 도장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 인장을 소지하지 않은 배는 적론賊論으로써 처단한다고 왕고往古의 약정에 실려 있습니다. 이 도장을 받는 것은 저 나라의 제도상에 있어 신화와 같습니다.

게다가 세사미歲賜米라 부르는 것을 해마다 쌀 오십 석과 콩 오십 석을 소씨에게 대대로 지급합니다. 이것이 저 나라에 신례를 취하는 첫 번째이고 그 나머지 그릇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겨를이 없습니다. 쓰시마는 처음부터 그 그릇된 사례를 알고 있었지만, 저들에 접근한 고도孤島로 한 번藩이 접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영지領地의 풍흉으로 국제國計가 절박할 때는 저들로부터 금곡金穀을 빌려 생활을 보충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년近年에도 생계가 여의치 못하여 조선에서 약간을 차재借財했습니다. 이는 차차 방법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종전의 폐풍弊風이 이와 같으므로 지금부터 조정에서 교제를 인수한 뒤에 우선 소가宗家の 부채를 비롯해 수백 년 사교의 그릇된 사례를 확실히 바로잡지 않으면 교제의 조리를 세우기 어려움.

-. 조선의 국체는 신례臣禮를 받는 국으로 취급되어 베이징의 정삭正朔을 받든다고 하지만, 국정國政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독단獨斷하는 권력이 있는가? 이 일과 관련하여, 매년 동지와 황력皇曆 두 차례 사개使价가 베이징에 왕래합니다. 왕고往古에는 재상이나 6조의 무리를 정사로 하고, 부속附屬한 인수人數도 300명 정도로 육로로 베이징에 도착하여 글을 바치고,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신례를 취하고 정삭正朔을 받드는 것을 예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잡비雜費가 매우 많이 들어 언제부터인지 두 사절을 겸하여 역관만 보낸다고 합니다. 국왕의 시호는 베이징에서 주고, 모든 중대한 사건은 베이징의 특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명나라에 한 것과는 달라 심복心伏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 저들의 맹위에 굴복하여 겉으로 정삭을 받들고 무역도 중국支那과 경계인 압록강 근처 의주부에서 열고, 그곳에도 부사·훈도·통사通事 등 몇 명을 두어 접대합니다. 베이징과 교제하는 비용은 평안도 한 도道가 부담하고 일본과 교제하는 비용은 경상도의 반도半道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내치는 명의 옛 은혜를 추모하여 청의 정삭을 글에 신지 않습니다. 국내 일반은 간지만 쓰고 국왕 몇 년이라 부릅니다. 명의 복식과 주周 나라의 예악을 행하여 내정의 온갖 일을 독단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에

관계하는 사건이라 해도 스스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하기 꺾끄러운 일은 베이징에 고지하여 특명을 받는다고 들었지만 지금까지 일본에 관계하는 사건 등을 베이징에 주문奏聞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저들의 교활함이 심하여 일본에 향해서는 베이징을 주장하고 베이징에 대해서는 일본을 방패막이로 하려는 뜻을 보인다고 합니다.

단, 조선 역관이 베이징에 가서 받는 그곳의 예전禮典을 본보기로 하여 쓰시마[對州]의 사자를 다룬다고 함.

-. 황사皇使를 파견할 때 군함이 수도 근해近海를 순회하므로 양항의 유무

이 일과 관련하여, 군함이 부산포로 향하면 자못 멀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없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년에 프랑스인이 전쟁할 때 수도 근해인 강화부에 정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 이외에 근해에 적당한 항구는 없습니다. 위의 강화부로부터 안쪽을 한강이라 부르고 남북으로 두 줄기가 있습니다. 대함이 들어가는 어려우며 수도까지는 20리(조선 이정으로는 약 200리-울긴이)로 작은 배로 왕래한다고 함.

단, 군함이 조선으로 향할 때 쓰시마[對州]의 이즈하라巖原는 대함이 정박할 장소가 아닙니다. 섬 안의 아소만淺茅灣이라 부르는 장소를 일람했는데, 조선 땅으로 향하는 큰 강으로 그 중에 이모자키芋崎라 부르는 장소는 군함 정박과 석탄 적립 등을 위한 굴지의 장소로 생각하므로 서양 측량도 일엽一葉을 제출함.

-. 조선이 러시아의 독이 묻은 입술에 심취하여 음으로 보호를 의뢰한다는 소문과 경계론境界論

이 일과 관련하여, 초량草梁의 토인土人<sup>26</sup> 등에게 탐문하고 훈도 면회의 때에도 년지시 사정을 물어보았지만 러시아[魯西亞]에 의뢰하는 사정을 전혀 듣지 못했습

<sup>26</sup> 토인(土人): 현지인, 『조선사무서』에는 ‘出入’으로 되어 있으나, 『公文別錄』의 「外務省出仕佐田白茅外二名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JACAR Ref.A03023620400)에는 ‘土人’으로 되어 있다. ‘出入’은 ‘土人’의 탈초 오류로 보여 여기서 바로잡았다. 소제목도 ‘境畧論’로 되어 있으나 ‘畧’은 ‘界’의 탈초 오류이다.

니다. 다만 흑룡강과 떨어진 북쪽에 방금 러시아인이 강역을 개간한다는 풍문이 있지만, 조선의 경계인 압록강까지는 멀리 떨어진 장소라서 아직 경계를 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구히 접경지역이 안전하지는 못하리라는 풍문이 있음.

#### -. 조선 해륙군海陸軍 무비의 허실과 무기의 정조精粗

이 일과 관련하여, 프랑스인과 전쟁한 이래 수영水營과 병영兵營에서 자못 병사를 조련하고, 부府·군郡·현縣에서는 농병農兵을 모으고 수도에서는 승려까지 병대兵隊에 편입하여 수도 근해는 바다와 육지의 방어를 이미 갖추었다는 풍문입니다. 이미 부산성 아래에서는 때때로 화기를 사용하여 조련하고 있는데, 그 체재體裁는 본조本朝의 옛 방식과 비슷합니다. 큰 깃발로 진퇴를 지휘하고 창검대槍劍隊, 궁대弓隊, 총대銃隊 등을 익히고 육전을 주로 합니다. 갑옷은 대장隊長 이상 신분이 있는 자만 착용하는데 충분한 면을 넣고 철판鐵板을 꿰매어 넣은 갑옷을 착용합니다. 복숭아 열매 비슷한 투구에 길이 2자 정도의 투구목가림을 붙인, 본조本朝의 화사두건火事頭巾과 같은 것을 쓰고 말에 올라 지휘합니다. 병졸은 승려 또는 농부 등이 평상복대로 출진하고 오로지 독화살로 사살하는 기술을 펼칩니다. 그런데 프랑스인과 전쟁한 이래로 소총의 이로움을 알고 이제 총포銃炮를 제조합니다. 그 소총을 보니 화승火繩으로 격발하는 장통長筒으로<sup>27</sup> 제작의 졸렬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활은 물소 뿔로 반궁半弓을 제작하고 화살은 화살대가 가늘고 멩금류 깃털로 날개를 제작합니다. 화살 길이는 활 길이보다 길어 단지 멀리 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전선戰船을 수영에 갖추었지만 평소에는 어선으로 사용되고 일본선에 비하면 매우 졸렬하게 보입니다. 부산의 큰 만灣 안에 하나의 포대도 보이지 않고 성루城壘도 견고하지 않습니다. 군영이라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나머지는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적을 방어의 요충지에 끌어들여 접전한다는 책략이라고 들었음.

<sup>27</sup> 장통(長筒): 소형(鐵砲)

-. 내정의 치부治否는 『초량기문草梁紀聞』과<sup>28</sup> 같은가?

이 일과 관련하여, 과연 『초량기문』과 같습니다. 대원군(大元君)은 사치스럽고 음탕하며 점차 폭정을 펴서 문무백관이 분규를 일으키고 국민은 자못 원한을 품은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뇌물이 횡행橫行하고 토인은 대부분 궁박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비방하는 일이 기문에 실린 것보다도 심합니다. 경상도 칠원漆原의 민란은 진무鎭撫되고, 지금 강원도에서 민란이 일어났다는 풍문이 있었는데 아직 진압되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바야흐로 프랑스인이 사교邪教를 퍼뜨리게 된 것은, 이전에 베이징으로부터 사교의 교사敎師가 국내에 들어와 천민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선국의 모습은 저 나라에 표도漂到한 일본 표류민조차 조금도 육행陸行을 허락하지 않고 배로 부산에 보내는 것이 옛 관례입니다. 외국인을 국내에 들이지 않고, 지도를 비밀로 하는 나라인데 프랑스인이 오랫동안 국내에 몰래 살고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종문宗門<sup>29</sup>을 신앙한 토민 중에 프랑스와의 전쟁 때에 탈주한 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 이전에는 서양 물품이 성행했으나 지금은 서양 물품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국민이 프랑스와 사사로이 교제했는데, 곧 사교邪教에 해가 있음을 알고 단연 양이攘夷의 설을 주장하여 신도를 엄벌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 여당餘黨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생각하면 국정의 분란을 알 수 있습니다.

-. 무역개시에 관련된 물품의 교환, 물가의 고저 및 화폐의 선악

이 일과 관련하여, 금은으로 화폐를 주조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금砂金 또는 다소의 은괴銀塊를 여행 때 사용하고 평소의 상업은 전錢으로 보통의 거래에 사용

<sup>28</sup> 대수사 교섭을 지도하기 위해 왜관에 파견된 오시마 도모노조가 왜관에서 들은 당시의 조선 정세를 기록하여 일본 정부에 보고한 것이다. 『부산부사원고(釜山府史原稿)』(小田省吾 関, 都甲玄郷 編)에는 이 보고서가 산일(散逸)된 것으로 기술(민족문화 영인본 제3책, 428쪽)되어 있으나,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宗家文書 기록류 6560)되어 있으며 일본 국립공문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후자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Ref. A01100123400).

<sup>29</sup> 종문(宗門): 천주교

합니다. 전의 대소에 관계없이 모두 일문壹文으로 통용해왔으며 모든 무역도 전으로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물품이 근년에 더욱 등귀하여 저들의 물가는 우리 왕고往古의 가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게가 100근인 30냥의 정동丁銅으로 저들의 전錢 12관문貫文에 매도하고, 무게가 100근인 12관문어치의 전해서煎海鼠를<sup>30</sup> 사서 이를 세 항구로<sup>31</sup> 운수運輸하여 40냥 정도에 팔아서 돌아오면 10냥의 이익이 있지만, 선임船賃 등을 제하면 굳이 이윤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의 공무역은 주석 100근으로 목면 200필로 바꾸는 것으로 그 이익이 막대하였습니다. 이 목면 중 2만 필은 쌀로 바꿀 수 있었는데 한 필에 대해 쌀 3두 8승 남짓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단한 이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과 향응미饗應米로 소가宗家の 경제로 해왔는데, 이제 교제의 그릇된 사례를 바로잡아 세건선과 공무역을 폐지한다면 무역에서 이렇다 할 이윤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크게 무역을 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각국이 무역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즉 양은洋銀으로 여러 물품을 매개함에 따라 점점 저들의 화폐에 압도되어 지금의 가격에 이른 것과 같은 논리로, 점차 조선 국내에 2, 3개 항을 열고 피아가 마음대로 무역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돈을 저들에게 유통시키는 정책이 아니면 이윤을 충분히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본조本朝에서 돈을 수출하는 것은 각국과의 조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도 있지만, 저 나라를 우리의 부내部內로 간주하고 원래 전錢 만은 통용한 나라에 피아가 서로 널리 쓴 바에는, 서양 각국에 수출하는 것과 달라 부적절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나라에 재류하는 사람들의 편리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역도 성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항지를 찾아보니, 수도 근해에 강화부江華府가 있어 남쪽으로는 한강으로부터 왕성王城에 통하고 북쪽으로는 한강을 거쳐 개성부開城府에 이릅니다. 왕성과 개성의 도부都府는 추후의 상업을 위해 개시開市하고 강

<sup>30</sup> 전해서(煎海鼠): 삶아 말린 해삼

<sup>31</sup> 쓰시마의 사스나(佐須奈), 와니우라(鰐浦), 도요우라(豊浦) 세 항구를 말함

화도는 바로 개항시켜야 합니다. 그 외 제주는 수도에서 무릇 천 리나 떨어진 고도孤島로 히젠肥前의 고토五島에 가깝고 물품이 많이 생산되어 자못 변화한 곳이라 합니다. 평안도의 의주부는 예부터 청과 교역한 호시장互市場이니, 부산과 함께 모두 네 곳을 열어두고 상업의 상황에 따라 재류在留의 법을 만듭니다. 의주는 서쪽 모퉁이의 땅으로 청과 압록강 한 줄기로 떨어져 있을 뿐이라서 일본에서 손을 대어도 별로 이익이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베이징과 거래하는 가격을 탐문함에 편리한 곳으로 상업의 흥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조선 북부는 다른 나라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정을 살피는데 이곳이 첫째입니다. 위와 같이 한꺼번에 많은 곳을 개항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도 있지만, 저들은 고루하고 옛것을 지키는 국풍國風임으로 처음부터 약조約條로 게재하지 않으면 후일에 개항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래의 부산과 함께 4항港 2도都의 개시를 약속하여 편리한 곳에서 무역하고, 또 베이징·텐진과 무역을 열어 조선산 전해서煎海鼠·말린 전복·말린 상어 등의 종류를 중국支那에 운수運輸하고, 중국의 후추·소목蘇木·금건金巾<sup>32</sup>·목면 등의 종류를 조선에 가져와 두 나라 사이에서 이익을 꾀하면 이는 본방本邦의 대단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금·은·전錢의 본보기 물품 및 부산의 물가와 피아에 적합한 물품은 별책과 같음.

#### 一. 세견선의 향후 존폐

이 일과 관련하여, 저 나라로부터 도서圖書를 받고 여러 해 동안 세견선을 보내 공무역과 진상품에 대한 답례품의 이윤으로 경제를 보완해 왔지만, 저 나라에 대해 번신의 예를 취한 것과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조정에서 교제와 무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때는 폐지하는 것이 지당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sup>32</sup> 금건(金巾): 카나킨 혹은 카네킨으로 부르는 면직물의 일종

-. 쓰시마(對州)는 두 나라 사이에 끼인 고도(孤島)인데, 교제에 들어가는 비용 및 표류민을 피아(彼我)에 건네주는 등 번(藩) 보통의 정비(政費)<sup>33</sup>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과 관련하여, 연조(年租) 3만석을 이유 없이 몰수당했다는 내용이 소가(宗家)의 탄소(歎訴) 중에 보이지만, 이것은 작년 12월 번 지사(藩知事)의 휴가 때에 이모츠키(下野)의 지배지(支配地) 4,202석 정도의 장소를 바치고, 앞의 3만석을 묶어 규슈(九州)에 35,850석 정도의 장소를 지배지로 하도록 명하여 작년 12월에 다카초(高帳)<sup>34</sup>를 건네주었습니다. 향촌의 서류는 아직 수취하지 않아 연공(年貢)의 액수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로써 차차 방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정에서 두 나라의 교제와 무역의 길을 열고 세견선을 폐지한다면, 지금까지의 소득을 잃게 되므로 별지 조사서대로 지배지(支配地)를 증가해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소가(宗家)는 몇 년 전 온 번(藩)의 분란 때부터 회계가 애매하게 되고, 해마다 이런저런 빛이 늘어나 끝내 조선국에서도 쌀과 돈을 빌리는 형편이라서 필시 번의 생계가 매우 곤궁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종래 생계를 보충한 공무역의 이익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바로 기갈(飢渴)이 닥침은 필연입니다. 이제 황사가 건너가 사교의 그릇된 사례를 바로잡고, 또한 사정에 따라서는 어떤 거동에 이르러 교린을 끊을 지도 모르는데 온 번(藩)의 고통은 대단할 것입니다. 무역의 이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으로 생활해온 사족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교의 무역은 금일에 이르러 단연코 폐지해야함은 물론이라서 온 번(藩)이 각오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지만, 만약 황사 파견 이전에 이에 대한 처분이 없다면 갑자기 번정(藩政)이 분란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규슈 지역의 땅으로 바꾸어 주면 온 번(藩)이 모두 분발하여 노력할 것임은 물론일 겁니다. 결국 외국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고 온 번의 생활을 세우는 것은 원래부터 소가(宗家)가 갈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제에 들어가는 비용 중 피아의 표류민을 처리하는 것은 이즈하라번(嚴原藩)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sup>33</sup> 정비(政費): 정무에 필요한 비용

<sup>34</sup> 다카초(高帳): 고쿠다카(石高)를 적은 장부

일본의 표류민은 2,3년에 한 차례이고 저 나라의 표류민은 해에 따라 열네댓 차례도 있습니다. 대체로 1년에 평균 여덟아홉 차례에서 열 차례입니다. 둘러보낼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답례가 있습니다. 나가사키長崎와 오사카大坂에서 송영送迎하고 쓰시마[對州]에 머무는 중의 여러 비용에 위의 답례를 제하면 굳이 입비入費라 할 것도 없습니다. 피아 표류민의 입비는 각국과의 교제를 따른다면 피아 모두 입비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조선 표류민을 이처럼 처리하면 우리는 적고 그들은 많아 우리 쪽이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서한을 보낼 때 침부하여 바치는 물품은 폐지하고 서로의 부조扶助는 옛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별책과 같습니다.

-. 조선은 초량항草梁項 이외에 그 내지는 일본인의 여행이 어려운가?

이곳 초량이라 부르는 곳은 해안만 10여리나 됩니다. 그 중앙의 해안에 왜관을 세워 별지 회도면繪圖面과 같이 무릇 7만여 평이나 됩니다. 옛날부터 지조地租를 내지 않았으며 쓰시마[對州]에 속해 이 지역의 처치處置는 모두 관수역館守役이 관할합니다. 지금 재관 인원은 무릇 300명 정도이고, 문의 개폐는 동래부에서 번병番兵을 두어 담당케 하여 밤중의 출입을 금합니다. 왜관 바깥 사방에 무릇 300보步의 들이 있어 산책할 수 있지만 이것도 반드시 일본통사日本通事가 호송합니다. 부산과 가까운 쪽에 제문際門을<sup>35</sup> 설치하여 통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제문 안에 두모포毛라 부르는 촌이 있습니다. 왜인은 이를 고관古館이라 부르며 겐로쿠元祿<sup>36</sup> 연간에 지금의 초량으로 옮겼습니다.<sup>37</sup> 위 고관의 땅에 고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두 번 히칸彼岸<sup>38</sup> 중에 왜인의 묘지 참배를 허락합니다. 왜관 주위의 다섯 곳에 초소를 세우고 일본통사 2,3명을 배치하여 왜인이 관을 나가는 것을 감시하고 있으며 곁에서 시중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만일 일본인이 이 경계를

35 제문(際門): 경계에 세운 문으로 왜관의 설문(設門)을 말함

36 겐로쿠(元祿): 1688-1704

37 왜관이 두모포에서 초량으로 옮긴 때는 1678년이다. 따라서 겐로쿠는 엔보(延寶, 1673-1681)의 잘못이다.

38 히칸(彼岸): 춘분과 추분의 전후 각 3일을 합한 7일간

함부로 넘어가면 토민이 모두 돌을 던져 갈등을 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위의 것들은 왜관의 규칙으로 명문<sup>明文</sup>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한 일이라고 말해도, 훈도 등이 선도하여 가는 것 이외에는, 동래는 물론 제문의 통행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산책하고자 관수에게 얘기했다”고 말해도, 위의 주선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여 현지에서 사정을 탐색했는데 틀림없다고 함.

-. 다케시마<sup>竹島</sup>와 마쓰시마<sup>松島</sup>가 조선의 부속<sup>附屬</sup>이 된 시말

이 일과 관련하여, 마쓰시마<sup>松島</sup>는<sup>39</sup> 다케시마<sup>竹島</sup>에<sup>40</sup> 이웃하는 섬인데 지금까지 마쓰시마에 대해 기재한 서류도 없습니다. 다케시마<sup>竹島</sup>에 겐로쿠<sup>元祿</sup>(1688-1703) 연간 이후에는 잠시 조선에서 거류를 위해 사람을 파견해 두었는데 지금은 이전과 같이 무인<sup>無人</sup>이 되었습니다. 죽목<sup>竹木</sup> 또는 대나무보다 큰 갈대가 나고 인삼 등도 자생하며 그 외 어산<sup>漁産</sup>도 상당하다고 함.

위는 조선의 사정을 현지에서 탐색한 것인데 대략 서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귀부<sup>歸府</sup>합니다. 이에 따라 조목조목 조사한 서류와 회도면<sup>繪圖面</sup>을 첨부하여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상.

경오(1870년) 4월

외무성 출사<sup>出仕</sup>

사다 하쿠보<sup>佐田白茅</sup>

모리야마 시게루<sup>森山茂</sup>

사이토 사카에<sup>齋藤榮</sup>

<sup>39</sup> 마쓰시마(松島): 독도

<sup>40</sup>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 09 조선 국왕 이씨가 창업한 후 처음으로 서한을 보내온 것 등을 고증하는 글

조선의 새로운 왕이 왕위를 계승할 때 사자가 가지고 오는 서한의 사본은 별지와 같음.

쓰시마對馬島는 본래 우리 계림鷄林에 예속했는데 어쩌다 왜인의 거점이 되었다는 운운.

위는 조선국의 여러 서적에 보인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에 실려 있다. 망탄妄誕한 글로 증거로 삼기에 족하지 않다. 쓰시마對州가 본조本朝에 있고, 개국이 진무神武 천황조에 시작된 것은 『구사본기舊史本紀』에<sup>41</sup> 의하면 (조선보다) 더 오래되었다. 또 『동국통감東國通鑑』 범례에 “삼국 이전의 사서는 인멸되어 전하지 않는다. 새로 여러 서적에서 취하여 「외기外記, 外紀」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다. 위의 「외기」를 살피니 쓰시마對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3국이 나라를 세운 것은 신라가 제일 먼저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 원년은, 곧 스진崇神 천황 41년으로, 진무 천황 원년을 지난 것이 600여년이다. 『구사본기』는 천여 년 전의 사서이고 『여지승람』, 『동문선』은 400년 전에 기록한 바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다.

조선국 관직·제도 사본은 별지와 같음.

저들이 확실히 청국에 신례臣禮를 집행한 (것을 기록한) 서적

위는 조선국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실려 있다. 동지冬至·황력사皇曆使라고 부르고 1년에 두 번씩 사자를 파견한다. 그밖에 조선국왕이 흥거薨去했을 때 시호諡號를 청하는 사자, 승습承襲을 청하는 사자를 파견한다. 한토漢土에서도<sup>42</sup> 책봉사冊封使를 보내고 국왕이 청국에 내조來朝하는 일은 없다. 고래부터 한토를 소중하게 여겨 군신의 예를 폐하지 않는다고 함.

41 9세기에 편찬된 일본의 사서이면서 신도(神道)의 경전이기도 하다. 『선대구사본기(先代舊史本紀)』, 『구사기(舊史紀)』라고도 부른다.

42 한토(漢土): 중국

10 소씨宗氏가 아마구치山口 번사藩士와 논의하여 조선과 무역을 도모하는 등의 내밀한  
풍문서風聞書

내밀 풍문內密風聞

쓰시마[對州]와 조선의 교역은 근년 형편이 어려워 동銅을 넘겨줄 것이 많이 지체되었다. 쌀과 돈 약간을 차입했는데, 지금 이를 계산하니 금 7,8만을 얻지 못하면 재정을 정비하기 어렵다.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워, 지난 사巳년<sup>43</sup> 초겨울 지사 귀국(귀번) 때 아마구치번山口藩 요시마쓰 헤이시로吉松平四郎와 의논하고 상사商社를 조직해서 무역의 이윤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실지實地에서 무역에 관한 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 아마구치번 아와야 타스케栗屋彌라는 자가 약간의 동 종류를 휴대하고 피지(彼地(조선))로 건너가서 현지를 탐색하고, 상품을 휴대하고 올해 2월에 귀국했다[우리들이 쓰시마와니우리鰐浦에 정박하고 있을 때 조선에서 귀선歸船했다 - 원주]. 더구나 올해 6,7월 사이에 다시 매매하려 도한渡韓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

제작년 진辰년<sup>44</sup> 이래 이즈하라번의 건언서 중에 사교의 유례謬例를 그만두고 양국 교제는 향후 조정에서 인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위의 교제를 외무성에 위임하고 머지않아 관원이 도한渡韓한다는 하명 등을 지사가 배승拜承한 이상, 모든 것은 조정의 재가를 기다려 조치해야 함에도 본문처럼 다른 번을 유인해서 사리를 꾀한다. 우리들이 이 일을 지사에게 물으니 다스케는 단지 조선을 구경하기 위해서 (도한)했다고 말했다.

조선의 전라도 부분 중에 제주라고 하는 고도孤島가 있다. 고토五島와 사쓰마薩摩 앞바다와 가깝고, 4,5년 전에 일본선이 폭풍을 만나 제주에 정박하다. 배를 수리한 다음 퇴거하다. 이후 일본선이 자주 제주에 왕래하여 사교私交한다는 초량草梁

43 사(巳): 기사, 1869

44 진(辰): 무진, 1868

토민土民의 풍문이다. 이 일본선의 이름을 몰으니 사쓰마·고토 주변의 배인 것 같다고 했다.

## 11 소씨宗氏가 한국과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규칙서

### 화관和館<sup>45</sup> 및 쓰시마 와니우리鰐浦 번소番所<sup>46</sup> 관세 규칙

-. 목면	1필	대代(대금)	대전大錢 20문文
-. 중목中木	1필	대	22문
-. 세목細木	1필	대	24문
-. 백목면白木棉	1필	대	14문
-. 줄무늬 목면[縞木棉]	1필	대	22문
-. 석 새 목면[三升木棉]	1필	대	23문
-. 생사	1근	대	30문
-. 생주生紬	1필	대	27문
-. 명주[紬]	1필	대	26문
-. 산동주山東紬	1필	대	26문
-. 백포白布	1필	대	18문
-. 면	1근	대	12문
-. 말린 김[晒布海苔]	10근	대	12문
-. 부채	10자루	대	20문
-. 붓	10자루	대	4문

<sup>45</sup> 화관(和館): 왜관

<sup>46</sup> 번소. 교통의 요지에 설치된 감시소로 통행인이나 선박 등을 감시하고 화물 검사, 세금 징수 등을 행한 곳

-. 거친 모시[荒苧]	100근	대	90문
-. 유포油布	1필	대	12문
-. 둥글부채[團扇]	50자루	대	50문
-. 깻묵[油粕]	100근	대	40문
-. 돛자리? <sup>47</sup> シヤチ	10매	대	12문
-. 우뭇가사리·청각[天草·布海苔]	1가마니	대	각 90문
-. 조각넨 약재[端藥種]	1가마니	대	90문
-. 미삼[尾人參]	100근	대	120문
-. 웅담	1개	대	60문
-. 수리	1마리	대	20문
-. 말린 쇠고기[干牛肉]	1근	대	3문
-. 쇠고기[生牛肉]	1근	대	4문
-. 대구[鱈]	10마리	대	20문
-. 오리[鴨]	10마리	대	30문
-. 청어	10두름	대	20문
-. 명태	1두름	대	4문
-. 말린 개가죽[晒犬皮]	10장	대	15문
-. 학鶴	1마리	대	25문
-. 우마의 매끄러운 가죽[滑皮]	1장	대	36문
-. 우마골牛馬骨	100개	대	70문
-. 털이 붙은 말가죽[毛附馬皮]	1장	대	30문
-. 참기름[胡麻油]	1되	대	13문
-. 미·대두·소두 종류	1가마니[俵]	대	각 60문

<sup>47</sup> ‘シヤチ’는 범고래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돛자리를 의미하는 석자(席子)나 석천(席薦)을 ‘사치’로 적은 것이 아닌가 한다.

## 12 쓰시마 번계(藩計)<sup>48</sup> 조사서

### 쓰시마 국제(對州國計)

히젠노쿠니 肥前國 기이군(基肆郡), 야부군(養父郡)

-. 高(다카)<sup>49</sup> 13,402석 7두 4승

이것의 물성미(物成米)<sup>50</sup> 29,065가마니(俵) 6승 2홉 9작

단, 1가마니는 3두 3홉 3작 3재

석으로 바꾸면 미 6,988석 3두 9승 6홉 2작 3재

히젠노쿠니 마쓰우라군(松浦郡)

치쿠젠국(筑前國) 이토군(怡土郡)

-. 高 15,877석 7두 9승 8홉 3작 8재

이것의 물성미 18,506가마니 2두 6승 8홉 2작

단, 1가마니는 3두 4승

석으로 바꾸면 미 6,292석 3두 8홉 2작

이번에 신규로 증가된 지배지(支配地)

분고국(豊後國) 시모게군(下毛郡),<sup>51</sup> 부젠국(豊前國) 우사군(宇佐郡)

치쿠젠국(筑前國) 이토군(怡土郡), 히젠노쿠니 마쓰우라군

-. 高 35,850석 7두 3승 7홉 7작 8재

이것의 물성미를 석으로 견적하면(新 지배지는 아직 향촌을 받지 않아 물성고를 알 수 없다.

앞의 2조 물성고를 평균하여 대략 4할 반의 물성으로 견적해둠)

48 번계(藩計): 번의 재정

49 근세 일본에서 토지의 생산성을 표시한 것으로 고쿠다카(石高)라고도 함

50 물성미(物成米, 모노나리마이): 에도시대 토지에 부과된 조세로 연공(年貢)이라고도 함

51 시모게군은 분고국이 아니라 부젠국(豊前國) 소속이다.

미 16,132석 8두 3승 2홉

쓰시마[對州] 일원

-. 무고無高

이것의 물성미는 11,506가마니 2두 4승 7홉 4작 2재

단, 1가마니는 3두 3승

석으로 바꾸면 미 3,797석 2두 2승 7홉 4표 2재

조선국과 공무역으로 들어오는 미

-. 현미現米 10,410석 3두 9승 6홉 1작 7재

합계 미 43,621석 1두 6승 2재

이것이 지출되는 곳

미 802석 3두 6승 6홉 6작 6재 지사 식미食米

미 39,241석 6두 2홉 7작 3재 번의 급미給米

내역

미 9,247석 8두 8승 8홉 9작 1재 상사上士 228인

미 4,792석 6두 6승 6홉 6작 6재 중사 358인

미 2,553석 6두 하사 304인

미 420석 사족격士族格 75인

미 3,733석 8두 토착 상중하 사족 889인

미 1,831석 7두 4승 2홉 3작 9재 쓰시마 국내 사사령社寺領 신제료神祭料

또 사사에 공급하는 히젠 다시로 지배지도

이와 같음

미 10,072석 5두 지배지 아시가루足輕 및 아시가루에 준하는 자  
1,975인 부지미扶持米

미 4,017석 6두 주겐仲間, 수군 이하 고모노小者 1,090인 부지미

미 1,589석 4두 5승 7홉 9작 8재 다시로·마쓰우라·이토에 근무하는 제 사족  
이하 급미

미 982석 1두 4승 6홉 7작 9재 3도三都<sup>52</sup> 및 나가사키·지쿠젠·하카다博多·이키  
[壹州]·가쓰모토勝本에 근무하는 사족 이하 급미

미 4,615석 6두 5승 8홉 1작 9재 조선국 교제비  
이것들의 합계 44,659석 6두 2승 7홉 5작 8재에서 앞의 수납 연공을 빼면 미  
1,038석 4두 6승 7홉 5작 6재 부족.  
이 부분은 사무역 이익으로 보충할 예정.

이외에

미 1,748석 1두 3승 8홉 6작 3재 세건선 송사의 접대비

콩 514가마니 4두 8승 7홉 3작 5재 단, 이 쌀과 콩으로 가독家糧을 잇지 않은 사족  
및 아시가루들에게 배당하여 관리해온 것

히젠 다시로 영지 제譜 잡세

- 금 5,368냥 3분<sup>53</sup> 매년 다름

히젠 마쓰우라군·지쿠젠 이토군 제 잡세

- 금 618냥 3분 매년 다름

이번에 새로 받은 지배지 제 잡세

- 1,500냥 이 제 잡세도 앞과 같이 대략을 추산한 것

<sup>52</sup> 3도(三都): 교토·오사카·도쿄

<sup>53</sup> 분은 보(歩)라고도 하며 냥의 1/4

쓰시마 일원의 제 잡세

- 금 8,361냥 2보步 에이永<sup>54</sup> 62문 5푼                    매년 다름

조선국 공무역 이익금

- 금 22,649냥 2보 에이 169문

합계 금 38,498냥 2보 에이 231문 5푼 중

금 14,196냥 에이 200문                    공무역을 위한 동과 그 외 3품 및 봉진물을  
사는 가격

금 4,767냥 3보 에이 244문 8푼                    조선국 교제 제반 비용

금 19,534냥 2보 에이 36문 7푼                    번의 제반 비용으로 지불하는 분

### 13 쓰시마 번계藩計의 처분에 대해 개관하는 글

처분에 대한 견해

조선국 공무역 수입: 미 10,410석 3두 9승 6홉 1작 7재

번의 부족한 미: 미 1,038석 4두 6승 7홉 5작 6재

접대미: 미 1,748석 1두 3승 8홉 6작 3재

합계(가): 미 13,197석 2홉 3작 6재

공무역 이익금(나): 금 22,649냥 2보 에이 169문 중

금 14,196냥 에이 200문(공무역 동 이외 3품의 구입 원가)

미 1,220석 9두 5승 7작 5재와 금 4,767냥 3보 에이 244문 8푼(표민, 그 외

<sup>54</sup> 에이(永)는 금과 유통전의 명목적인 환산 기준으로 1냥은 1관문(貫文, 칸문)=1000문(文, 몬)이다.

교제상 비용)

합계(다): 미 1,220석 9두 5승 7작 5재,<sup>55</sup> 금 18,964냥 에이 194문 8푼

합계(가)와 공무역 이익금(나)에서 합계(다)를 빼면

미 11,976석 5승 1홉 6작 1재

금 3,685냥 1보 에이 224문 2푼.

이 부분을 미로 환산하면 368석 5두 4승 7홉 4작 2재(단, 1석을 10냥으로 견적)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미 12,344석 5두 9승 9홉 3재(교제상 비용을 제한 번의 이윤이 되는 것)

이것을 3두 5승들이 가마니(罽)로 바꾸면 미 38,824가마니 3두 4승 6홉 3작 3재.

위는 조선국 공무역 이윤으로 옛날부터 번의 회계를 보충해온 것이다. 이번에 교제를 조정에서 인수하여 세전선과 공무역을 폐지한 다음에는 연공과 여러 잡세를 하나로 묶어, 3두 5승들이 가마니 35,270표를 생산할 수 있는 지배지를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국 교제비용

미 4,615석 6두 5승 8홉 1작 9재

금 4,767냥 3보 에이 244문 8푼

이것의 내역

미 819석 1두 7승 2홉 5작 8재, 금 81냥 2보 에이 14문 3푼[화관(和館) 해변과 쓰시마 와니우라에서 근무하는 짐 단속 역원의 급료와 붓, 먹, 종이, 기름, 납촉(蠟燭)

<sup>55</sup> 230석 8두 8승 6홉 3작 3재로 되어 있으나 『對州朝鮮交際取調書』(JACAR Ref.B03030124000)에 따라 바로 잡았다.

기타 1년분]

미 93석 8두 3승 1홉 4작 5재, 금 1,380냥 3보 에이 157문 4푼[표민 송영<sup>送迎</sup> 선입, 체재 중 반미<sup>飯米</sup>, 소금, 된장, 연초, 배 수리 등 1년분 견적]

금 2,000냥[세전선 수리 및 새로 만드는 청부<sup>淸負</sup> 비용의 1년분]

미 3석 6두, 금 30냥 2보 에이 120문 2푼(작은 쾌속선<sup>小隼船</sup> 6척의 수리, 교체 청부 비용 1년분. 목재는 정품을 건네준다.)

미 49석 9두 8승 5홉 2작 7재, 금 492냥 1보 에이 28문 7푼[왜관 왕래 역원<sup>役員</sup>의 출장 수당, 승선 반미<sup>飯米</sup>와 기타 비용 1년분]

미 58석 5두 9승 1홉 6작 6재, 금 21냥 3보 에이 239문 9푼[예인선 수부<sup>水夫</sup> 반미<sup>飯米</sup> 수당의 평균 1년분]

미 8두 3승 3홉 3작 3재, 금 15냥 에이 240문[조선 왕래선 조난의 경우 제 비용과 반미 평균 1년분]

금 36냥 1보 에이 120문 8푼[송사<sup>送使</sup>와 표차사<sup>漂差使</sup>가 조선국 체재 중 선물을 줄 것을 예상하여 건네는 분]

미 77석 2두 6승 9홉 8작 8재, 금 593냥 2보 에이 14문 3푼[왜관의 가옥, 창고 수리비, 목수<sup>木工</sup> 반미 및 역원의 필묵 비용에 해당하는 분]

미 3,323석 9두 8홉 6작, 금 23냥 1보 에이 206문 7푼[왜관 재류 역원 급미, 왕래 역원의 선중 반미, 대소선<sup>大小船</sup> 수부의 도해 양미<sup>糧米</sup> 1년분. 이 중 미는 도해 양미의 분]

미 191석 7두 5홉 4작 1재[화관 근무 통역 및 정역인<sup>町役人</sup><sup>56</sup> 부지료<sup>扶持料</sup> 분]

금 92냥 에이 128문 5푼[연조송사<sup>年條送使</sup>가 훈도<sup>訓導</sup>·별차<sup>別差</sup>·소통사<sup>小通事</sup> 등에 주는 은<sup>銀</sup>의 분]

---

<sup>56</sup> 정역인(町役人, 마치아쿠닌): 에도시대 마치의 행정을 담당하던 역인

조선국 교제비용 미 4,615석 6두 5승 8홉 1작 9재 중에서 미 3,394석 7두 7홉 4작 4재는 왜관 근무 역원과 양쪽 해안에서 근무하는 사족의 급미<sup>57</sup>이다.

조선국 교제비용 미 4,615석 6두 5승 8홉 1작 9재 중 미 1,220석 9두 5승 7작 5재와 금 4,767냥 3보 에이 244문 8푼은 교제상 순 경비에 해당하는 분이다.<sup>58</sup>

#### 14 제주도 물산 등의 조사서

조선 남양<sup>南洋</sup>의 고도<sup>孤島</sup> 제주는 옛 탐라국으로 탐라왕의 소유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조선에 속하여 조선 3도(제주, 남해도, 거제-원주) 중에서 첫 번째 섬으로 물산과 어세<sup>漁稅</sup>가 매우 많다. 그곳 체재 중에 몰래 들은 일에 대해 더 내담한 바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섬 전체 길이는 30리, 폭은 10리.<sup>59</sup>
- 서울에서 거리는 대략 100리 남짓이고, 부산포로부터는 50리에 못 미친다고 한다.
- 서쪽에 뱃나루가 5개소 있다고 하지만 대선이 출입할 수 있는 양항<sup>良港</sup>은 2개소라 한다.
- 동쪽에 뱃나루가 6개소 있지만 모두 작은 포구라서 대선이 출입할 수 없다 한다.
- 섬 둘레 해저는 일본 길<sup>尋</sup>로<sup>60</sup> 대략 서른다섯 길에서 마흔 길 깊이라 한다.
- 섬에서 3리 정도 떨어진 곳은 모두 여울이 이어져 특히 얕다.
- 상비<sup>常備</sup>한 상선은 5만근 적재선이 30척, 3만근 적재선이 100척, 2만근 적재

57 급미(給米): 급료

58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했다. 그리고 “금 4,767냥 3보 에이 244문 8푼” 부분이 빠져 있어 『對州朝鮮交際取調書』를 토대로 보완했다.

59 일본 이수<sup>里數</sup>(원주) 일본 1리는 약 3.9km-음간이

60 길(尋): 일본의 한 길은 6척-음간이

선이 10척이고 어선은 400척이 있다고 한다.

○ 섬 전체 가옥은 대략 2만 채, 인구는 대략 7만 남짓이라 한다.

○ 제주도에 단속하는 관리는 7명이 있다.

### 수출 물산

-. 우뭇가사리(정량 100근들이)    대략 3만 가마니(俵)

-. 말린 전복                            18만근

-. 건오징어                            20만근

    단, 정월부터 2월까지 7만근,<sup>61</sup> 7월부터 8·9월까지 13만근의 비율

-. 가다랑어포

-. 말가죽                                1만장가량

-. 소가죽                                6천장가량

-. 사슴가죽                            3천장가량

-. 표고버섯                            5천근

-. 목실유(木實油)                    5백석가량

    단, 용기는 없다.

    이 밖에 약재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한다.

### 그곳에 가지고 가면 좋은 물품

-. 백미(몇 천석이라도)

-. 목면

-. 보리

---

<sup>61</sup> 원문의 '五月'을 '正月'로, '七百斤'을 '七萬斤'으로 바로잡았다.

이 밖의 물품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

단, 전錢을 가지고 가서 매입하는 것이 특히 이익이 많다고 한다.

## 15 다케시마竹島(울릉도) 조사서

『조선 이야기朝鮮物語』 중의 ‘다케시마竹島 일칙一則’

- 一. 교호享保 18(1733)년인지 19(1734)년인지, 이전의 일이다.<sup>62</sup> 다케시마(울릉도)에 조선과 일본에서 출입이 있었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다케시마는 호키국伯耆國<sup>63</sup> 앞바다 육지에서 (배로) 2박 내지 3박 거리정도 떨어진 섬이고 호키국에서 매년 고기잡이배[獵船]가 가서 각종 어로를 하는 호키에 속하는 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에서도 매년 고기잡이배가 가서 각종 어로를 하는 조선의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조선인과 일본인이 끝내 함께 가서 만나는 일이 없었기에 그 이전에는 (섬의 소속에 대한) 아무런 전의訟議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호키의 고기잡이배가 다케시마에 배를 대고 재빨리 화승총[大筒]을 쏘면서 상륙했다 한다. 더욱이 상륙한 후에도 화승총을 발사하니 섬 안에서도 이에 맞서 화승총을 발사했다 한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다케시마를 조선에서는 울릉도鬱陵島, 鬱陵島라 부르고 본래부터 조선의 소속이다. 이에 조선의 엽사獵師들이 끼리끼리 말하기를 “누구든지 우리나라 울릉도에

62 이본 조선 이야기(『異本朝鮮物語』)를 인용한 『동항일람(通航一覽)』(권137)에선 이 문장의 뒤에 “살피니, 이 책의 아래 부분에 따르면, 이것은 겐로쿠(元祿) 연간의 일을 잘못 안 것이다”라고 편자가 주기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은 편자의 주장대로 울릉도의 소속을 다룬 이른바 ‘겐로쿠 일건(元祿一件)’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지만, 반드시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 보듯이 조선 이야기(『朝鮮物語』)에선 울릉도에 들어온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총기를 발사했다고 했는데, 1693년(겐로쿠 6) 울릉도로 간 조선인 중에서 박여둔과 안용복이 남치되었을 때 조선인은 화승총을 소지하지 않았다. 11명의 안용복 일행이 소송을 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1696년에도 총기는 소지하지 않았다.

63 호키국(伯耆國): 현재 돗토리 현의 중서부

와서 사냥하면 꾸짖을 것이다”라고 조를 편성해서 짐짓 자세를 취하고 맞서는 때에 위와 같이 일본인이 화승총[鐵炮]을 쏘았기 때문에 서로 대치했다 한다. 그래서 좌우의 사람들이 웅거하면서 일본 섬이라 하고 조선 섬이라 해서 논담의 결말이 나지 않으므로 호키로부터 에도[江戶]에<sup>64</sup> 호소했다. 이에 에도로부터 쓰시마[對馬]에 명하기를, 조선에 가면 이후로는 그 쪽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에 가지 말도록 하라고 했다. 조선인이 전혀 승낙하지 않아 계속 담판을 하고 에도에도 자세히 보고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쓰시마노카미[對馬殿]가 조선에 말씀드려 겨우 반 정도 납득하는 모습이 되었다. 조선으로부터 해명하는 서면에 “우리나라의 울릉도에 일체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명했다. 우리나라의 울릉도에조차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데 하물며 일본의 다케시마에 가도록 할 리는 없다. 그렇게 명심하라”고 하였다. 쓰시마는 에도에 품의하지 않고 직접 회답하기를 “이는 한 섬[一島]을 두 이름[二名]으로 한 표현법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 그 후에 어떤 회답도 없었다. 그것을 에도에 보고했는데, (에도 막부에선) “그렇다면 다케시마를 조선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어서 그대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쓰시마노카미[對馬殿]가 지나치게 사리를 따져서 결국 일을 그르쳤다고 정소[政所]에서 말했다. 그 후 위와 같이 (막부의) 지시대로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일본인이 가는 일이 있었다.<sup>65</sup> 그해 가을에 조선에서 몇 명이 와서 어럽을 하였다. 단, 항상 파수꾼을 과견해두어 외인은 일체 들어오지 못함.

<sup>64</sup> 에도(江戶): 막부

<sup>65</sup> 이본 조선 이야기(『異本朝鮮物語』)를 인용한 『통항일람(通航一覽)』(권137)에선 “일본인이 가는 일이 없었다”고 되어 있다. 막부는 1696년 1월 다케시마(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인이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런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바로 뒤의 문장과 모순이 된다. 울릉도에 가지 않았다면 그 해 가을에 조선인이 울릉도에 있었는데를 목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막부의 금령 이후에도 몰래 울릉도로 건너간 일본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16 시즈오카번靜岡藩에 조선 국왕으로부터 이전에 받은 서한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글**

시즈오카번靜岡藩

외무성

공용인公用人 귀중貴中

그 번에서 종전에 취급해온 조선국 통신사가 도래했을 때 경조慶弔 등으로, 저 나라 국왕이 역대 당주當主<sup>66</sup> 앞으로 보낸 서한의 본서本書<sup>67</sup> 옛것과 근래의 것 모두를 그 번에서 소장하고 있으니, 이것을 조사하여 급히 제출할 것.

4월

**17 이즈하라번嚴原藩이 동래부사가 제출한 단간短簡을 첨부하여 처분을 구하는 글**

첨부문서: 동래부사가 구규舊規에 반할 때는 접대할 수 없다는 뜻을 표한 글

태정太政을 유신하여 조선과의 교제를 친재親裁하신다는, 조정에서 논의한 초안草案의 서계를 가지고 재작년 무진(1868년) 겨울에 대수사大修使라는 사명使名으로 중역重役의 자가 건너갔습니다. 선규先規에 따라 서한의 사본을 저 나라 임역任譯들에게 건네주고 본서本書の 봉출捧出 방법에 대해 엄중하게 교섭했지만, 몇 달 동안 시간을 끌고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사절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황조皇朝가 인의隣誼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는 성의誠意는 오히려 시기와 의심을 낳아 한결같이 친교親交를 원하지 않는 정유情由는 전부터 말씀드렸으니 다시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묘당에서 관寬과 맹猛 두 길의 근본을 먼저 확정하고 지휘하지 않으면 담판의 결말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이미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겨울 변관辨官 어역소御役所에서, 대수사의 교섭을 격렬

66 당주(當主): 도쿠가와 가의 계승자, 곧 쇼군을 의미-옮긴이

67 본서(本書): 원본

하게 응수하면 오히려 후해(後害)가 생길지도 모르니 어디까지나 보전(保全) 위주로 교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로부터 퇴거하는 조치는 하지 말라는 내유(內諭)의 취지를 경승(敬承)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번(本藩)의 역원(役員)들은 어디까지나 온건하게 담판할 각오였는데, 저들은 더욱 집요한 태도로 나와 서계를 봉출할 수 없는 조목들을 베껴 써서 제출하고, 또한 사절의 퇴거도 임역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아무리 응접하고 변론(辨論)을 다해도 헛되이 일력(日力)을 쓸 뿐이고 그 효과는 전혀 없어, 매우 고심하고 있는 중에 외무성 관원이 도해하여 한토(韓土)의 정태(情態)와 대수사 담판 과정 등을 친히 듣고 난 후에 또 역원(役員)들에게 간절히 타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끝내 저들은 서계를 봉출할 수 없다고 별지와 같이 동래부사의 단간(短簡)을 제출했습니다. 말이 자못 불손하지만 구구한 절목에 대해 힐난하면 일에 있어 무익할뿐더러 점점 시일이 지체되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서면을 받고 이를 제출하니 서둘러 살펴보시고 숙고한 뒤에 모쪼록 지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 관원이 귀조(歸朝)하고 모든 것을 알려주어 지금쯤은 묘의(廟議)가 정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고려하면 은위(恩威)를 병행하여 관맹(寬猛)을 적기에 사용하시어, 결국 외방(外邦)으로부터 수모를 받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에 대한 중대한 공무를 급속히 복명하지 못한 경위는, 원래 한인(韓人)의 완고한 국습(國習)에서 나온 것이긴 해도 직장(職掌)에 있어 매우 송구합니다. 부디 앞뒤의 정실(情實)을 마땅히 이해하신 뒤에 사절 응대의 협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분부해주시시오. 이상.

4월 4일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

외무성 귀중(貴中)

동래부사 단한(短翰)

무릇 귀국이 '황'을 칭하고 '칙'을 칭하는 것이 천하에 다른 말이 없으면 행할

수 있고, 모국某國은<sup>68</sup> 당연히 의심 없이 따를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중보重寶로 유혹할 수 없고 중력衆力으로도 위협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귀국 또한 폐방이 반드시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경솔하게 시험하고 있으니 신실信實하지 못함이 심합니다. 무릇 300년 금석지맹金石之盟이 아직까지 서로 변함이 없는데, 한갓 무익한 말을 허비하면서 강요할 수 없는 일을 굳이 시행하려고 하니, 이는 영원히 우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생각을 고쳐서 상구常舊를<sup>69</sup> 따르는 데 힘써 실화失和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좌근위좌近衛’, ‘조신朝臣’ 등의 글자, ‘도서圖書’를 바꿔 쓴다는 설, ‘대인大人’을 ‘공공’으로 개서改書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린지도交隣之道는 옛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귀하니, 폐방이 수락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옛 우호를 강구해서 천백 년을 하루같이 만들려는 마음이 있을진대, 어찌 여러 서계에서 적절히 참작해서 건사遣辭하는<sup>70</sup> 것을 어렵게 여겨서 구차하게 오래 버티겠습니까? 멀리서 생각건대 귀국 내에도 통련通練해서<sup>71</sup> 찬획贊劃하는<sup>72</sup> 인물이 있을 것인데, 아직도 계획이 이것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미처 갖추지 못하고 보냅니다.

경오년(1870) 3월 일 동래부백(동래부백) (印)

대차사공大差使公

관사公館司公

68 『조선사무서』에선 ‘그 나라(其國)’로 되어 있으나, 동래부백의 인장이 찍힌 원본에는 ‘모국(某國)’으로 되어 있다. 원본은 『對州朝鮮交際取調書』 중의 ‘東萊府伯書翰’(JACAR Ref.B03030123600)에 실려 있다. 문리 상으로도 ‘모국’이 맞아 ‘모국’으로 번역했다. 만약 ‘그 나라(其國)’이라고 썼다면 이는 이 문장에서는 ‘일본국’을 의미하는데, 같은 문장에서 일본국을 의미하는 말로 ‘귀국(貴國)’과 ‘기국(其國)’을 동시에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국’은 ‘귀국(貴國)’에 대응하는 말로 일본 이외의 나라를 의미한다.

69 상구(常舊): 늘 변하지 않는 규칙과 오랜 관례

70 건사(遣辭): 단어를 운용하는 것

71 통련(通練): 일에 통달하고 숙련됨

72 찬획(贊劃): 계획을 보좌함

## 18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에게 동래부사의 서한 등을 속히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글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

조선국 동래부사의 서한 1통 및 훈도·별차 양인의 각서를 그 번 대차사大差使 및 관사館司에게<sup>73</sup> 전했다고 하므로, 위의 서류를 지난 4월 중순까지는 그 번에서 당 성(외무성)에 제출하라고 당 성 관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외 양인이 그 번에 출장 중일 때 굳게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 서류를 아직 보내지 않았으니 어떻게 된 것인가. 조선교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협의僉議할 사항도 있는데 만일 그 번에서 유치留置하려고 해서는 자연히 기회를 잃어 국가의 영욕에도 관계되니 조속히 보낼 것.

경오(1870) 5월

외무성

## 19 국사國使의 조선파견 여부에 관한 의안議案

조선의 내부 사정은 저번의 탐색으로 명료해졌습니다. 동래부사와 이즈하라 번嚴原藩과의 왕복 서류는 완전히 공식 절차를 거친 것이기에, 위의 서류를 받은 이상 다시 평의를 하여서는 자연히 실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즈하라를 재촉하는 것보다 먼저 천사天使<sup>74</sup> 파견 여부에 대한 조정의 논의를 하나로 정하여 결국 파견하게 된다면, 저번에 탐색을 위해 파견된 자는 어쨌든 위의 사절(천사)을 파견하는 계획에 참여하는 임무를 맡을 자이니, 그중에 한두 명을 지금부터 파견해두고 이즈하라에 있으면서 재촉하도록 하거나, 시의에 따라 초량항草梁項까지 건너가 독촉하고, 그 사이에 천사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공식적으로

<sup>73</sup> 관사(館司): 관수

<sup>74</sup> 천사(天使): 皇使라는 의미

왕복서류가 오는 대로 신속히 출범하여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만일 천사를 과견할 전망이 없으면 이즈하라에 더 머무르는 것도 오히려 기회를 얻을 단서가 될지도 모르므로, 결코 재촉을 하지 않고 물이 이르면 도랑이 되는 때<sup>75</sup>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찮은 의견이지만 채택을 엿드려 빕니다.

**20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으로부터 이즈하라번(嚴原藩)에 동래부사의 서한을 신속히 제출할 것을 엄하게 독촉하는 건의서**

외무성 내부 품의(省中伺)

조선국 동래부사가 이즈하라번 사절 앞으로 보낸 서한 및 그 밖의 중요 서류를 조속히 정부에 제출하라고 이즈하라번에 통달한 것에 대해서는, 졸자(拙者)들이 동지(同地)를<sup>76</sup> 출범하는 전야에도 위의 서한을 가지고가는 자가 동지를 출범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자들보다 이곳(도쿄를 의미)에 먼저 도착했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도쿄에 도착하지 않아 벌써 40일의 광음을 허비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되면 실로 정부에 대해 매우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졸자들이 통달한 것을 경멸하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반드시 그 조리(條理)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지연한 사정을 (밝히고) 또 재촉하기 위해 매우 급히 쓰시마(對州表)에 관원 1명을 내려 보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교제와 관련된 공무가 많아질 텐데 이러한 누습(陋習)에 빠져 큰일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엄하게 재촉해서 교활한 마음을 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굳이 관원을 내려 보낼 필요가 없다면 부디 이즈하라번 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엄히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졸자들

<sup>75</sup> “물이 이르면 도랑이 된다(水到渠成)”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레 일이 성취된다는 의미

<sup>76</sup> 동지(同地): 이즈하라

이 매우 불안하니 마땅히 중평衆評을 (구하여) 조속히 결의해주시시오. 이상.

오午; 庚午(1870년) 5월

사다 하쿠보 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 森山茂

사이토 사카에 齊藤榮

부전  
附箋

이즈하라번지사에게 엄히 독촉하는 문서를 보내고, 이것을 정해진 날짜까지 전하도록, 호송하는 자인 이즈하라번의 번사에게 명하는 방법이 마땅함. [이 부전에는 ‘外’(외무경, 사와 노부요시 澤宣嘉), ‘寺’(寺島宗則, 데라시마 무네노리 外무대보), ‘宮’(宮本小一, 미야모토 오카즈 外무소승)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긴이]

## 21 이즈하라번 嚴原藩 공용인 公用人 으로부터 지사에게 지령서를 급편 急便 으로 보낼 것을 상신하는 글

조선국 사건과 관련하여 지사에게 보내는 통달서 한 통을 전하여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번저 藩邸 근무자 중 한 명을 증기 쾌속 우편선 飛脚船 으로 나가 사키의 형편이 되는 즉시 (대마도로) 보내 급히 전할 방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편선 便船 을 아직 찾지 못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대략 다음달 5일경까지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략을 말씀드려둡니다. 이상.

경오(1870년)

이즈하라번 공용인 公用人<sup>77</sup>

5월 12일

오다 주자부로 小田忠三郎

외무성 어역소 御役所

<sup>77</sup> 번주(藩主)가 도쿄 번저(藩邸)에 부재중일 때 번저의 경호를 담당하는 **재책**으로, 번주가 체재 중일 때도 정보 수집, 대외 연락 등 번의 외교관 역할을 했다.

## 22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が 동래부사 서한 제출 지연에 대해 상신하는 글

오午(1870년) 6월 15일에 이즈하라번 무라 세이이치로村誠一郎가 제출함.

조선국 동래부사가 보낸 서한 및 훈도·별차 등의 서면을 바치는 일이 지연된 것에 대해 통달하신 취지에 황공합니다. 위의 서류는 그때 바치라고 해두었으므로 이미 정상봉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폐를 끼쳐 불편하셨다고 하니 공구慙懼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디 좋게 청용聽容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청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경오(1870년) 5월 그믐날

이즈하라번지사

외무성 귀중貴中

## 23 이즈하라번嚴原藩 공용인이 동래부사 서한 제출 지연에 대해 상신하는 글(2통)

단간單簡, 短簡 연착 신고서

대수사大修使의 용건에 관한 교섭을 외향外向에서<sup>78</sup> 접대를 허용하지 않아 차차 변론하였지만, 저 나라는 응하지 않는다는 조의朝議를 서울에서 전령傳令하여 동래부사에게 공문이 도래했다고 하였습니다. 대수사는 속히 물러가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는 사사로운 사절이 아니기에 가볍게 물러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임관任官들이 엄중히 교섭했는데, 불응하는 조목조목을 양역兩譯이<sup>79</sup>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러 번 교섭했지만 시일을 보낼 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수사 부사副使 고모다 타키薦田多記가<sup>80</sup> 중도에 귀국하여

<sup>78</sup> 외향(外向): 조선

<sup>79</sup> 양역(兩譯): 훈도와 별차

일단 지사께 품의했는데, 조정과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丞가 담당한 절차도 있고, 동인同人이 마침 새로운 관할지를 수취하기 위해 출향出郷하고 있으므로, 다키多記가 곧바로 다시로田代<sup>81</sup> 가서 도모노조에게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토韓土는 이전부터 정성껏 교제해온 곳이고, 기도木戶<sup>82</sup> 중3 위께서 청한 양국의 사절로 내명되었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내정內情을 미리 상의하고 있던 중에 관원이 도해하신다는 소식이 나가사키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소식이라도 조선의 상황을 듣고 난 다음 동행東行<sup>83</sup>하기로 내부적으로 평의하고 (외무성 관원이) 귀주歸州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와 같이 접대에 응하지 않은 경위를 적은 동래부사의 단간이 제출되어 관원이 귀경하시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키가 동행東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전건前件에 대해 교섭할 것도 있어 이번에 상경토록 했습니다.

一. 사와다 한지澤田半二는, 역원役員이<sup>84</sup> 이즈하라번嚴原藩을 출범하신 후 4월 3일에 동래부사 단간을 부탁하면서 급히 동행東行하도록 명령하여, 4월 7일에 승선했으나 일기의 잦은 불순으로 지체되어 27일에 지쿠젠筑前<sup>85</sup> 하카다博多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키처럼 다시로에 가야하는 수속手續도 있어 그곳에 전갈했는데, 병환으로 어쩔 수 없이 지체하여 지난달 16일 다키와 함께 그곳을 출발, 나가사키 쾌속 우편선으로 출선出船하여 어제 초하루에 도착했습니다. 거듭 시일을 연체하여 불편케 한 점은 항송하지만, 사정을 흰히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0 도선주(都船主)로 한문 이름은 등상식(藤尚式)이다.

81 다시로(田代): 현재 사가현 도스(鳥栖)

82 기도(木戶): 기도 다카요시

83 동행(東行): 도쿄로 가는 것

84 역원(役員): 외무성 관원

85 지쿠젠(筑前): 현 후쿠오카현 서부

경오庚午(1870년) 6월 2일

이즈하라번 공용인公用人  
오다 주자부로小田忠三郎

외무성 어역소御役所

### 공용인 진술이 소홀한 것에 대한 해명서

어제 2일에 이즈하라번 사와다 한지의 상경 지연에 대해,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권대록權大録 님을 응접했을 때 지배지支配地<sup>86</sup> 다시로에서 기도木戸 종3위從三位 님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잘못 말했습니다. 결국 해명이 소홀하여 거듭 폐를 끼치게 되어 매우 공구<sup>87</sup>합니다. 이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오庚午(1870년) 6월 3일

이즈하라번 공용인  
오다 주자부로

외무성 어역소

## 24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황사를 조선에 파견할 호기라고 진술한 건의서

조선의 일에 대해 저번에 그 자세한 사정을 상언<sup>87</sup>했습니다. 지금 듣기를, 지나支那에서<sup>87</sup> 천주당天主堂을 훼손하고 프랑스인[佛人] 몇 명을 참살하여 프랑스·영국·미국 등의 포함 8, 9척이 갑자기 텐진으로 향해했다 합니다. 신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니, 프랑스가 그 죄를 주장하고 지나는 이것에 의탁해서 전쟁에 이를지, 이것에 굴복하여 사죄를 의논할지를 막론하고 프랑스·영국·미국은 조금도 조선 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영국·미국으로 하여금 지나가 조선을

<sup>86</sup> 지배지(支配地): 대마도 영지

<sup>87</sup> 지나(支那): 중국

응원하는 길을 끊게 하는 때라서 황위皇威가 조선을 수복綏服할<sup>88</sup> 호기입니다. 황조가 사방을 둘러보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지나 사건이 완료되면, 프랑스·영국·미국이 그 기세를 타고 바로 조선을 엿볼지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조정에서 속히 하나의 황사, 하나의 대장에 위임하고 쓰시마[對州]에 내려 보내 화전和戰과 관맹寬猛을 임기응변하면 끝내 성공을 완수하는 일, 실로 금일에 있습니다. 참으로 황공합니다. 재배再拜.

경오庚午(1870년) 6월

사이토 토모카즈齋藤如一

모리야마 히데아키森山秀晃

사다 나오히로佐田直寬

**25** 외무성으로부터 이즈하라번嚴原藩이 동래부사 서한의 상송上送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엄책嚴責할 것을 변관辨官에 품의하는 글

변관辨官 귀중

외무성

저번에 사본으로 제출해둔 조선국 동래부사 및 훈도·별차라고 하는 자로부터 제출한 난문難問의 단간短簡 3통의 본서本書는<sup>89</sup> 신속히 이즈하라번에서 별사別使를 보내 제출하라고, 지난 3월 하순 그곳에 출장한 이들이 굳게 약정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매우 급히 처리할 공무라고 독실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날로 지연되어 심히 면목이 없습니다. 저번부터 이즈하라번 공용인을 호출하여 재삼재사 간절히 설유說諭하고 재촉했지만 아무튼 인순고식因循姑息적인 답변뿐입니다. 더 이상 세월을 보내면서 지연시키면 큰 기회를 잃을지도 모르므로, 별지 사본대로 이즈하라번지사 앞으로 통달서를 보냈습니다. 그 후 간신히 6월

<sup>88</sup> 수복(綏服): 평정하여 정복한다는 의미

<sup>89</sup> 본서(本書): 원본 문서

2일에 도착했다고 하면서, 4월 4일자 지번사知藩事 구술서口述書를 첨부해서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무엇 때문에 60여일이나 도중에 지체했냐고 거들 물어보았는데 별지 신고서대로 병을 핑계되고 있지만 매우 불명확하고 애매할 뿐입니다.

위의 조선에 관한 공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국가의 영욕에 관계되는 지대한 사무이고, 가볍게 등한히 할 수 없음은 논할 필요도 없는데, 일을 이렇다저렇다 하여 이처럼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전혀 대사를 대사로 여기지 않고 판연判然하게 정부를 멸시하는 태도와도 같아 실로 그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조선과의 인호隣好에서 쓰시마는 원래부터 긴요한 곳이기도 한데, 사의私意를 마음대로 하는 토풍土風의 누습陋習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폐해를 일소하지 않으면 왕왕 교제상에 있어서도 국욕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여 매우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지연하고 소홀히 한 죄는 이번에 조치하지 않으면 확고한 상벌의 원칙을 세울 수 없을 듯합니다.

위의 조선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난날에도 누누이 품의해둔대로 매우 급한 중요한 일이므로 위의 본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이 기회에 하루바빠 조정의 논의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차차 품의하겠지만 위의 단간이 연착한 전말을 말씀드리고자 본서와 별지를 첨부해서 품의합니다.

경오庚午(1870년) 6월

**26** 기도木戶 참의參議가 병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저히 조선과 담판을 완료할 수 없다고 건의하는 글

경오(1870년) 6월 24일 기도 참의 덕에 가서 조선 일건에 대해 시담示談했는데, 2,3일 안에 정부에 제출하려 하는 동인同人의 건백서 사본

신이 엮드려 살피건대 똑같은 사람인지라 필시 이번에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쓰임이 되려 합니다. 교제는 천하의 통정通情이요, 우내宇內的 공리公理이기 때문에, 원래 한 사람, 한 나라가 홀로 막거나 멈출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무궁造化無窮의 운수가 날마다 펴지고 해마다 열리는 것이니, 고금 민물民物의<sup>90</sup> 발자취가 변천하는 사이에서 그 증거를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신주神州<sup>91</sup>가 정치의 기강을 일신해서 사방에 임하였으니, 이에 해서海西의 여러 나라가 모두 이미 교관交款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청씨淸氏<sup>92</sup>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옷깃의 테두리가 만나는 데 있어서 일찍이 인의隣誼를 약속한 전례가 없지만, 또한 각국이 통신通信하는 나라이니 여러 방면으로 번속藩屬의 반열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조선은 고립되고 편벽한 나라로서 강토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通信이 아득히 두절된 사이에 사절이 오지 않았고, 도쿠가와씨德川氏가 정사에 관여한 이래 때때로 빙례聘禮 받았다고는 해도, 그 또한 오지 않은 것이 이미 이십여 년입니다. 이제 팔주八州를 천황께서 친어親御하시는 날을 맞이함에, 지난날 쓰시마번[對州藩]에 맡겨서 대략 그 성의盛意를 표시했습니다. 저들은 의당 한번 와서 정성껏 감사를 올려야 할 것인데, 인습因襲에 맡기고 구습舊習을 요행으로 여겨 늘 쓰시마번을 빌미로 제멋대로 문필을 놀리며, 과장과 무고로 교도交道の<sup>93</sup> 이정理情을 분별하지 못하고 감히 상국上國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어리석음에 화낼 것도 없으나 그 모습은 꾸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의 일은 오로지 쓰시마번對州藩에 맡겼으니, 다시 거론해서 그 득실을 묻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혹시 향후 다시 공개公价를<sup>94</sup> 접할 때 저들의 집요함이 이전과 같다면, 신주神州가 저들을 대함에 예로부터 유철遺轍이 있으니, 또한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저들이 원래

90 민물(民物): 인민과 만물

91 신주(神州): 일본

92 청씨(淸氏): 청나라

93 교도(交道): 서로 사귀는 도리

94 공개(公价): 공식 사절

청씨淸氏의 판도에 귀속되어 있지만, 근년에 이르러선 오직 그 정삭正朔만을 받들 뿐, 아직 그 안무安撫를 청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신주神州의 큰 교화를 입은 종적蹤迹은 없지만, 교대交待<sup>95</sup> 전례가 있고, 강토가 매우 가까워서 형세 상 마려磨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들이 완우頑愚해서 한 모퉁이에 웅크린 채 일찍이 외사外事<sup>96</sup>를 알지 못한 까닭에 뜻이 모여들지 않고 측후測候가 들어가지 않으며, 해서海西의 나라들도 대체로 그것을 도외시합니다. 그렇다면 공의公義를 추강推講해서 조선과 종사하는 일을 우리가 시작함에, 청씨淸氏라고 해도 어찌 그것을 문책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公義로써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천하의 통업通業입니다. 천하의 통업인데도 거부하는 것은 만국이 용납하지 않는 바로서 기운혼일氣運混一의 높고 큰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니, 세력에 따라 그것을 움직이는 것 또한 불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은 생각건대, 일단 외국에 말을 붙여놓고도 수미상속首尾相屬하지 않는 것은 무한한 국욕國辱이니, 차라리 처음부터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또 지금의 신주神州가 옛날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요, 지금의 조선이 옛날부터 약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조선의 일은 이미 기호지세騎虎之勢가 되었습니다. 응접하는 사이에 만일 저들이 공리公理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단연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부兵賦, 선함船艦, 군자軍資, 기계器械를 미리 완급緩急에 대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묘의廟議가 이미 이것으로 나와서 처음부터 일정한 계략이 있었을 것이니, 또 어찌 신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도해渡海의 일은 신이 일찍이 그 무거운 위촉을 받았기에 상세히 아뢴 것입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가르침을 내려주신다면 신은 참으로 그 은혜를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삼가 아뢴다.

<sup>95</sup> 교대(交待): 서로 사귀면서 접대함

<sup>96</sup> 외사(外事): 외국과 관계된 일

## 27 황사 파견 전에 탐색을 위해 외무성 관원을 도한渡韓시킬 것을 상신하는 글

변관辨官 귀중

외무성

조선국이 어일신御一新<sup>97</sup>을 알리는 글을 배척한 후, 여전히 등한함이 지나쳐 그 불신不信도 타이르지 않고 어리석음도 깨우쳐주지 않고 오로지 소씨宗氏 목전의 소리小利·사교私交의 무역만 변함없이 허용해두면 더욱더 저들의 경모輕侮를 받아 앞으로 개화開化의 길도 더욱 막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방금 외국인도 차차 황한皇韓 양국 교제·무역의 조약 등을 탐색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의 교제·무역의 조리에 맞지 않는 것들을 열거하여 우리를 힐책詰責할 때 다시 해명할 말이 없어 통심痛心합니다.

따라서 지난 4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끝에, 부디 황사를 파견하기 전에 외무성 관원이 다시 건너가 오랫동안 체재하면서 깊이 탐색하고 때때로 도쿄에 보고토록 하여, 앉아서 저 나라의 소문과 거동을 살피면서 계책을 세우고자 한다고 품었습니다. 그런데 전의詮議도 했으니 곧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분부하셨지만,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세월을 이래저래 천연遷延한다면 더욱 저들의 선편先鞭을 받아 무한한 국욕을 빚을 것입니다. 또한 방금 구주歐洲에서 프랑스[佛]와 프로이센[普] 양국이 교전한 다음에는 러시아[魯國]가 호랑虎狼의 숙지宿志를 가지고 이 기회를 타서 반드시 아시아[亞細亞] 지방에 그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황국에 가장 큰일이므로 이 사이에 조선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내외의 시세를 비추어 살피신 다음 위의 탐색자가 출장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다시 품의합니다.

경오庚午(1870년) 7월 25일

<sup>97</sup> 어일신(御一新): 고잇신, 왕정복고를 의미

28 집의원集議院으로부터 「조선국 답서」라는 것을 첨부하여 진위를 묻는 내한來翰

별지 「조선국 답서 사본」으로 제목을 붙인 것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조선국에서 보낸 답서인지 진위 여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문未文의 ‘국외중립’ 운운한 것도 포고하였다고 하는데 유포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튼 위의 일들에 대해 진위가 분명하지 않아 의원들이 헛되이 의혹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귀성貴省에<sup>98</sup> 문의한 다음 답서를 보여주어 의단疑團을 빙석氷釋시키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경오庚午(1870년) 7월

집의원集議院<sup>99</sup>

외무성 귀중

추신. 왕복 서간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 오탈자가 보이니 수고스럽지만 교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국 답서 사본」

모욕을 당한 내서來書의 뜻을 상세히 살피니, 근래에 폐읍弊邑이<sup>100</sup> 다난하여 귀

<sup>98</sup> 귀성(貴省): 외무성

<sup>99</sup> 메이지 초기 정부의 자문기관. 1869년 7월 공의소(公議所)를 개칭하여 설치되었다. 의원은 각 번의 참사(參事) 한 명씩으로 해서 구성되어 각 번의 의사가 반영되었지만 공의소가 의결기관이었음에 비해 자문기관으로 그 권한이 축소되어 태정관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의, 답신하는 것에 그쳤다. 1871년 폐번치현 후에는 좌원(左院)의 하부기관이 되었다가 1873년 6월 폐지되었다.

<sup>100</sup> 폐읍(弊邑): 동래부를 의미

국에 봉사奉事할 예의와 대우를 결여했다고 독책督責하는 것 같다. 내가 삼가 이렇게 된 원유原由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옛날에 도요토미豊臣 씨가 망령되이 명분 없는 군사를 보내, 우리의 대비가 없음에 편승하여 우리의 국경을 침격侵擊했다. 우리의 군사가 불리하여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속국의 모습을 이루었지만, 우리 인민은 지금까지 죄를 귀국에서 얻은 까닭을 아는 자가 없다. 반드시 때를 기다려 그 죄를 물으려 한다.

다음으로 외국교제의 일을 유시諭示하는 존의尊意는 오로지 때의 변화를 다스리고 만국의 정세를 숙려하여 폐국弊國으로 하여금 서양과 교제를 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제는 국가의 중대사이고 각국 스스로 의리가 있고 천명이 있다. 우리 조선은 조선의 국시라는 것이 있어 쉽게 존명尊命을 따를 수 없다. 근래에 요망한 종교妖教<sup>101</sup> 때문에 프랑스(佛)와 틈이 있었다. 프랑스는 서양의 사나운 나라로 백전百戰을 할 여력이 있는데 작고 약한 우리 계림鷄林이 어찌 이것에 제대로 대적할 수 있겠는가. 오직 명을 하늘에 맡기고 국내의 힘을 합쳐 사수하면서 쓰러지길 기다릴 뿐. 일을 끝내지 못해 원병을 귀국에 청하고 지금까지 성중城中에서 애타게 사자의 수레가 도로에 나타나길 밤낮으로 동쪽을 향해 귀국의 소식을 갈망했다. 귀국은 일개一介 사자를 보내 우리의 단석旦夕에 이른 위급을 염려하는 뜻이 없다. 속국의 정의情義가<sup>102</sup> 어찌 있겠는가. 우리로부터 이를 끊은 것이 아니라 귀국이 이를 끊은 것이다. 금일 또한 어찌 조공을 구하라. 옆에서 들으니 귀국이 근래에 서양과 교제하고 더욱 친밀해져 정치는 완전히 서양식을 배우고, 군제는 모두 프랑스식을 스승으로 삼는다. 금곡金穀이 핏절乏絶하면 영국(英吉利)에 의뢰하고, 조세의 수입이 있으면 미국(米利堅)에 부여하여 교제하는 모습이 다만 일가 형제의 친밀함과 같을 뿐만 아니라 거의 관할이 되어 속종屬從하는 모습에 가깝지 않은가. 작은 계림이 가냘프고 약하지만 양노洋奴의 비린내 나고 노린내

101 종교(妖教): 천주교를 이름

102 정의(情義): 인정과 의리

나는 하풍(下風)에 빠지는 것을 매우 치욕스럽게 여긴다. 귀국이 지금 이와 같아 앞으로 역시 귀국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명을 어겨 죄가 있다고 하여 거함(巨艦)이 와서 압박하는 일이 있어도 이 또한 감히 사양하지 않는다. 삼가 부산포를 깨끗이 하여 기다릴 뿐. 그렇지만 폐읍이 종래 귀국에 죄를 물어야 함에도 아직 묻지 않은 일은 때가 되면 청하겠다. 폐읍은 재물과 노동력을 다해 부서진 배를 정비하고, 신구의 죄를 일일이 귀국에 물으려 한다. 또한 귀하의 내방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다.

위의 소문에 묘당(廟堂)에서 구루메(久留米)의<sup>103</sup> 사타 모토이치로(佐多素一郎)를<sup>104</sup> 조선에 사자로 보냈다 한다. 그런데 모토이치로가 조선의 여관에서 암살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부설(浮說)로 그가 이 답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묘당에서는 이와 같은 서면을 가지고 돌아온 것은 첫째 사명을 욕되게 하였고, 둘째 국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근신을 명했다. (그렇지만) 모토이치로는 공공연하게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몰래 말하기를 “조선의 이와 같은 무례한 답서를 즉각 찢어버려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이다. 그렇지만 조선만 이와 같이 대하고, 서양은 군상(君上)처럼 응접하면서 조선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만일 이 답서 문제 때문에 조선에 가게 된다면 (이는) 내가 원하는 바이다. 그때 모토이치로는 사명을 욕되게 했던 것을 해명하겠다”고 했다.

#### 위조문서(僞文)

두서(頭書): 집의원에서 전한 위조문서는 실로 포복절도하기에 그지없다.

103 구루메(久留米): 후쿠오카 남부

104 사타 모토이치로(佐多素一郎): 사다 하쿠보

## 29 「조선국 답서」를 집의원에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첨부해서 제출한 집의원의 내한

조선국 왕복서류 건에 대해 저번에 문의하셨습니다. 위의 서류가 당원<sup>105</sup>에 제출된 과정을 순서에 따라, 원고가 나온 근원을 돈독히 조사하도록 말씀을 전하셨기에 각각 나온 곳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선국 답서 사본」은 명단대로 도시마 外島 아무개로부터 3,4명을 거쳐 전해졌으며 기타야마 토자부로<sup>北山藤三郎</sup>가 베껴서 당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왕복 서간」은 당원 기숙생 가나야마 지로<sup>金山二郎</sup>라고 하는 자로부터 노무라번<sup>野村藩</sup> 의원 아리타케 히로시<sup>有竹裕</sup>가 전사<sup>傳寫</sup>하고, 동인이 당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만 가나야마 지로는 지금 요양을 위해 탕치<sup>湯治</sup>하러 갔으므로 귀원하는 즉시 나온 곳의 근원을 조사하겠습니다. 이에 명단을 첨부해서 보고합니다.

경오(1870년) 7월  
외무성 귀중

집의원

### 조선국 답서 사본을 전사<sup>傳寫</sup>한 명단

숙생<sup>塾生</sup> 도시마 야스에<sup>外島泰江</sup>

도나미번<sup>斗南藩</sup> 사사하라 덴타로<sup>笹原傳太郎</sup>

도나미번 사사하라 겐과치로<sup>笹原源八郎</sup>

도나미번 이자와 세이지로<sup>伊澤清次郎</sup>

병부성<sup>兵部省</sup> 후지이 키요시<sup>藤井清</sup>

(도쿄) 시바<sup>芝</sup> 미타<sup>三田</sup> 교란자카<sup>魚籃下</sup> 거주 마쓰시로번<sup>松代藩</sup> 출신

기타야마 토자부로<sup>北山藤三郎</sup>

이 사람이 당원에 제출함.

<sup>105</sup> 당원(當院): 집의원

조선론고朝鮮論稿

야나기와라 권대승

황국皇國은 절해絶海의 일대一大 고도孤島인 까닭에 차후 설령 마땅한 병비兵備를 갖추더라도,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만세토록 시종 각국과 병립并立해서 국위國威를 확장하기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국은 북쪽으론 만주에 이어져 있고 서쪽으론 달청韃靼에 접한 땅으로, 그것을 수복綏服한다면 실로 황국 보전의 기초이자 장래 만국경략萬國經略과 진취進取의 기본이 될 것이요, 만약 타인에게 선수를 뺏긴다면 국사國事가 여기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또 근년엔 각국 또한 그 국정國情을 탐지해서 빈번하게 엿보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러시아 같은 나라는 만주 동북을 잠식하고 그 세력이 왕왕 조선을 삼키려고 하니, 지금은 황국이 일각도 경홀하게 볼 수 없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열성列聖께서 생각을 드리우신 땅에 있어서겠습니까!

- 대정일신大政一新을 알리는 서계를 저들이 물리친 것은 각국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인내해서 그 교녕狡獪함을 제어하지 않고 그 애매한 것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황국이 만국에 대해 무엇으로써 일신一新의 규모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이 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은 요연瞭然해서 변론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불전쟁[佛孝交戰]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프리시아를 후원한다는 풍문이지만, 원래 범과 송냥이 같은 나라이니 유럽[歐羅巴]이 동요하는 때를 노려서 아시아 주를 약탈하는 기봉機鋒이 반드시 날카롭게 나올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에 용병用兵한다는 설이 있으니, 황국이 참으로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작년 봄 이후로 쓰시마의 수사修使를 파견했는데, 실로 도요토미, 도쿠카와

양씨兩氏 때의 100분의 1도 알선하는데 노력하지 않았으니, 이제 조정에서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에게 명하여 직접 외무관원과 도해渡海해서, 수백 년의 신의를 다하고 백기천변百機千變에 응하여, 간절하게 양국이 순치상보脣齒相輔의 관계에 있음을 보이고 널리 우내宇內的 형세를 타이른다면, 신사信使를 오게 하는 것도, 황사皇使를 내리는 것도, 아마 그 계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나라의 종래 완고한 습벽習癖이, 설령 황사를 영접하고 신사를 봉행奉行하더라도, 의주義州, 강화江華 등 여러 요처의 개항 등의 건에 이르러선 쉽게 승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먼저 착수하여, 앞에서 언급한 소 씨宗氏를 앞장세워 황사를 파견하고, 묘략廟略을 크게 정한 다음 반드시 한 차례 출병을 의정議定하여 관寬·맹猛과 은恩·위威를 병행해서 시행한다면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저들을 복종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一. 이즈하라번지사를 도해시켜, 저 번藩은 연래의 쇠퇴衰弊로 인해 조선에 대략 육만 금의 부채가 있는데, 조정에서 동銅 약 이십만 근으로 갚는다면, 안으로는 이즈하라번 상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분흥奮興하는 기운을 유도하고, 밖으로는 조선 관부官府에 신의를 드러내서 저들이 귀순하는 근거根基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무성 관원이 이를 봉행奉行해서<sup>106</sup> 이즈하라번에 이르면 상하가 필시 그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시적으로 재물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외 인심을 수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의는 실은 정부의 한 대관大官에게 제출한 문장이어서 당성當省 관원이 열람함에 문의의 과불급이 있더라도 웃어넘기시고, 모쪼록 이 호기회를 활용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의時宜를 헤아려 진력하시기를 국가를 위해 기원합니다.

사키미쓰前光

<sup>106</sup> 봉행(奉行): 부채를 가지고 간다는 의미

부지  
附紙

조선론은 신臣의 흉역胸臆(가슴속)에 있는 것이 이미 오래되어 매번 건의했던 것 같다. 최근에 다행히 정부에서 점차 착안했기 때문에 다시 탐정하기로 속히 결정했다. 바라건대 이 기회에 이번은 구구히 탐색하지 않고 중책中策으로 나와 쓰시마번[對藩] 지사가 스스로 도해하고 외무성 관원이 도와주고 감독하여 속히 부채를 저 나라에 갚고, 묘당廟堂은 그 재원을 지원하여 우리는 불신의 명을 씻고, 상선(중기선-원주) 1척과 군함 1척을 그 용도로 제공한다. 공연히 황사가 이어서 한국으로 간다고 진술하고, 저들이 허락하면 대행大幸이다. 저들이 경모輕侮하면 명령 없이도 전단戰端을 연다는 묘략廟略을 정하면 황위가 비로소 설 것이다. 신은 지금 청국에 갈 심사心思가 들끓고 있지만 논변할 겨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우론愚論을 올려 재관在官 열위列位의 진력을 바라고, 획책·토론을 갈망한다. 근언謹言.

권대승權大丞 사키미쓰前光 화압花押

### 31 황사 파견의 순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외무성 관원의 도한을 품의하는 글

변관辨官 귀중

외무성

조선국에 이전부터 왕복한 대략은 저번에 보고한 것과 같습니다만, 지난겨울에 외무성 관원을 파견할 때는 이어서 황사를 파견한다는 전망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급히 탐색하고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즉 그 개략을 파악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각국도 조선에 군침을 흘리는 모습이 날로 배가하여 차차 포함砲艦을 보낼 심산이라는 따위의 신문 기사가 적지 않은 때에 방금 텐진天津 소요도 일어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저 나라의 국정國情은 예부터 완고한데다가 이번의 응답은 아직 성신誠信을 다했다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실한 인물을 정선하여 두세 명 정도를 다시 그곳에 파견해두고 이즈하라 번사藩士와 심력을 합하여 저들의 내정內情을 깊이 탐색하고, 차차 황사를

파견할 수순<sup>手順</sup>으로 반드시 진행되도록 꾸준히 진력토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형세에서 내외의 교섭을 도저히 내버려두기 어려우니 관원을 파견하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평의하시어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품의합니다.

경오(1870) 7월

이것은 대보<sup>大輔</sup><sup>107</sup> 공과도 논의한 끝에 어제 기도 참의 덕에 가서 숙담<sup>熟談</sup>하고, 또한 조선<sup>朝鮮</sup>에 지시하여 다시 조사토록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마땅한 평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나기와라 대승<sup>大丞</sup> 인<sup>印</sup>

변관<sup>辨官</sup> 귀중

외무성

조선국이 어일신<sup>御一新</sup>을 알리는 글을 배척한 후, 여전히 등한함이 지나쳐 그 불신<sup>不信</sup>도 타이르지 않고 어리석음도 깨우쳐주지 않고 오로지 소씨<sup>宗氏</sup> 목전의 소리<sup>小利</sup>·사교<sup>私交</sup>의 무역만 변함없이 허용해두면 더욱더 저들의 경모<sup>輕侮</sup>를 받아 앞으로 개화<sup>開化</sup>의 길도 더욱 막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방금 외국인도 차차 황한<sup>皇韓</sup> 양국 교제·무역의 조약 등을 탐색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의 교제·무역의 조리에 맞지 않는 것들을 열거하여 우리를 힐책<sup>詰責</sup>할 때 다시 해명할 말이 없어 통심<sup>痛心</sup>합니다.

따라서 지난 4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끝에, 부디 황사를 파견하기 전에 외무성 관원이 다시 건너가 깊이 탐색하겠다고 품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의<sup>詮議</sup>도 했으니 곧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분부하셨지만,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세월을 이래저래 천연<sup>遷延</sup>한다면 더욱 저들의 선편<sup>先鞭</sup>을 받아 무한한 국욕을 빚을 것입니다. 방금 서양<sup>洋西</sup> 각국이 불화하여 혼잡하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이에 조선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내외의 시세를 비추어 살피신 다음 속히 묘략<sup>廟略</sup><sup>108</sup>

<sup>107</sup> 대보(大輔): 데라시마 무네노리 외무대보

을 결의하여 방향을 정한 취지를 배승<sub>拜承</sub>하고자 합니다. 이를 품의합니다.

경오<sub>庚午</sub>(1870년) 7월

부전  
附箋

이 일은 경[외무경 사와 노부요시(澤宜嘉)]께서 우대신(당시 산조 사네토미)과 대납언<sub>大納言</sub>(다이나곤, 당시 이와쿠라 토모미)님께 먼저 구술로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전국<sub>全局</sub>에 임하는 논의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어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부전에 ‘寺’(寺島宗則, 외무대보 데라시마 무네노리)의 인장이 찍혀 있다-옮김이].

108 묘략(廟略): 조정에서 세우는 국가 대사에 관한 계획

## · 찾아보기

### ㄱ

가나가와현(神奈川縣)	168, 177, 180
가시에 겐조(梶江謙三)	153, 155
권용	60
규슈(九州)	73, 88, 216
김선필	60

### ㄴ

나가사키(長崎)	18, 19, 34, 35, 37, 85, 88, 90, 93, 94, 103, 142, 157, 158, 159, 161, 166,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6, 180, 181, 182, 183, 190, 194, 196, 217, 225, 238, 240
나카하마 만지로	45
남종삼	58

### ㄷ

다이나곤(大納言)	56, 255
다이라노 요시아키라(平義達)	49, 50, 51
대수사(大修使)	30, 115, 126, 127, 140,

213, 233, 234, 239

도선주(都船主)	126, 240
독리선무장군	45
동래부사	30, 37, 63, 64, 78, 81, 114, 127, 208, 233, 234, 236, 237, 239, 240, 242

### ㄹ

류안	60
----	----

### ㅁ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	34, 179, 183, 194, 196, 200, 206, 207, 218, 238, 241
미토번(水戶藩)	138, 139
민익식	63, 64, 65

### ㅂ

발켄버그	21, 46
베이징(北京)	45, 200, 204, 210, 211, 213, 215

변백(弁白) 117, 124  
 부산포 78, 94, 143, 150, 189, 211, 229, 249  
 人  
 사다 모토이치로(佐田素一郎) 156, 161, 162, 165, 166, 170, 177, 249  
 - 나오히로(佐田直寛) 242  
 - 하쿠보(佐田白茅) 33, 168, 169, 171, 172, 175, 177, 179, 181, 183, 194, 196, 207, 218, 236, 237, 238, 241, 249  
 사이토 사카에(齊藤榮) 34, 179, 183, 194, 195, 196, 204, 205, 206, 207, 218, 238  
 - 겐노조(齊藤源之丞) 165, 166, 171, 195  
 상하이(上海) 18, 44, 45, 57, 204  
 세키구치 라이모(關口頼藻) 180  
 소가(宗家) 68, 78, 98, 105, 108, 132, 133, 134, 135, 136,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1, 152, 153, 155, 186, 189, 192, 204, 205, 208, 209, 210, 211, 214, 216  
 스키야마 히데타로(秋山秀太郎) 180  
 시마바라번(島原藩) 196  
 시모츠케노쿠니(下野國) 90  
 시즈오카번(静岡藩) 33, 137, 139, 180, 233  
 신숙 60  
 신효철 48

쓰시마(對州) 19, 50, 70, 71, 72, 73, 75, 77, 78, 79, 80, 82, 83, 84, 87, 88, 89, 90, 91, 94, 95, 96, 97, 98, 99, 100, 102, 103, 104, 105, 106, 108, 112, 115, 117, 123, 131, 132, 135, 136, 138, 140, 141, 142, 144, 145, 146, 149, 151, 154, 156, 157, 158, 159, 161, 162, 163, 164, 165, 166, 168, 169, 170, 172, 173, 174, 175, 176, 177, 180, 186, 187, 190, 194, 195, 196, 204, 205, 206, 207, 209, 210, 211, 214, 216, 217, 219, 220, 221, 223, 224, 226, 227, 232, 237, 242, 243, 251  
 쓰시마노카미(對馬守) 47, 48, 49, 50, 56, 58, 62, 68, 69, 78, 82, 83, 84, 85, 86, 87, 88, 93, 94, 95, 97, 98, 99, 100, 101, 103, 104, 105, 106, 107, 108, 110, 113, 114, 115, 131, 132, 141, 145, 232  
 〇  
 아키노쿠니(安藝國) 62  
 야도 마사요시(八戶順叔) 6, 23, 44, 45, 50, 57  
 아마구치번(山口藩) 220  
 야슈(野州) 88  
 양현수 60  
 에치젠노쿠니(越前國) 62  
 오기마치 산조(正親三條) 56  
 오다 마타조(小田又藏) 180  
 오다 주자부로(小田忠三郎) 152, 153, 165, 178, 238, 241

오사카(大阪) 34, 46, 85, 88, 90, 92, 94,  
142, 157, 158, 159, 166, 217, 225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 17, 24, 25, 56, 58,  
62, 82, 84, 85, 86, 87, 93, 94, 98, 103,  
104, 108, 111, 113, 116, 129, 132, 140,  
152, 213, 240

외국사무국 68, 71, 99

이경하 59

이기조 60

이연응 44, 45

이용희 60

이원희 60

이즈하라번(嚴原藩) 136, 139, 142, 145, 147,  
152, 153, 154, 155, 162, 165, 172, 177,  
178, 179, 208, 216, 220, 233,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52

이즈하라번지사(嚴原藩知事) 129, 131, 153,  
154, 155, 234, 236, 237, 238, 239, 242,  
252

임면호 58, 61

임한수 60

**ㄷ**

정규응 60

정지현 60

즈쇼노카미(圖書頭) 46, 47, 57

지번사(知藩事) 135, 154, 178, 243

**ㄹ**

초량관 196, 202

초량항 78, 94, 143, 150, 151, 217, 236

춘절사 45

**ㅍ**

태수습유 44, 49, 50, 51, 58, 63, 64, 131

**ㅎ**

한성근 60

한응필 60

홍봉주 58

효고현(兵庫縣) 169, 170

훈도 30, 31, 32, 37, 78, 114, 116, 117,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209, 210, 211, 218, 228, 236,  
239, 242

히라야마(平山) 19, 46, 47, 57

히젠노쿠니(肥前國) 89, 90, 223